

# 일본의 지역개발 및 농산업 관련법 번역 자료집 (II)

제2권 : 농업, 복지, 산업일반, 상업

2010. 1

농림수산식품자료실



0018574



**한국농어촌공사**

농 어 촌 개 발 처

농산업·도농교류지원지원본부

### V. 농 업 ..... 519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의 원활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	521
농업 법인에 대한 투자 원활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 규칙 .....	526
농주조합법 .....	528
농주조합법 시행령 .....	574
농주조합법 시행 규칙 .....	586
농주조합에 관한 토지 개혁 시행 규칙의 적용에 관한 성령 .....	596
농주조합이 실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및 생산녹지 지역에 관계하는 도시 계획에 대해서 요청에 관한 성령 .....	597
시민 농원 정비 촉진법 .....	599
시민 농원 정비 촉진법 시행령 .....	610
시민 농원 정비 촉진법 시행 규칙 .....	614
취락 지역 정비법 .....	618
취락 지역 정비법 시행령 .....	636
취락 지역 정비법 시행 규칙 .....	654
특정 농산 가공업 경영 개선 임시 조치법 .....	660
특정 농산 가공업 경영 개선 임시 조치법 시행령 .....	672
특정 농산 가공업 경영 개선 임시 조치법 시행 규칙 .....	677
생산 녹지법 .....	681
생산 녹지법 시행령 .....	692
생산 녹지법 시행 규칙 .....	696
유통 업무 시가지의 정비에 관한 법률 .....	699
유통 업무 시가지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28
유통 업무 시가지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735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746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98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809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의 중심 시가지 활성화 협회의 조직 공표에 관한 명령 .....	810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44조에 규정된 업무에 관련된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기구에 관한 성령 .....	811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8조지방세 불균일 과세에 따른 조치가 적용되는 경우 등을 정하는 성령 .....	812
지역 공공 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 .....	816

지역 공공 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7
지역 공공 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평성 19년 9월 26일 국토교통성령 제80호) .....	849

**VI. 복지 .....** 879

일반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	881
특별 양호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	905

**VII. 산업 일반 .....** 947

농·상·공업 등 제휴 사업 계획 승인 등에 관한 명령 .....	949
농·상·공업 등 제휴 지원 사업 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성령 (평성 20년 7월 18일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령 제4호) .....	952
농림수산성 관계 연구 개발 시스템 개혁의 추진 등에 의한 연구 개발 능력의 강화 및 연구 개발 등의 효율적 추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956
이분야 연계 신사업 분야 개척에 관한 명령 .....	960
전통 공예품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962
전통 공예품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79
전통 공예 품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982
제조 기반 기술 진흥 기본법 .....	995
제조 기반 기술 진흥 기본법 시행령 .....	1001
지역 전통 예능 등을 활용한 행사 등에 관한 지원 사업 실시 기관에 대한 성령 ..	1003
지역 전통 예능 등을 활용한 행사의 실시로 관광 및 특정 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006
지역전통예능 등을 활용한 행사의 실시로 관광 및 특정 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정하는 성령 .....	1016
지역 전통 예능 등을 활용한 행사의 실시로 관광 및 특정 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비율을 결정하는 정령 .....	1018

**VIII. 상업 .....** 1019

중소소매상업진흥법 .....	1021
중소 소매 상업 진흥법 시행령 .....	1037
중소 소매 상업 진흥법 시행 규칙 .....	1046



아  
연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의 원활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평성 14년 5월29일 법률 제52호)

최종개정 : 평성 21년 6월 24일 법률 제57호

(최종 개정까지 미 시행 법령)

평성 21년 6월 24일 법률 제57호(미 시행)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농업 법인의 자기 자본의 충실을 촉진하고, 건전한 성장 발전을 도모하면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서 "농업법인"은 농사조합법인, 주식회사 또는 지분회사(회사법(평성 17년 법률 제86호) 제 575조 제1항에 규정된 지분회사를 말한다)로, 농업에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2. 이 법률에서 "농업법인 투자 육성 사업"이라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업을 말한다.

- 1) 농업법인의 주식, 증권, 신주예약권 또는 신주예약권부사채 등(신주예약권부사채와 이에 준하는 사채로 농림수산성령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및 보유
- 2) 전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주식, 신주예약권 또는 신주예약권부사채 등을 보유하고 있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경영 또는 기술 지도를 실시하는 사업

(사업 계획 승인)

제3조

농업 기업 투자 육성 사업을 영위하고자하는 기업(농업 법인 투자 육성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그 농업 기업 투자 육성 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 계획"이라고 한다)을 만들고, 이것을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하여 그 사업 계획이 적절하다는 승인을 받을 수 있다.

2. 사업 계획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1) 주식 또는 지분 취득의 대상이 되는 농업 법인의 선정 기준 지분 또는 주식의 취득 시 평가 기준 지분 또는 주식의 취득 한도, 주식 또는 지분의 보유 기간 및 지분 또는 주식의 처리 방법

- 2) 신주예약권의 취득 대상이 되는 농업 법인의 선정 기준, 신주예약권의 내용에 관한 기준, 신주예약권의 취득 한도와 신주예약권의 행사시기
  - 3) 신주예약권부사채 등의 취득 대상이 되는 농업 법인의 선정 기준, 신주예약권 부사채 등의 취득 한도와 신주예약권부사채 등의 상환 기간에 대한 기준 및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그 사채에 부착된 신주예약권의 내용에 관한 기준 및 신주예약권의 행사시기
  - 4) 전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사업에 관한 수수료
3. 농림수산대신은 제1항의 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 사업 계획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서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해야 한다.
- 1) 그 사업 계획에 관한 농업 기업 투자 육성 사업이 농업 법인의 자기 자본의 충실을 도모함에 유효하고 적절한 것
  - 2) 그 사업 계획에 관한 농업 기업 투자 육성 사업이 농업 법인의 건전한 성장 발전에 기여하는 것
  - 3) 그 사업 계획이 농업 기업 투자 육성 사업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것

(사업 계획의 변경)

#### 제4조

전조 제1항의 승인을 받은 자(그 사람의 설립에 관한 동향 기업을 포함한다)는 그 승인에 관한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대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전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승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보고 요구)

#### 제5조

농림수산대신은 제3조제1항의 승인을 받은 주식회사(이하 항의 승인을 받은 자의 설립에 관한 동향 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승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해 농업 기업 투자 육성 사업의 실시 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선 명령)

#### 제6조

농림수산대신은 승인 회사가 제3조제1항의 승인에 관한 사업 계획(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승인이 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것. 이하 "승인 사업 계획"이라고 한다)에 따라 농업 기업 투자 육성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 회사에 대하여 상당의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사업 계획 승인 취소)

제7조

농림수산대신은 승인 회사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3조제1항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주식회사 일본 정책 금융 광고법의 특례)

제8조

주식회사 일본 정책 금융 광고는 주식회사 일본 정책 금융 광고법(평성 19년 법률 제57호) 제 11조에 규정된 업무 외에, 농업 법인에 대한 민간 투자를 보완하기 위해 승인 회사가 승인 사업 계획에 따라서 농업 기업 투자 육성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출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전항에 규정하는 자본의 출자는 해당 자금에 관한 농업 기업 투자 육성 사업에서 배당금의 지불을 가능하게 하는 이익의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하여, 농림수산대신과 재무대신의 인가를 받아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일본 정책 금융 광고가 실행하는 동항에 규정된 기금의 출자에 대한 주식회사 일본 정책 금융 광고법 제11조제1항 제6호, 제12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1호 4), 제41조제2호, 제 58조, 제59조제1항, 제64조제1항 제4호 및 제73조제3호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법 제11조제1항 제6호 중 "제외한다"인 것은 "제외한다) 및 농업 법인에 대한 투자의 원활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로, 동법 제12조제1항 중 "동항 제5호"인 것은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업무 및 전조 제1항 제5호"로, 동법 제31조제2항 제1호 4), 제41조제2호 및 제64조제1항 제4호 중 "동항 제5호"인 것은 "특별 조치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업무 및 제10조제1항 제5호"로, 동법 제58조 및 제59조제1항 중 "이 법률"인 것은 "이 법률, 특별조치법"으로, 동법 제73조제3호 중 "제 11조"인 것은 "제11조 및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으로 바꾼다.

(농업 협동조합법의 특례)

제9조

승인 회사가 승인 사업 계획에 따른 농업 기업 투자 육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그 승인 회사에 관하여 농업 협동조합법(쇼와 22년 법률 제102호) 제71조10 제1항 규정의 신청 내용은 동항 중 "다음에 열거하는 자"인 것은 "다음에 열거하는 자 및 그 농사 조합법인, 농업 법인에 대한 투자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6조에 규정된 승인 사업 계획에 따라 동법 제2조제2항에 규정된 농업 기업 투자 육성 사업에 관한 투자에 따른 동법 제 5조에 규정된 승인 회사"로 한다.



(농지법의 특례)

제10조

승인 회사로, 지방 공공단체, 농업 협동조합, 농업 협동조합 연합회 또는 농림 중앙 금고가 전체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승인 사업 계획에 따라서 농업 기업 투자 육성 사업 영위하는 경우, 그 승인 회사에 대한 농지법(쇼와 27년 법률 제 229호) 제2조제7항 제2호 규정의 적용은 동호 중 "다음에 열거하는 자"인 것은 "다음에 열거하는 자 및 그 법인, 농업 법인에 대한 투자 원활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6조에 규정된 승인 사업 계획에 따라서 동법 제2조제2항에 규정된 농업 기업 투자 육성 사업에 관한 투자를 행하는 동법 제 5조에 규정된 승인 회사"로 한다.

(벌칙)

제11조

제5조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한 승인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은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승인 회사의 대표자 또는 승인 회사의 대리인, 고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승인 회사의 업무에 관해 전항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승인 회사에 대하여 동항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7년 7월 26일 법률 제87호) 발취

이 법률은 회사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9년 5월 25일 법률 제58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제8조

이 법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정령에의 위임)

제9조

부칙 제 2조에서 전조까지 결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조정 규정)

제10조

이 법률과 주식회사 상공조합 중앙금고법(평성 19년 법률 제74호), 주식회사 일본정책 투자은행법(평성 19년 법률 제85호) 또는 지방 공기업 등 금융기구법(평성 19년 법률 제64호)에 동일 법률 규정에 대한 개정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이 동일한 날짜에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은 주식회사 상공조합 중앙금고법, 주식회사 일본정책 투자 은행법 또는 지방 공기업 등 금융기구법에 따라 먼저 개정되고, 그 다음에 이 법률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으로 한다.

부칙(평성 21년 6월 24일 법률 제57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호에 규정된 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1) 부칙 제 43조의 규정 공포한 날

(정령에의 위임)

제43조

이 부칙에 명시된 것 이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농업 법인에 대한 투자 원활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 규칙  
(평성 14년 6월 21일 농림수산성령 제52호)

최종개정 : 평성 18년 5월 1일 농림수산성령 제45호

농업 법인에 대한 투자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평성 14년 법률 제52호) 제2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며 또한 이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업 법인에 대한 투자의 원활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 규칙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신주 예약권이 있는 사채에 준하는 사채)

제1조

농업 법인에 대한 투자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2항 제1호에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채는 신주 예약권을 발행하는 자가 그 신주 예약권과 함께 모집하고 할당해야한다.

(사업 계획 승인의 신청)

제2조

농업 기업 투자 육성 사업을 영위하고자하는 기업(농업 법인 투자 육성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투자 육성 회사"라고 한다)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을 통해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해야한다.

- 1) 사업계획서
- 2) 명칭 및 주된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위치를 기재한 서류
- 3) 임원의 직함과 이름을 기재한 서류
- 4) 업무 내용을 기재한 서류
- 5) 최근의 대차 대조표와 손익 계산서, 기타 그 회사의 최근의 업무, 재산 및 손익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
- 6) 투자 계획 및 수지 예산 그리고 자기 자본 이용 상황의 예상을 기재한 서류
- 7) 전 각호에 규정된 것 외에 승인 심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 사항을 기재한 서류

(투자 육성 회사가 취득하는 농업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요건)

### 제3조

투자 육성 회사가 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 육성 회사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신주 예약권의 목적이 되는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 1) 투자 육성 회사가 취득하는 지분 또는 주식에 관한 의결권의 합계가 그 농업 법인 총 주주 등의 의결권(총 주주 또는 총 출자자의 의결권(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주주 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의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을 제외하고, 회사법(평성 17년 법률 제86호) 제 87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것
- 2) 농업 생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

### 부칙

이 성령은 농업 법인에 대한 투자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시행일(평성 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8년 5월 1일 농림수산성령 제45호)

이 성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농구조합법

(쇼와 55년 11월 21일 법률 제86호)

최종개정 : 평성 21년 6월 24일 법률 제57호

(최종 개정까지 미 시행 법령)

평성 21년 6월 24일 법률 제57호 (미시행)

제1장 총칙 (제1조- 제 6조)

제2장 사업

제1절 통칙(제 7조)

제2절 토지 구획 정리 사업(제 8조)

제3절 무역분합(제9조- 제 11조)

제4절 토지 개량 사업(제 12조)

제5절 농지 이용 약관 등(제 13조, 제 14조)

제3장 조합원(제15조- 제 28조)

제4장 관리(제29조- 제 59조)

제5장 설립(제60조- 제 70조)

제6장 해산 및 청산(제71조- 제 80조)

제7장 감독(제81조- 제 85조)

제8장 기타 조항 (제86조- 제 94조)

제9장 벌칙 (제95조- 제 98조)

부칙

###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법은 주택의 수요가 많은 지역에 있어서, 시가화 구역 내 농지의 소유자 등이 협력하여 필요에 따라 당면 영농의 계속하면서 해당 시가화 구역 내 농지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주거 지역 등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의 사업 활동을 통해 이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택지 및 주택 공급 확대를 도모하고, 이로써 이들 지역의 주민 생활의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서 "주거 지역 등"이라함은 주택에 제공되는 토지 및 점포, 사무실, 기타 편의 시설, 도로, 공원, 기타 공공시설, 기타 주택 시가지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에 제공되는 토지를 말한다.

2. 이 법률에서 "주택지 등"은 주거 지역 등등으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이용되게 되는 토지(영농 지역 등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이 법률에서 "농지 등"은 현재 농업용으로 제공되는 농지와 채초방조지 및 이들에 인접하며, 이것들과 일체되어 농업용으로 제공되는 농업용 도로, 기타 토지를 말한다.

4. 이 법률에서 "시가화 구역 내 농지"이라함은 도시 계획법(쇼와 43년 법률 제 100호)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시가화 구역(이하 "시가화 구역"이라고 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를 말한다.

5. 이 법률에서 "시가화 구역 내 농지 등"은, 시가화 구역의 지역에 있는 농지 등을 말한다.

6. 이 법률에서 "영농 지역 등"은 농업상으로 계속 이용되는 시가화 구역 내의 농지 등을 말한다.

(주소)

제3조

농주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2. 조합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명칭)

제4조

조합은 그 명칭 중에 농주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2. 조합이 아닌 것은, 그 명칭 중 농주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업 목적)

제5조

조합은 그 행하는 사업에 의해서 그 조합원을 위해 직접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그 사업을 행해서는 안 된다.

(등록)

제6조

조합은 정령으로 지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해야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등록 후가 아니면 제 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제2장 사업

### 제1절 통칙

(사업)

제7조

조합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내에서 다음에 열거하는 사업을 행한다.

- 1) 양호한 주택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구획 형질 변경 및 이와 함께 정비해야 할 공공시설의 정비
- 2) 주택 건설, 임대, 기타 관리 또는 양도(그 주택용으로 제공되는 토지의 임대, 기타 관리 또는 양도 포함)
- 3) 전 두 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2. 조합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사업 외에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내에서 다음에 열거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

- 1) 조합원과 일반 공중의 편의에 제공되는 점포, 사무소, 기타 편의 시설 건설, 임대, 기타 관리 또는 양도(그 편의 시설용으로 제공되는 토지의 임대, 기타 관리 또는 양도를 포함한다)
- 2) 주택이나 점포, 사무실, 기타 편의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자로 정령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행하는 토지의 임대, 기타 관리 또는 양도
- 3) 전항 제1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의 교환분합
- 4) 농산물 처리 가공 시설, 기타 조합원의 영농에 필요한 공동 이용 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다음 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
- 5) 객토, 배수, 기타 농지의 이용 또는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정령으로 지정하는 것

- 6) 조합원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 7) 조합의 사업에 관한 조합원들의 지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과 조합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
  - 8)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농지 이용 약관 설정 및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농지 이용 계약의 체결
  - 9) 전 각 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업(이것에 부대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다음 조 제1항에서 같다)은 조합 지역의 시가화 구역 내 농지 등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포함하는 토지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4. 제2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사업(이것에 부대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은 조합원이 영농을 계속하는데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 제2절 토지 구획 정리 사업

(토지 구획 정리 사업)

### 제8조

조합이 전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업을 토지 구획 정리법(쇼와 29년 법률 제119호)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토지 구획 정리법(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 구획 정리 사업"고 한다)으로 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동법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몇몇 사람의 공동으로서 시행하는 토지 구획 정리법 시행자로 간주하고, 동법 규정(제9조제2항, 제11조 및 제12조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조제9항 중 "건너지 않도록"인 것은 "건너지 않고, 농주조합의 지역과 일치하며, 각 조합원(준 조합원을 제외한다)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또는 차지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택지 이외의 택지 및 시가화 구역 밖의 토지를 포함하지 않도록"으로 한다.

- 2. 토지 구획 정리법 규정의 적용에 필요한 기술 교환은 정령으로 지정한다.
- 3.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토지 구획 정리법 제4조제1항 약관이나 사업 계획을 결정, 혹은 변경 또는 동법 제86조제 제1항의 환지 계획을 결정, 혹은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조합원(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이하 "준 조합원"이라고 한다)을 제외한다) 전원의 합의에 의해야 한다.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토지 구획 정리법 제4조제1항 사업 계획에서는 국토교통성령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지 등 및 영농지 등의 지역을 결정할 수 있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구획 정리법 제 123조 제1항과 제 124조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이전 두 항의 규정은 동법의 규정으로 본다.

### 제3절 무역분합

(교환분합 계획 결정 절차)

#### 제9조

조합은 제7조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환분합 계획을 결정하고, 그 교환분합 계획에 따라 동호 무역분합(이하 "무역분합"이라고 한다)을 해야 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한, 영소작권, 질권, 임차권, 사용 대차에 의한 권리 또는 기타의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모두의 동의를 얻고,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2. 전항의 교환분합 계획은 주무성령으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지 등 및 영농지 등이 적절히 배치되고, 각각의 용도에 따라 토지의 유효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를 결정해야 한다.

3. 도도부현 지사는 교환분합 계획에 결정 농지에 관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시가화 구역 내 농지를 주택지 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내용이 농지법(쇼와 27년 법률 제 229호)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면 안 된다.

4. 교환분합계획에 대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체분합계획으로 결정된 농지에 관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은 시가화 구역 내 농지를 주택지 등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법 제5조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항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동법 제3조제1항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0조

조합이 교환분합계획을 결정하려고 하는 경우, 그 교환분합계획에 관한 토지 소유자의 제기 또는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 교체분합계획에 해당 제기 또는 동의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를 정하지 않고, 그 소유자가 잃을 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유자가 잃은 토지에 대한 지상권한, 영소작권, 질권, 임차권, 사용 대차에 의한 권리 또는 기타의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하 "사용 수익 권한"이라고 한다)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은 이들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2. 전항 전단의 경우에는 금전에 의한 변제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한 교환분합 계획에서 그 금액 및 지불 및 징수 방법과 시기를 결정해야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를 결정하지 않고, 그 소유자가 잃어야 하는 토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자가 잃을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선취 특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교환분합계획에 변제금을 결정함에 있어 해당 권리의 변제금 액수를 함께 결정해야한다.

(토지 개량법의 준용)

제11조

토지 개량법(쇼와 24년 법률 제 195호) 제 99조(제1항 및 제2항은 제외한다), 제 101조제2항, 제 102조에서 제 107조까지, 제108조제1항 및 제2항, 제 109조, 제 110조, 제 112조, 제 113조, 제 114조 제1항, 제 115조, 제 118조(제1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 및 제2항을 제외한다), 제 121조에서 제 123조까지, 제 137조, 제 138조(제2호에서 제4호까지 제외한다), 제 139조 및 제 142조의 규정은 교환분합에 준용한다. 이 경우, 이 약관을 준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 교환은 정령으로 지정한다.

#### 제4절 토지 개량 사업

(토지 개량 사업의 시행)

제12조

조합이 제7조제2항 제5호에 규정된 사업을 토지 개량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토지 개량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동법 제9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 개량 사업을 실시하는 농업협동조합으로 간주하고, 동법 제2장 제3절과 제5장(제 113조 2 제3항, 제 119조, 제 120조 및 제 126조를 제외한다)의 규정 및 제 138조(제2호에서 제4호까지를 제외한다), 제 139조 및 제 14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5절 농지 이용 약관 등

(농지 이용 약관)

제13조

조합은 영농 지역 등에 속하는 경작지 중 해당 농촌 지역이 어우러진 토지 지역으로, 주변 토지 이용 상황, 배수, 기타 상황을 감안하여, 영농의 지속이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 권한이 있는 조합원에 당면 영농을 계속하고자하는 것이 계약의 제기에 근거해서, 그 사람의 영농의 원활함에 도움이 되도록, 해당 농지의 이용에 관한 약관(이하 "농지 이용 약관"이라고 한다)을 결정할 수 있다.

2. 농지 이용 약관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결정해야한다.

- 1) 농지 이용 약관의 대상 농촌 지역(이하 "영농 지역"이라고 한다)
- 2) 농지로의 관리에 관한 사항
- 3) 주거 지역 등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 4) 농지 이용 약관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 5) 농지 이용 약관의 유효 기간

3. 조합은 농지 이용 약관을 정한 경우에는 관할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정촌 장(특별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그 농지 이용 약관이 영농 지역에서의 즉각적인 영농의 원활한 지속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인증 받을 수 있다.

4. 시정촌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신청이 있을 때, 신청에 관련된 농지 이용 약관 설정 절차 또는 신청 절차가 법령을 위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인정을 해서는 안 된다.

5. 시정촌 장은 제3항의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한다.

6. 전 각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농지 이용 약관의 설정 변경 및 폐지, 승인 및 그 취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지정한다.

7. 시정촌 장은 농지 이용 약관의 인정 및 그 취소에 대해 해당 조합에서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농지 이용 계약)

#### 제14조

조합은 전조 제3항의 인정을 받은 농지 이용 약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으로 해당 영농지 등에 속하는 농지(영농 지구에 인접 않은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 권한을 보유하는 것과 해당 농지 이용 약관에 따라 조합원이 준수해야 할 것으로 되는 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이들이 준수해야 되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농지 이용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2. 농지 이용 계약을 체결한 조합이 그 영농 지역에 관련된 농지 이용 약관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신청자 외에 그 농지 이용 계약을 체결한 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 제3장 조합원

(조합원이 되는·자격)

#### 제15조

조합원이 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에 열거 자로 정관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 1) 조합의 지구의 토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 구획 정리법 제2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공공시설에 제공되는 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차지권(임대 임차인법(평성 3년 법률 제90호)에서 말하는 임대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자
- 2) 조합 지역안의 농지에 대하여 사용 수익 권한을 가진 자(전호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

(출자)

#### 제16조

조합원은 출자의 일정 부분을 보유해야한다.

2. 출자금액은 균일해야한다.
3. 조합원의 책임은 제19조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을 제외하고는,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4. 조합원은 출자의 지불금에 대해, 상쇄로써 조합에 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지분 양도)

#### 제17조

조합원은 조합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2.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도 받으려고 하면, 가입해야 한다.
3.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받는다.
4.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할 수 없다.

(의결권과 선거권)

#### 제18조

조합원(준 조합원을 제외한다)은 각 한 개의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이 있다.

2.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제 39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 통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 서면 또는 대리인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실행할 수 있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하는 사람을 참석자로 본다.

4. 대리인은 다섯 명 이상의 조합원을 대리할 수 없다.
5.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경비)

제19조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2. 조합원은 전항의 비용 지불에 대해 상채로서 조합에 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과태료)

제20조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가입의 자유)

제21조

조합원이 되는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가입을 거절, 또는 그 가입에 대해 현재의 조합원이 가입할 때보다 어려운 조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탈퇴의 자유)

제22조

조합원은 60일 전에 예고하고, 사업 연도 말에 탈퇴할 수 있다.

2. 전항의 예고 기간을 정관으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일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법정 탈퇴)

제23조

조합원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에 의하여 탈퇴된다.

- 1) 조합원이 되는 자격 상실
- 2) 사망 또는 해산
- 3) 제명

2. 제명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해 총회의 의결에 의해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그 총회 일 10일 전에 해당 조합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한다.

- 1) 장기간에 걸쳐서 조합 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
- 2) 출자 지불금 비용 지불,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에 태만한 조합원

3)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조합원

3. 전항의 제명은 제명하는 조합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하고 이것을 가지고 그 조합원에게 대항 할 수 없다.

(탈퇴자 지분의 환불)

제24조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지분은 탈퇴한 사업 연도 말의 해당 조합의 재산에 의해서 이것을 결정한다.

(손실액의 지불금)

제25조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합의 재산을 소유하고 부채를 갚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그 부담이 초래된 손실액의 지불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시효)

제26조

전 두 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탈퇴 후부터 2년간 이것을 행하지 않을 경우,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지분 환급의 정지)

제27조

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이 그 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수할 때까지 그 지분의 환불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출자구좌 감소)

제28조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구좌를 감소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는 제24조 및 제 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장 관리

(정관)

제29조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 1) 사업
  - 2) 이름
  - 3) 지역
  - 4) 사무소의 소재지
  - 5) 조합원이 되는 자격 및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규정
  - 6) 출자 한 금액 및 그 지불금 방법 및 한 조합원이 가질 수 있는 출자 구좌 최고 한도
  - 7) 비용의 분담에 관한 규정
  - 8) 잉여금의 처리 및 손실의 처리에 관한 규정
  - 9) 준비금의 금액과 그 적립 방법
  - 10) 임원의 정수, 직무의 분담 및 선임 또는 선임에 관한 규정
  - 11) 사업 연도
  - 12) 공고 방법
2. 조합의 정관은 전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합의 존립 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현물 출자를 하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출자의 목적, 재산 및 그 가액 및 이에 대한 출자 구좌를 기재해야 한다.
3. 주무대신은 모범 정관 예제를 결정할 수 있다.

(약관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제30조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은 정관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약관으로 결정할 수 있다.

- 1) 총회에 관한 규정
- 2) 업무 집행과 회계에 관한 규정
- 3) 임원에 관한 규정
- 4) 조합원에 관한 규정
- 5) 기타 필요한 사항

(임원의 정수 및 선거 또는 선임)

제31조

조합에 임원으로 이사 및 감사를 둔다.

2. 이사의 정수는 두 명 이상으로, 감사 상수는 한 사람 이상으로 한다.
3.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총회(설립 당시의 임원으로, 창립총회)에서 선출. 단,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외에서 선거 할 수 있다.
4. 임원 선거는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단,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후보자가 선거해야 임원의 정수 이내인 때에는 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
5. 투표는 조합원 1인당 1표로 한다.
6. 정관에 의하여 결정된 투표 방식에 의한 선거 결과 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제4항 단, 규정에 따라 투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7. 총회 외부에서 임원 선거를 할 때, 투표소는 조합원의 선거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장소에 마련한다.
8. 임원은 제3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총회(설립 당시의 임원으로, 창립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9. 이사 정수의 적어도 3분의 2는 조합원(준 조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되는 개인 또는 조합원이 되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설립 당시의 이사는 설립의 동의를 한 개인 또는 설립의 동의를 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조합과 경영진과의 관계)

제31조2

두 조합과 경영진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임원의 임기)

제32조

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설립 당시 임원의 임기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창립총회(합병에 의한 설립에 있어서는 설립 위원)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일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
3. 전 두 항의 규정은 정관에 의하여, 전 두항의 임기를 임기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중 최종 통상 총회의 종결 시까지 신장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임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의 조치)

제32조2



두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 또는 이 법률이나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하는 임원은 새로 선임된 임원(제33조의 6 임시 이사를 포함한다)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또한 임원의 권리 의무가 있다.

(이사의 직무)

제33조

이사는 법령, 법령에 근거하는 행정청의 처분, 정관, 사업 기본 방침 및 정책(이하 "법령 등"이라고 한다) 및 총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조합을 위해 충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이사가 그 임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해당 이사는 조합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3.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대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해당 이사는 제삼자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제42조 제1항의 서류에 허위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등록이나 공고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다.

(조합의 업무 결정)

제33조2

조합의 업무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조합 대표)

제33조3

이사는 조합의 모든 업무에 대해 조합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의 규정에 반할 수 없으며,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한다.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제33조4

이사의 대표권에 더해지는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사의 대리 행위의 위임)

제33조5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은 경우에만 특정 행위의 대리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임시 이사)

제33조6

이사가 부족한 경우에 업무가 지체하여 손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도부현 지사는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의해 임시 이사를 선임해야한다.

(감사의 직무)

제33조7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이한다.

- 1) 조합의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 2) 이사의 직무 집행 상황을 감사한다.
- 3)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또는 현저히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회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보고한다.
- 4) 전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를 소집한다.

(임원의 겸직 금지)

제34조

이사는 감사 또는 조합의 고용인과, 감사는 이사회 또는 조합의 고용인과, 각각 겸해서는 안 된다.

(이사의 자기 계약 등 금지)

제35조

조합이 이사와 계약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이사회와의 소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다.

(총회의 소집)

제36조

이사는 매 사업 연도 한번 통상 총회를 소집해야한다.

제37조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조합원(준 조합원을 제외한다)이 총 조합원(준 조합원을 제외한다)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회의의 목적이 되는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사는 그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한다.

### 제38조

이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없을 때 또는 전조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 소집의 수속을 하지 않을 때는, 감사는 총회를 소집해야한다.

(총회 소집 절차)

### 제39조

총회 소집 통지는 해당 총회 일자 10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이 되는 사항을 제시해야한다.

(조합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sup>31)</sup>)

### 제40조

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조합원 명단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의 주소로, 그 사람이 별도 통지 또는 최고를 받는 위치를 조합에 통지했을 때에는 해당 주소로 하면 좋다.

2.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통상적으로 도달하는 기간의 날짜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정관, 기타 서류의 설치 및 열람)

### 제41조

이사는 정관, 사업 기본 방침과 정책을 각 사무소에,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2. 이사는 총회의 회의록을 10년간 주된 사무소에, 그 등본을 5년간 그에 따른 사무소에 비치해둬야 한다.

3. 조합원 명부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2) 가입 년도
- 3) 출자 구좌 및 출자 각 구좌의 취득 연월일
- 4) 납입 받는 출자액 및 그 지불금의 연월일
- 5) 준 조합원인 사람은 그 요지

4.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1항 및 제2항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설치 및 열람)

### 제42조

이사는 일반적 총회 일로부터 일주일 전까지, 사업 보고서, 재산 목록, 대차 대조

---

31) 재촉하는 통지를 함

표, 손익 계산서 및 잉여금 처분 방안 또는 손실 처리 방안을 감사 신청하여, 이것들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둬야 한다.

2.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전항의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1항에 규정된 서류를 표준 총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4. 전항의 감사 의견서 내용은 이것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록한 전자적 기록(전자 방식, 자기적 방식, 그 외에 타인의 지각에 의하여 인식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기록으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 처리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서 주무성령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을 첨부하는 것으로 그 감사의 의견서의 첨부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는 해당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본다.

(임원의 개선 신청)

#### 제43조

조합원(준 조합원을 제외한다)은 총 조합원(준 조합원을 제외한다)의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대표자로부터 임원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이사의 전체 또는 감사의 모든 관하여 동시에 해야 한다. 단, 법령 등의 위반을 이유로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개선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는 이사는 이를 총회의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37조제2항 및 제 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제3항의 서면의 제출이 있게 되면, 이사는 총회 일자의 일주일 전에 그 청구에 관련된 공무원에게 그 문서 또는 그 사본을 송부하며, 총회에서 변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해 제4항의 총회에서 참석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련된 임원은 그 때에 그 직을 상실한다.

(임원의회사법 등의 준용)

#### 제44조

회사법(평성 17년 법률 제86호) 제 430조 규정은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평성 18년 법률 제48호) 제78조규정은 이사에 대해서, 제 33조의 규정은 감사에 대해서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법 제 430조 중 "임원 등 이"인 것은 "이사"로, "다른 임원 등 도"인 것은 "감사도"라고 바꾼다.

(참사<sup>32)</sup> 및 회계 주임)

제45조

조합은 참사 및 회계 주임을 선정하고, 그 주된 사무소 또는 그에 따른 사무소에서 그 업무를 시킬 수 있다.

2. 참사 및 회계 주임의 선임 또는 해임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3. 회사법 제11조제1항과 제3항, 제12조 및 제 13조의 규정은 참사에 준용한다.

제46조

조합원(준 조합원을 제외한다)은 총 조합원(준 조합원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에 대해, 참사 또는 회계 주임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해임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는 그러한 참사 또는 회계 주임의 해임 여부를 결정 해야한다.
4. 이사는 전항의 여부를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전에 해당 참사 또는 회계 주임에 대해 제2항의 서면 또는 그 사본을 송부하며, 변명 기회를 주어야한다.

(경쟁 업체 관계 에 있는 임원 등에 취임 금지)

제47조

조합에서 하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을 영위 또는 이것에 종사하는 자는 그 조합의 이사, 감사, 참사 또는 회계 주임이 될 수 없다.

(총회의 의결 사항)

제48조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 1) 정관 변경
  - 2) 기업 정책 변화
  - 3) 정책 설정, 변경 또는 폐지
  - 4) 매 사업 연도의 사업 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 5) 경비의 부과 및 징수 방법
  - 6) 사업 보고서, 재산 목록, 대차 대조표, 손익 계산서, 잉여금 처분 방안과 손실 처리 방안
2. 정관 및 사업 기본 방침의 변경은 도도부현 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

32) 기업체, 단체 따위에 두는 직위의 하나.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

3. 제67조제2항 및 제 68조의 규정은 전항의 허가에 준용한다.
4. 조합의 지역에 관한 정관 변경 내용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제 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 지역의 토지로 된 시가화 구역 내 농지 등으로 있는 토지에서 조합의 사업에 의해 정관 변경 승인 전에 시가화 구역 내 농지 등으로 없어진 것은 동조에 규정된 시가화 구역 내 농지 등으로 본다.

(총회의 의사)

제49조

총회의 의사는 이 법률, 정관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참석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2. 의장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3. 의장은 조합원으로 총회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4. 총회에서는 제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 의결 사항)

제50조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은 총 조합원(준 조합원을 제외한다)의 절반 이상이 참석하고, 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필요로 한다.

- 1) 정관 변경
- 2) 기업 정책 변화
- 3) 조합의 해산 및 합병
- 4) 조합원의 제명

(연기 또는 속행 결의)

제50조2

총회에서 그 연기 또는 진행에 대한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 39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회의록)

제50조3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야한다.

(총회에 관하여 회사법의 준용)

제51조

회사법 제 830조, 제 831조, 제 834조(제16호 및 제17호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835조 제1항, 제 836조 제1항 및 제3항, 제 837조, 제 838조 및 제 846조의 규정(이 규정 중 감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은 총회의 결의의 부재 혹은 무효 확인 또는 취소의 고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출자 금액 감소)

제52조

조합은 출자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는 때에는 그 의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재산 목록 및 대차 대조표를 작성해야한다.

2. 조합은 전항의 기간 내에 채권자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것을 언급하는 뜻을 공고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기 별도로 이것을 최고해야 한다.

3. 전항의 일정 기간은 한 달에 이내로 한다.

제53조

채권자가 전조 제2항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언급하지 않은 때는 출자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2. 채권자가 이의를 언급할 때에는 조합은 변제하거나, 혹은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고, 또는 그 채권자에게 변제를 받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탁 회사 혹은 기금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 기관에 상당한 재산을 신탁해야한다. 그러나 출자 금액의 감소를 해도 그 채권자에게 피해가 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사법 제 828조 제1항(제5호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과 제2항(제5호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 834조(제5호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 835조 제1항, 제 836조에서 제 839조까지 및 제 846조의 규정(이 규정 중 감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은 조합의 출자 금액 감소의 무효 소송에 관하여 준용한다.

(준비금과 이월금)

제54조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매 사업 년도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준비금으로 적립해야한다.

2. 전항의 정관이 정하는 준비금의 금액은 출자 총액의 2분의 1 이하로 한다.

3. 제1항의 준비금은 손실을 충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써서는 안 된다.

4. 제7조제2항 제7호에 규정된 사업을 하는 단체는 해당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 년도 잉여금의 20분의 1 이상을 다음 사업 연도로 이월해야한다.

(잉여금의 배당)

제55조

조합은 손실을 보완하고 전조 제1항의 준비금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을 공제 후가 아니면, 잉여금 배당을 해서는 안 된다.

2. 전항의 잉여금 배당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조합 사업의 이용 분량 또는 납입 받는 출자 금액에 따라야한다. 이 경우, 납입 받는 출자 금액에 따라 배당금 비율은 매년 8퍼센트 이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구분 정리)

제56조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하는 조합(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조에서 같다)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정리해야 한다.

(기금)

제57조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하는 조합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토지 구획 정리법 제10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보유지 처분에 의해 얻은 금액을 그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시행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 하고, 다음에 열거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 1) 은행, 기타 주무대신이 지정하는 금융 기관에 대한 예금
- 2) 국채, 지방채, 기타 주무대신이 지정하는 유가 증권의 취득

(재무 기준)

제58조

전 네 조에서 규정된 것 외에 조합이 그 조합원 간의 재무 관계를 분명히 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 할 수 있도록 그 재정을 적정하게 처리하기위한 기준으로 따라야 할 사항은 정령으로 지정한다.

(조합의 지분 취득 금지)

제59조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이것을 받을 수 없다.



## 제5장 설립

(조합의 지역)

### 제60조

조합을 설립하려면 그 설립의 순간에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토지의 지역(해당 토지에 인접한 시가화 구역 내 농지 등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것(제68조제2항에서 "남는 농지"라고 한다)의 지역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역으로 해야한다.

- 1) 정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가화 구역 내 농지 등을 포함하는 것
- 2) 시가화 구역 내 농지 등의 면적의 합계가 그 토지의 지역 면적의 대략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것
- 3) 해당 토지의 지역에 있는 시가화 구역 내 농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토지의 지역, 대도시 지역의 주택과 주거 지역의 공급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쇼와 50년 법률 제67호)에 의한 주택 도시 구획 정비 사업이나 개발 행위(주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도시 계획법 제 4조제11항에서 규정하는 제 1종 특정한 공작물의 건설에 제공되는 토지의 구획 형질의 변화를 말한다)를 하는 토지 지역, 기타 정령으로 지정하는 지역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것

(발기인)

### 제61조

조합을 설립하려면 다음에 열거하는 토지의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 계획 지역(도시 계획법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시 계획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타 주택 수요 혹은 지역의 도시 계획 구역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것에 관한 시가화 구역 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 명 이상이 발기인으로 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

- 1) 수도권 정비법(쇼와 31년 법률 제83호)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성 시가지, 동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주변 정비 지역 또는 동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도시 개발 구역
- 2) 긴키 지역 정비법(쇼와 38년 법률 제129호)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건물 도시 지역, 동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주변 정비 구역 또는 동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도시 개발 구역
- 3) 중부권 개발 정비법(쇼와 41년 법률 제102호)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도시 정비 구역 또는 동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도시 개발 구역
- 4) 도시 지역 또는 도도부현의 소재 시 혹은 인구 25만 이상의 시 지역

(설립 준비위원회)

제62조

발기인은 미리 조합의 사업과 지역 및 조합원이 되는 자격에 관한 취지서를 작성하고, 이를 설립 준비 모임 날짜 및 장소와 함께 공고하고, 설립준비회를 열어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설립 준비위원회의 모임 일자 2주 전까지 해야 한다.

제63조

설립 준비위원회에서는 참석한 조합원(준 조합원을 제외한다)과 조합원이 되려고 하는 자 중에서 정관 및 사업 정책 만들기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관 등의 작성 위원회"라고 한다)를 선임 하며, 지역 조합원이 되는 자격, 기타 정관 작성의 기본 이 되어야 할 사항 및 사업 기본 방침을 수립해야한다.

2. 정관 등의 작성 위원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3. 설립 준비위원회의 의사는 출석한 조합원(준 조합원을 제외한다)과 조합원이 되려고 하는 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가지고 결정한다.

(사업 기본 방침)

제64조

사업 기본 방침에 대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 1) 조합 지구 내에서 조합원 영농의 계속됨을 도모하면서 시가화 구역 내 농지를 주택지 등에 전환하기 위하여 조합이 실시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그 실시 방침
- 2) 기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사업 기본 방침에 결정되는 사업의 종류, 기타 사항은 조합의 지역 내 토지에 정해져있는 도시 계획에 적합하도록 결정해야한다.

(농업 법인 등에 대한 사업 기본 방침 송부 등)

제65조

정관 등의 작성위원회가 기업 정책을 만든 경우, 발기인은 다음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전에 주무성령으로 지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 기본 방침을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농업 단체에 송부 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발기인에서 사업 기본 방침 송부 받은 농업 단체는 발기인에 대해 해당 사업 기본 방침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 단체가 의견을 말했다 때 발기인은 그 개요를 창립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창립총회)

제66조

정관 등의 작성 위원이 정관 및 사업 기본 방침을 작성하는 경우는 발기인이 이를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와 함께 공고하고, 창립총회를 열어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창립총회 일자 2주 전에 해야 한다.
3. 정관 등의 작성위원회가 작성한 정관 및 사업 정책의 승인 및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창립총회의 의결에 의해야 한다.
4. 창립총회에서는 전항의 정관 및 사업 기본 방침을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구 및 조합원이 되는 자격에 관한 규정은 이에 한하지 않는다.
5. 창립총회의 의사는 조합원(준 조합원을 제외한다)이 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그 창립총회일까지 발기인에게 설립의 동의를 한 자의 절반 이상이 참석하고, 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이것을 결정한다.
6.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는 서면 및 대리인으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창립총회에서 그 연기 또는 진행에 대한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8. 제 18조(제2항을 제외한다), 제49조제2항 및 제3항 및 제50조3의 규정은 창립총회에 대해 회사법 제 830조, 제 831조, 제 834조(제16호 및 제17호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 835조 제1항, 제 836조 제1항 및 제3항, 제 837조, 제 838조 및 제 846조의 규정(이 규정 중 감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은 창립총회 결의의 부재 혹은 무효 확인 또는 취소 소송에 대해 각각 준용한다.

(설립인가의 신청)

제67조

발기인은 창립총회의 종료 후 지체없이 관할 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및 사업 정책 및 사업 계획을 도도부현 지사에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2. 발기인은 도도부현 지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의 설립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신청이 가능 한 것은 평성 23년 5월 19일까지로 한다.

(설립 허가)

제68조

도도부현 지사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라도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하지 않아야 한다.

- 1) 설립 절차 또는 정관이나 사업 정책의 내용이 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하는 행정청의 처분을 위반한 때.

- 2) 조합이 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제적 기초를 기부 등 사업 기본 방침을 설명하는 사항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3) 조합의 사업 실시에 의해 조합 지역의 시가화 구역 내 농지 등의 상당 부분이 주거 지역 등으로 전환되는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을 때.
  - 4) 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조합의 지역과 중복되는 경우.
2. 도도부현 지사는 조합 지역에 남는 농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가 아니면, 전조 제1항의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 1) 해당 남고 농지를 주택지 등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확실하고, 남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 권한을 가진 자로 설립 동의를 표한 것이 조합의 지역 내에 있는 시가화 구역 내 농지(남는 농지인 것을 제외한다)에서 영농을 계속할 가능성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
  - 2) 해당 남는 농지를 농지 등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확실하며, 정령으로 지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남는 농지를 농지 등으로 사용할 수 조합의 지역에 있는 시가화 구역 내 농지 등(남는 농지인 것을 제외한다)의 주거 지역 등으로의 원활한 전환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때.
3. 도도부현 지사는 조합의 지역에 시가화 구역 밖의 토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 농지 등으로 있고, 정령으로 지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농지 등으로 이용하는 것이 조합의 지구 내의 시가화 구역 내 농지 등의 주택지 등으로의 원활한 전환에 기여된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전 조 제1항의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4. 도도부현 지사는 전조 제1항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시정촌(특별구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사 업무의 이양)

#### 제69조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그 사무를 이사회에 전달해야 한다.

2. 이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를 받은 때에는 지체하지 않고, 출자 제 1회의 지분을 시켜야 한다.
3. 현물 출자자는, 제 1회 지불금의 기일에 출자의 목적이 되는 재산의 전부를 합부해야 한다. 단,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에 대해 제삼자에게 대항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은 조합 설립 후에 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성립시기)

#### 제70조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하는 것에 의해 성립한다.

## 제6장 해산 및 청산

(해산 사유)

### 제71조

조합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 1) 총회의 결의
  - 2) 조합의 합병
  - 3) 조합에 대한 파산 절차 개시 결정
  - 4) 정관에서 정한 존립시기 만료
  - 5) 제 84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 명령
2. 해산 결의는 도도부현 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제2호에서 제4호까지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전항의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4. 조합은 제1항에서 규정된 사유 이외에 조합원(준 조합원을 제외한다)이 3명 미만인 경우에 해산한다.
5. 조합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것을 도도부현 지사에 신고해야한다.

(합병 절차)

### 제72조

조합이 합병하고자하는 경우 각 조합의 총회에서 합병을 의결해야한다.

2. 합병을 하려면 정관 및 사업 기본 방침을 도도부현 지사에 제출하여 합병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3. 제87조제2항 및 제 88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4. 제52조및 제 53조의 규정은 조합의 합병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73조

합병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려면 각 조합의 총회의 조합원(준 조합원을 제외한다) 중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협력하여, 정관 및 사업 기본 방침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고 기타 설립에 필요한 활동을 해야 한다.

2. 제53조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 위원 선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3. 31조 제9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 중 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합병의시기)

제74조

조합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성립된 조합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는 것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합병에 따른 권리 의무 승계)

제75조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성립된 조합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조합의 권리 의무(그 단체가 행하는 사업에 관해, 행정청의 허가, 인가, 기타 처분에 따라있는 권리 및 의무를 포함)를 승계한다.

(청산 중인 조합)

제75조2

해산된 조합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그 청산 종료에 이르기까지는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청산인)

제76조

조합이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 절차 개시 결정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원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정)

제76조2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 또는 청산인의 결여 때문에 손해가 발생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찰의 요청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청산인의 해임)

제62조3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찰의 요청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 할 수 있다.

(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

제76조4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현재 임무의 보충
  - 2)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변제
  - 3) 잔여 재산 인도
2. 청산인은 전항 각 호의에 규정된 직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위 행위를 할 수 있다.

(정산 사무)

제77조

청산인은 취직 후 지체하지 않고, 조합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산 목록 및 대차 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 방법을 결정하고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채권 신청의 최고 등)

제77조2

청산인은 해당 취직 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적어도 3회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의 신청을 해야 하는 취지의 최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개월을 넘을 수 없다.

2.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단, 청산인은 알려져 있는 채권자를 제외시킬 수 없다.
3. 청산인은 알려져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기 별도로 그 제기의 최고를 해야 한다.
4. 제1항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한다.

(기간 경과 후 채권의 제기)

제77조3

전조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를 한 채권자는 조합의 채무를 갚은 후 아직 권리가 귀속되어 있는 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만 신청을 할 수 있다.

(청산 중인 조합에 대한 파산 절차 개시)

제77조4

청산 중 조합의 재산이 그 채무를 갚는데 부족한 것으로 밝혀지게 되면, 청산인은 즉시 파산 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청산인은 청산중인 조합이 파산 절차 시작의 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수할 때에는 그 임무를 완료한 것으로 한다.
3. 전항에 규정하는 경우에도 청산중인 조합이 이미 채권자에게 지불 또는 권리가

귀속된 소유자에게 전달 것이 있으면, 파산관계인은 이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에 게재한다.

(잔여 재산의 분배 제한)

제78조

청산인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 후 앓는 경우, 조합의 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

(법원의 감독)

제78조2

조합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의 감독에 속한다.

2. 법원은 직권으로 언제든지 전항의 통제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3. 조합의 해산 및 청산을 감독하는 법원은 도도부현 지사에 대해 의견을 요구 또는 조사를 촉탁 수 있다.

4.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에 규정하는 법원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결산보고)

제79조

청산 업무가 끝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청해야한다.

(청산종료 신고)

제79조2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청산인은 그것을 도도부현 지사에 신고해야한다.

(해산 및 청산 감독 등에 관한 사건의 관할)

제79조3

조합의 해산 및 청산 감독 및 청산인에 관한 사건은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이의 신청의 제한)

제79조4

청산인 선임 재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법원의 선임하는 청산인의 보수)

제79조5



법원은 제 7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조합이 그 청산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보상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그 청산인 및 감사보고를 들어야 한다.

(즉시 항고)

제79조6

청산인 해임에 대한 재판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소를 할 수 있다.

(검사역의 선정)

제80조

법원은 조합의 해산 및 청산의 감독에 필요한 조사를 하기 위해 검사역을 선임할 수 있다.

2. 전 세 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검사역을 선임한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 79조의 5 중 "청산인과 감사"인 것은 "조합 및 검사역"으로 바꾼다.

## 제7장 감독

(업무 또는 재산 상황보고의 징수)

제81조

도도부현 지사는 조합에서 그 조합이 법령 등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또는 조합에 대해 그 조합원, 임원, 하인, 사업의 분량, 기타 조합의 일반 상황에 대한 문서에 조합에 관한 행정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한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업무 또는 회계 상황의 검사)

제82조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등에 위반 혐의가 있음을 이유로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는 도도부현 지사는 해당 조합 업무 또는 회계 상황을 검사해야한다.

2. 도도부현 지사는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등에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되어 다른 감독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당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조치)

제83조

도도부현 지사는 제 8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하는 경우에, 그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등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조합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2. 도도부현 지사는 조합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또는 임원의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해산 명령)

제84조

도도부현 지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 1) 조합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할 수 있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했을 때.
- 2) 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성립일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도 제7조제1항 제 1호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모든 사업을 중지했을 때.
- 3) 조합이 법령에 위반해서 도도부현 지사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때.

(의결, 선거와 당선 취소)

제85조

조합원(준 조합원 제외한다)이 총 조합원(준 조합원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의 소집 절차, 의결 방법이나 선거가 법령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이유로 그 의결 또는 선거 혹은 당선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결 또는 선거 혹은 당선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도도부현 지사는 그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그 의결 또는 선거 혹은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은 창립총회의 경우에 준용한다.

3. 전 두 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내용은 행정 절차법(평성 5년 법률 제88호) 제3장(제12조 및 제 14조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제8장 기타 조항

(토지 구획 정리 사업에 관한 조합원의 탈퇴 등에 대한 특례)

제86조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시행의 인가를 받은 조합의 조합원(준 조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서 같다)은 그 허용일부터 해당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 허용 날까지는 제2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2. 전항의 기간 내에 조합의 지역 내 토지에 대한 조합원의 소유권 또는 차지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승계한 경우에는, 그 사람은 조합원이 된다.
3. 제1항의 기간 내에 조합원이 조합의 지역 내 토지에 있는 차지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는 경우 그 차지권의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임대인이 조합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소멸한 차지권이 지상권이면 토지 소유자가, 그 소멸한 차지권이 임차권이면 토지 임대인이 각각 조합원이 된다.
4. 제1항의 기간 내에 조합의 지역 내 토지에 대한 조합원의 소유권 또는 차지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유권 또는 차지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토지 구획 정리 사업에 관해서의 권리 의무는 그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
5. 제1항의 기간 내에 조합의 지역 내 토지에 대한 조합원의 차지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는 경우에 그 조합원이 그 차지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토지 구획 정리 사업 관해서의 권리 의무는 그 소멸한 차지권이 지상권이면 그 차지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소멸된 임대 권한이 임차권이면 토지의 임대인에게 각각 이전된다.

(조합원의 의무)

#### 제87조

조합 지역의 토지로 주택지 등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 소유권 또는 차지권이 있는 조합원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합 사업을 이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등에 의해 그 토지의 유효하고 적절한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생산 녹지 지역에 대한 도시 계획에 대한 요청)

#### 제88조

다음에 열거하는 농지 등의 소유자는 조합에 대해 조합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농지 등에 관하여 대항 요건을 갖춘 지상 권한이나 임차권 또는 등록하는 영소작권, 선취특권, 질권이나 저당권이 있는 자 및 이들의 권리에 관한 임시 등록, 이 권리에 관한 차압의 등기 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구속 특약의 등기의 등기 명의인의 동의를 얻은 후, 국토교통성령으로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농지 등의 지역에 대한 도시 계획생산 녹지법(쇼와 49년 법률 제68호)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생산 녹지 지역을 결정하는 것을 그 도시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자에게 요청 신청을 할 수 있다.

- 1) 조합이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하는 경우에 토지 구획 정리법 제86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그 환지 또는 동법 9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반환지가동법 제4조제1항의 승인을 얻은 사업 계획에서 정한 영농지 등의 지역에 속하는 경작지 등
  - 2) 조합이 토지에 관한 권리의 교환분합을 하는 경우에도 제9조제1항의 승인을 받은 교환분합 계획에서 정한 영농지 등의 지역에 속하는 경작지 등
2. 조합은 전항 각호에 규정하는 영농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역에서, 생산녹지법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생산 녹지 지역에 대해서 도시 계획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고, 전 호 제1호에서 규정하는 영농지 등에 그 환지 또는 반환지가 해당 지역에 속하는 농지 등, 동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영농지 등에 해당 지역에 속하는 농지 등의 소유자 모두로부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제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지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 계획 동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생산 녹지 지역의 결정을 그 도시 계획을 결정하는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한다.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용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의 특례)

#### 제89조

조합(정령으로 지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원(준 조합원을 제외한다)이 과반을 차지하는 것에 한한다)이 시가화 구역 내 농지를 전용하여 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그 임대 주택의 규모, 구조 및 설비가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용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쇼와 46년 법률 제32호) 제2조제2항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며, 그 임대 주택이 동항 제1호에 기재된 바와 같은 지역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을 동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 임대 주택을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정 임대 주택으로 간주하고, 동법 규정을 적용한다.

2. 조합이 시가화 구역 내 농지(특정 시가화 구역 농지의 재산세 과세의 적정화에 따른 택지화 촉진 임시 조치법(쇼와 48년 법률 제102호) 제 2조에서 규정하는 특정 시가화 구역 농지에 해당하는 것들과 대도시 지역의 주택과 주거 지역의 공급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한 토지 구획 정리 촉진 지역 또는 동법 제2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주택 도시 구획 정비 촉진 지역 내의 것을 제외한다)를 이동하고 토지에 조합원의 위탁을 받아 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 주택이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용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정 임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도 그 규모, 구조 및 설비가 동항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며, 동항 제1호에 기재된 바와 같은 지역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동항에서 규정하는 특정 임대 주택으로 간주하고, 동법 규정을 적용한다.

(대도시 등의 특례)

제90조

이 법률 중 도도부현 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정령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쇼와 22년 법률 제67호) 제 252조 19 제1항의 지정 도시(이하 "지정 도시"라고 한다)와 동법 제 252조 22 제1항의 중심 핵심 도시(이하 "중핵시"라고 한다)에는 정령으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도시 또는 중핵시(이하 "지정 도시 등"이라고 한다)의 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이 법 중 도도부현 지사에 관한 규정은 지정 도시 등의 장에 관한 규정으로 지정 도시 등의 장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신청 및 신고)

제90조2

제48조제2항, 제67조제1항, 제71조제2항과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신청 및 제7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조합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정촌 장을 통해 실행해야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시정촌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2조 제9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제2호 법정 수탁 사무로 한다.

(지원 신청)

제91조

조합은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농업 단체 등에 대한 조합의 사업에 관해 필요한 조언 또는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합에 대한 조언과 지도)

제92조

국가 및 관계 지방 공공단체는 조합에 대하여 그 사업 시행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언과 지도를 할 수 있다.

(주무대신 등)

제93조

이 법률에서 주무대신은 농림수산대신과 국토교통대신으로 한다.

2. 이 법률에서 주무성령은 주무대신이 발하는 명령으로 한다.

제94조

삭제

## 제9장 벌칙

### 제95조

조합의 임원이 어떤 명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투기 거래를 위해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징역과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은 형법(메이지 40년 법률 제45호)에 정조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96조

제 8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 신고를 하거나 또는 제 8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절, 방해 혹은 기피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조합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고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조합에 대하여도 동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97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임원 또는 청산인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할 때.
-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령으로 지정하는 등기를 게을리 하거나 허위의 등기를 할 때.
- 3) 제 21조, 제23조제2항 후단, 제34조또는 제 3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4) 제37조제2항 또는 제 38조(이 약관 제4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
- 5) 제41조제1항 혹은 제2항 혹은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으며, 그 서류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혹은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41조제4항 혹은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을 거절했을 때.
- 6) 제43조제5항 또는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7) 제52조혹은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자 금액을 감소하거나 또는 제 72조제4항에서 준용한 제52조혹은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합의 합병을 했을 때.

- 8) 제 54조에서 제 5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9) 제 5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받을 때.
  - 10) 제7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11) 제77조또는 제79조서류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때.
  - 12) 제77조2 제1항 또는 제77조4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고를 게을리 하거나 또는 부정한 공고를 한 때.
  - 13) 제77조2 제1항의 기간 내에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경우.
  - 14) 제77조4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 절차 개시의 신청을 게을리 했을 때.
  - 15) 제 7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합의 재산을 분배할 때.
2. 제 47조의 규정에 위반한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8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시행 기일)

#####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명칭의 사용 금지에 관한 경과 조치)

##### 제2조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그 명칭 중 농주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은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은 적용하지 않는다.

(국토청설치법의 일부 개정)

##### 제3조

국토청 설치법(쇼와 49년 법률 제98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2호 중 “미”를 “시”로 하고, “메”를 “미”로 하고, “유”를 “메”로 하고, “키”를 “유”로 하고, “사”를 “키”로 하며 “아”를 “사”로 하고, “테”를 “아”로, “에”를 “테”로 하고, “코”를 “에”로 하고, “후”를 “코”로 하고, “케”를 “후”로 하고,

“마”를 “케”로 하고, “야”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마. 농주조합법률(쇼와 55년 법률 제86호)

제5조제2항 중 ““코”에서 “키”까지 및 “미””를 ““코”에서 “유” 및”으로 수정하고, 동조 제4항 중 “및 “야””를 “부터 “마”까지”로 수정하고, 동조 제5항 중 ““마”부터 “후””를 ““케”부터 “코”로 수정하고, 동조 제7항 중 ““유”와 “메””를 ““메” 및 “미””로 수정한다.

(농림수산성 설치법의 일부 개정)

제4조

농림수산성 설치법(쇼와 24년 법률 제 153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7호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7-2 농주조합법(쇼와 55년 법률 86호)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농림수산성의 소장에 속한 처리하는 것(구조개선국 소장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9조제1항 제13호의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13-2 농주조합법의 집행에 관한 사무에 농림수산성의 소장에 속하는 것들 중 농주조합이 수행하는 교환분합, 토지개량사업, 농지 이용 약관 설정 및 농지 이용 계약의 체결에 관한 것.

(건설부 설치법 일부 개정)

제5조

건설부 설치법(쇼와 23년 법률 제113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22호 7을 제22호 8로 하고, 제22호 6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22-7 농주조합법(쇼와 55년 법률 제 86호)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제4조제3항 중 “제22호 6까지 규정하는 사무” 아래에 “동조 제22호 7에서 규정하는 사무(도시 관리국 및 주택국 소장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추가하고, 동조 제4항 중 “및 동조 제6호”를 “동조 제6호”로 개정, “제7호 4까지 규정하는 사무” 아래에 “및 동조 제22호 7에서 규정하는 사무 중 농주조합이 실시하는 사업으로 토지 구획 정리 사업 및 교환분합에 관한 것에 대한 것”을 추가하고, 동조 제7항 중 “제22호 7”을 “에 규정하는 사무, 동조 제22호 7에서 규정하는 사무 중 농주조합이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택 건설, 임대, 기타 관리 또는 양도에 관한 것에 대한 것, 동조 제22호 8”로 수정한다.

부칙(쇼와 56년 6월 9일 법률 제75호) 발취

이 법률은 상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 일자(쇼와 5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63년 5월 24일 법률 제63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2년 6월 29일 법률 제62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3년 4월 2일 법률 제26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법률은 평성 3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2. 이 법률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3년 4월 26일 법률 제39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3년 10월 4일 법률 제90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일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5년 5월 6일 법률 제34호) 발췌

(시행 기일 등)

제1 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 도시 개발 자금 융통 특별 회계 법률(쇼와 41년 법률 제50호)의 규정은, 평성 5년 예산 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 1조(토지 구획 정리법 목차의 개정 규정 중 "제 121조 2" 를 "제 121조"로 수정한 부분, 동법 제 121조 2를 삭제한 개정 규정과 동법 제 136조의 2 개정 규정을 제외한다), 제2조중 도시 개발 자금 대출에 관한 법률 제1 조제1항을 추가하는 개정 규정 중 동조 제2항 제1호에 관련된 부분과 부칙 제 7 조에서 제 9조까지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5년 11월 12일 법률 제89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행정 절차법(평성 5년 법률 제88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자문 등이 되는 불이익 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제2조

이 법 시행 전 법령에 따라 위원회, 기타 합의제의 기관에 대하여 행정 절차법 제 13조에 규정된 청문이나 변명 기회 부여 절차, 기타 의견 진술을 위한 절차에 해당하는 절차, 자문, 기타 불이익 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의한 개정 후 관련 법률의 규정에 관계없이,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제3조

이 법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청문에 관한 규정 강화에 따른 경과 조치)

제4조

이 법 시행 전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열린 청문, 청문회(불이익 처분에 관한 것 을 제외한다) 또는 이들을 위한 절차는 이 법에 의한 개정 후 관련 법률의 해당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정령에의 위임)

제5조

부칙 제 2조에서 전조까지 결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평성 6년 6월 29일 법률 제49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법률 중 제1장의 규정 및 다음 각 규정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평성 6년 법률 제48호) 중 지방자치법(쇼와 22년 법률 제67호) 제 2편 제12장의 개정 규정의 시행일에서부터, 제2장의 규정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 중 지방자치법 제 3편 제3장 개정 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6년 6월 29일 법률 제61호)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9년 6월 6일 법률 제72호)

(시행 기일)

1. 이 법률은 상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9년 법률 71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합병 계약에 관한 합병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에도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

3. 이 법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전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예에 의하는 경우의 이 법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11년 3월 31일 법률 제25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1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호에 규정된 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 250조의 다음 제 5조, 절명 및 두관과 관명을 추가하는 개정 규정(동법 제 250조의 9 제1항에 관한 부분(두 의원의 동의를 얻기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한한다), 제40조중 자연 공원법 부칙 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 규정(동법 부칙 제10항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 244조의 규정(농업 개혁 조장법 제14조3 개정 규정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및 제 472조의 규정(시정촌 합병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8조 및 제 17조의 개정 규정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 7조, 제 10조, 제 12 조, 제59조단, 제60 조제4항 및 제5항, 제 73조, 제 77조, 제 157조 제4항에서 제6항까지, 제 160 조, 제 163조, 제 164조 및 제 202조의 규정 공포한 날

(국가 등의 업무)

제 159조

이 법에 의한 개정 전 각각의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 이 법 시행 전에 지방 공공 단체의 기관이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정령에 의해 관리되거나 집행하는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사무(부칙 제 161조에 "국가 등의 사무"라고 한다)는 법 시행 후, 지방 공공단체가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정령에 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취급하는 것으로 한다.

(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제 160조

이 법률(부칙 제1조각호에 규정된 조항은 해당 각 조항. 이하 이 조 및 부칙 제 163조에서 같다)의 시행 전에 개정 전 각각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한 허가 등의 처분, 기타 행위 (이하 이 조에서 "처분 등의 행위"라고 한다) 또는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개정 전 각각의 법률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허가 등의 신청, 기타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신청 등의 행위"라고 한다)에서 이 법률의 시행일에서 이 활동에 관한 행정 사무를 해야 할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되는 것은, 부칙 제 2조에서 전조까지의 규정 또는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이것에 근거한 명령을 포함한다)의 경과 조치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률의 시행 일 이후에 개정 후 각각의 법률 적용에 대해서는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의 해당 규정에 의한 처분 등의 행위 또는 신청 등의 행위로 본다.

2. 이 법 시행 전에 개정 전 각각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기관에 신고, 신청, 제출, 기타 수속을 해야 하는 사항이 법률의 시행 일전에 그 절차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률 및 이에 근거한 정령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것 외에, 이것을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해당 기관에 보고, 신고 제출, 기타 수속을 해야 하는 사항이 절차가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법에 의한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의 신청에 관한 경과 조치)

제 161조

시행일 전에 한 국가 등의 사무에 관한 처분에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이하 이 조에서 "처분 청"이라고 한다)에 시행 일전에 행정 불복 심사 법에 규정하는 상급 행정청(이하 이 조에서 "상급 행정청"이라고 한다)이 있던 것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이의 신청은 시행일 이후에도 그 처분청에 이어 상급 행정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 불복 심사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처분청의 상급 행정청으로 간주된 행정청은 시행일 이전에 그 처분 청의 상급 행정청이었던 행정청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에도 상급 행정청으로 간주된 행정청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이 행정 불복 심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업무는 새로운 지방자치법 제2조제9항 제1호로 규정하는 제1호 법정 수탁 사무로 한다.

(수수료에 관한 경과 조치)

제 162조

시행일 이전에 이 법에 의한 개정 전 각각의 법률(이것에 근거한 명령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 법률 및 이에 근거한 정령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것 외에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제 163조

이 법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기타 경과 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제 164조

이 부칙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 조치(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를 포함한다)는 정령으로 정한다.

2. 부칙 제 18조, 제51조 및 제 184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지정한다.

(검토)

제 250조

신 지방자치법 제2조제9항 제1호로 규정하는 제1호 법정 수탁 사무는 가능한 한 새로 마련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신 지방자치법 별표 제 1에 내거는 것과 신 지역자치법에 근거한 정령에 표시된 것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검토를 추가하고, 적절한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제 251조

정부는 지방 공공단체가 사무와 사업을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에 따라 지방세 재원의 충실 확보의 방도에 대해 경제 상황의 추이 등을 감안하면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 252조

정부는 의료 보험 제도, 연금 제도 등 개혁에 따라 사회 보험 업무 처리 체제, 이것에 종사하는 직원의 본연의 자세 등에 대해서 피보험자 등의 편의를 확보, 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부칙(평성 11년 12월 22일 법률 제 160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제2조 및 제 3조를 제외한다)은 평성 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3년 5월 18일 법률 제36호)

이 법률은 평성 13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3년 11월 28일 법률 제129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법률은 평성 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

2 이 법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예에 의한 경우에 이 법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14년 3월 31일 법률 제11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5년 6월 20일 법률 제100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6년 6월 2일 법률 제76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파산법(평성 16년 법률 75호 다음 조 제8항 및 부칙 제3조제8항, 제5조 제8항, 제16항 및 제 21항, 제8조제3항 및 제 13조에서 "신 파산법"이라고 한다)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정령에의 위임)

제14조

부칙 제 2조에서 전조까지 규정한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평성 16년 12월 1일 법률 제147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6년 12월 1일 법률 제 150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제4조

이 법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16년 12월 3일 법률 제 154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한 일 (이하 "시행일"이라고 한다)부터 시행한다.

(처분 등의 효력)

제 121조

이 법 시행 전 각각의 법률(이것에 근거한 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한 처분 절차, 기타 행위로,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의 규정에 해당 규정이 있는 것은 부칙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제 122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이 부칙 규정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 것으로 되는 경우 및 이 부칙 규정에 의해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되는 경우의 이 법 시행 후 활동에 대한 처벌 신청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기타 경과 조치 정령에의 위임)

제 123조

이 부칙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지정한다.

(검토)

제 124조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3년 이내에 이 법의 시행 상황에 대해 검토를 추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부칙(평성 17년 7월 26일 법률 제87호) 발췌

이 법률은 회사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8년 6월 2일 법률 제50호) 발췌

(시행 기일)

1. 이 법률은 일반사단재단법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조정 정책)

2. 범죄의 국제화와 조직 및 정보 처리의 고도화에 대처하기위한 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18년 법률 제 호)을 시행하는 날이 시행일 이후가 되는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이 법의 집행 전날 사이의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및 범죄 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평성 11년 법률 제136호. 다음 항에서 "조직범죄 처벌법"이라고 한다) 별표 제62호 규정의 적용은 동호 중 "중간법인법(평성 13년 법률 제49호) 제 157조(이사 등의 특별 배임)의 죄를"인 것은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평성 18년 법률 제48호) 제 334조(이사 등의 특별 배임)의 범죄"로 한다.

3. 전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동항 경우에도 범죄의 국제화와 조직 및 정보 처리의 고도화에 대처하기위한 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실행 전날 사이의 조직범죄 처벌법의 규정의 적용은 제 457조의 규정에 의해 또한 중전의 예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구 중간법인법 제 157조(이사 등의 특별 배임)의 범죄는 조직범죄처벌법 별표 제62호에 규정된 범죄로 간주한다.

부칙(평성 21년 6월 24일 법률 제57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호에서 규정된 규정은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부칙 제 43조의 규정 공포한 날

(정령에의 위임)

제43조가 부칙에서 명시된 것 이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지정한다.

## 농주조합법 시행령

(쇼와 56년 5월 19일 정령 제 170호)

최종개정 : 평성 16년 12월 28일 정령 제 429호

내각은 농주조합법(쇼와 55년 법률 제86호) 및 동법 제 11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쇼와 24년 법률 제 195호) 제 1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해 농주조합법을 실시하기 위해 이 정령을 제정한다.

(토지 임대 등의 상대방)

### 제1조

농주조합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조제2항 제2호 정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자로 한다.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2) 독립 행정 법인 도시 재생기구, 지방 주택 공급 공사와 일본 근로자 주택 협회
- 3) 전 두 호에 규정된 자 이외에 자금, 신용 또는 과거의 사업 실적으로 보아 그 토지에 주택이나 점포, 사무실, 기타 편의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농지의 이용 또는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2조

법 제7조제2항 제5호 정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배수, 농업용 배수 시설의 보수 및 급수 시설 설치 등으로 한다.

(토지 구획 정리법의 규정 적용에 대한 규정)

### 제3조

법 제8조제1항 규정의 토지 구획 정리법(쇼와 29년 법률 제119호) 규정의 적용은 동법 제8조제1항(동법 제10조제3항, 제88조제1항 및 제9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저 사람"인 것은 "농주조합법의 조합원(농주조합법 제15조제2호 규정에 의한 조합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에게"인 것은 "농주조합법의 조합원에"로, 동법 제98조제3항 중 "시행자에"인 것은 "농주조합법의 조합원에"로 바꾼다.

(토지 구획 정리 시행령의 적용)

제4조

농주조합법(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이 법 제7조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업을 토지 구획 정리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토지 구획 정리법(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 구획 정리법"이라고 한다)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몇몇 사람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자로 간주하고, 토지 구획 정리 시행령(쇼와 30년 정령 제47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시행령 제73조제4호 중 "시행자에 대항하기"라는 것은 "농주조합법의 조합원(농주조합법 제15조제2호 규정에 의한 조합원을 제외한다)에 대항하는"으로 바꾼다.

(토지 개량법 규정의 준용에 대한서의 규정)

제5조

법 제11조규정에 의하여 토지 개량법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표 상란에 규정된 동법 규정을 통하여 동법 동표의 중란에 규정된 것은 각각 이 표 하란과 바꾸는 것으로 한다.

제99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 및 제11항에서 제13항까지 제1항 농주조합법 제9조제1항 제99조제3항의 동의서 의견서

동의 의견

30일 이내 60일 이내

제99조제4항 구할 수 있다.

제99조제6항, 제101조제2항, 제 102조, 제103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제104조제1항, 제 107조, 제109조및 제110조제1항 농업용 토지

제99조제10항 도도부현 지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제기가 농지 또는 채초방목지(농지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된 농지 또는 채초방목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것이며, 또한, 해당 신청을 행한 자가 해당 신청에 관한 교환 분합 계획에 의해 교환 분합해야 되는 농지 또는 채초방목지에 대해서 제 항의 권리를 가진자인 경우에는 도도부현지사

제101조제2항, 제102조제2항 및 제4항 및 제 118조 제3항 성령 농림수산성령 국토교통성령

제105조제102조제1항 제102조제1항 또는 농주조합법 제10조제1항 전단

제106조제2항 소멸한다. 소멸, 농주조합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를 정하지 않고 그 소유자가 잃은 토지를 정한 경우에 그 잃은 토지에 대해서 가진 동항 또는 동조 제3항에서 결정하는 권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그 잃은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한 때에 소멸한다.

포함한다) 포함한다) 또는 농주조합법 제10조제3항

제108조제1항 농업위원회, 토지 개량구, 농업 협동조합, 농지 보유 합리화 법인 또는 시정촌 농주조합법

제 113조 또는 이 법에 기반한 명령 혹은 이 법률에 근거한 명령 또는 농주조합법 제9조제1항 혹은 제10조제1항

제113조, 제114조 제1항, 제115조, 제118조 제1항, 제122조 제1항, 제123조 제1항 및 제139조 토지 개량 사업 농주조합법에 의한 교환

(수용위원회에 대한 재결의 신청 절차)

제6조

법 제11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12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 수용권법 (쇼와 26년 법률 제219호) 제9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토지 개량 시행령(쇼와 24년 정령 제 295호) 제74조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중 "농림수산성령"인 것은 "농림수산성령 국토교통성령"으로 바꾼다.

(토지 개량법 시행령의 적용)

제7조

조합이 법 제7조제2항 제5호에 규정된 사업을 토지 개량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토지 개량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동법 제9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 개량 사업을 실시하는 농업 협동조합으로 간주하고, 토지 개량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농지 이용 약관)

제8조

조합은 법 제7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사업을 시작하며, 영농 지역 등의 구역이 분명히 된 후가 아니면 법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지 이용 약관 (이하 이 조에서 "계약"이라고 한다)을 결정할 수 없다.

2. 조합은 규약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 지역에 속하는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법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용 수익 권리(이하 "사용 수익 권한"이라고 한다)이 되는 농지의 소유권을 제외한다) 또는 사용 수익 권한을 가지는 사람의 해당 약관이 정하는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 제기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한다.

3. 조합은 법 제13조제3항(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증 (이하 이 조에서 "인증"이라고 한다)을 받은 약관의 변경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에 관한 약관에 인증 신청을 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정촌 장(특별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고해야한다.

4. 조합은 인정을 받은 정책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취지를 시정촌 장에게 신고해야한다.

5. 시정촌 장은 앞의 두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 지체없이 그 신고에 관한 이전의 약관 또는 폐지하고자하는 정책의 인정을 취소해야한다.

6. 법 제13조제1항에서 제5항까지, 제7항 및 법 제14조제1항 규정은 변경하려고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 법 제13조제5항 규정은 인증을 취소할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조합의 납입 출자 금액에 따른 잉여금 배당의 한도)

제9조

법 제55조제2항 정령으로 지정하는 비율은 매년 7퍼센트로 한다.

(자기 자본의 기준)

제10조

조합의 자기 자본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금액의 합계 금액 이상으로 하고, 제1호에 규정된 금액의 100분의 14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해당 조합이 가진 유형 자산 및 무형 고정 자산 가액의 합계액

2) 해당 조합이 가진 다른 단체에 납입 출자의 총액

2 전항의 자기 자본은 납입 출자금과 준비금(준비금, 적립금,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잉여금 중에서 적립되는 것으로 자본금 계정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의 금액의 합계액(이월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3. 제1항의 유형 자산 및 무형 고정 자산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의 취득 또는 확충을 위해 한 차입금(차입 기간이 1년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계약의 것에 한한다)의 잔액에 반제 기한의 도래하지 않는 것을 공제해야한다.

(여유 자금 운용의 기준)

제11조

조합은 다음의 방법으로 다른 업무상의 여유 자금을 운용해서는 안 된다.

1) 은행, 기타 주무대신이 지정하는 금융 기관에 대한 예금

2) 국채, 지방채, 기타 주무대신이 지정하는 유가 증권의 취득

3) 신탁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 기관(금융 기관의 신탁 업무 경영 등에 관한 법률(쇼와 18년 법률 제43호) 제1조제1항의 인가를 받은 금융 기관을 말한다)에의 금전의 신탁

(휴먼 농지의 요건)

제12조

법 제 60조(법 제4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령이 정하는 시가화 구역 내 농지 등은 그 면적이 법 제60조제1호의 정령으로 지정하는 규모 미만인 시가화 구역 내 농지 등으로 한다.

(법 제60조제1호 정령으로 정하는 규모)

제13조

법 제60조제1호(법 제4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령으로 정하는 규모는 대략 0.5헥타르로 한다.

(조합의 구역에 포함할 수 없는 지역)

제14조

법 제60조제3호(법 제4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령으로 지정하는 지역은 도시 계획법(쇼와 43년 법률 제100호)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규정된 사업에 대해 도시 계획에서 정한 시행 지역 및 동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 계획이 결정된 동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예정 지역으로 한다.

(법 제61조정령으로 정하는 도시 계획 구역)

제15조

법 61조 정령으로 정하는 도시 계획 구역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1) 지역 거점 도시의 정비 및 산업 업무 시설의 재배치 촉진에 관한 법률(평성 4년 법률 제76호)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거점 도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 계획 구역
- 2) 법 제61조각호에 규정된 토지의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 계획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 계획 지역에서 주무대신이 지정하는 것
- 3) 제1호에 규정된 도시 계획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 계획 지역에서 주무대신이 지정하는 것

(휴먼 농지를 조합의 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경우)

제15조2

법 제68조제2항 제2호(법 제4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의한 조합의 지역에 있는 휴먼 농지를 농지 등으로 이용하는 것이 해당 지역에 있는 시가화 구역 내 농지 등(휴먼 농지인 것을 제외한다)의 주거 지역 등에 원활한

전환에 이바지하게 되는지 아닌지의 인정에 대해서는 그 휴면 농지가 법 제7조제2항 제3호 무역(이하 단순히 "교환"이라고 한다)에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의 대상이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한다.

- 1) 해당 교환에 의해 휴면 농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 권리(이하 "소유권 등"이라고 한다)에 교체해서 조합의 지역 내의 토지(휴면 농지인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권 등을 취득한 자가 그 토지를 주거 지역 등으로 이용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
- 2) 해당 교환으로 휴면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 등이 있는 자가 휴면 농촌 지역의 다른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하지 않는 것

(시가화 구역 밖의 토지를 조합의 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경우)

#### 제16조

조합의 지역에 시가화 구역 밖의 토지가 있는 경우의 법 제6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승인(변경 후의 정관에 조합의 지역에 해당 토지가 있는 경우의 법 제48조제2항 규정에 의한 허가를 포함한다)함에 있어서는 그 토지(농지 이외의 토지를 제외한다)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교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법 제6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합 지역의 시가화 구역 내 농지 등이 주거 지역 등으로의 원활한 전환에 이바지하는 것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 1) 해당 교환으로 시가화 구역 밖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이 있는 자가 그 토지를 농지 등으로 이용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
- 2) 해당 교환으로 시가화 구역 밖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에 교체 시가화 구역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이 있는 자가 그 토지를 주거 지역 등으로 이용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
- 3) 해당 교환으로 시가화 구역 밖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이 있는 자가 교체 시가화 구역 밖의 다른 지역에 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하지 않은 것

(법 제89조제1항 정령으로 정하는 요건)

#### 제17조

법 제89조제1항 정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해당 조합원이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용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쇼와 46년 법률 제32호)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대도시 등의 특례)

#### 제18조

지방자치법(쇼와 22년 법률 제67호) 제 252조 19 제1항의 지정 도시(이하 "지정



도시"라고 한다)와 동법 제 252조 22 제1항의 중심 도시(이하 "중핵시"라고 한다)에서 법 제90조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 또는 중핵시의 장이 행하는 업무는 법 규정에 의해 도도부현 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무 중 법 제 12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토지 개량법 규정에 의해 도도부현 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이외의 사무로 한다.

(주무대신 등)

제19조

이 정령의 주무대신은 농림수산대신과 국토교통대신으로 한다.

2. 이 정령에서 주무성령은 주무대신이 발하는 명령으로 한다.

부칙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법의 시행일(쇼와 56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법 제61조정령으로 지정하는 도시 계획 구역의 특례)

제2조

다음 표의 상란에 규정된 기간에 제15조제1호 규정의 적용은 동호 중 "지방 거점 도시의 정비 및 산업 업무 시설의 재배치 촉진에 관한 법률"인 것은 각각 동표 하란에 규정된 것으로 바꾼다.

평성 17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의 신산업 도시 건설 촉진법 등을 폐지하는 법률(평성 13년 법률 제14호. 이하 "폐지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폐지 이전의 신산업 도시 건설 촉진법(쇼와 37년 법률 제117호)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산업 도시 지역, 폐지 법률의 폐지 전 공업 정비 특별 지역 정비 촉진법(쇼와 39년 법률 제1146호)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공업 정비 특별 지역, 신산업 창출 촉진법(평성 10년 법률 제 152호) 부칙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폐지 전의 고도 기술 공업 집적 지역 개발 촉진법(쇼와 58년 법률 제35호)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개발 계획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 거점 도시의 정비 및 산업 업무 시설의 재배치 촉진에 관한 법률

평성 17년 4월 1일부터 평성 18년 3월 31일의 사이 폐지법에 의한 폐지 이전 신산업 도시 건설 촉진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산업 도시 지역, 폐

지법의 폐지 전 공업 정비 특별 지역 정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공업 정비 특별 지역 또는 지방 거점 도시의 정비 및 산업 업무 시설의 재배치 촉진에 관한 법률

(농업 현대화 기금 조성 시행령의 일부 개정)

### 제3조

농업 현대화 기금 조성 시행령(쇼와 36년 정령 제 346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5호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6. 농주조합법(법 제2조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열거한 자가 그 조합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것에 한한다)

제2조중 "제5호"를 "제6호"로 "동조 제6호"를 "동조 제7호"로, "제1조제7호"를 "제1조제8호"로, "동조 제8호"를 "동조 제9호"로 수정한다.

(조합 등 등기령의 일부 개정)

### 제4조

조합 등의 등기령(쇼와 제 39 년 정령 제29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 1 중 "농업 신용 기금 협회, 농업 신용 보험 협회 농업 신용 보증 보험법(쇼와 36년 법률 제 204호) 지역(농업 신용 기금 협회에 한한다)"을 "농업 신용 기금 협회, 농업 신용 보험 협회 농주조합법 농업 신용 보증 보험법(쇼와 36년 법률 제 209호) 농주조합법(쇼와 55년 법률 66호) 구역(농업 신용 기금 협회에 한한다)의 지역, 출자 한 금액 및 그 지불금 방법, 출자 총액과 공고 방법"으로 수정한다. 별표 제 2 중 "해운조합, 해운조합 연합회 설립 혹은 합병을 무효로 하거나 또는 창립총회 및 총회 혹은 대표 회의의 결의를 취소, 변경, 혹은 무효화하는 판결"을 "해운조합, 해운조합 연합회 농주조합법의 설립 혹은 합병을 무효로 하거나 또는 창립총회 및 총회 혹은 대표 회의의 결의를 취소, 변경, 혹은 무효화하는 판결, 출자 한 금액의 감소를 무효 또는 창립총회 혹은 총회의 결의를 취소, 변경, 혹은 무효화하는 판결"로 수정한다.

(특정 시가화 구역 농지의 재산세 과세의 적정화에 따른 택지화 촉진 임시 조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 제5조

특정 시가화 구역 농지의 재산세 과세의 적정화에 따른 택지화 촉진 임시 조치법 시행령 (쇼와 48년 정령 제 281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호 중 "동항"을 "동호"로 수정하고 동항에 다음의 한호를 추가한다.

4. 특정 시가화 구역 농지 등에 대한 권한 등이 있는 농주조합으로 해당 특정 시가화 구역 농지 등에 관해 제1호에 규정된 자(전 두 호에 규정된 자가 가진 권한 등에 관한 특정 시가화 구역 농지 등을 소유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이전 두 호에 규정된 자(그 농주조합이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전 두 호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해당 농주조합의 조합(농주조합법(쇼와 55년 법률 제86호)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그 농주조합이 가진 권한 등에 관한 특정 시가화 구역 농지 등 중 제1호에 규정된 자의 소유에 관한 특정 시가화 구역 농지 등에 전 두 호에서 규정된 자가 가진 권한 등에 관한 특정 시가화 구역 농지 등이 그 농주조합이 가진 권한 등에 관한 특정 시가화 구역 농지 등의 총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제2조제2항 제3호 중 "이하 같다"를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수정하고 동항에 다음 한 호를 추가한다.

5. 일반 택지에 대해서 권한 등이 있는 농주조합이나 일반 택지에 대해서 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농주조합법의 계획에 그 권한 등에 대해서 주어진도록 정해진 시설, 주택 등에 관한 권리가 있는 해당 일반 택지에 관한 제1호에 규정된 자(전 두 호에 규정된 자가 보유하거나 또는 보유하는 권한 등에 관한 일반 택지를 소유하거나 또는 소유하고 있던 사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이전 두 호에 규정된 자(그 농주조합이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전 두 호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해당 농주조합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그 농주조합이 가지거나 또는 보유하고는 권한 등에 관한 일반 택지 중 제1호에 규정된 자가 소유하거나 또는 소유하고 있던 일반 택지와 이전 두 호에 규정된 자가 보유하거나 또는 보유하는 권한 등에 관한 일반 택지가 그 농업주조합이 가지거나 또는 보유하는 권한 등에 관한 일반 택지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국토청 조직령의 일부 개정)

제6조

국토청 조직령(쇼와 49년 정령 제 225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5호를 네 6호로 제4호의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6. 농주조합법(쇼와 55년 법률 제66호)의 시행에 관한 것.

(농림수산성 조직령의 일부 개정)

제7조

농림수산성 조직령(쇼와 27년 정령 제 389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제4호를 제5호로,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1호의 아래에 다음의 한 호를 추가한다.

2. 농주조합법(쇼와 55년 법률 제66호)의 시행에 관한 사무 중 농림수산성의 소장에 관한 것에 관한 것(구조 개선국 소장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30조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6호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7. 농주조합법의 집행에 관한 사무에 농림수산성의 소장에 관한 것들 중 농주조합이 하는 농지 이용 약관 설정 및 농지 이용 계약의 체결에 관한 것.

제 33조에 다음의 한 호를 추가한다.

4. 농주조합법의 집행에 관한 사무에 농림수산성의 소장에 관한 것들 중 농주조합이 수행하는 교환 및 토지 개량 사업에 관한 것.

(건설부 조직령의 일부 개정)

제8조

건설부 조직령(쇼와 27년 정령 제 394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2 중 제19호를 제20호로 하고 제18호를 제19호로 하고 제17호의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18. 농주조합법(쇼와 55년 법률 제86호)의 시행에 관한 것(제15조제3호 및 제33조2 제7호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15조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2호의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3. 농주조합법의 집행에 관한 사무 중 농주조합이 하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 및 교환에 관한 것.

제33조2 중 제11호를 제2호로 하고 제7호에서 제10호까지 한 호씩 차례로 내리고, 제6호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7. 농주조합법의 집행에 관한 사무 중 농주조합이 하는 주택 건설, 임대, 기타 관리 또는 양도에 관한 것.

부칙(쇼와 56년 8월 3일 정령 제 268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쇼와 5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3년 5월 2일 정령 제 157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평성 3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6년 6월 29일 정령 제 192호)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6년 12월 21일 정령 제 398호)

이 정령은 지방자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중 제 2편 제2장의 개정 규정 및 지방자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제1장 규정 및 부칙 제2항의 시행일(평성 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0년 12월 9일 정령 제 383호)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정령의 시행 시 현재 농주조합법 제9조제1항 또는 동법 제 11조에서 준용하는 토지 개량법(쇼와 24년 법률 제 195호) 제109조혹은 제 1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도부현 지사에 있는 승인 또는 허가 신청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는 이 정령의 개정 후의 제 18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11년 2월 15일 정령 제22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신 사업 창출 촉진법의 시행일(평성 1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1년 8월 18일 정령 제 256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도시 기반 정비 공단법(이하 "공단법"이라고 한다)의 일부 시행일(평성 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2년 6월 7일 정령 제 312호) 발췌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내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11년 법률 제88호)의 시행일(평성 1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3년 3월 30일 정령 제 149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평성 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3년 5월 18일 정령 제 187 호)

이 정령은 평성 13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5년 12월 17일 정령 제 523호)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밀집 시가지의 재해 방지 도시 구획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일(평성 15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제2조

이 정령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16년 4월 9일 정령 제 160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평성 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6년 12월 28일 정령 제 429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법의 시행일(평성 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농주조합법 시행 규칙

(쇼와 56년 6월 6일 총리부령, 농림수산성령, 건설부령 제1호)

최종개정 : 평성 18년 4월 28일 농림수산성령, 국토교통성령 제4호

농주조합법(쇼와 55년 법률 제86호), 동법 제 11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쇼와 24년 법률 제 195호), 농주조합법 시행령(쇼와 56년 정령 제 170호) 및 동령 제 6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시행령(쇼와 24년 정령 제 295호)의 규정에 따라 농주조합법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주조합법 시행 규칙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교환 계획의 결정 절차)

### 제1조

농주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은 농주조합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한 교환 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법 제 11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99조제3항에 규정된 서면 외에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1) 법 제9조제1항의 동의를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법 제 11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102조제2항 단, (법 제 11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104조제2항과 제 10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법 제 11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 120조 제3항 단, (법 제 11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104조제2항과 제 10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법 제10조제1항 전단의 제기 또는 동의를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과 동항 후단의 동의를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 2) 조합의 지역과 그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을 표시하는 도면
- 3) 교환 계획에 권리를 설정 또는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농지(주거 지역 등에 전환하기 위하여 권리를 설정 또는 이전하는 것으로 된 시가화 구역 내 농지를 제외한다) 에 관해 다음에 열거한 사항(민법(메이지 29년 법률 제89호) 제 269조 2 제1항 권한 또는 이와 내용을 같이하는 다른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④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
  - ①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구성원(농지법(쇼와 27년 법률 제 229호) 제2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현

재 소유하거나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용 수익 권리(이하 "사용 수익 권한"이라고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과 소유권을 바탕으로 현재 그 경작 또는 도축 사업에 제공되는 농지의 면적

- ② 권리를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구성원이 그 경작 또는 가축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 및 그 사업에 대해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이 농업 또는 가축의 사업에 관한 노동 인구의 현황
  - ③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구성원이 그 경작 또는 도축 사업에 제공하고 있는 농기구와 동물의 상태
  - ④ 권리를 설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토지가 농지법 제3조제2항 제6호의 토지인 경우에는 그 취지
- 4) 교환 계획에 주거 지역 등에 전환하기 위하여 권리를 설정하거나 또는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시가화 구역 내 농지에 관해 다음에 규정된 서류
- ① 그 농지를 주택지 등으로 변환 후의 이용 목적과 변환 기간 및 전환에 관한 사업 또는 시설의 개요를 기재한 서면
  - ② 해당 농지를 주택지 등에 전환하는 것에 의해 발생하는 부근의 토지, 작물, 가축 등의 피해 방제 시설의 개요를 기재한 서면
  - ③ 해당 농지가 토지 개량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 개량 지역에 해당 농지를 주택지 등으로 전환하는 취지의 통지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 ④ 해당 농지를 주택지 등에 전환하는 행위가 도시 계획법(쇼와 43년 법률 제 100호) 제29조제1항의 허락을 필요로 하는 것일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해 그 허가를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

## 제2조

법 제 11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99조제5항 규정에 의한 공고는 동항 규정에 의하여 열람에 제공해야하는 서류의 명칭 및 열람 기간과 장소를 도도부현(지방자치법(쇼와 22년 법률 제67호) 제 252조 19 제1항의 지정 도시와 동법 제 252조 22 제1항 핵심 시에 대해서는 그 지정 도시 또는 핵심시. 다음 항에서 동일하다)의 게시관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2. 법 제 11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99조제2항 규정에 의한 공고는 도도부현에 의해 이루어져야한다.

(교환 계획)

## 제3조

법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무역 계획은 계획서와 계획도를 작성하고 결정해야 한다.



2. 전항의 계획도는 조합 지역 조합의 지역에 시가화 구역 밖의 토지가 포함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에 관한 시가화 구역, 도시 지역, 법 7조 제2항 제3호 무역(이하 "무역"이라고 한다)을 해야 되는 토지의 지역, 무역을 해야 하는 토지의 위치, 형상 및 주택지 및 영농지역 등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교환 계획의 결정 방법)

#### 제4조

법 제11조 및 농주조합 시행령(이하 "령"이라고 한다)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바꾸어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101조 제2항의 농림수산성령,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처리에 제한이 있는 토지는 민사 소송법(평성 8년 법률 제109호), 민사 집행법(쇼와 54년 법률 제4호), 인사 소송 절차법(메이지 31년 법률 제13호), 국세 징수법(쇼와 34년 법률 제147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제한이 있는 토지로 한다.

#### 제5조

법 제 11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10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종합적인 감안은 해당 소유자가 취득해야 하는 땅과 잃은 토지의 용도 및 동항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그 소유자가 잃거나 취득하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해야 한다.

2. 법 제 11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104조 제2항과 제 107조에서 준용한 동법 제10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종합적인 감안은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취득해야 하는 토지를 정하지 않은 경우의 신청 또는 동의)

#### 제6조

법 제10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제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 1) 제기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2) 해당 제기에 관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용도 및 지적
- 3) 해당 제기에 관련된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의 권한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표시

2. 조합은 법 제10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동의 또는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구할 때에는 그 동의에 관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용도 및 지적을 기재한 서면에 의해야 한다.

(서류의 제출을 대체하는 공고)

#### 제7조

법 제 11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 112조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교환을 해야

하는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게시 장소에 5일간 제출해야하는 서류의 요지를 게시해야한다.

2. 전항의 서류는 공고를 한 날로부터 10일간 해당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게 해야한다.

(측량 또는 검사의 통지)

제8조

법 제 11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 11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통지는 의논의 목적, 장소와 날짜를 표시해야한다.

2. 법 제 11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 11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공고는 취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게시 장소에 5일간 전항에 규정된 사항을 게시해야한다.

(손실 보상의 재결 신청 절차의 양식)

제9조

영 제6조규정에 의하여 바꾸어 준용한 토지 개량 시행령 제 74조의 농림수산성령,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양식은 별기 양식으로 한다.

(농지 이용 약관의 인정 신청 절차)

제10조

조합은 법 제13조제3항(영 제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의하여 농지 이용 약관에 대해 인증을 받고자하는 경우 인증 신청서에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해야한다.

1) 조합의 정관 및 사업 기본 방침

2) 법 제13조제1항 또는 영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신청시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3) 영농 지역 및 그 주변의 상황도

2. 전항 제3호의 도면은 영농 지역 및 그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 및 배수, 그 외의 부분을 표시하고, 영농 지역의 면적을 기입한 것이어야 한다.

(농지 이용 약관을 변경하는 취지의 신고)

제11조

조합은 영 제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농지 이용 약관을 변경하는 취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의 변경 일자 및 이유를 기재한 신고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해야한다.

- 1) 영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신청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 2) 이전의 농지 이용 약관에 관한 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지 이용 계약을 체결한 자인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의를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농지 이용 약관을 폐지하는 취지의 신고)

#### 제12조

조합은 영 제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농지 이용 약관을 폐지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일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신고서에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해야한다.

- 1) 영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신청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 2) 해당 농지 이용 약관에 관한 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지 이용 계약을 체결한 자인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의를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전자적 기록)

#### 제13조

법 제42조제4항 관할 성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기록은 전자 기기에 내장된 파일이나 디스크, 시디롬,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사항을 확실하게 기록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파일에 기록하는 것으로 한다.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절차)

#### 제14조

조합은 조합의 지역에 관련된 정관의 변경법 제48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신청서에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해야한다.

- 1) 법 제48조제1항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것을 증명하는 서면
- 2) 조합 지역의 면적, 경작지 면적,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화 구역 내 농지 등의 면적과 조합 지역의 시가화 구역 내 농지 등의 합계 면적을 기재한 서면
- 3) 조합의 지역 현황도
- 4) 새로운 조합의 지역이 될 것인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 법 제15조각호에 규정하는 권리가 있는 사람 중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는 자격을 가진 자로 조합원이 될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 등"이라고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조합원 등이 그 토지에 있는 권리의 종류 및 해당 권리를 목적으로 토지의 면적을 기재한 서면

- 5) 새로운 조합의 지역이 될 것인 지역의 토지에 법 제68조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휴면 농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
- ① 해당 휴면 농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 권리(이하 "소유권 등"이라고 한다)가 조합원 등이 노동조합의 지역에 있는 시가화 구역 내 농지(휴면 농지인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7조제7호에서 같다)에서 그 영농을 계속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 ② ①에서 규정하는 자가 그 영농을 계속하고자 하는 조합의 지역에 있는 시가화 구역 내 농지와 동등한 조합의 지역에 있는 토지(휴면 농지인 것을 제외한다)에 대해서 소유권 등이 있는 자가 해당 휴면 농지를 주택지 등으로 이용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 6) 새로운 조합의 지역이 될 것인 지역의 토지에 법 제68조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휴면 농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
- ① 해당 휴면 농지에 관해 교환이 일어날 예정이 되어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 ② 해당 교환을 하여 휴면 농지에 관한 소유권 등을 받은 자가 그 휴면 농지를 농지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또는 이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 ③ 해당 교환으로 휴면 농지에 대한 소유권 등에 교체 조합 지역의 토지(휴면 농지인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권 등을 취득한 자가 그 토지를 주거 지역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거나 또는 이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 ④ 해당 교환으로 휴면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 등이 있는 자가 해당 소유권 등에 농촌 지역의 다른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 7) 새로운 조합의 지역이 될 것인 지역의 토지에 시가화 구역 밖의 토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
- ① 해당 토지(농지 이외의 토지를 제외한다)에 관해 교환이 일어난다는 예정이 되어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 ② 해당 교환으로 시가화 구역 밖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한 자가 그 토지를 농지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또는 이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 ③ 해당 교환으로 시가화 구역 밖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에 교체 시가화 구역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자가 그 토지를 주거 지역 등으로 사용하고자하거나 또는 이것에 동의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 ④ 해당 교환으로 시가화 구역 밖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이 있는 자가 해당

소유권 등에 교체 시가화 구역 밖의 다른 지역에 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총회의 의사록)

제15조

법 제50조3 규정에 의한 총회의 회의록 작성 내용은 이 조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총회의 의사록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 1) 총회가 열린 날짜와 장소(해당 장소에 있지 않은 이사, 감사 또는 조합원이 총회에 참석을 할 경우의 그 참석 방법을 포함한다)
- 2) 총회의 의사의 경과 및 그 결과
- 3) 총회 의장과 총회에 참석한 이사 또는 감사의 성명 또는 명칭
- 4) 회의록 작성에 관한 직무를 행한 이사의 성명 또는 명칭

(사업 기본 방침에 결정해야 하는 사항)

제16조

법 제64조제1항 제2호 관할 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으로 한다.

- 1) 법 제7조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업 완공 예정 시기
- 2) 조합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액수

(농업 법인 등에 대한 사업 기본 방침의 송부 등)

제17조

법 제6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 기본 방침의 송부는 법 6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공고일 2주일 전에 실행해야한다.

2. 법 제65조제1항 관할 성령으로 정하는 농업 단체 등은 해당 조합의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농업 협동 조합법(쇼와 22년 법률 제132호) 제10조제1항 제2호와 제3호 사업을 함께 행하는 농업 협동조합으로 한다.

(창립총회의 의사록)

제18조

제 15조의 규정은 법 제66조제8항에서 준용한 법 제15조3 규정에 의한 창립총회 회의록 작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2항 제1호 중 "일시 및 장소(그 장소에 있지 않은 이사, 감사 또는 조합원이 총회에 참석을 할 경우의 그 참석 방법을 포함한다)"인 것은 "날짜와 장소"로, 동항 제3호 중 "이사 또는 감사"인 것은 "발기인"으로, 동항 제4호 중 "이사"인 것은 "발기인"으로 바꾼다.

(설립인가의 신청 절차)

제19조

발기인은 법 제6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 및 사업 정책 및 사업 계획을 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그 허가 신청서에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해야한다.

- 1) 발기인이 조합의 지역이 될 것인 지역의 시가화 구역 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 2) 법 제66조제3항 규정에 의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것을 증명하는 서면
- 3) 법 제6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농업 단체 등의 의견을 언급할 때 그 개요를 기재한 서면
- 4) 조합 지역의 면적, 경작지 면적, 법 제60조제1호에 규정하는 시가화 구역 내 농지 등의 면적과 조합 지역의 시가화 구역 내 농지 등의 합계 면적을 기재한 서면
- 5) 조합의 지역 현황도
- 6) 법 제6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설립의 동의를 한 성명 또는 명칭 및 이들의 조합의 지역 내 토지에 있는 권리의 종류 및 해당 권리의 목적으로 토지의 면적을 기재한 서면
- 7) 조합의 지역에 법 제68조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휴면 농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
  - ① 해당 휴면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 등을 가진 자로 설립 동의를 신청한 것이 노조합의 지역 내에 있는 시가화 지역 내 농지에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 ② ①에서 규정하는 자가 해당 영농을 계속하고자하는 조합의 지역에 있는 시가화 구역 내 농지와 동등한 조합의 지역에 있는 토지(휴면 농지인 것을 제외한다)에 대해서 소유권 등이 있는 자가 해당 휴면 농지를 주택지 등으로 이용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 8) 조합의 지역에 법 제68조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휴면 농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
  - ① 해당 휴면 농지에 관해 교환이 일어날 예정이 되어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 ② 해당 교환으로 휴면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자가 그 휴면 농지를 농지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또는 이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 ③ 해당 교환으로 휴면 농지에 대한 소유권 등에 교체 조합 지역의 토지(휴면 농지인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권 등을 취득한 자가 그 토지를 주거

지역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거나 또는 이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 ④ 해당 교환으로 휴면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 등이 있는 자가 해당 소유권 등에 농촌 지역의 다른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9) 조합의 지역에 시가화 구역 밖의 토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

- ① 해당 토지(농지 이외의 토지를 제외한다)에 관해 교환이 일어날 예정이 되어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 ② 해당 교환으로 시가화 구역 밖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자가 그 토지를 농지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또는 이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 ③ 해당 교환으로 시가화 구역 밖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에 교체 시가화 구역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자가 그 토지를 주거 지역 등으로 사용하고자하거나 또는 이것에 동의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 ④ 해당 교환으로 시가화 구역 밖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이 있는 자가 해당 소유권 등에 교체 시가화 구역 밖의 다른 지역에 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원조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농업 단체 등)

제20조

법 제 91조의 관할 성령으로 정하는 농업 단체 등은 해당 조합의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농업 협동조합법 제10조제1항 제2호와 제3호 사업을 함께 하는 농업 협동조합으로 한다.

부칙

(시행 기일)

1. 이 명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원년 3월 17일 총리부령, 농림수산성령, 건설부령 제1호)

이 명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3년 5월 10일 총리부령, 농림수산성령, 건설부령 제1호)

이 명령은 평성 3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1년 11월 24일 총리부령, 농림수산성령, 건설부령 제1호)

이 명령은 평성 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2년 8월 14일 총리부령, 농림수산성령, 건설부령 제1호)

이 명령은 내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11년 법률 제88호)의 시행일(평성 1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3년 5월 11일 농림수산성령, 국토교통성령 제4호)

이 성령은 도시 계획법 및 건축 기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12년 법률 제73호)의 시행일(평성 13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3년 5월 18일 농림수산성령, 국토교통성령 제5호)

이 성령은 평성 13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3년 12월 28일 농림수산성령, 국토교통성령 제6호)

이 성령은 평성 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7년 3월 29일 농림수산성령, 국토교통성령 제4호)

이 성령은 평성 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8년 4월 28일 농림수산성령, 국토교통성령 제4호)

이 성령은 회사법의 시행일(평성 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주조합에 관한 토지 개혁 시행 규칙의 적용에 관한 성령  
(쇼와 56년 6월 6일 농림수산성령 제25호)

농주조합법(쇼와 55년 법률 제86호) 제12조 및 농주조합시행령(쇼와 56년 정령 제170호) 제7조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주조합에 관한 토지 개혁 시행 규칙의 적용에 관한 성령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농주조합이 농주조합법 제7조제2항 제5호에 규정된 사업을 토지개량법(쇼와 24년 법률 제 195호)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토지개량사업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주조합을 동법 제9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개량사업을 실시하는 농업협동조합으로 간주하고, 토지개혁시행규칙(쇼와 24년 농림성령 제75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성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농주조합이 실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및 생산녹지 지역에 관계하는 도시 계획에 대한서의 요청에 관한 성령  
(쇼와 56년 6월 6일 건설성령 제10호)

최종개정 : 평성 13년 5월 18일 국토교통성령 제93호

농주조합법(쇼와 55년 법률 제86호) 제8조제4항과 제88조규정에 의거하여, 농주조합법과 농주조합법시행령(쇼와 56년 정령 제 170호)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주조합이 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및 제 1종 생산녹지 지역에 관계하는 도시 계획에 대한서의 요청에 관한 성령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토지 구획 정리 시행 규칙 신청)

제1조

농주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이 농주조합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조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업을 토지 구획 정리법(쇼와 29년 법률 제119호)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토지 구획 정리법(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 구획 정리 법"이라고 한다)으로 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동법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몇 명의 공동으로 시행하는 토지 구획 정리법 시행자로 간주하고, 토지 구획 정리 시행 규칙(쇼와 30년 건설성령 제5호)의 규정(제 15조를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중 "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인 것은 "농주조합의 조합원(농주조합법 제15조제2호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 한다)"로 한다.

(허가 신청서의 첨부 서류)

제2조

조합은 법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토지 구획 정리법 제4조제1항 혹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 제9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가를 신청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허가 신청서에 법 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합의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주택지 등 및 영농지 등의 지역에 관한 도서)

제3조

법 제8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지 등 및 영농지 등의 지역은 설계 설명서 및 설계도를 작성하고 결정해야한다.

2. 전항의 설계 설명서에는 주택지 등과 영농지 등 지역의 면적을 기재하고, 설계도는 배율 1200분의 1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3. 제1항의 설계도 및 제1조건단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토지 구획 정리 시행 규칙 제6조제1항 설계도는 함께 한 장의 도면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생산 녹지 지역에 관한 도시 계획에 대한 요청)

제4조

법 제88조제1항의 제기는 별기 양식 제 1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신청서에는 법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법 제8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청은 별기양식 제 2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4. 전항의 요청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1) 요청한 토지의 위치와 지역을 표시한 도면
- 2) 교환분합계획에 관한 도서의 사본 또는 해당 지역에 관한 반환지 지정 통지서 혹은 환지처분 통지서 사본
- 3) 제1항의 신청서 및 제2항 서류 사본

부칙

(시행 기일 등)

1. 이 성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3년 9월 6일 건설성령 제16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성령은 생산 녹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3년 법률 제39호)의 시행일(평성 3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3년 5월 18일 국토교통성령 제93호)

이 성령은 평성 13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기양식 제 1(제4조관계)

시민 농원 정비 촉진법  
(평성 2년 6월 22일 법률 제44호)

최종개정 : 평성 21년 6월 27일 법률 제57호

(최종 개정까지 미시행 법령)  
평성 21년 6월 24일 법률 제57호(미시행)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주로 도시 주민의 레크리에이션 등의 제공을 위한 시민 농원의 정비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 건강하고 여유있는 국민 생활의 확보를 도모함과 동시에 좋은 도시 환경의 형성과 농촌 지역의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서 "농지"라 함은 경작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토지를 말한다.

2. 이 용어는 "시민 농원"은 제1호에 규정된 농지와 제2호에 규정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1) 주로 도시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농지에서 다음 ①또는 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특정 농지 대부에 관한 농지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평성 원년 법률 제 58호) 제 2제2항에 규정하는 특정 농지 대부(제1조제1항에서 "특정 농지 대부"라고 한다)를 위해 제공되는 농지

② 상당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조건, 휴양, 기타 이윤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농사에 제공되는 농지 (임차권 기타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농업에 제공되는 것에 한한다)

2. 전호에 규정된 농지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농기구화물시설, 휴게시설 기타 그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이하 "시민 농원 시설"이라고 한다)

(기본 방침)

제3조

도도부현 지사는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서 상당수의 시민 농원의 정비가 예상되는 경우에 그 적정하고 원활한 정비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민 농원의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이하 "기본 방침"이라고 한다)을 결정해야 한다.

2. 기본 방침에 대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 1) 시민 농원의 정비의 기본 방향
- 2) 시민 농원으로 정비해야 하는 지역 설정에 관한 사항
- 3) 시민 농원 시설 설치 기타 시민 농원의 정비에 관한 사항
- 4) 시민 농원의 이용 약관 및 기타 시민 농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 기타 필요한 사항

3. 기본 방침은 좋은 도시 환경 형성과 농촌 지역의 진흥에 기여를 결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4. 기본 방침은 도시 계획과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과의 조화가 유지되는 것이어야 한다.

5. 도도부현 지사는 정세의 추이에 의해 필요할 때에는 기본 방침을 변경해야 한다.

6. 도도부현 지사는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또는 이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시민 농원 지역)

제4조

시정촌 기본 방침에 따라 농업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그 지방 자치 단체의 지역 내의 특정 지역에서 아래에 열거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시가화 구역(도시 계획법(쇼와 43년 법률 제100호)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시가화 구역을 말한다. 제7조제1항에서 동일) 내에 있는 지역을 제외한다)을 시민 농원으로 정비해야 하는 지역(이하 "시민 농원 지역"이라고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해당 지역 내에 상당 규모의 농지가 존재하고, 그 자연적인 조건 및 이용 동향 상으로 시민 농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
- 2) 해당 지역의 위치 및 규모 상으로 그 주변 지역의 농용지(경작 목적 또는 주로 경작이나 양축 사업을 위한 채초나 가축의 방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토지를 말한다. 다음 조 제3항 에서 같다)의 농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고객 확보에 지장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것.
- 3) 교통 시설의 정비 상황 기타 도시 주민의 이용에 필요한 위치상으로 시민 농원의 이용이 상당하다고 예상되는 지역이다.

2. 도시는 시민 농장 지역을 지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도부현 지사와 협의해야한다.
3. 도시는 시민 농장 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한다.
4. 도시 기본 방침의 변경, 기타 정세의 추이에 의한 필요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지정된 시민 농장 지역을 변경해야 한다.
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시민 농원 지역 변경 준용한다.

(교환분합)

#### 제5조

시정촌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 농장 지역을 지정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하는 시민 농장 지역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도 그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하는 시민 농원 구역 내의 토지 보유 및 이용 현황, 농업 기술의 동향 등으로 해당 시민 농장 지역에 있는 토지의 일부가 시민 농원 이외의 용도에 제공되는 것을 해당 시민 농원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토지의 시민 농원으로의 이용과 농업에의 이용과 조정에 유의해서 해당 시민 농장 지역에 있는 토지의 시민 농원으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한 시민 농원 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포함하여 특정 토지에 관해 교환분합 할 수 있다.

2. 시정촌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교환분합하려고 할 때에 농림수산령,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분합 계획을 결정하고 그 교환분합계획으로 교환분합을 해야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 권한, 영 소작 권, 질권, 임차권, 사용 대차에 의한 권리 또는 기타의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모두의 동의를 얻고,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교환분합계획은 제1항에 규정된 시민 농장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토지의 시민 농원으로의 이용과 농업에의 이용과 조정에 유의해서 해당 시민 농장 지역에 있는 토지의 시민 농장으로의 이용을 확보함과 동시에 해당 시민 농원 지역 주변 지역 농용지의 집단화, 기타 농업 구조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결정해야한다.

#### 제6조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쇼와 44년 법률 제58호) 제13조3 규정 및 토지 개량 법(쇼와 24년 법률 제 백 105호) 제 99조(제1항 및 제2항 제외), 제101조제2항, 제 102조에서부터 제 107조까지 제108조제1항 및 제2항 제 109조, 제 110조, 제 112조, 제 113조, 제 114조, 제 115조, 제 118조(제2항 제외한다) 및 제 121조에서부터 제 123조의 규정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분합에 준용한다. 이 경우 이 약관을 준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은 정령으로 정한다.

(시민 농원의 개설 승인)

제7조

시민 농원 구역 내 또는 시가화 구역(도시 계획법 제4조제6항에 규정하는 도시 계획 시설 지역, 동조 제7항에 규정하는 도시 개발 사업 시행 지역의 다른 지역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외) 내에서 시민 농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성시행령 국토교통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 농원의 정비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서비스 운영 계획"이라고 한다)을 정하고 이를 신청서에 표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정촌에 제출하고 해당 시민 농원의 개설이 적당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2. 전항의 서비스 운영 계획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 1) 시민 농장에 제공해주는 토지의 소재, 토지 번호와 면적
- 2) 시민 농장에 제공되는 농지 위치와 면적 및 제2조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농지 중 하나에 속하는 것 외
- 3) 시민 농원 시설의 위치 및 규모 기타 시민 농원 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 4) 고객 모집 및 전형 방법
- 5) 이용 기간, 기타 조건
- 6) 시민 농원의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는 방법
- 7) 자금 계획
- 8) 기타 농림수산성시행령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시정촌은 제1항의 인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이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업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그 자격을 인정해야한다.

- 1) 서비스 운영 계획의 내용이 정책에 부합하는 것.
- 2) 시민 농원의 적정하고 원활한 사용을 보장하는 견지 상으로 보야, 시민 농장에 제공되는 농지와 시민 농원 시설을 적절한 위치에 있고, 합리적인 규모인 것.
- 3) 시민 농장에 제공되는 농지와 시민 농원 시설의 위치 및 규모 상으로, 주변 도로, 하수도 등의 공공시설에 있는 기능에 지장을 발생시키지 않고, 또한, 주변 지역의 영농 조건과 생활환경 확보에 지장 되지 않는 것.
- 4) 고객 모집 및 전형 방법이 공평하고 적정한 것.
- 5) 전항 제5호에서부터 제8호에 열거한 사항이 시민 농원의 확실한 정비 및 공정하고 원활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유효하고 적절한 것.
- 6) 기타 정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

4. 시정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도부현 지사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5. 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이하 "공인 개설자"라고 한다)는 그 인증에 관한 서비

스 운영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정촌의 인정을 받아야한다.

6.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 운영 계획 변경 승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보고 요구)

제8조

시정촌장은 공인 개설에 대해, 시민 농원의 정비 또는 운영 상황에 대해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권고)

제9조

시정촌장은 공인 개설자가 인증에 관한 서비스 운영 계획(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인증이 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것. 이하 "인증 계획"이라고 한다)에 따라 시민 농장 서비스와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공인 개설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권고 할 수 있다.

(인증의 취소)

제10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공인 개설자가 그 권고를 따르지 않을 때, 시정촌은 제7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농지법 등의 특례)

제11조

제7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제2조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농지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공인 개설자는 당해 인증을 받은 시민 농원에 관련된 특정 농지 대부에 대해 특정 농지 대부에 관한 농지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공인 개설자가 인정 계획에 따라 농지를 농지 이외의 것으로 하는 경우 농지법(쇼와 27년 법률 제 229호) 제4조제1항 권한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공인 개설자가 인정 계획에 따라 농지를 농지 이외의 것으로 하기 위해 또는 채초방조지(농지 이외의 토지에서 주로 경작 또는 양축 사업을 위한 채초 또는 가축 방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채초방조지 이외의 것(농지를 제외한다)으로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대해 소유권 또는 사용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5조제1항 권한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도시 계획법의 특례)

제12조

공인 개설자가 인정 계획에 따라 정비하는 시민 농원 시설 중 휴게 시설로 건축(건축 기준법(쇼와 25년 법률 제 201호) 제2조제1호에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일) 그 외에 시민 농원의 공정하고 능률적인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로 정령이 정하는 것(다음 항에서 "공인 시민 농원 건축물"이라고 한다)의 건축(건축 기준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에 대해 제공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구획 형질 변경, 시가화 조정구역(도시 계획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시가화 조정구역을 말한다. 다음 항에서 동일)에 관한 것(도시 계획법 제34조각호에 규정된 개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은 도시 계획법 제34조규정의 적용은 동조 제14호에 규정된 개발 행위로 간주한다.

2. 도도부현 지사 또는 지방자치법(쇼와 22년 법률 제67호) 제 252조의 26항의 3 제1항의 지정 도시 동법 제 252조의 22항 핵심 시 혹은 동법 제 252조의 26의 3 제1항의 특례시의 장은 도시화 조정 지역 중 도시 계획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은 동법 제4조제13항에 규정하는 개발 지역 이외의 지역 내에서 인증 시민 농원 건축물을 신축 또는 건물을 개축하여, 또는 그 용도를 변경하여 인증 시민 농원 건축과에 관하여, 동법 제43조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에 관한 인증 시민 농원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용도 변경 동조 제2항 정령으로 지정하는 허가 기준 중 동법 제33조에 규정하는 개발 허가 기준의 예에 준하여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해야한다.

(시민 농원 정비에 대한 배려)

제13조

국가 행정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정 계획에 따라 토지를 인증에 관련된 시민 농장에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타 처분을 요구 받았을 때는 해당 시민 농원의 정비 촉진이 도모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려를 하는 것으로 한다.

(자금의 확보 등)

제14조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승인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시민 농원의 정비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확보 또는 그 융통성의 알선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원조)

제1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증 개설 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조언, 지도, 그 외를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벌칙)

제16조

제 6조에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109조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대리인, 사용인 그 외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 또는 재산에 대해 이전 두 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하여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6년 6월 29일 법률 제49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법률 중 제1장의 규정 및 다음 각 규정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평성 6년 법률 제48호) 중 지방자치법(쇼와 22년 법률 제67호) 제 2편 제2장의 개정 규정의 시행 일자에서 제2장의 규정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 중 지방자치법 제 3편 제3장 개정 규정의 시행의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1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호에 규정된 규정은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 250조의 다음 5조, 절명 및 두 종과 종명을 추가 개정 규정(동법 제 250조의 구 제1항에 관한 부분(두 의원의 동의를 얻기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한한다), 제40조중 자연 공원법 부칙 제9항 및 제1항의 개정 규정(동법 부칙 제10항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 244조의 규정(농업 개혁 조장법 제 14조3 개정 규정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및 제 472조의 규정(시정촌 합병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8조및 제 17조의 개정 규정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 7조, 제 10조, 제 12조, 제59조그러나, 제60조제4항 및 제5항, 제 73조, 제 77조, 제 157조 제4항에서부터 제6항까지 제 160조, 제 163조, 제 164조 및 제 202조의 규정 공포의 날

(시민 농원 정비 촉진법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제99조

시행일 전에 제 299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시민 농원 정비 촉진법(이하 이 조에서 "구 시민 농원 정비 촉진법"이라고 한다) 제4조제2항(동조 제5항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은 시민 농원 지역은 제 299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 시민 농원 정비 촉진법(이하 이 조에서 "새로운 시민 농원 정비 촉진법"이라한다) 제4조제2항(동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진행, 시민 농원 지역으로 본다.

2.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구 시민 농원 정비 촉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되는 동의 신청은 새로운 시민 농원 정비 촉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협의 제기로 본다.

(국가 등의 업무)

제 159조

이 법에 의한 개정 전의 각각의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 이 법 시행 전에 지방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정령에 의해 관리되거나 집행하는 국가, 다른 지방 자치 단체, 그 외에 기타 공공단체 사무(부칙 제 161조에 "국가 등의 사무"라고 한다)이 법 시행 후, 지방 공공단체가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정령에 의해 해당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로 취급하는 것으로 하다.

(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제160조

이 법률(부칙 제1조각호에 규정된 조항은 해당 각 조항. 이하 이 조 및 부칙 제 163조에서 같다)의 시행 전에 개정 전의 각각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한 허가 등의 처분 기타 행위 (이하 이 조에서 "처분 등의 행위"라고 한다) 또는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개정 전의 각각의 법률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허가 등의 신청 기타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신청 등의 행위"라고 한다)에서 이 법률의 시행 일자에서 이 활동에 관한 행정 사무를 해야 할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되는 것은, 부칙 제 2 조에서부터 전조까지의 규정 또는 개정 후의 각각 법률(이것에 근거한 명령을 포함한다)의 경과 조치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률의 시행일 이후의 개정 후 각각의 법률 적용에 대해서는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의 해당 규정에 의한 처분 등의 행위 또는 신청 등의 행위로 본다.

2. 이 법 시행 전에 개정 전의 각각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기관에 신고, 신고, 제출 기타 수속을 해야 하는 사항이 법률의 시행 일전에 그 절차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률 및 이에 근거한 정령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것 외에, 이것을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해당 기관에 보고, 신고 제출, 그 외에 기타 수속을 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절차가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법에 의한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의 신청에 관한 경과 조치)

제161조

시행일 전에 한 국가 등의 사무에 관한 처분에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이하 이 조에서 "처분청"이라한다) 시행 일전에 행정 불복 심사 법에 규정하는 상급 행정청 (이하 이 조에서 "상급 행정청"이라한다)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이의 신청은 시행일 이후에도 그 처분청에 이어 상급 행정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 불복 심사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처분청의 상급 행정청으로 간주된 행정청은 시행일 이전에 그 처분청의 상급 행정청이었던 행정청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에도 상급 행정청으로 간주된 행정청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이 행정 불복 심사 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업무는 새로운 지방자치법 제2조제9항 제1호로 규정한 제1호 법정 수탁 사무로 한다.

(수수료에 관한 경과 조치)

제162조

시행일 이전에이 법에 의한 개정 전의 각각의 법률(이것에 근거한 명령을 포함한

다)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 법률 및 이에 근거한 정령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제163조

이 법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그 외에 경과 조치 정령에의 위임)

제164조

이 부칙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 조치(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를 포함한다)는 정령으로 지정한다.

2. 부칙 제 18조, 제51조 및 제104조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지정한다.

(검토)

제250조

새로운 지방자치법 제2조제9항 제1호로 규정하는 제1호 법정 수탁 사무는 가능한 새로 마련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지방자치법 별표 제 1에 내거는 것과 새로운 지역 자치법에 근거한 정령에 표시된 것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검토를 추가하고 적절한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제251조

정부는 지방공공단체가 사무와 사업을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와의 역할 분담에 따라 지방세 재원의 충실 확보의 방도에 대해 경제 상황의 추이 등을 감안하면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252조

정부는 의료 보험 제도, 연금 제도 등 개혁에 따라 사회 보험 업무 처리 체제, 이것에 종사하는 직원의 본연의 자세 등에 대해서 피보험자 등의 편의를 확보, 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칙(평성 11년 12월 22일 법률 제 160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제2조 및 제 3조를 제외한다)은 평성 1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2년 5월 19일 법률 제73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이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8년 5월 31일 법률 제46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이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21년 6월 24일 법률 제57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이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호에 규정된 규정은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부칙 제 43조의 규정 공포한 날

(정령에의 위임)

제43조

이 부칙에 명시된 것 이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지정한다.

시민 농원 정비 촉진법 시행령  
(평성 2년 9월 14일 정령 제 272호)

최종개정 : 평성 15년 12월 17일 정령 제 523호

내각은 시민 농원 정비 촉진법(평성 2년 법률 제44호) 제6조, 제7조제1항과 제3항 제6호 및 제2조제1항 및 동법 제 6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쇼와 24년 법률 제 195호) 제 12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 정령을 제정한다.

(적용 규정)

제1조

시민 농원 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조규정에 의하여 토지 개량법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표 위의 입력란에 규정된 동법의 규정 중 자구로 동표 입력란에 게시된 것은 각각의 동표 아래 입력란의 자구로 본다.

제99조

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제1항 시민 농원 정비 촉진법 제5조 제2항

제99조

제6조, 제101조제2항, 제102조, 제103조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 제104조제 107조, 제109조및 제110조제1항 농용지 토지

101조 제2항, 제102조제2항 및 제4항, 제 118조 제3항 농림수산령 국토교통성령 제105조, 제102조제1항 또는 시민 농원 정비 촉진법 제 6조에서 준용하는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13조3 제1항 앞단

제106조제2항 소멸, 시민 농원 정비 촉진법 제 6조에서 준용하는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13조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가 취득한 토지를 그 소유자가 잃게 된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해서 제2항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권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권이 이전했을 때에 소멸한다.

또는 시민 농원 정비 촉진법 제 6조에서 준용하는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13조3 제3항

제113조 또는 이 법에 기반한 명령 혹은 이 법률에 근거한 명령 또는 시민 농원 정비 촉진법 제 6조에서 준용하는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13조3 제1항 제113조, 제114조 제1항, 제115조, 제118조 제1항, 제122조 제1항 및 제123조 제1항 토지 개량 사업 시민 농원 정비 촉진법에 의한 교환분합

(수용위원회에 대한 판결의 신청 절차)

제2조

법 제 6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 12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 수용법 (쇼와 26년 법률 제 219호) 제9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재결을 신청하고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토지 개량 시행령(쇼와 이24년 정령 295호)제74조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중 "농림수산령"인 것은 "농림수산 령 국토교통성령"으로 본다.

(시가화 구역 중 시민 농원의 개설 자격에서 제외되는 지역)

제3조

법 제7조제1항 정령이 정하는 지역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1) 도시 계획법(쇼와 43년 법률 제100호) 제11조제5항 규정에 따라 시행 일정이 정해져있는 도시 계획에 관한 동법 제4조제6항에 규정하는 도시 계획 시설 지역
- 2) 도시 계획법 제62조제1항 규정에 의한 고시 또는 새로운 사업 지역 (동법 제4조제15항에 규정하는 도시 계획 사업을 시행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일) 편입에 관한 동법 제63조제2항에서 준용한 동법 제62조제1항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었던 동법 제4조제6항에 규정한 도시 계획 시설(지하에 설치되는 것 및 공원과 녹지를 제외)에 관한 사업 지역
- 3) 도시 계획법 제12조제5항 규정에 따라 시행 일정이 정해져있는 도시 계획에 관한 동법 제4조제7항에 규정하는 도시 개발 사업(동법 제12조제1항 제5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의 시행 지역
- 4) 도시 계획법 제62조제1항 규정에 의한 고시 또는 새로운 사업 지역 편입에 관한 동법 제64조제2항에서 준용한 동법 제62조제1항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었던 동법 제4조제7항에 규정하는 도시 개발 사업(동법 제12조1항 1호,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에 관한 사업 지역
- 5) 도시 계획법 제4조제8항에 규정하는 도시 개발 사업 등 예정 지역 (동법 제12조2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
- 6) 밀집 시가지의 방재 도시 구획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평성 9년 법률 제49호) 제 28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시행 일정이 정해져있는 도시 계획에 관한 동법 제31조제2항에 규정하는 방재 도시 계획 시설(공원 및 녹지를 제외) 지역

(시민 농원 개설 인증 기준)

제4조

법 제7조제3항 제6호 정령으로 지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한다.

- 1) 신청 절차 또는 서비스 운영 계획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 것



- 2) 시민 농장에 제공되는 농지가법 제2조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농지 인 경우에 있어서는 농지가농지법(쇼와 27년 법률 제 229호)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소 작지가 아닌 것

(도시 계획법 의 특례 적용 대상 건축물)

제5조

법 제12조제1항 정령으로 지정하는 건축물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1) 휴식 시설 건축물
- 2) 농업 강습에 제공해주는 건축물
- 3) 간이 숙박 시설(독점적 숙박용으로 제공되는 시설로 간소한 것을 말한다) 인 건축물
- 4) 관리 사무소, 기타 관리 시설 건축물

부칙 첨부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법의 시행일(평성 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2년 6월 7일 정령 310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내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평성 11년 법률 88호)의 시행 일자(평 성 1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3년 3월 30일 정령 제98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도시 계획법 및 건축 기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 "개정법"이 라고 한다)의 시행 일자(평성 13년 5월 18일. 이하 "시행일"이라고 한다)부터 시행 한다.

부칙(평성 15년 12월 7일 정령 523호)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밀집 시가지의 방재 도시 구획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 일자(평성 15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제2조

이 정령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시민 농원 정비 촉진법 시행 규칙

(평성 2년 9월 14일 농림수산성령, 건설부령 제1호)

최종개정 : 평성 12년 10월 10일 농림수산성령, 건설부령 제2호

시민 농원 정비 촉진법(평성 2년 법률 제44호)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1항과 제2항 제8호, 동법 제 6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쇼와 20년 법률 제115호) 제101조제2항, 제102조제2항(동법 제104조제2항과 제 10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118조 제3항 및 시민 농원 정비 촉진법 시행령(평성 20년 정령 제 272호) 제2조규정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 시행령(쇼와 20년 정령 295호) 제74조규정에 의거 및 시민 농원 정비 촉진법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민 농원 정비 촉진법 시행 규칙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교환분합계획 결정 절차)

### 제1조

시민 농원 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법 제 6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99조제3항에 규정된 서면 외에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법 제5조제2항의 동의를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법 제 6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102조제2항 단, 양식(법 제 6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102조제2항과10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법 제6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102조제3항 단 양식(법 제 6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104조제2항과 제 10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법 제 6조에서 준용하는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쇼와 44년 법률 제58호) 제13조3 제1항 전단의 제기 또는 동의를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과 동항 후단의 동의를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 2) 계획도
- 3) 시민 농원 지역 내에 있는 토지의 시민 농원으로서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교환분합 하는 것이 특히 필요로 하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

## 제2조

법 제 6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99조제5항 규정에 의한 공고는 동항 규정에 의하여 종람에 제공해야하는 서류의 명칭 및 종람기간과 장소를 도도부현의 공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2. 법 제 6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99조제2항 규정에 의한 공고는 도도부현의 공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교환분합계획의 결정방법)

## 제3조

법 제 6조와 시민 농원 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고 한다) 제1조규정에 의하여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101조제2항의 농림수산성령,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한 처분 토지는 민사 소송법(명치 23년 법률 제29호), 민사 집행법(쇼와 54년 법률 제4호), 인사 소송 절차법(명치 31년 법률 제13호), 국세 징수법(쇼와 34년 법률 제147호) 그 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제한이 있는 토지로 한다.

## 제4조

법 제 6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10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종합적인 감안은 해당 소유자가 취득한 모든 토지와 잃은 모든 토지의 용도와 토지 넓이 및 동항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평가하여 그 소유자가 취득한 땅과 잃은 모든 토지 등의 협조해야 한다.

2. 법 제 6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104조제2항과 제 107조에서 준용한 동법 제10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종합적인 감안은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취득한 토지에 대한 제기 또는 동의)

## 제5조

법 제 6조에서 준용하는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13조3 제 1 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제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정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해당 제기에 관한 토지의 소재, 토지 번호, 지목, 용도 및 토지 넓이

3) 해당 제기에 관한 토지에 지상 권한, 영 소작 권, 질권, 임차권, 사용 대차에 의한 권리 또는 기타의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있는 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및 그 권한 표시

2. 법 제 6조에서 준용하는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13조3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동의 또는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구하려면 동의에 관한 토지의 소재, 토지 번호, 지목, 용도 및 토지 넓이를 기재한 서면에 의해야 한다.

(서류의 제출을 대체하는 공고)

제6조

법 제 6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102조규정에 의한 공고는 시정촌의 사무소의 게시 장소에 5일간 제출해야하는 서류의 요지를 게시해야 한다.

2. 전항의 서류는 공고를 한 날로부터 10일간 해당 사무소에서 볼 수 있게 해야한다.

(측량 또는 검사의 통지)

제7조

법 제 6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 11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통지는 의논의 목적, 장소와 날짜를 표시해야한다.

2. 법 제 6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108조제3항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시정촌의 사무소의 게시 장소에 5일간 전항에 규정된 사항을 게시해야한다.

(손실 보상 재결 신청 절차 양식)

제8조

령 제2조규정에 의하여 준용한 토지 개량 시행령 제 74조의 농림수산성령,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양식은 별기양식으로 한다.

(시민 농원의 개설 인정 신청 절차)

제9조

법 제7조제1항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개인은 성명, 주소 및 직업, 법인은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업무 내용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정촌 장에게 제출해야한다.

2.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도면을 첨부해야한다.

- 1) 시민 농원의 위치를 표시한 지형도
- 2) 시민 농원의 지역 및 시민 농원 시설의 위치, 형상 및 종별을 표시한 평면도
- 3) 건축물인 시민 농장 시설에 대해서는 그 개요를 표시한 평면도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신청에 관련된 농지가 토지 개량 구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토지 개량구의 의견서를 첨부해야한다. 그러나 의견을 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해도 그 의견을 얻을 수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면 된다.

(정비 운영 계획에 기재해야 할 사항)

제10조

법 제7조제2항 제8호의 농림수산성령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1. 시민 농원의 개설시기
2. 법 제7조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토지에 관한 다음에 열거한 사항
  - 1) 소유권 또는 사용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 2) 소유권 또는 사용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토지에 대해 취득하고자하는 권리의 종류
3. 시민 농원 시설 부지에 제공되는 농지를 농지 이외의 것으로 하는 경우 또는 농지를 농지 이외의 것으로 하기 위해 혹은 채초방조지 이외의 것(농지를 제외한 다)으로 하기 위하여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는 그 토지에 관한 다음에 열거한 사항
  - 1) 지목(등기부의 지목과 현황의 지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등기부의 지목 및 현황에 의한 지목), 이용 상황과 일반 수확량
  - 2) 신청자가 토지의 전용에 따라 지불해야하는 수당의 종류, 내용 및 상대방
  - 3) 전용시기
  - 4) 전용해서 발생한 부근의 땅, 작물, 가축 등의 피해 방제 시설의 개요
  - 5) 소유권 또는 사용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고자하는 계약 내용
4. 기타 도움이 될 것인 사항

부칙

(시행 기일)

제1조

이 성령은 법의 시행일(평성 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2년 10월 10일 농림수산 건설부령 제2호)

이 성령은 내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11년 법률 제88호)의 시행 일자(평성 1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기양식(제8조관계)

취락 지역 정비법  
(쇼와 62년 6월 2일 법률 제63호)

최종개정 : 평성 21년 6월 24일 법률 제57호

(최종 개정까지 미시행 법령)  
평성 21년 6월 24일 법률 제57호 (미시행)

- 제1장 총칙 (제1조- 제 3조)
- 제2장 취락 지역 정비 기본 방침 (제 4조)
- 제3장 취락 지구 계획 (제 5조, 제 6조)
- 제4장 마을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 등 (제7조- 제 12조)
- 제5장 기타 조항 (제12조2 - 제 14조)
- 제6장 벌칙 (제15조- 제 17조)
- 부칙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토지 이용 상황 등으로 보아 좋은 영농 조건과 주거 환경의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취락 지역에 농업 생산 조건과 도시 환경과의 조화를 이룬 지역의 정비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기위한 조치를 취하고, 그로써 해당 지역의 진흥과 질서 정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서 "농용지"는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쇼와 44년 법률 제58호) 제3조제1호로 규정하는농용지를 말한다.

2. 이 법률에서 "공공 기관"이라함은 도로, 공원, 그 외에 정령으로 지정하는 공공에 제공해주는 시설을 말한다.

(취락 지구)

제3조

이 법률에 의한 조치는 마을과 주변 농용지를 포함하여 특정 지역에서 다음에 열거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하 "취락 지구"라고 한다)에 대하여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 1)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상황 등으로 보아, 영농 조건과 주거 환경의 확보에 지장을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곳
- 2) 해당 지역의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농업 생산 조건의 정비와 도시 환경의 정비를 도모하고, 적절한 토지 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곳
- 3) 해당 지역에 상당 규모의 농용지가 존재하며, 농용지 및 농업용 시설 등을 정비함으로써 좋은 영농 조건을 확보 얻을 것으로 전망되는 곳
- 4) 해당 지역에 상당수의 주택 등이 존재하며, 공공시설의 정비 상황 등으로 보아, 하나의 단위로 그 특성에 맞는 좋은 주거 환경이 있는 지역으로, 질서 있는 정비를 도모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곳
- 5) 해당 지역이 도시계획법(쇼와 43년 법률 제100호) 제5조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 계획 구역(동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시가화 구역을 제외한다)에 있고,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 진흥 지역

## 제2장 취락 지역 정비 기본 방침

(취락 지역 정비 기본 방침)

제4조

도도부현 지사는 취락 지역에 대해 해당 정비 또는 보전에 관한 기본 방침(이하 "기본 방침"이라고 한다)을 결정해야 한다.

2. 기본 방침에 대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 1) 취락 지구 위치 및 지역에 대한 기본 사항
- 2) 취락 지구의 정비 또는 보전 목표
- 3) 촌락 지역의 토지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4) 촌락 지역의 농용지 및 농업용 시설 등의 정비, 기타 좋은 영농 조건의 확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5) 촌락 지역의 공공시설의 정비 및 양호한 주거 환경의 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3. 기본 방침은 국토 형성 계획, 수도권 정비 계획, 간키 지역 정비 계획, 중부권 개발 정비 계획 홋카이도 종합개발 계획, 오키나와 진흥 계획, 산촌 진흥 계획, 과소 지역 자립 촉진 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역 진흥에 관한 계획과 도로, 하천, 철도, 항만, 공항 등 시설에 대한 국가 계획과의 조화가 유지되는 것이어야 한다.
4. 도도부현 지사는 기본 방침을 결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도도부현 지사는 기본 방침을 결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에 명시된 마을 지역 위치 및 지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기타 정령으로 지정하는 사항을 미리 농림수산대신, 국토교통대신과 협의해야 한다.
6. 농림수산대신과 국토교통대신은 전항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7. 도도부현 지사는 기본 방침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농림수산대신과 국토교통대신에게 보고해야 한다.
8. 제4항에서 전항까지의 규정은 기본 방침의 변경에 준용한다.

### 제3장 취락 지구 계획

(취락 지구 계획)

제5조

취락 지역 토지의 지역에서, 영농 조건과 조화로운 양호한 주거 환경 확보와 적정한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그 취락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비 및 보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 계획에 취락 지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2. 취락 지구 계획은 기본 방침에 따라 결정해야한다.
3. 취락 지구 계획은 도시 계획법 제 12조의 4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취락 지구 계획의 목표, 기타 해당 지역의 정비 및 보전에 관한 정책 및 크게 해당 지역 내의 거주자 등의 이용에 제공되는 도로, 공원, 기타 정령으로 지정하는 시설(다음과 제5항에서 "취락 지구 시설"이라고 한다)과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하 이 장에서 "건축물 등"이라고 한다)의 정비 및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이하 이 장에서 "취락 지구 정비 계획"이라고 한다)을 도시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4. 취락 지구 정비 계획에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중 취락 지구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 1) 취락 지구 시설 배치 및 규모
- 2) 건축물 등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부지 면적에 대한 비율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모양 혹은 색채 다른 디자인의 제한, 기타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것
- 3) 현존하는 수림 지역, 초지 등 양호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보전에 관한 사항
- 4) 전 세 호에서 규정된 것 외에 토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정령으로 지정하는 것
5. 취락 지구 계획을 도시 계획으로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곳에 따라야한다.

- 1) 취락 지구 시설 배치와 규모는 그 취락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 및 그 주변에서 정해져있는 다른 도시 계획과 함께 적절한 배치와 규모의 공공 시설을 갖춘 좋은 거주 환경을 형성하거나 또는 유지하도록 필요한 위치에 적절한 규모로 결정하는 것
- 2)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등이 해당 취락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용도, 모양 등을 갖춘 적절한 토지 이용 형태를 같이 결정하는 것
6. 취락 지구 계획을 도시 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그 취락 지구 계획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취락 지구 정비 계획을 결정할 수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취락 지구 정비 계획을 결정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 경우, 취락 지구 계획 지역의 일부에 취락 지구 정비 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락 지구 계획은 취락 지구 정비 계획의 지역도 도시 계획을 결정해야 한다.

(행위의 신고 등)

#### 제6조

취락 지구 계획 지역(취락 지구 정비 계획이 결정되는 지역에 한한다) 내에서 토지 구획 형질 변경, 건축물 등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기타 정령으로 지정하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 활동에 착수하는 날의 30일 전에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의 종류, 위치, 설계 및 실행 방법 착수 예정, 기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정촌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일반적인 관리 활동, 경이한 행위, 기타 행위로 정령으로 지정한 것
- 2) 비상재해를 위해 필요한 응급조치로 행하는 활동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행위
- 4) 도시 계획 사업의 시행으로 하는 활동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행위

- 5) 도시 계획법 제29조제1항의 허가를 요하는 행위, 기타 정령으로 지정하는 행위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자는 그 신고에 관한 사항 중 설계 및 실행 방법, 기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의 변경에 관한 행위를 착수하는 날의 30일 전에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정촌 장에게 신고해야한다.
3. 시정촌 장은 앞의 두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 그 신고에 관한 행위가 취락 지구 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고를 한 자에 대해, 해당 신고에 관한 활동에 관해서 계획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4. 시정촌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권고를 받은 사람에게 토지에 관한 권리의 처리에 있어서의 알선, 그 외에 다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장 마을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 등

(마을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

##### 제7조

도시는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을 말한다. 제3항에서와 같다)을 달성하고, 취락 지역에 대해서 거주 환경과 조화를 이룬 좋은 영농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용지 및 농업용 시설 등의 정비를 일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마을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2. 마을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에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 1) 마을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 지역
  - 2) 전호의 지역 내의 토지 농업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
  - 3) 제1호의 지역 내의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2호, 제4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한 사항
3. 마을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은 기본 방침과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에 적합하고,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규정된 계획과의 조화가 유지되는 것으로, 전항 제1호 지역의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그 지역에서 종합적으로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4.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8조제 4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 12조(제1항 후단을 제외한다) 및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4항의 규정은 마을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전단 중 "농업 진흥 지역 기본 방침"인 것은 "취락 지역 정비 법 제4조제1항의 기본 방침이나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으로, "변경 사항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 조사의 결과에 따라 "인 것은 "변경에 의해"로, 동조 제4항 중 "제8조제4항 및 제 11조(제12항을 제외한다)"인 것은 "제8조제4항"으로, "제 12조"인 것은 "제 12조(제1항 후단을 제외한다)"로 바꾼다.

(취락 지역의 농용지 보전 등에 관한 협정)

#### 제8조

마을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 구역 내의 상당 규모의 농용지에 대해 소유권, 지상 권한, 영소작권, 질권, 임차권, 사용 대차에 의한 권리 또는 기타의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제3항에서 "농용지 소유자 등"이라고 한다)는 그 농용지의 좋은 영농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농용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협정 (이하 이 장에서 "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협정이 적용 가능하다는 시정촌 장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2. 협정에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 1) 협정의 대상 농용지 지역(이하 이 장에서 "협정 지역"이라고 한다)
- 2) 농용지를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 협정을 위반했을 경우의 조치
- 4) 협정의 유효 기간
- 5) 기타 필요한 사항

3. 협정은 협정 지역 내의 농용지에 관해 농용지 소유자 등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4 협정의 내용은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5. 협정의 유효 기간은 10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협정의 인정 등)

#### 제9조

시정촌 장은 전조 제1항의 인정 신청이 다음 각 호 전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인정을 하는 것으로 한다.

- 1) 신청 절차 또는 협정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 것
- 2) 협정 내용이 토지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것과 그 외에 적당한 것

- 3) 협정 내용이 마을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 달성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것
2. 시정촌 장은 전조 제1항의 인정을 했을 때는,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해당 협정의 사본을 그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소에 비치하고 공중에 종람을 제공함과 함께 협정 지역임을 해당 지역에 명시해야 한다.
3. 전 2항에서 규정된 것 외에 협정 인정(협정의 변경 승인을 포함) 및 그 취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지정한다.

(농용지 지역 지정의 특례)

#### 제10조

제8조제1항의 인정을 받은 협정에 관한 협정 지역의 농용지 소유자는 시정촌에 대해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농용지 당 소유권 이외의 동향에 규정하는 권리, 선취 특권 또는 저당권이 있는 사람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해당 농용지 지역을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1호의 농용지 지역(다음에서 "농용지 지역"이라고 한다)으로 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전항의 요청에 따라 시정촌이 동향의 요청에 관한 농용지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용지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서 제11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교환분합)

#### 제11조

도시는 마을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 구역 내의 농용지 보유 및 이용 현황 및 향후를 전망하고, 농업 기술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토지에서 농업상의 이용과 기타 이용과의 조정에 유의해서 해당 지역 내에 있 토지의 농업상 효율적인 이용 확보를 도모함과 동시에, 제8조제1항의 인정을 받은 협정을 유지하거나 또는 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협정 지역(협정 지역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며, 대부분에 대해 협정 지역이 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농용지 지역을 포함한다. 제3항에서 같다)에 있는 농용지를 포함한 마을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 구역 내에 특정 농용지에 대해 교환분합을 할 수 있다.

2. 시정촌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교환분합을 하려고 하면, 농림수산성령으로 지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분합 계획을 결정하고,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교환분합 계획은 마을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 구역 내의 토지를 농업에 이용 및 다른 사용자와 조정에 유의하고, 협정 지역 내에서 농용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확보함과 동시에 농용지의 집단화, 기타 농업 구조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 제12조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13조3의 규정 및 토지개량법(쇼와 20년 법률 제 195호) 제 99조(제1항을 제외한다), 제101조제2항, 제 102조부터 제 107조까지, 제108조제1항 및 제2항, 제 109조, 제 110조, 제 112조, 제 113조, 제 114조 제1항, 제 115조, 제 118조(제2항을 제외한다) 및 제 121조부터 제 123조 까지의 규정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분합에 대해서 준용한다. 이 경우, 이 약관을 준용 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적 독채<sup>33)</sup>는 정령으로 지정한다.

## 제5장 기타 조항

(권한의 위임)

### 제12조2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농림수산대신과 국토교통대신의 권한은 정령으로 지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지분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정령에의 위임)

### 제13조

이 법률에서 명시된 것 이외에 이 법률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지정한다.

(경과 조치)

### 제14조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명령을 제정 또는 개폐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령에 해당 제정 또는 개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소요 경과 조치(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포함)를 결정할 수 있다.

---

33) 법령 조문 중의 어떤 어구에 그와 같은 조건의 다른 어구를 대체하여, 새로운 조문을 만들지 않고 동격의 것으로서 적용하다

## 제6장 벌칙

### 제15조

제 12조에서 준용한 토지개량법 제 109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일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6조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은 1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사람의 대리인, 고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 또는 재산에 대해 이전 두 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사람 대하여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부칙

(시행 기일)

###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 기준법의 일부 개정)

### 제2조

건축 기준법(쇼와 25년 법률 제 201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25호를 제28호로 하고, 제24호 후에 다음의 세 항을 추가한다.

### 제25조

취락 지구 계획 도시 계획법 제 12조의 4 제1항 제3호에서 규정된 취락 지구 계획을 말한다.

### 제26조

취락 지구 정비 계획 취락 지역 정비법(쇼와 62년 법률 제63호)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취락 지구 정비 계획을 말한다.

### 제27조

지구 계획 등 도시 계획법 제4조제9항에서 규정된 지역 계획 등을 말한다.

## 제68조2

제1항 중 "지역 계획 또는 도로변 정비 계획"을 "지구 계획 등"으로 개명 "(지구 계획"아래에 "또는 취락 지구 계획"을, "지구 정비 계획"아래에 "또는 취락 지구 정비 계획"을 추가하고 ""지구 계획 등의 지역"이라고 말한다"를 "같다"라고 수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고려" 아래에 "지구 계획이나 도로변 정비 계획 지역에서"를, "보장하기 위해서" 아래에 "취락 지구 계획 지역으로 그 취락 지구 계획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양호한 주거 환경 확보와 적정한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각"을 추가한다.

제68조3 및 제 68조의 4 제1항 중 "지역 계획 또는 도로변 정비 계획" 및 "이 계획"을 "지구 계획 등"으로 수정한다.

## (농지법의 일부 개정)

### 제3조

농지법(쇼와 27년 법률 제 229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호 중 "혹은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쇼와 44년 법률 제 58호)"를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쇼와 44년 법률 제58호) 혹은 취락 지역 정비법(쇼와 62년 법률 제63호)"로 수정한다.

## (도시 계획법의 일부 개정)

### 제4조

도시 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4 제1항 다음에 한 호를 추가한다.

3 마을 지역 정비법(쇼와 62년 법률 제63호)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락 지구 계획

제12조의 4 제7항 중 "도로변 정비 계획"아래에 "및 취락 지구 계획"을 추가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9호를 제10호와 제8호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9. 취락 지구 계획은 영농 조건과 조화를 이룬 주거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토지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결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및 도로변 정비 계획"을 ", 도로변 정비 계획 및 취락 지구 계획"으로 수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및 도로변 정비 계획 구역"을 "도로변 정비 계획 지역과 취락 지구 계획 지역(취락 지구 계획 지역의 일부에 취락 지구 정비 계획(취락지역정비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락 지구 정비 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마을 지구 계획 지역과 취락 지구 정비 계획 지역)"으로 수정.

제21조제1항 중 "제13조제1항 제9호"를 "제13조제1항 제10호"로 수정한다.



제33조제1항 제5호 중 "지역 계획(그 토지에 대하여 지구 정비 계획이 정해져있는 것에 한한다) 또는 도로변 정비 계획"을 "지구 계획 등(지역 계획 또는 취락 지구 계획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구 정비 계획 또는 취락 지구 정비 계획이 정해져있는 것에 한한다)에 "해당 지역 계획 또는 도로변 정비 계획"을 "해당 지구 계획 등"으로 수정한다.

제34조제8호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8. 2) 취락 지구 계획 지역(취락 지구 정비 계획이 결정되는 지역에 한한다) 내에서 그 취락 지구 계획에 명시된 내용에 부합하는 건축물 또는 제 1종 특정공작물의 건축 또는 건설에 대한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 행위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제5조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차에서 "제 13조의 5"을 "제 13조의 6"으로 수정한다.

제 4장 중 제 13조의 5 다음에 아래의 한 조를 추가한다.

(마을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

제 13조의 6 제8조제1항의 시정촌은 동조에서 규정된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 외에 별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정화조법의 일부 개정)

제6조

정화조법(쇼와 58년 법률 제43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제2조제25호 본문"을 "제2조제28호 본문"으로 수정한다.

(건설성 설치법 일부 개정)

제7조

건설성 설치법(쇼와 23년 법률 제113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 중 "및 민간 도시 개발 추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쇼와 62년 법률 제 62호)"를 "민간 도시 개발 추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쇼와 62년 법률 62호) 및 취락 지역 정비법(쇼와 62년 법률 제63호)"로 수정한다.

부칙(평성 2년 3월 31일 법률 제15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법률은 평성 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1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호에서 규정된 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 250조의 다음 5조, 절명 및 두관과 관명을 추가한 개정 규정 (동법 제 250조의 9 제1항에 관한 부분(두 의원의 동의를 얻기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한한다), 제40조중 자연 공원법 부칙 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 규정 (동법 부칙 제10항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 244조의 규정(농업 개혁 조장법 제 14조3 개정 규정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및 제 472조의 규정(시정촌 합병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8 조 및 제 17조의 개정 규정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 7조, 제 10조, 제 12조, 제59조단, 제60조제4항 및 제5항, 제 73 조, 제 77조, 제 157조 제4항에서 제6항까지, 제 160조, 제 163조, 제 164조 및 제 202조의 규정 공포의 날

(취락 지역 정비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제97조

시행일 전에 294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취락 지역 정비법(이하 이 조에서 "이전 취락 지역 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조제5항(동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정책은 제 294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 마을 지역 정비법(이하 이 조에서 "새로운 취락 지역 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조제5항(동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진행 기본 방침으로 본다.

2.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구 취락 지역 정비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신청은 새로운 취락 지역 정비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협의 제기로 본다.

3. 시행일 전에 구 취락 지역 정비법 제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구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구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마을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은 새로운 취락 지역 정비법 제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새로운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전단(신 농업 진흥 지

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마을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으로 본다.

4.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구 취락 지역 정비법 제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구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신청은 신 취락 지역 정비법 제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신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협의 제기로 본다.

(국가 등의 업무)

#### 제159조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 각각의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 이 법 시행 전에 지방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정령에 의해 관리되거나 집행하는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사무(부칙 제 161조에 "국가 등의 사무"라고 한다)는 이 법률의 시행 후, 지방 공공단체가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정령에 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다.

(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 조치)

#### 제160조

이 법률(부칙 제1조각호에서 규정된 조항은 해당 각 조항. 이하 이 조 및 부칙 제 163조에서 같다)의 시행 전에 개정 전 각각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한 허가 등의 처분, 기타 행위 (이하 이 조에서 "처분 등의 행위"라고 한다) 또는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개정 전 각각의 법률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허가 등의 신청, 기타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신청 등의 행위"라고 한다)에서 이 법률의 시행일에 이 활동에 관한 행정 사무를 해야 할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되는 것은, 부칙 2조에서 전조까지의 규정 또는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이것에 근거한 명령을 포함한다)의 경과 조치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률의 시행 일자 이후의 개정 후 각각의 법률 적용에 대해서는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의 해당 규정에 의한 처분 등의 행위 또는 신청 등의 행위로 본다.

2.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개정 전 각각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기관에 신고, 신고, 제출, 기타 수속을 해야하는 사항이 법률의 시행 일전에 그 절차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률 및 이에 근거한 정령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것 외에, 이것을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해당 기관에 보고, 신고, 제출, 기타 수속을 해야하는 사항이 절차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 법에 의한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의 신청에 관한 경과 조치)

제 161조

시행일 전에 한 국가 등의 사무에 관한 처분에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이하 이 조에서 "처분청"이라고 한다) 시행 일전에 행정 불복 심사법에 규정하는 상급 행정청(이하 이 조에서 "상급 행정청"이라고 한다)에 대해서 동법에 의한 이의 신청은 시행일 이후에도 그 처분청에 이어 상급 행정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 불복 심사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처분청의 상급 행정청으로 간주된 행정청은 시행일 이전에 그 처분청의 상급 행정청이었던 행정청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에도 상급 행정청으로 간주된 행정청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이 행정 불복 심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로 하는 업무는 새로운 지방자치법 제2조제9항 제1호로 규정하는 제1호 법정 수탁 사무로 한다.

(수수료에 관한 경과 조치)

제 162조

시행일 이전에 이 법에 의한 개정 전 각각의 법률(이것에 근거한 명령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 법률 및 이에 근거한 정령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제 163조

이 법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기타 경과 조치 정령에의 위임)

제 164조

이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 조치(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를 포함한다)는 정령으로 지정한다.

2. 부칙 제 18조, 제51조 및 제 184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지정한다.

(검토)

제 250조

새로운 지방자치법 제2조제9항 제1호로 규정하는 제1호 법정 수탁 사무는 가능한 새로 마련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지방자치법 별표 제 1로 내거는 것 및 새로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정령에 표시된 것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검토를 추가하고 적절한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 제251조

정부는 지방 공공단체가 사무와 사업을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에 따라 지방세 재원의 충실 확보의 방도에 대해 경제 상황의 추이 등을 감안하면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제252조

정부는 의료 보험 제도, 연금 제도 등 개혁에 따라 사회 보험 업무 처리 체제, 이것에 종사하는 직원의 본연의 자세 등에 대해서 피보험자 등의 편의를 확보, 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부칙(평성 11년 8월 4일 법률 제120호) 발췌

(시행 기일)

####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2년 3월 31일 법률 제 160호) 발췌

(시행 기일)

#### 제1조

이 법률(제2조및 제 3조를 제외한다)은 평성 1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2년 3월 31일 법률 제15호) 발췌

(시행 기일)

####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2년 5월 19일 법률 제73호) 발췌

(시행 기일)

####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4년 3월 31일 법률 제14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6년 6월 18일 법률 제109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제5조

이 법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정령에의 위임)

제6조

부칙 제 2조에서 전조까지 결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지정한다.

부칙(평성 16년 6월 18일 법률 제111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경관법(평성 16년 법률 제110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조중 도시 계획법 제 8조, 제 9조, 제 12조의 5 및 제 13조의 개정 규정, 제 3조, 제 5조, 제 7조에서 제 10조까지, 제 12조, 제16조중 도시 녹지법 제 35조의 개정 규정, 제 17조, 제 18조, 다음 조 및 부칙 제 4조, 제5조및 제 7조의 규정은 경관법 부칙 단 글에서 규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제5조

이 법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정령에의 위임)

제6조

부칙 제 2조에서 전조까지 결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지정한다.

부칙(평성 17년 6월 10일 법률 제53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7년 7월 29일 법률 제89호) 발췌

(시행 기일 등)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한 날 (이하 "시행일"이라고 한다)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다음 항 및 부칙 제 27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정령에의 위임)

제27조

이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지정한다.

부칙(평성 21년 6월 24일 법률 제57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호에서 규정된 규정은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부칙 제 43조의 규정 공포한 날

(정령에의 위임)

제43조

이 부칙에 명시된 것 이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지정한다.



취락 지역 정비법 시행령  
(쇼와 63년 2월 23일 정령 제25호)

최종개정 : 평성 17년 5월 25일 정령 제 182호

내각은 취락 지역 정비법(쇼와 62년 법률 제63호) 제2조제2항, 제4조제5항, 제5조제3항과 제4항, 제6조제1항, 제9조제3항 및 제 12조, 동법 제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쇼와 44년 법률 제58호) 제13조제1항과 제3항 및 취락 지역 정비법 제 12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쇼와 24년 법률 제 195호) 제 121조 제2항 규정에 근거해 이 정령을 제정한다.

(공공시설)

제1조

취락 지역 정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2항 정령으로 지정한 공중에 제공되는 시설은 하수도, 녹지, 광장, 하천, 수로 및 소방에 대해 제공되는 저수 시설로 한다.

(법 제4조제5항 정령으로 지정하는 사항)

제2조

법 제4조제5항 정령으로 지정하는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1) 취락 지구 위치 및 지역에 대한 기본 사항
- 2) 촌락 지역의 토지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취락 지구 시설)

제3조

법 제5조제3항 정령으로 지정하는 시설은 도시 계획법(쇼와 43년 법률 제100호) 제4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도시 계획 시설(제7조제1호에서 "도시 계획 시설"이라고 한다) 외의 시설인 도로 또는 공원, 녹지, 광장, 기타 공공 개방 장소로 한다.

(취락 지구 정비 계획에서 지정하는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법 제5조제4항 제2호의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령으로 지정하는 것은 건축물의 건축 형태, 공공시설, 기타 시설의 배치 등으로 보아, 하나의 단위로 그 마을

지역의 특성에 맞는 형태를 갖춘 좋은 환경 지역을 정비 하거나 또는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의 건축물 부지 면적의 최소한도, 벽면의 위치 제한 또는 담 구조의 제한으로 한다.

(신고를 요하는 행위)

#### 제5조

법 제6조제1항 각호 나열 이외의 부분의 정령으로 지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호에서 규정된 토지의 지역 내에서 실시하는 해당 각 호에서 지정하는 행위로 한다.

- 1) 취락 지구 계획에서 용도 제한이 정해져 있거나 또는 용도에 따라 건축물, 기타 공작물 (이하 이 조에서 다음 조 및 제 8조에서 "건축물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제한이 정해져있는 토지 지역 건축물 등의 용도 변경(용도 변경 후의 건축물 등이 취락 지구 계획에서 정한 용도 제한이나 용도에 따라 건축물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한한다)
- 2) 취락 지구 계획에서 건축물 등의 모양 혹은 색채, 그 외에 형태의 한계가 정해져있는 토지의 지역 건축물 등의 모양 혹은 색채, 기타 디자인의 변경
- 3) 취락 지구 계획에서 법 제5조제4항 제3호에서 규정된 사항이 정해져 있는 토지의 지역 삼림의 벌채

(통상의 관리 활동, 경미한 행위, 기타 행위)

#### 제6조

법 6조 제1항 제1호 정령으로 지정하는 행위는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1. 다음에 열거하는 토지의 구획 형질의 변경

- 1) 건물 등에서 가설 한 것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구획 형질의 변경
- 2) 기존 건축물 등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토지의 구획 형질의 변경
- 3)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행하는 토지의 구획 형질의 변경

##### 2. 다음에 열거하는 건축물 등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 1) 전호 1)에 규정된 건축물 등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 2) 옥외 광고물 표시 면적이 1평방미터 이하여야 하며, 높이가 3미터 이하인 표시 또는 그것을 위해 필요한 공작물(건축물 이외의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동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 3) 수도관, 하수도 관 및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지하에 설치된 것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 4) 건축물에 존재하는 구내 그 건축물에 부착된 건축 설비, 수신용 안테나(그 지원물을 포함한다), 깃대 및 이와 유사한 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 5) 농림수산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창고, 작업 헛간 및 이와 유사한 건축물 등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3. 다음에 열거하는 건축물 등의 용도 변경
  - 1) 제1호 1)에 규정된 건축물 등의 용도 변경
  - 2) 건축물 등의 용도를 앞호에서 규정된 것으로 한 건축물 등의 용도 변경
4. 제2호에 규정된 건축물 등의 모양 혹은 색채, 기타 디자인 변경
5. 다음에 열거하는 삼림의 벌채
  - 1) 제벌, 간벌 등 삼림의 보육을 위해 통상 행해지는 삼림의 벌채
  - 2) 죽은 삼림 또는 위험한 삼림의 벌채
  - 3) 자택의 생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삼림의 벌채
  - 4) 잘못 자란 삼림의 벌채
  - 5) 측량, 실지 조사 또는 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는 삼림의 벌채
6. 전 각호에서 규정된 것 외에,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처분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행위

(도시 계획 사업의 시행으로 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

#### 제7조

법 6조 제1항 제4호 도시 계획 사업 시행으로 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것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1) 도시 계획 시설을 관리하게 된 자가 그 도시 시설에 대한 도시 계획을 준수하여 수행하는 활동
- 2) 토지 구획 정리법(쇼와 29년 법률 제119호)에 의한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으로 하는 행위

(법 제6조제1항 제5호 정령으로 지정하는 행위)

#### 제8조

법 제6조제1항 제5호 정령으로 지정하는 행위는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1) 도시 계획법 제43조제1항 허가를 요하는 건축물 등의 신축, 개축 또는 용도 변경 시 그 건축물 등에 대해 취락 지구 계획에서 용도 제한만이 정해져있는 것
- 2) 건축 기준법(쇼와 25년 법률 제 201호) 제6조제1항의 확인 또는 동법 제18조 제2항의 통지를 요하는 건축물 등의 신축, 개축이나 증축 또는 용도 변경으로 그 건축물 등 또는 그 부지에 취락 지구 계획에서 정한 내용의 전부가 동법 제68조2 제1항 규정에 근거한 조례 제한으로 정해져있는 것
- 3) 도시 녹지법(쇼와 48년 법률 72호)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동항의 허가를 요한 동법 제14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행위

4) 도시 계획법 제29조제1항 제3호에서 규정된 개발 행위, 기타 공익에 필요한 사업의 실시에 관한 행위, 취약 지구 계획의 목표 달성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것들 중 용도상 또는 구조상 어쩔 수없는 것으로 국토교통성령으로 지정하는 것

(취락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 변경)

제9조

시정촌은 법 제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약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

(취락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에 관한 경미한 변경)

제10조

도시가 정한 취약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에 관한 법 제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정령으로 지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해당 지역의 명칭 변경 또는 지번 변경에 따른 변경으로 한다.

(협약의 변경 등)

제11조

법 제8조제1항 인증을 받은 협정(이하 이 조에서 "협정"이라고 한다)에 관한 농용지 소유자 등은 협정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농림수산성령으로 지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원의 합의로 그 취지를 결정하고, 시정촌 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2. 법 제9조제1항과 제2항 규정은 전항의 인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3. 시정촌 장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1) 협정의 내용이 법 제8조제4항 규정에 위반하는 것 또는 법 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협정의 대상 농용지의 보전과 이용이 해당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해지고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독채<sup>34</sup>) 규정)

제12조

---

34) 독채: 법령 조문 중의 어떤 어구에 그와 같은 조건의 다른 어구를 대체하여, 새로운 조문을 만들지 않고 동격의 것으로서 적용하는 것

법 제12조규정에 의하여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과 토지 개량법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13조3 제1항 및 제3항 중 "토지"인 것은 "농용지"로 교체하는 것 외에 다음 표 위의 입력란에 게시한 토지 개량법 규정 중 동표의 가운데 란에 게시된 것은 각각 동표의 하단의 어휘와 교체하는 것으로 한다.

제99조제2항 전항 취락 지역 정비법 제11조제2항

제99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 및 제11항에서 제13항까지 제1항 취락 지역 정비법 제11조제2항

제105조제102조제1항 제102조제1항 또는 취락 지역 정비법 제 12조에서 준용하는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13조3 제1항 전단

제106조제2항 소멸한다. 소멸 시, 취락 지역 정비법 제 12조에서 준용하는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13조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가 취득하는 농용지를 정하지 않고, 그 소유자가 잃은 농용지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잃은 농용지에 대해서 동항 또는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권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그 잃은 농용지의 소유권이 이전했을 때 소멸한다.

포함한다) 포함한다) 또는 취락 지역 정비법 제 12조에서 준용하는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13조3 제3항

제113조 또는 이 법에 기반한 명령 혹은 이 법률에 근거한 명령 또는 취락 지역 정비법 제 12조에서 준용하는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13조3 제1항 제113조, 제114조 제1항, 제115조, 제118조 제1항, 제122조 제1항 및 제123조 제1항 토지개량사업 취락 지역 정비법에 의한 교환분합

(수용위원회에 대한 판결의 신청 절차)

### 제13조

법 제 12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 12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 수용법(쇼와 26년 법률 제 219호) 제9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토지 개량법 시행령(쇼와 24년 정령 제 295호) 제74조규정을 준용한다.

(권한의 위임)

### 제14조

법 제4조제7항(동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 대신과 국토교통대신의 권한은 지방농정국장 및 지역정비국장과 북해도 개발국장에게 위임한다.

## 부칙

(시행 기일)

### 제1조

이 정령은 법의 시행일(쇼와 6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축 기준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제2조

건축 기준법 시행령(쇼와 25년 정령 제 338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36조 2-2 제1항 중 "지역 계획 또는 도로변 정비 계획(이하 "지역 계획 등"이라고 한다)"를 "지구 계획 등"으로 수정하고 동항 제1호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 3) 취락 지구 계획 지역으로 그 취락 지구 계획 지역의 특성에 맞는 좋은 주거 환경의 보전 등에 공헌하는 합리적 제한이 분명한 것

제 136조 2-2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4. 건축물 부지 면적의 최소한도 아래에 규정된 것

- 1) 지구 계획이나 도로변 정비 계획 지역으로 건축물의 부지가 세분화되는 것에 의해, 또는 건축물이 밀집하여 주택 등의 부지 내에 필요로 하는 광활한 지역의 확보 또는 건축의 안전, 화재 안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지역의 양호한 주거 등의 환경 정비 개량에 공헌하는 합리적인 수치인 것
- 2) 취락 지구 계획 지역으로 건축물의 부지가 세분화되는 것에 의해, 주택 등의 부지 내에 필요로 하는 광활한 지역의 확보 또는 건축물의 안전, 방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취락 지구 계획 지역의 특성에 맞는 좋은 주거 환경의 보전 등에 공헌하는 합리적인 수치인 것

(조세 특별 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제3조

조세 특별 조치법 시행령(쇼와 32년 정령 제43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2 제4항 및 제 28조의 5 제4항 중 "제2조제25호 본문"을 "제2조제28호 본문"으로 수정한다.

(노동복지사업단 시행령의 일부 개정)

### 제 4조

노동복지사업단 시행령(쇼와 32년 정령 제 161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제13호를 제14호로,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제11호 다음에 아래의 한 호 을 추가한다.

12. 마을 지역 정비법(쇼와 62년 법률 제63호) 제6조제1항 제3호

(고용 촉진 사업단 시행령의 일부 개정)

제5조

고용 촉진 사업단 시행령(쇼와 36년 정령 제 206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9호를 제10호로, 제8호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9. 마을 지역 정비법(쇼와 62년 법률 제63호) 제6조제1항 제3호

(수자원개발공단 시행령의 일부 개정)

제6조

수자원개발공단 시행령(쇼와 37년 정령 제 177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19호를 제20호로 하고, 제15호에서 제18호까지 한 호씩 차례대로  
내리고, 제14호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15. 취락 지역 정비법(쇼와 62년 법률 제63호) 제6조제1항 제3호

(지역 진흥 정비 공단 시행령의 일부 개정)

제7조

지역 진흥 정비 공단 시행령(쇼와 37년 정령 제 261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제14호를 제15  
호로 하고, 제13호의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14. 취락 지역 정비법(쇼와 62년 법률 제63호) 제6조제1항 제3호

(일본 철도 건설 공단 시행령의 일부 개정)

제8조

일본 철도 건설 공단 시행령(쇼와 39년 정령 제23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20호를 제21호로 하고, 제17호에서 제19호까지 한 호씩 차례대로  
내리고, 제16호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17. 취락 지역 정비법(쇼와 62년 법률 제63호) 제6조제1항 제3호

(택지 건물 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제9조

택지 건물 거래법 시행령(쇼와 39년 정령 제 383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의 2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12- 3 취락 지역 정비법(쇼와 62년 법률 제63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지방 주택 공급 공사 시행령의 일부 개정)

제10조지방 주택 공급 공사 시행령(쇼와 20년 정령 제 198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제14호에서 제16호까지 한 호씩 차례대로 내리고, 제13호의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14. 취락 지역 정비법(쇼와 62년 법률 제63호) 제6조제1항 제3호

(공해 방지 사업단 시행령의 일부 개정)

제11조공해 방지 사업단 시행령(쇼와 40년 정령 제 328)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8호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9. 취락 지역 정비법(쇼와 62년 법률 제63호) 제6조제1항 제3호

(신 동경 국제 공항 공단 시행령의 일부 개정)

제12조

신 동경 국제 공항 공단 시행령(쇼와 41년 정령 제 273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제11호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12. 취락 지역 정비법(쇼와 62년 법률 제63호) 제6조제1항 제3호

(공공용 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장애 예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제13조

공공용 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장애 예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쇼와 42년 정령 제 284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8호 제9호로 하고, 제5호에서 제7호까지 한 호씩 차례대로 내리고, 제4호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5. 취락 지역 정비법(쇼와 62년 법률 제63호) 제6조제1항 제3호

(석유 공단 시행령의 일부 개정)

제14조

석유 공단 시행령(쇼와 42년 정령 제 308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0호를 제11호로, 제9호의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10. 취락 지역 정비법(쇼와 62년 법률 제63호) 제6조제1항 제3호

(도시 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

제15조

도시 계획법 시행령(쇼와 44년 정령 제 158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제2호 중 "제8호"를 "제8호 2"로 수정하고, 동호를 동항 제3호로 하고, 동항 제1호의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2. 취락 지구 계획 지역(취락 지구 정비 계획이 결정되는 지역에 한한다)에는 그 허가 신청에 관련된 건축물 또는 제 1종 특정공작물의 용도가 그 취락 지구 계획에 결정된 내용에 적합한 것

제46조제5호 중 "및 도로변 정비 계획"을 ", 도로변 정비 계획 및 취락 지구 계획"으로 수정한다.

(혼슈, 시코쿠 연결교 시행령의 일부 개정)

제16조

혼슈, 시코쿠 연락교 시행령(쇼와 45년 정령 제 209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18호를 제19호로 하고, 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제15호의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16. 취락 지역 정비법(쇼와 62년 법률 제63호) 제6조제1항 제3호

(농민 연금 시행령의 일부 개정)

제17조

농민 연금 시행령(쇼와 45년 정령 제 266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중 "또는 농용지 개발 공단 법률"을 "농용지 개발 공단법 또는 취락 지역 정비법(쇼와 62년 법률 제63호)"로 수정한다.

(공유지 확대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제18조

공유지 확대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쇼와 47년 정령 제 284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6호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7. 취락 지역 정비법(쇼와 62년 법률 제63호) 제6조제1항 제3호

(일본 하수도사업단 시행령의 일부 개정)

제19조

일본하수도사업단 시행령(쇼와 47년 정령 제 286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제14호에서 제16호까지 한 호씩 차례대로 내리고, 제13호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14. 취락 지역 정비법(쇼와 62년 법률 제63호) 제6조제1항 제3호

(중소기업사업단 시행령의 일부 개정)

제20조

중소기업사업단 시행령(쇼와 55년 정령 제 241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6호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7. 취락 지역 정비법(쇼와 62년 법률 제63호) 제6조제1항 제3호

(주택 도시 정비 공단 시행령의 일부 개정)

제21조

주택 도시 정비 공단 시행령(쇼와 56년 정령 제 267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제21호를 제22호로 하고, 제18호에서 제20호까지 한 호씩 차례대로 내리고, 제17호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18. 취락 지역 정비법(쇼와 62년 법률 제63호) 제6조제1항 제3호

(농림수산성 조직령의 일부 개정)

제22조

농림수산성조직령(쇼와 27년 정령 제 389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10. 취락 지역 정비법(쇼와 62년 법률 제63호)의 시행에 관한 것.

(건설부조직령의 일부 개정)

제23조

건설부 조직령(쇼와 27년 정령 394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5호 중 "및 특정 공항 항공기 소음 대책 특별 조치법(쇼와 53년 법률 제26호)"를 "특정 공항 항공기 소음 대책 특별 조치법(쇼와 53년 법률 제26호) 및 취락 지역 정비법(쇼와 62년 법률 제63호)"로 수정한다.

제35조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7호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8. 취락 지역 정비법의 집행에 관한 것.

부칙(평성 12년 1월 4일 정령 제3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 "개정법"이라고 한다)의 시행일(평성 1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2년 6월 7일 정령 제 312호) 발췌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내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11년 법률 제88호)의 시행일(평성 1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3년 3월 30일 정령 제98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도시 계획법 및 건축 기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 "개정법"이라고 한다)의 시행일(평성 13년 5월 18일. 이하 "시행일"이라고 한다)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6년 12월 15일 정령 제 306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도시녹지보전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 "개정법"이라고 한다)의 시행 일(평성 16년 12월 17일. 이하 "시행일"이라고 한다)부터 시행한다.

(처분, 절차 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 조치)

제4조

개정법 부칙 제 2조에서 제 5조까지 및 전 두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시행일 전에 개정법에 의한 개정 전 각각의 법률 또는 이 정령에 의한 개정 전 각각의 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한 처분 절차, 기타 행위로, 개정법에 의한 개정 후 각각의 법률 또는 이 정령의 개정 후 각각의 정령에 해당 규정이 있는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한 처분 절차 및 기타 행위로 본다.

부칙(평성 17년 5월 25일 정령 제 182호)

이 정령은 경관법 부칙 단, 글에서 규정하는 규정의 시행일(평성 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취락 지역 정비법 시행 규칙  
(쇼와 63년 2월 23일 농림수산성 시행령 제4호)

최종개정 : 평성 16년 12월 15일 농림수산성 시행령 제98호

취락 지역 정비법(쇼와 62년 법률 제63호) 제9조제2항(취락 지역 정비법 시행령(쇼와 63년 정령 제25호)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제1항과 제11조제2항, 동법 제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쇼와 44년 법률 제58호) 제12조제2항(동법 제1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취락 지역 정비법 제 12 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쇼와 24년 법률 제195호) 제101조제2항, 제102조제2항(동법 제104조제2항과 제 10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 118조 제3항, 취락 지역 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이 시행령 제14조규정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시행령(쇼와 24년 정령 제 295호) 제74조규정에 의거, 취락 지역 정비법을 실시하기 위해 취락 지역 정비법 시행 규칙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취락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 수립 또는 변경)

제1조

시정촌이 취락 지역 정비 방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동항 취락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을 결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시정촌의 장은 농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2. 전항의 규정은 법 제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해 시정촌이 실시하는 마을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 변경(취락 지역 정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고 한다) 제 10조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에 준용한다.

제2조

시정촌은 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동항 취락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을 결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조 제2항 제1호의 지역을 결정하려고 할 때에는 글자, 작은 문자와 지면, 일정 지물, 시설, 가공 작물 또는 이들의 거리와 방향, 평면도 등에 의해 해당 지역을 밝히도록 정해야한다. 법 제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것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다.

(취락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서 등의 열람)

제3조

법 제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동법 제1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의하여 종람 가능한 취락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서 또는 그 사본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사무소에 항상 비치해 두어야 한다.

(협정의 인정을 받는 경우의 첨부 서류)

제4조

법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고자하는 경우 동조 제3항 합의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협정의 공고)

제5조

법 제9조제2항(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의한 공고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정촌의 사무소에 게시 장소에 게시하는 것, 기타 소정의 수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1) 협정의 명칭
- 2) 협정 지역을 표시한 도면
- 세) 협정 종람 위치

(협정 지역의 표시 방법)

제6조

법 제9조제2항(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의한 협정 지역의 표시는 협정 지역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협정 지역을 표시한 도면을 게시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협정에 관한 경미한 변경)

제7조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농림수산성령으로 지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해당 지역의 명칭 변경 또는 지번 변경에 따른 변경으로 한다.

(협약 변경 승인을 받는 경우의 첨부 서류)

제8조

시행령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한 협정 변경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동항 합의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농용지 지역 설정 요청)

제9조

법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한 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정촌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요청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2) 해당 요청에 관한 농용지의 소재, 지번, 지목, 용도 및 지적
  - 3) 해당 요청에 관한 농용지 당 지상 권한, 영소작권, 질권, 임차권, 사용 대차에 의한 권리 또는 기타의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선취 특권 또는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표시
2. 전항의 요청서는 법 제10조제1항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교환분합 계획 결정 절차)

제10조

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법 제 12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99조제3항에서 규정된 서면 외에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1) 법 제 12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99조제2항에서 준용한 동법 제52조제5항 전단의 회의록 등본
- 2) 법 제 12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102조제2항 단,(법 제 12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104조제2항과 제 10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동의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법 제 12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102조제3항 단,(법 제 12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104조제2항과 제 10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동의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법 제 12조에서 준용하는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13조3 제1항 전단의 제기 또는 동의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과 동항 후단의 동의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 3) 계획도
- 4) 법 제8조제1항 인증을 받은 협정을 유지하거나 또는 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환분합을 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다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

제11조

법 제 12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99조제2항에서 준용한 동법 제52조제5항 전단의 회의의 의원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준비하고, 참석한 그 회의의 조직원 중 두 명 이상의 사람들과 함께 이것에 서명(기명을 포함한다) 및 인장을 해야 한다.

- 1) 개회 일시 및 장소
- 2) 회의 조직원의 현재 수입과 참석자의 성명 또는 명칭
- 3) 의사 절차
- 4) 결의 사항
- 5) 찬반 수

#### 제12조

법 제 12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99조제5항 규정에 의한 공고는 동항 규정에 의하여 종람을 제공해야하는 서류의 명칭, 종람 기간과 장소를 도도부현의 공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2. 법 제 12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99조제2항 규정에 의한 공고는 도도부현의 공보에 의해 이루어져야한다.

(교환분합 계획의 결정 방법)

#### 제13조

법 제 12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101조제2항 농림수산성령으로 지정하는 처리에 제한이 있는 농용지는 민사 소송법(평성 8년 법률 제109호), 민사 집행법(쇼와 54년 법률 제4호), 인사 소송 절차법(메이지 31년 법률 제13호), 국세 징수법(쇼와 34년 법률 제147호) 그 외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용지로 한다.

#### 제14조

법 제 12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10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종합적인 감안은 해당 소유자가 취득한 모든 농용지와 잃은 모든 농용지의 용도 및 지적 및 동향에서 규정된 사항에 따라 평가하여 그 소유자가 취득한 모든 농용지와 잃은 모든 농용지의 등위에 대해서 해야한다.

2. 법 제 12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104조제2항과 제 107조에서 준용한 동법 제10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종합 감안은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취득 토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의 제기 또는 동의)

#### 제15조

법 제 12조에서 준용하는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13조3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제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정촌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제기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2) 해당 제기에 관한 농용지의 소재, 지번, 지목, 용도 및 지적
  - 3) 해당 제기에 관한 농용지 당 지상 권한, 영소작권, 질권, 임차권, 사용 대차에 의한 권리 또는 기타의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및 그 권리의 게시
2. 법 제 12조에서 준용하는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13조3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동의 또는 동향 후단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구할 때에는 그 동의에 관한 농용지의 소재, 지번, 지목, 용도 및 지적을 기재한 서면에 의해야 한다.

(서류의 제출로 대체하는 공고)

#### 제16조

법 제 12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 112조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시정촌의 사무소의 게시 장소에 5일간 제출해야하는 서류의 요지를 게시해야 한다.

2. 전항의 서류는 공고일로부터 10일간 해당 사무소에서 종람할 수 있어야 한다.

(측량 검사 통지)

#### 제17조

법 제 12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108조제1항 규정에 의한 통지는 출입 목적, 장소와 날짜를 표시해야 한다.

2. 법 제 12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108조제3항 규정에 의한 공고는 전항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하고, 시정촌의 사무소에 게시 장소에 5일간 게시해야 한다.

(손실 보상 재결 신청 수속 양식)

#### 제18조

시행령 제13조규정에 의하여 준용한 토지 개량 시행령 제74조농림수산성령으로 지정하는 양식은 별기양식으로 한다.

부칙

이 성령은 법의 시행일(쇼와 6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원년 6월 6일 농림수산성령 제27호)

이 성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2년 3월 17일 농림수산성령 제20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성령은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11년 법률 제120호)의 시행일(평성 1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2년 9월 1일 농림수산성령 제82호)

(시행 기일)

제1조

이 성령은 내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11년 법률 제88호)의 시행일(평성 1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다음 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6년 12월 15일 농림수산성령 제98호)

이 성령은 평성 1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기양식(제18조관계)

취락 지역 정비법 시행 규칙  
(쇼와 63년 2월 23일 건설성령 제2호)

최종개정 : 평성 16년 12월 15일 건설성령 제2호

취락 지역 정비법(쇼와 62년 법률 제63호) 제9조제2항(취락 지역 정비법 시행령(쇼와 63년 정령 제25호)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제1항과 제11조제2항, 동법 제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쇼와 44년 법률 제58호) 제12조제2항(동법 제1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취락 지역 정비법 제 12조에서 준용한 토지개량법(쇼와 24년 법률 제195호) 제101조제2항, 제102조제2항(동법 제104조제2항 및 제 10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 118조 제3항, 취락 지역 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이 시행령 제14조규정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 시행령(쇼와 24년 정령 제 295호) 제74조규정에 의거해 취락 지역 정비법을 실시하기 위해 취락 지역 정비법 시행 규칙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취락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 수립 또는 변경)

제1조

시정촌이 취락 지역 정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동항 취락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을 결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촌의 장은 농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은 법 7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해 시정촌이 실행하는 취락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 변경(취락 지역 정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고 한다) 제 10조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에 준용한다.

제2조

시정촌은 법 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동항 취락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을 결정하려고하는 경우에 동조 제2항 제1호 지역을 결정하려고 할 때, 글자, 작은 문자와 지번, 일정 지물, 시설, 가공 작물 또는 이들의 거리와 방향, 평면도 등에 의해 해당 지역을 밝히도록 결정해야한다. 법 제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것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다.

(취락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서 등의 열람)

### 제3조

법 제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동법 제1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의하여 종람을 제공하는 취락 농업 진흥 지역 정비 계획서 또는 그 사본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사무소에 항상 비치해 두어야 한다.

(협정의 인정을 받는 경우 첨부 서류)

### 제4조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고자하는 경우 동조 제3항의 합의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협정의 공고)

### 제5조

법 9조 제2항(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의한 공고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정촌의 사무소에 게시 장소에 게시하는 것, 기타 소정의 수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1) 협정의 명칭
- 2) 협정 지역을 표시한 도면
- 3) 협정 종람 위치

(협정 지역의 명시 방법)

### 제6조

법 9조 제2항(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의한 협정 지역의 명시는 협정 지역 내의 보기 쉬운 위치에 그 협정 지역을 표시한 도면을 배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협정에 관한 경미한 변경)

### 제7조

시행령 제11조제1항 농림수산성령으로 지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해당 지역의 명칭 변경 또는 지번 변경에 따른 변경으로 한다.

(협약 변경 승인을 받는 경우 첨부 서류)

제8조

시행령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한 협정 변경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합의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농용지 지역 지정 요청)

제9조

법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한 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정촌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요청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2) 해당 요청에 관한 농용지의 소재, 지번, 지목, 용도 및 지적
- 3) 해당 요청에 관한 농용지 당 지상 권한, 영소작권, 질권, 임차권, 사용 대차에 의한 권리 또는 기타의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선취 특권 또는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표시

2. 전항의 요청서에는 법 제10조제1항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교환분합 계획 결정 절차)

제10조

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 12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99조제3항에서 규정된 서면 외에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1) 법 제 12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99조제2항에서 준용한 동법 제52조제5항 전단의 회의록 등본
- 2) 법 제 12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102조제2항 단, (법 제 12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104조제2항과 제 10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동이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법 제 12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102조제3항 단, (법 제 12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104조제2항과 제 10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동이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법 제 12조에서 준용하는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13조3 제1항 전단의 제기 또는 동이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과 동항 후단의 동이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 3) 계획도
- 4) 법 제8조제1항의 인증을 받은 협정을 유지하거나 또는 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환분합을 하는 것을 특별히 필요로 하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

### 제11조

법 제 12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99조제2항에서 준용한 동법 제52조제5항 전단의 회의의 의원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준비하고, 참석한 그 회의의 조직원 중 두 명 이상의 사람들과 함께 이것에 서명(기명을 포함한다) 및 인장을 해야한다.

- 1) 개회 일시 및 장소
- 2) 회의 조직원의 현재 수입과 참석자의 성명 또는 명칭
- 3) 의사 절차
- 4) 결의 사항
- 5) 찬반 수

### 제12조

법 제 12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99조제5항 규정에 의한 공고는 동항 규정에 의하여 종람에 제공해야하는 서류의 명칭, 종람 기간과 장소를 도도부현의 공보에 게재해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2. 법 제 12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99조제2항 규정에 의한 공고는 도도부현의 공보에 의해 이루어져야한다.

(교환분합 계획의 결정 방법)

### 제13조

법 제 12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101조제 2에 농림수산성령으로 지정하는 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용지는 민사 소송법(평성 8년 법률 제109호), 민사 집행법(쇼와 54년 법률 제4호), 인사 소송 절차법(메이지 31년 법률 제13호), 국세 징수법(쇼와 34년 법률 제147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용지로 한다.

### 제14조

법 제 12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10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종합적인 감안은 해당 소유자가 취득한 모든 농용지와 잃은 모든 농용지의 용도 및 지적, 동항에서 규정된 사항에 따라 평가하여 그 소유자가 취득한 모든 농용지와 잃은 모든 농용지 등위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안된다.

2. 법 제 12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104조제2항과 제 107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10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종합 감안은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취득해야 하는 토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의 제기 또는 동의)

#### 제15조

법 제 12조에서 준용하는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13조3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제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정촌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제기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2) 해당 제기에 관한 농용지의 소재, 지번, 지목, 용도 및 지적
  - 3) 해당 제기에 관한 농용지 당 지상 권한, 영소작권, 질권, 임차권, 사용 대차에 의한 권리 또는 기타의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및 그 권리의 표시
2. 법 제 12조에서 준용하는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제13조3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동의 또는 동향 후단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구할 때에는 그 동의에 관한 농용지의 소재, 지번, 지목, 용도 및 지적을 기재한 서면에 의해야 한다.

(서류의 제출을 대체하는 공고)

#### 제16조

법 제 12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102조규정에 의한 공고는 시정촌의 사무소의 게시 장소에 5일간 제출해야하는 서류의 요지를 게시해야 한다.

2. 전항의 서류는 공고일로부터 10일간 해당 사무소에서 볼 수 있게 해야한다.

(측량 검사 통지)

#### 제17조

법 제 12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 128조 제1 항 규정에 의한 통지는 출입 목적, 장소와 날짜를 표시해야한다.

2. 법 제 12조에서 준용한 토지 개량법 제 18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공고는 전항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하고, 시정촌의 사무소의 게시 장소에 5일간 게시해야 한다.

(손실 보상의 재결 신청 절차 양식)

#### 제18조

시행령 제13조규정에 의하여 준용한 토지 개량 시행령 제74조농림수산성령으로 지정하는 양식은 아래를 양식한다.

부칙

이 성령은 법의 시행일(쇼와 6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원년 6월 6일 농림수산성령 제27호)

이 성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2년 3월 17일 농림수산성령 제20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성령은 농업 진흥 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11년 법률 제120호)의 시행 일자(평성 1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2년 9월 1일 농림수산성령 제82호)

(시행 기일)

제1조

이 성령은 내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11년 법률 제88호)의 시행 일자(평성 1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다음 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6년 12월 15일 농림수산성 시행령 제98호)

이 성령은 평성 1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기양식(제18조관계)



특정 농산 가공업 경영 개선 임시 조치법  
(평성 원년 7월 1일 법률 제 65 호)

최종개정 : 평성 21년 6월 24일 법률 제56호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최근의 농산 가공 품등 수입에 관련된 상황의 현저한 변화에 대처하여 특정 농산 가공 업체의 경영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새로운 경제 환경 적응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그로써 농업과 농산 가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서 "농산 가공품"이라 함은 농산물(축산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생산되는 음식료품, 기타 농산물 가공품을 말하며, "농산 가공업"은 농산 가공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이 법률에서 "특정 농산 가공업"은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이 농산물 가공 업체로, 해당 사업에 의해 생산되는 농산 가공품 또는 이와 경쟁 관계에 있는 농산 가공품(이들의 원료 또는 재료가 되는 농산물을 포함한다)의 수입에 관련된 상황의 현저한 변화는 그 사업을 행하는 상당수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지장을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특정 농산 가공업자"라 함은 특정 농산 가공업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계획의 승인)

제3조

특정 농산 가공업자 또는 사업 협동조합,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특정 농산 가공 업체를 직접 혹은 간접 구성원(이하 그냥 "구성원"이라고 한다)인 것(이하 "특정 사업 협동조합 등"이라고 한다)은 특정 설비(특정 농산 가공업에 속하는 사업에서 농산 가공품을 생산하는 설비로, 그 생산 능력이 크게 과승되었으며, 그 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농림수산성령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폐기, 사업 전환(다른 농산 가공업으로의 전환에 한한다. 제5조제1항에서 같다),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 개발 또는 이용(농산 가공업에 관한 것

에 한한다), 사업의 합리화, 기타 경영 개선을 도모하기위한 조치(특정 사업 협동조합 등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의 경영 개선을 도모하기위한 조치. 이하 "관리 개선 조치"라고 한다)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이것을 해당 계획에 관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에 제출하고, 그 계획이 적절하다는 승인을 받을 수 있다.

2. 특정 농산 가공업자 또는 특정 사업 협동조합 등 다른 특정 농산 가공 업체, 기타 특정 사업 협동조합 등 관련 업종(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이 농산 가공업 이자 특정 농산 가공업과 관련성이 높은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관련 농산 가공업자"라고 한다) 또는 사업 협동조합,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법인 관련 농산 가공 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것(이하 "관련 사업 협동조합 등"이라고 한다)과 관련하는 해당 사업(특정 사업 협동조합 등 또는 관련 사업 협동조합 등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 제휴(생산, 저장, 판매 혹은 신제품이나 새로운 기술의 연구 개발(농산 가공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의 공동화 또는 합병이나 영업의 전부 혹은 중요한 부분 양도 혹은 양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이것을 해당 계획에 관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에 제출하고, 그 계획이 적절하다는 승인을 받을 수 있다.

3.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해야한다.

- 1) 경영 개선 조치의 목표
- 2) 경영 개선 조치의 내용 및 실시시기
- 3) 경영 개선 조치의 실시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액수 및 그 조달 방법
- 4) 특정 사업 협동조합 등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 개발에 필요한 시험의 연구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에게 부담금의 부과를 하려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과 기준
- 5) 기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제2항의 계획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해야한다.

- 1) 제휴의 목표
- 2) 제휴 내용 및 실시시기
- 3) 제휴 프로그램 실시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액수 및 그 조달 방법
- 4) 특정 사업 협동조합 등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 개발 협력하는 데 필요한 시험의 연구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 또는 관련 농산 가공 업체에 부담금의 부과를 하려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과 기준
- 5) 기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도도부현 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 승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계획이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해야한다.

- 1) 해당 계획에 관한 특정 농산 가공 업체가 농산 가공 품등 수입에 관련된 상황의 현저한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경제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하는데 유효하고 적절한 것으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
- 2) 지역 농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 3)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

(계획의 변경 등)

#### 제4조

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승인 특정 농산 가공 업체 등"이라고 한다)는 그 승인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도도부현 지사는 승인 특정 농산 가공 업체 등이 승인에 관한 계획(전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승인이 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것. 이하 "승인 계획"이라고 한다)에 따라 경영 개선 조치 또는 사업 제휴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3. 전조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승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주식회사 일본 정책 금융 공사에서 자금 대출)

#### 제5조

주식회사 일본 정책 금융 공고는 주식회사 일본 정책 금융 공고법(평성 19년 법률 제57호) 제 11조에서 규정하는 업무 외에 승인 특정 농산 가공 업체 등(제3조 제2항의 승인에 관한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승인에 관한 출자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식품 안정 공급의 확보 또는 농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장기 저리 자금으로 승인 계획에 따라 경영 개선 조치 또는 제휴하는데 필요한 것 중, 신상품이나 새로운 기술의 연구 개발이나 이용(이들을 위해 시설을 개선하여 조성 혹은 특별비용을 지출하는 것 또는 이들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에 한한다)에 필요한 것 또는 사업 전환, 사업 합리화 혹은 제휴하는 데 필요한 생산이나 가공을 위한 시설 개선, 조성 혹은 취득에 필요한 것으로, 다른 금융 기관이 융통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중소기업인(동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인을 말한다)으로, 그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의 것에 한한다) 대출 업무를 할 수 있다.

2.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금의 대출 금리, 상환 기간 및 거치 기간은 정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일본 정책 금융 공고법에 의해 결정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일본 정책 금융 광고법이 실행하는 동항에 규정된 자금 대출에 관하여 주식회사 일본 정책 금융 광고법 제11조제1항 제6호,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호, 제14조제2호, 제53조, 제58조, 제59조제1항, 제64조제1항 제4호, 제73조제3호 및 별표 제2 제9호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법 제11조제1항 제6호 중 "제외한다"인 것은 "제외한다) 및 특정 농산 가공업 경영 개선 임시 조치법 제5조제1항에 규정한 업무"로, 동법 제12조제1항 중 "동항 제5호"인 것은 "특정 농산 가공업 경영 개선 임시 조치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업무 및 전조 제1항 제5호"로, 동법 제31조제2항 제1호, 제41조제2호 및 제64조제1항 제4호 중 "또는 별표 제2 제2호에 규정된 업무"인 것은 "별표 제2 제2호에 규정된 업무 또는 특정 농산 가공업 경영 개선 임시 조치법 제5조제1항에 규정한 업무"로, "동항 제5호"인 것은 "특정 농산 가공업 경영 개선 임시 조치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업무 및 제11조제1항 제5호"로, 동법 제53조중 "동항 제5호"인 것은 "특정 농산 가공업 경영 개선 임시 조치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업무 및 제11조제1항 제5호"로, 동법 제58조 및 제59조제1항 중 "이 법"인 것은 "이 법은 특정 농산 가공업 경영 개선 임시 조치법"으로, 동법 제73조제3호 중 "제11조"인 것은 "제11조 및 특정 농산 가공업 경영 개선 임시 조치법 제5조제1항"으로 동법 별표 제2에서 "또는 별표 제1에서 제4에 규정된 기금의 대출 업무"인 것은 "별표 제1에서 제4까지 규정된 기금 대출 업무 또는 특정 농산 가공업 경영 개선 임시 조치법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로 한다.

(과세의 특례)

제6조

제3조제1항의 승인을 받은 특정 농산 가공 업체가 승인 계획에 따르면 새로운 검색 또는 제작 기계 및 장비에 대해서는 조세 특별 조치법(쇼와 32년 법률 제26호)에 의거, 특별 상각을 할 수 있다.

(기금의 확보)

제7조

국가와 도도부현은 승인 특정 농산 가공 업체 등이 승인 계획에 따라 경영 개선 조치 또는 사업 제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 확보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지도와 조언)

제8조

국가와 도도부현은 승인 특정 농산 가공 업체 등에 대한 경영 개선 조치 또는 제후의 원활한 실시에 필요한 지도와 조언을 하도록 한다.

(합리화 시책의 추진)

제9조

국가와 도도부현은 특정 농산 가공 업체가 실행하는 경영 개선 조치 또는 제휴와 함께 특정 농산물 가공 업체의 새로운 경제 환경 적응을 원활하게하기 위해 농업 생산성 향상, 기술 연구 개발의 추진, 기타 농산 가공 산업의 합리화의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강구하도록 노력해야한다.

(고용 안정 등)

제10조

국가는 특정 농산 가공 업체가 농산 가공 품등 수입에 관련된 상황의 현저한 변화에 따라 사업 활동의 축소를 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특정 농산 가공 업체의 고용 근로자에 대한 실업 예방, 기타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한다.

2. 국가와 도도부현은 특정 농산 가공 업체가 사업 전환하는 경우 또는 사업 활동의 축소를 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특정 농산 가공 업체에 고용되어 노동자에 대한 직업 훈련 실시, 취업의 알선, 기타 그 사람의 직업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한다.

(보고 요구)

제11조

도도부현 지사는 승인 특정 농산 가공 업체 등에 대한 승인 계획의 실시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벌칙)

제12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은 1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사람의 대리인, 고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해 전항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하여 동항의 형을 과한다.

부칙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률의 해지)

제2조

이 법률은 평성 26년 6월 30일에 한해 그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그때까지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이 법률은 그 때 이후에도 그 효력이 있다.

(지방세법의 일부 개정)

제3조

지방세법(쇼와 25년 법률 제 226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6조 제2항 제4호의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14-2 특정 농산 가공업 경영 개선 임시 조치법(평성 원년 법률 제65호)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동법 제2조제2항에 규정된 특정 농산 가공업자 또는 동법 제3조제2항에 규정된 특정 사업 협동조합 등(동조 제 23항의 승인에 관한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승인에 관한 출자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정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이 동법 제4조제2항에 규정된 승인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동법 제3조제 1 항에 규정된 경영 개선 조치 또는 동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 제휴에 관련된 사업(정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공해주는 것에 한한다)에 대한 제공해주는 토지

부칙 제 11조의 4 다음에 아래의 두 항을 추가한다.

15. 도도부현은 특정 농산 가공업 경영 개선 임시 조치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동법 제2조제2항에 규정된 특정 농산 가공 업체가 동법 제4조제2항에 규정된 승인 계획에 따라 영업 양도(그 양도가 이 법의 시행일부터 평성 6년 3월 31일 사이에 된 것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 그 양도받은 자가 그 양도에 관한 부동산(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을 취득하며,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계속 3년 이상 해당 부동산을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 계획에 관한 사업(이것에 관한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동산 취득세는 해당 허가(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승인을 포함한다)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에만 해당 세액에서 가격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한다.

16 제73조25부터 제 73조의 27까지의 규정은 전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동산 취득세 세액의 징수 유예 및 그 취소 및 해당 부동산 취득 세액에 관한 지방 단체의 징수금의 반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73조제 1항 중 "토지 취득"인 것은 "부칙 제11조4 제15항에 규정된 부동산(이하 제73조2 제17항에서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취득"으로, "그 토지"인 것은 "해당 부동산"으로

"전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항 제1호"인 것은 "동항"으로, "동조 제1항 1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 토지의 취득에 대해서 해당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동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 토지 취득에 대해서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은 "해당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이"인 것은 "동항"으로, 동조 제2항 중 "토지"인 것은 "부동산"으로, 제73조24 제1항 중 "제73조26 제1항 제1호 또는 제2항 제1호"인 것은 "부칙 제11조4 제 5항"으로, 제73조26 제1항 중 "토지"인 것은 "부동산"으로, "제73조24 제1항 제1호 또는 제2항 제1호"인 것은 "부칙 제11조 4 .제5항"으로, "이들"인 것은 "동항"으로 바꾼다.

부칙 제32조3 제 29항 중 "다음 항"을 "제1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중 제13항을 제15항으로 하고,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고 동항의 아래에 다음의 한 항을 추가한다.

14 사업소용 가옥으로 제10항에 규정한 시설에 관한 것들의 신축 또는 증축에 해당 시설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가 건축주에 대하여 부과하는 신증설에 관한 사업소세의 과세 표준이 되어야 하는 신증설 사업소 바닥 면적의 산정은 해당 신축 또는 증축 평성 6년 3월 31일까지 열린 경우에만 해당 신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신증설 사업소 건평(제 701조 34(새로운 증설에 관한 사무소세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제해야한다. 이 경우에는 제 701조 41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32조3 제2항을 동조 제11항으로 하고 동조 제10항 중 "전항"을 "제9항"으로 수정하고 동항을 동조 제11항으로 하고, 동조 제9항의 다음에 아래의 한 항을 추가한다.

10 특정 농산 가공업 경영 개선 임시 조치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동법 제2조제2항에 규정된 특정 농산 가공업자 또는 동법 제 3조 제 1항에 규정된 특정 사업 협동조합 등(동조 제2항의 승인에 관한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승인에 관한 출자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정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이 동법 제4조제2항에 규정된 승인 계획에 따라 실시한 동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경영 개선 조치 또는 동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 제휴에 관한 사업에 대한 제공해주는 시설로 정령이 정하는 것에 관한 사업소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부과하는 사업에 관한 사업소세 중 자산세 또는 종업자 비율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 바닥면적 또는 종업원의 급여 총액의 산정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이 법인 사업인 경우에는 평성 6년 3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 연도 분, 해당 사업이 개인의 사업인 경우에는 평성 5년분까지 한하고, 해당 시설에 관한 사업소 등에 관련된 사업소 건평 또는 개업 임금 총액(제 701조 34(사업에 관한 사

업소세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같다)에서 해당 시설에 관한 사업소 건평 또는 직원 임금 총액에 각각 2분의 1을 곱하여 얻은 면적 또는 금액을 공제해야한다. 이 경우에는 제 701조 41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평성2년 3월 30일 법률 제5호) 발췌

(시행 기일)

1. 이 법률은 평성 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6년 7월 1일 법률 제68호) 발췌

(시행 기일)

1.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0년 3월 31일 법률 제23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1년 6월 30일 법률 제82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1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된 규정은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 250조의 다음에 제 5조, 절 이름 및 두관과 관명을 추가하는 개정 규정(동법 제 250조 9 제1항에 관한 부분(두 의원의 동의를 얻기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한한다), 제40조중 자연 공원법 부칙 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 규정(동법 부칙 제10항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 244조의 규정 (농업 개혁 조장법 제14조3의 개정 규정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및 제 472조의 규정 (시정촌 합병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8조및 제 17조의 개정 규정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 7조, 제 10조, 제 12조, 제59조단, 제60조제4항 및 제5항, 제 73조, 제 77조, 제 157조 제4항에서 제6항까지, 제 160조, 제 163조, 제 164조 및 제 200조의 규정 공포한 날

(국가 등의 업무)

제159조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 각각의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 이 법 시행 전에 지방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정령에 의해 관리되거나 집행하는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사무(부칙 제 161조에 "국가 등의 사무"라고 한다)가 법 시행 후, 지방 공공단체가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정령에 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취급하는 것으로 하다.

(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제160조

이 법률(부칙 제1조각호에 규정된 조항은 해당 각 조항. 이하 이 조 및 부칙 제 163조에서 같다)의 시행 전에 개정 전 각각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한 허가 등의 처분, 기타 행위(이하 이 조에서 "처분 등의 행위"라고 한다) 또는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개정 전 각각의 법률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허가 등의 신청, 기타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신청 등의 행위"라고 한다)에서 이 법률의 시행일부터 이 활동에 관한 행정 사무를 해야 할 사람이 다른 자로 되는 것은, 부칙 제 2조에서 전조까지의 규정 또는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이것에 근거한 명령을 포함한다)의 경과 조치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률의 시행일 이후의 개정 후 각각의 법률 적용에 대해서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의 해당 규정에 의한 처분 등의 행위 또는 신청 등의 행위로 본다.

2. 이 법률 시행 전에 개정 전 각각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기관에 신고, 신고, 제출, 기타 수속을 해야하는 사항이 법률의 시행일 전에 그 절차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률 및 이에 근거한 정령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것 외에, 이것을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해당 기관에 보고, 신고, 제출, 기타 수속을 해야하는 사항이 절차가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법에 의한 개정 후 각각의 법률 규정을 적용한다.

(이의 신청에 관한 경과 조치)

제161조

시행일 전에 한 국가 등의 사무에 관한 처분에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이하 이 조에서 "처분청"이라고 한다)에 시행일 전에 행정 불복 심사법에 규정하는 상급 행정청(이하 이 조에서 "상급 행정청"이라고 한다)이 있는 것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이의 신청은 시행일 이후에 그 처분청에 이어 상급 행정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 불복 심사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처분청의 상급 행정청으로 간주된 행정청은 시행일 이전에 그 처분청의 상급 행정청이었던 행정청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에도 상급 행정청으로 간주된 행정청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이 행정 불복 심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로 하는 업무는 새로운 지방자치법 제2조제9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1호 법정 수탁 사무로 한다.

(수수료에 관한 경과 조치)

제162조

시행일 이전에 이 법에 의한 개정 전 각각의 법률(이것에 근거한 명령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 법률 및 이에 근거한 정령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것 외에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제163조

이 법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기타 경과 조치 정령에의 위임)

제164조

이 부칙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 조치(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를 포함한다)는 정령으로 정한다.

2. 부칙 제 18조, 제51조 및 제 184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검토)

제250조

새로운 지방자치법 제2조제9항 제1호로 규정하는 제1호 법정 수탁 사무는 가능한 새로 마련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지방자치법 별표 제 1에 내거는 것과 새로운 지역 자치법에 근거한 정령에 표시된 것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검토를 추가하고 적절한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제251조

정부는 지방 공공단체가 사무와 사업을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에 따라 지방세 재원의 충실 확보의 방도에 대해 경제 상황의 추이 등을 감안하면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제252조

정부는 의료 보험 제도, 연금 제도 등 개혁에 따라 사회 보험 업무 처리 체제, 이것에 종사하는 직원의 본연의 자세 등에 대해서 피보험자 등의 편의를 확보, 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부칙(평성 11년 7월 30일 법률 제115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2년 3월 31일 법률 제13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3년 3월 30일 법률 제7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3년 4월 11일 법률 제28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6년 6월 9일 법률 제93호)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9년 5월 25일 법률 제58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제8조

이 법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정령에의 위임)

제9조

부칙 제 2조에서 전조까지 결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조정 정책)

제10조

이 법률과 기업 상공 조합 중앙금고법(평성 19년 법률 제 호), 주식회사 일본 정책 투자 은행법(평성 19년 법률 제 호) 또는 지방 공기업 등 금융 기구법(평성 19년 법률 제 호)에 동일한 법률 조항의 개정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개정 약관이 동일한 날짜에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 규정은 기업 상공 조합 중앙금고법, 주식회사 일본 정책 투자 은행법 또는 지방 공기업 등 금융 기구법에 따라 먼저 개정되어, 그 다음 이 법률에 의하여 개정되는 것으로 한다.

부칙(평성 21년 6월 24일 법률 제56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특정 농산 가공업 경영 개선 임시 조치법 시행령  
(평성 원년 7월 1일 정령 제 208호)

최종개정 : 평성 20년 9월 19일 정령 제 297호

내각은 특정 농산 가공업 경영 개선 임시 조치법(평성 원년 법률 제65호) 제3조제1항, 제2항과 제5항 제3호(동법 제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 정령을 제정한다.

(특정 사업 협동조합 등)

제1조

특정 농산 가공업 경영 개선 임시 조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제1항 특정 사업 협동조합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사업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
- 2) 농업 협동조합 연합회
- 3) 상공 조합 및 상공 조합 연합회
- 4) 일반 사단 법인(특정 사업을 하는 사람을 그 회원이 되는 자격으로 하며, 특정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것을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 한한다)

(관련 업종의 지정 기준)

제2조

법 제3조제2항 정령으로 지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이 해당 특정 농산 가공업과 동종의 재료 또는 재료를 사용하며, 제조 공정의 일부를 공통으로 하는 것, 기타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과 해당 특정 농산 가공업과 관련성이 높은 것
- 2) 해당 특정 농산 가공업자 또는 그 특정 사업 협동조합 등이 그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자 또는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다음 조에서 규정하는 법인과 협력하여 사업 제휴를 행하는 것이 해당 특정 농산 가공업자 또는 그 특정 사업 협동조합 등의 구성원의 경영 개선을 원활하고 적합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것

(관련 사업 협동조합 등)

### 제3조

법 제3조제2항의 관련 사업 협동조합 등은 제1조각호에 규정된 법인으로 한다.

(계획 승인의 기준)

### 제4조

법 제3조제5항 제3호(법 제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령으로 지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법 제3조제1항 계획에 있어서는 동조 제3항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이 경영 개선 조치를 확실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것이자 동항 제4호에 규정된 사항에 올바른 것
- 2) 법 제3조제2항 계획에 있어서는 동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이 제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것이자 동항 제4호에 규정된 사항에 올바른 것

(주식회사 일본 정책 금융 공사로부터의 자금 대출의 금리 등)

### 제5조

법 제5조제2항 정령으로 정하는 금리, 상환 기간 및 거치 기간의 범위는 금리에 대해서는 최고 년 8분의 5, 상환 기간은 거치 기간을 포함해서 15년, 거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 부칙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2 지방세법 시행령(쇼와 25년 정령 제 245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22 다음에 아래의 한 조를 추가한다.

(법 제 586조 제2항 제14호의 두 법인 등)

제54조22-2 법 제 586조 제2항 제4호 2에서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해당 작성자에게 특정 농산 가공업 경영 개선 임시 조치법(평성 원년 법률 제65호) 제3조제2항에 규정된 관련 농산 가공업자 또는 관련 사업 협동조합 등을 포함하지 않는 승인 계획(동법 제4조제2항에 규정된 승인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서 실행하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해당 승인 계획에 따라서 행하는 출자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으로 한다.

2 법 제 586조 제2항 제14호 2에서 규정하는 정령으로 지정하는 시설은 특정 농산 가공업 경영 개선 임시 조치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농산 가공품 생산을 위해 제공해주는 시설로 자치성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제9조4의 다음에 아래의 한 조를 추가한다.

(법 부칙 제11조4 제15항의 부동산 등)

제9조5

법 부칙 제11조4 제5항에서 규정하는 정령으로 지정하는 부동산은 이 항에 규정된 승인 계획(이하 본조에서 "승인 계획"이라고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항에서 규정하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부동산에 대하여 도도부현 지사의 인정을 받은 부동산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것 이외의 것으로 한다.

- 1) 사무소에 제공되는 부동산
- 2) 기숙사(업무상 기숙사를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기숙사를 제외한다)에 대해 제공되는 부동산
- 3) 직원의 복지와 후생을 위해 제공해주는 부동산
- 4) 전 두 호에 규정된 것 외에 다른 사람에게 대부하는 부동산
- 5) 휴면 상태에 있는 부동산(그 승인 계획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 제공해주는 것

으로 건설 계획(전 각호에 규정된 부동산 건설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제3항에서 같다)이 확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 법 부칙 제11조4 제15항에 규정하는 정령으로 지정하는 사업은 승인 계획에 관련된 사업에 이어 실시하는 해당 사업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업으로 한다.

3. 법 부칙 제11조4 제15항의 규정은 제1항에 규정된 부동산(휴먼 상태에 있는 부동산에서 승인 계획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 제공해주는 것으로 건설 계획을 확정하고 있는 것(이하 본 항에서 "건설 계획 중인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제외한다)이 취득일로부터 계속해서 3년 이상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열거한 부동산이 외의 부동산으로써 해당 사업 또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때(그 부동산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휴먼 상태로 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1항에 규정된 부동산 중 건설 계획 중인 부동산 인 것에 대해서 그 건설 계획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특정 농산 가공업 경영 개선 임시 조치법의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한한다)에 건설이 시작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칙 제16조2-8 제9항 중 "부칙 제32조3-2 제10항 및 제12항"을 "부칙 제32조3-2 제11항 및 제13항"으로, "동조 제10항"을 "동조 제11항"으로,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수정하고 동항을 동조 제11항으로 하고, 동조 제8항 중 "부칙 제32조3-2 제10항 또는 제11항"을 "부칙 제32조3-2 제11항, 제12항 또는 제14항"으로, "동조 제10항 또는 제11항"을 "동조 제11항, 제12항 또는 제14항"으로 수정하고, 동항을 동조 제10항으로 하고, 동조 제7항 중 "부칙 제32조3-2 제10항에"를 "부칙 제32조3-2 제11항에"로 "또는 동조 제11항에서 규정하는 승인 특정 사업자(동항에 규정하는 관계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동조 제12항에 규정된 승인 특정 사업자(동항에 규정하는 관계 사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동조 제14항에 규정된 사업을 하는 자"로, "부칙 제32조3-2 제10항 또는 제11항"을 "부칙 제32조3-2 제11항, 제12항 또는 제14항"을 "부칙 제16조2-8 제7항"을 "부칙 제16조2-8 제9항"으로 수정하고, 동항을 동조 제9항으로 하고 동조 제6항 중 "부칙 제32조3-2 제9항"을 "부칙 제32조3-2 제9항 또는 제10항"으로 수정하고 동항을 동조 제8항으로 하고, 동조 제 다5항 중 "부칙 제32조3-2 제9항"을 "부칙 제32조 3-2 제9항 또는 제10항"으로, "동항"을 "동조 제9항 또는 제10항"으로, "동항 중"을 "이 규정 중"으로 수정하고, 동항을 동조 제7항으로 하고, 동조 제4항을 동조 제6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부칙 제32조3-2 제11항"을 "부칙 제32조3-2 제12항"으로 수정하고, 동항을 동조 제5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다음에 아래의 두 항을 추가한다.

3. 법 부칙 제32조3-2 제10항에서 규정하는 정령으로 지정하는 법인은 제54조 22-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한다.



4. 법 부칙 제32조3-2 제10항에서 규정하는 정령으로 지정하는 시설은 제54조 22-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설로 한다.

(농림수산업 조직령의 일부 개정)

제3조

농림수산업조직령(쇼와 27년 정령 제 389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6호 중 "전호"를 "이전 두 호"로 수정하고, 동호를 동조 제7호로 하고, 동조 제5호의 다음에 아래의 한 호를 추가한다.

- 6) 특정 농산 가공업 경영 개선 임시 조치법(평성 원년 법률 제65호)의 시행에 관한 것

부칙(평성 19년 3월 2일 정령 제39호)

이 정령은 일반 사단 법인 및 일반 재단 법인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20년 9월 19일 정령 제 297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평성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정 농산 가공업 경영 개선 임시 조치법 시행 규칙  
(평성 원년 7월 1일 농림수산성령 제29호)

최종개정 : 평성 12년3월 15일 농림수산성령 제17호

특정 농산 가공업 경영 개선 임시 조치법(평성 원년 법률 제65호) 제2조제2항과 제3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 근거하여 특정 농산 가공업 경영 개선 임시 조치법 시행 규칙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특정 농산 가공업)

제1조

특정 농산 가공업 경영 개선 임시 조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2항에서 농림 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이한다.

- 1) 감귤 과즙 제조업
- 2) 비 감귤 과즙 제조업
- 3) 파인애플 통조림 제조업
- 4) 곤약 제조업
- 5) 토마토 가공품 제조업
- 6) 고구마 전분 제조업
- 7) 감자 전분 제조업
- 8) 쌀 가공품 제조업
- 9) 보리 가공품 제조업
- 10) 생활 용품 제조업
- 11) 쇠고기 조제품 제조업
- 12) 돼지고기 조제품 제조업

(특정 설비)

## 제2조

법 제3조제1항에서 농림수산물성령으로 정하는 설비는 다음과 같이한다. 단, 평성 7년 3월 31일 이전(내 2호에 규정된 설비는 평성 원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하거나 또는 제작한 것에 한한다.

- 1) 곤약 생산에 제공되는 분말 가공 설비와 정밀 분말 가공 설비
- 2) 고구마 전분 또는 감자 전분 생산에 제공되는 분리설비, 정제설비, 탈수설비 및 건조설비
- 3) 쌀 가공품 중 쌀가루 생산에 제공되는 정선<sup>35)</sup>설비, 건조설비 및 제분 설비
- 4) 쌀 가공품 중 포장 떡의 생산에 제공되는 설비, 화물 포장설비 및 살균설비
- 5) 쌀 가공품 중 가공 쌀밥의 생산에 제공되는 취사설비, 냉동설비, 화물 포장설비 및 살균설비
- 6) 쌀 가공품 중 쌀 과자 생산에 제공되는 최선의 설비, 증련설비, 압연설비, 건조설비, 절단설비 및 냉장설비
- 7) 쌀 가공품 중 일본 화과자 생산에 제공되는 혼합설비, 찜 기능설비, 증련 설비, 절단설비, 떡 절단설비 및 관자설비
- 8) 보리 가공품 중 가루 생산에 제공되는 최상의 설비, 제분설비 및 포장설비
- 9) 보리 가공품 중 밀 전분 생산에 제공되는 분리설비, 정유설비 및 건조설비
- 10) 보리 가공품 중 정맥 생산에 제공되는 최선의 설비, 정맥설비 및 포장설비
- 11) 보리 가공품 중 보리차 생산에 제공되는 최선의 설비, 볶는 기능의 설비와 화물 포장설비
- 12) 유제품 중 우유 및 이와 유사한 것의 생산에 제공되는 정결화 기능 설비, 표준화 기능 설비, 살균 기능 설비, 세척 설비와 화물 포장 설비
- 13) 유제품 중 버터 생산에 제공되는 엔진 기능, 회전 설비와 화물 포장 설비
- 14) 유제품 중 탈지분유 생산에 제공되는 농축 설비, 건조 설비 및 화물 포장 설비
- 15) 유제품 중 발효유 생산에 제공되는 화물 포장 설비, 발효 설비 및 냉각 설비
- 16) 돼지고기 제품 생산에 제공되는 저장 설비, 고기 절단 설비, 혼합 설비, 연기 설비 및 살균 기능 설비

---

35) 정밀하게 잘 골라 뽑음

(관련 업종)

제3조

법 제3조제2항에서 농림수산물성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과실 가공 식품 제조업(제1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 열거한 업종을 제외한다)
- 2) 곤약 제품 제조업
- 3) 고구마 전분 가공 식품 제조업
- 4) 감자 전분 가공 식품 제조업
- 5) 쌀과자 제조업
- 6) 된장 제조업(쌀이나 보리를 원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7) 간장 제조업
- 8) 면 제조업(밀가루를 원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9) 빵 제조업
- 10) 건빵 제조업(센베이 제조업(밀가루를 원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 11) 냉동식품 제조업(우유 또는 유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해, 제1조제10호에 규정된 업종을 제외한다)
- 12) 육류 조제품 제조업(제1조제 11보 및 제12호에 규정된 업종을 제외한다)

(경영 개선 조치에 관한 계획의 기재 사항)

제4조

법 제3조제3항 제5호에서 농림수산물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경영 개선 조치의 실시에 따른 설비의 설치 또는 폐기 혹은 양도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사업 제휴에 관한 계획의 기재 사항)

제5조

법 제3조제4항 제5호에서 농림수산물성령으로 지정하는 사항은 제휴의 실시에 따라 필요한 자금과 부동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계획에 관한 기준)

제6조

법 제3조제5항 제1호(법 제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농림수산성령으로 지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한다.

- 1)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 계획의 달성 전망이 확실한 것
- 2) 법 제3조제1항 계획에 있어서는 동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사항이 경영 개선 조치의 실시를 통한 매출액 또는 경영 이익의 증가율을 목표로 농림수산대신이 정한 비율을 상회하는 비율을 정하는 것

부칙

이 성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6년 6월 29일 농림수산성령 제41호)

이 성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7년 3월 31일 농림수산성령 제22호)

이 성령은 평성 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1년 3월 30일 농림수산성령 제13호)

이 성령은 평성 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2년 3월 15일 농림수산성령 제17호)

이 성령은 평성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생산 녹지법

(쇼와 49년 6월 1일 법률 68호)

최종개정 : 평성 11년 12월 22일 법률 제 160호

(목적)

### 제1조

이 법률은 생산 녹지 지역에 대하여 도시 계획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림 어업과의 조정을 도모하며 양호한 도시 환경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 제2조

이 법률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용어의 의미는 각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농지 등 현재 농업용으로 제공되는 농지 혹은 채초방목지는 현재 임업용으로 제공되는 삼림이나 현재 어업용으로 제공되는 지소(이것들에 인접하며 이들과 일체가 된 농림어업용으로 제공되는 농업용 도로, 그 외에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공공시설 등 공원, 녹지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공용에 제공되는 시설 및 학교, 병원, 기타 공익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정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생산 녹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생산 녹지 지역의 지역 내 토지 또는 삼림을 말한다.
4.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자치단체와 토지개발공사 그 외에 정령이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책무)

### 제2조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원, 녹지, 기타 공공지역 정비의 현황 및 향후 전망을 감안하여 도시의 농지 등의 적절한 보호를 도모하여 양호한 도시 환경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생산 녹지 지역에 대한 도시 계획)

제3조시가화 구역(도시 계획법(쇼와 43년 법률 제100호)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시가화 구역을 말한다) 안에 있는 농지 등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시 계획 생산 녹지 지역을 결정할 수 있다.

- 1) 공해 또는 재해 예방, 농림 어업과 조화를 이룬 도시 환경의 보전 등 양호한 생활환경의 확보에 상당한 효과가 있고, 공공시설 등의 부지에 제공해주는 땅으로 적합한 것일 것.
- 2) 500평방미터 이상 규모의 지역이다.
- 3) 그 외에 상황을 감안하여 농림 어업의 지속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것.

2. 생산 녹지 지역에 대한 도시 계획 방안은대도시 지역의 주택과 주거 지역의 공급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쇼와 50년 법률 제67호) 제106조제3항 또는 농주조합법(쇼와 55년 법률 86호) 제8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토지 지역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해당 생산 녹지 지역안의 농지 등(토지구획정리법(쇼와 29년 법률 제119호) 제98조제1항(대도시 지역의 주택과 주거 지역의 공급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의해 반환지로 지정된 농지 등에 있어서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종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대항 요건을 갖춘 지상 권한이나 임차권 또는 등록하는 영소작권, 선취특권, 질권이나 저당권이 있는 자 및 이들의 권리에 관한 반등기, 이 권리에 관해서는 등록 또는 그 농지 등에 관한 구속 특약의 등기의 등기명의인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3. 생산 녹지 지역에 대한 도시 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그 생산 녹지 지역에 관한 농지 등 및 그 주변 지역의 간선 도로, 하수도 등 주요 도시 시설의 정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며, 해당 도시 계획 구역 내의 토지 이용 동향, 인구와 산업의 향후 전망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에 지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표지의 설치 등)

제6조

시정촌은 생산 녹지 지역에 대한 도시 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그 지역에 이를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해야한다.

2. 해당 생산 녹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러한 표지의 설치를 거절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

3. 어느 누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를 설치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이전하거나 혹은 제거하거나 또는 파손, 혹은 파괴해서는 안 된다.
4. 도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 손실을 보상한다.
5. 전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대해서는 시정촌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야 한다.
6. 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국장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법(쇼와 26년 법률 제 219호) 제9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생산 녹지 관리)

제7조

생산 녹지에 사용 또는 수익의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생산 녹지를 농지 등으로 해서 관리해야 한다.

2. 생산 녹지에 사용 또는 수익의 권리가 있는 시정촌장에게 해당 생산 녹지를 농지 등으로 해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조언, 토지 교환의 알선, 그 외에 다른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생산 녹지 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제8조

생산 녹지 지역 안에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는 시정촌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공공시설 등의 설치 혹은 관리에 관한 행위, 그 생산 녹지 지역에 대한 도시 계획이 결정된 경우 이미 착수하고 있는 행위 또는 비상재해를 위해 필요한 응급조치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 2) 택지 조성, 토석의 채취 기타 토지의 형질 변경
  - 3) 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
2. 시정촌장은 전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 중 다음에 열거하는 시설에서 해당 생산 녹지에 농림어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의 설치 또는 관리에 관한 활동에서 생활환경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것에 한하여 동항의 허가를 할 수 있다.
- 1) 농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이나 픽업에 제공되는 시설
  - 2) 농림 어업 생산 자재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해 제공되는 시설
  - 3) 농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의 가공 또는 저장에 필요한 공동 이용 시설



- 4) 농림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휴게 시설
- 5) 전 각호에 규정된 것 외에 정령이 정하는 시설
3. 시정촌장은 제1항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생산 녹지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 기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생산 녹지 지역 내에서 공공시설 등의 설치 또는 관리에 관한 행위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것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정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한다.
5. 생산 녹지 지역에 대한 도시 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그 생산 녹지 지역 안에서 이미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착수하고 있는 자는 그 도시 계획이 결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시정촌장에게 이를 신고해야한다.
6. 생산 녹지 지역 안에 비상재해를 위해 필요한 응급조치로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자는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에 시정촌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
7. 시정촌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제5항이나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생산 녹지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해 필요한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8. 국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관한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에 대해서는 동항의 허가 받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국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정촌장에 협의하여야한다.
9. 통상의 관리 활동, 경이한 행위, 기타 행위에서 정령이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제7항까지 전항 후단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원상 복구 명령 등)

#### 제9조

시정촌장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람 또는 이들로부터 해당 토지 혹은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생산 녹지 보전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가 현저하게 곤란할 경우 이를 대체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이에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원상복구 등"이라고 한다)를 명하려는 경우, 과실 없이 해당 원상복구 등을 명령하는 자를 확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촌장은 원상복구 등을 스스로 수행, 또는 그 명령한 자나 위임 된 이에게 이것을 수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원상복구 등을 실시하는 취지 및 그 기한까지 그 원상

복구 등을 하지 않는 경우, 시정촌장 또는 그 명령한 자나 위임한 자가 그 원상복구 등을 할 뜻을 미리 공고하여야한다.

3. 전항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등을 하려고 하는 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 이것을 제시해야한다.

(생산 녹지 매입의 제기)

제10조

생산 녹지(생산 녹지 중 토지구획정리법 제98조제1항(대도시 지역의 주택과 주거 지역의 공급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6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의해 반환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전의 토지. 이 항 후단에서 동일하다)의 소유자는 그 생산 녹지에 관한 생산 녹지 지역에 대한 도시 계획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제1항(동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의한 고시 일부터 기산하여 삼십년을 경과한 때, 또는 그러한 고시 후 해당 생산 녹지에 관한 농림어업의 주 종사자(그 생산 녹지에 관한 농림어업의 일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상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사망, 혹은 농림 어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시정촌장에 대해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양식의 문서를 가지고 있는 해당 생산 녹지를 시가에 매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생산 녹지가 타인의 권리를 목적으로 되어있는 경우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 취지의 통지서 발송을 조건으로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생산 녹지 매입 등)

제11조

시정촌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제기가 있을 때에는 다음 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 대상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생산 녹지를 시가에 매입하여야한다.

2. 시정촌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제기가 있을 때에는 해당 생산 녹지 매입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생산 녹지 매입의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생산 녹지 주변 지역의 공원, 녹지, 기타 공공지역의 정비 상황과 토지 이용 상황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원, 녹지 기타, 공공부지에 제공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매입을 희망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우선으로 해서 결정해야 한다.

(생산 녹지 매입 알림 등)

제12조

시정촌장은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 대상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제기가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개월 이내에 그 생산 녹지를 시가에 매입한다는 의사 또는 매입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그 생산 녹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 대상으로 결정된 자는 전항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그 생산 녹지를 시가에 매입한 사실을 서면으로 그 생산 녹지의 소유자와 시정촌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전 두 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 취지의 통지를 한 경우, 해당 생산 녹지의 시가에 대해서는 매입 취지의 통지를 한 자 및 생산 녹지의 소유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제6조제6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생산 녹지 취득의 알선)

제13조

시정촌장은 생산 녹지에 대한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거부의사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생산 녹지에서 농림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알선에 노력해야 한다.

(생산 녹지 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해제)

제14조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제기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제기 일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 해당 생산 녹지 소유권 이전(상속 기타 일반 승계에 의한 이전을 제외한다)이 발생하지 않은 때에는 제 7조에서부터 제 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생산 녹지 매입하신 제기)

제15조

생산 녹지의 소유자는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제기가 없는 경우에도 질병 등에 의해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촌장이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생산 녹지 매입을 제공할 수 있다.

2. 시정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제기가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생산 녹지를 스스로 매입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그 생산 녹지에서 농림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알선에 노력해야한다.

(매입 취득 된 생산 녹지의 관리)

제16조

제11조제1항이나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 녹지를 취득한 시정촌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생산 녹지를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

(보고 및 출입검사 등)

제17조

시정촌장은 생산 녹지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제8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그 토지 혹은 건물, 기타 공작물에 관하여 권리를 승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실시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시정촌장은 제8조제1항 혹은 제3항 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그 직원, 생산 녹지 혹은 생산 녹지 지역의 건물에 출입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제8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의 실시 상황을 검사하고, 혹은 이러한 행위가 그 생산 녹지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다.

3. 전항에서 규정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 이것을 제시해야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범죄 수사를 위해 인정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농업위원회의 협력)

제17조

두 시정촌장은 생산 녹지(농지 또는 채초방조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사용 또는 수익의 권리가 있는 사람의 요구에 따라 해당 생산 녹지를 농지 등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언, 토지, 교환 알선, 그 외에 다른 원조를 하는 경우와 농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자가 생산 녹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경우에는 농업 사회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경과 조치)

제17조3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령 또는 국토교통성령을 제정 또는 개폐하는 경우에는, 각각 정령 또는 국토교통성령으로 그 제정 또는 개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소요 경과 조치(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를 포함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벌칙)

제18조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2)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한 조건을 위반한 자

제20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요구했을 때,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자
- 3)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조사 또는 검사를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1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해서 전 세 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사람 대해서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시행 기일)

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50년 7월 16일 법률 제67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가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일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55년 5월 1일 법률 제35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2년 6월 29일 법률 제62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3년 4월 26일 법률 제39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생산 녹지에 관한 경과 조치)

제2조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이 법에 의한 개정 전의 생산 녹지 법률(이하 "구 생산 녹지 법"이라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제 1종 생산 녹지 지역(이하 "구 제1종 생산 녹지 지역"이라고 한다)과 구 생산 녹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제 2종 생산 녹지 지역(이하 "구 제 2종 생산 녹지 지역"이라고 한다)의 구역 내에 토지 또는 삼림(이하 "구 생산 녹지"라고 한다)은 이 법에 의한 개정 후 생산 녹지 법률(이하 "새로운 생산 녹지 법"이라고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산 녹지 지역 지역 내의 토지 또는 삼림(이하 "새로운 생산 녹지"라고 한다)로 본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생산 녹지로 간주된 이전 생산 녹지(구 생산 녹지 중 토지 구획 정리 방법(쇼와 29년 법률 제119호) 제98조제1항 (도시 지역의 주거

와 택지 공급의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쇼와 50년 법률 제67호) 제 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섹션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지로 지정된 토지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새로운 생산 녹지법 제10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같은 조 중 "30년"인 것은 구 제1종 생산 녹지 지역에 관한 경우에는 "10년"으로, 구 제2종 생산 녹지 지역에 관련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생산 녹지로 간주된 구 제2종 생산 녹지 지역에 관해 기존 생산 녹지(구 생산 녹지 중 토지구획정리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지로 지정된 땅에 있어서는, 그 토지에 대한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에 대해 새로운 생산 녹지법 제14조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같은 조 중 "3월"인 것은 "1월"로 한다.

부칙(평성 5년 11월 12일 법률 제89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은 행정 절차법(평성 5년 법률 88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자문 등이 되는 불이익 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제2조

이 법 시행 전 법령에 따라 위원회, 기타 합의제의 기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 13조에 규정된 청문 등 기타 의견 진술을 위한 절차에 해당하는 절차에 대한 자문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자문, 기타 요구에 관한 불이익 처분의 절차에 대해 이 법에 의한 개정 후 관련 법률의 규정에 관계없이 종전의 예에 의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제3조

이 법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청문에 관한 규정 강화에 따른 경과 조치)

제4조

이 법 시행 전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열린 청문이나 청문회(불이익 처분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이들을 위한 절차는 이 법에 의한 개정 후 관련 법률의 해당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정령에의 위임)

제5조

부칙 제 2조에서부터 전조까지 결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평성 11년 12월 22일 법률 제 160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제2조및 제 3조를 제외한다)은 평성 1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생산 녹지법 시행령

(쇼와 49년 8월 1일 정령 제 285호)

최종개정: 평성 16년 5월 26일 정령 제 181호)

내각은 생산 녹지법(쇼와 49년 법률 제68호) 제2조제2호 및 제4호, 제6조제6항(제1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조제9항 규정에 따라 이 정령을 제정한다.

(공공시설 등)

### 제1조

생산 녹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2호 정령이 정하는 공공에 제공되는 기관 또는 공익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정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에 열거하는 시설로 한다.

- 1) 도시 계획법(쇼와 43년 법률 제100호) 제4조제6항에 규정하는 도시 계획 시설
- 2) 토지 수용법(쇼와 26년 법률 제 219호) 제3조각호(제29호 및 제29호의 2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시설
- 3) 토지 수용법 제3조제29호에 규정된 공원 사업에 관한 시설

(지방 공공단체 등)

### 제2조

법 제2조제4호 정령이 정하는 법인은 지방자치단체, 항무국, 토지개발 공사, 지방주택공급공사, 지방도로공사와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로 한다.

(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절차)

### 제3조

법 제6조제6항(법 제1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제9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재결 신청서를 수용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1) 재결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 2)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 3) 손실 사실 및 손실보상평가 및 그 내역(생산 녹지 매입의 제기에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생산 녹지 가치의 평가 및 그 내역)
- 4) 협의 경과

(법 제8조제2항 제5호의 정령으로 지정하는 시설)

#### 제4조

법 제8조제2항 제5호 정령으로 지정하는 시설은 다음에 열거하는 시설로 주로 도시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농지, 상당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 휴양, 기타 이윤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농업에 제공되는 것에 설치된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것으로 한다.

- 1) 농업 강습에 제공되는 시설
- 2) 관리 사무소 기타 관리 시설

(법 제8조제9항 정령으로 지정하는 행위)

#### 제5조

법 제8조제9항 정령으로 지정하는 행위는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로 한다.

1. 건물 이외의 공작물로 아래에 열거한 것들의 신설, 개축 또는 증설
  - 1) 가설 공작물
  - 2) 수도관, 하수관 및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지하에 마련하는 것
2.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처분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하는 행위
3. 해당 생산 녹지에서 농림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실시법 제8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시설(가축우리를 제외)의 설치 또는 관리에 관한 행위로 다음에 열거하는 것
  -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에서 그 신축, 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 또는 축조 면적이 90평방미터 이하인 것
  - 2) 폭이 2미터 이하의 배수로 또는 폭이 2미터 이하의 농도 혹은 임도의 설치 또는 관리
4. 농지 등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 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

#### 부칙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법의 시행일(쇼와 49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50년 8월 5일 정령 제2조제48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50년 10월 24일 정령 306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법의 시행일(쇼와 5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56년 8월 3일 정령 제 268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쇼와 5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3년 9월 6일 정령 제 282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생산 녹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3년 법률 제39호)의 시행일자(평성 3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1년 8월 18일 정령 제 256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도시기반정비공단법(이하 "공단법"이라고 한다)의 일부 실행 일 (평성 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2년 6월 7일 정령 제 312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내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11년 법률 88호)의 시행일자 (평성 1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6년 4월 9일 정령 제 160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평성 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6년 5월 26일 정령 제 181호) 발취

이 정령은 기구의 설립 시부터 시행한다.

생산 녹지법 시행 규칙  
(쇼와 49년 8월 19일 건설부령 제11호)

최종개정: 평성 12년 11월 20일 건설부 시행령 제41호

생산 녹지법(쇼와 49년 법률 제68호) 제 10조와 제5조제1항 및 생산 녹지 시행령(쇼와 49년 정령 제 285호) 제3조규정에 의거해 생산 녹지법 시행 규칙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농업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제1조

시정촌리 생산 녹지 지역에 대한 도시 계획의 초안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생산 녹지 지역의 토지가 생산 녹지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 또는 채초방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농업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국토 교통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비율)

제2조

법 제10조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비율은 다음에 열거하는 비율로 한다.

- 1) 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제기가 있는 일에 주된 종사자가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자가 생산 녹지에 관한 농림어업의 업무에 1년간 종사하는 기간의 8할
- 2) 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제기가 있는 일에 주된 종사자가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자가 생산 녹지에 관한 농림어업의 업무에 1년간 종사한 기간의 7할

(수용위원회에 대하여 재결 신청서 양식)

제3조

생산 녹지법 시행령 제3조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양식은 아래를 별기양식 1과 같다.

(농림 어업에 종사하는 것을 불가능 하게하는 상태)

제4조

법 제10조의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1. 다음에 열거하는 오류로 인해 농림어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시정촌장이 인정하는 것
  - 1) 양쪽 눈 시력 상실
  - 2) 정신의 현저한 장애
  - 3) 신경 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
  - 4) 가슴 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
  - 5) 상지 혹은 하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실 또는 그 기능에 현저한 장애
  - 6) 양손의 손가락이나 두 다리의 발가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실 또는 그 기능에 현저한 장애
  - 7) 1)부터 6)까지의 규정된 장애에 준하는 장애
2. 1년 이상의 기간을 요하는 입원, 그 외에 기타 사유로 농림어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시정촌장이 인정하는 것

(매입 신청서의 양식)

제5조

법 제10조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양식은 별기양식 2와 같다.

(매입 제기 절차)

제6조

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생산 녹지 매입을 신청하려고 하는 자는 별기양식 3 매입 희망 신청서를 시정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

이 성령은 법의 시행일(쇼와 49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50년 12월 23일 건설부령 제20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성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2년 11월 19일 건설부 시행령 제11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성령은 도시 지역의 주거 지역 등의 공급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2년 법률 제62호)의 시행 일자(평성 2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3년 9월 6일 건설부 시행령 제16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성령은 생산 녹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3년 법률 제39호)의 시행 일자(평성 3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2년 1월 17일 건설부 시행령 제9호)

1. 이 성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성령의 시행 시 현재 있는 성령에 의한 개정 전의 양식의 신청서에 대해서는 당분간 사용할 수 있다.

부칙(평성 12년 11월 20일 건설부 시행령 제41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성령은 내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11년 법률 88호)의 시행일자(평성 1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기양식 1(제1조관계)

별기양식 2(제5조관계)

별기양식 3(제4조관계)

유통 업무 시가지의 정비에 관한 법률  
(쇼와 41년 7월 1일 법률 제110호)

최종개정 : 평성 17년 7월 29일 법률 제89호

제1장 총칙 (제 1조, 제 2조)

제2장 유통 업무 시설의 정비에 관한 기본 지침과 정책(제 3조, 제3조2)

제3장 유통 업무 지구 및 유통 업무 단지(제4조- 제 8조)

제4장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

제1절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 시행(제 9조, 제 10조)

제2절 삭제 (제11조- 제 24조)

제3절 시행 계획 및 처리 계획 (제25조- 제 29조)

제4절 조성 시설 등의 처분 등 (제30조- 제 39조)

제5절 보칙 (제39조2 - 제 47조)

제5장 기타 조항 (제47조2 - 제48조3)

제6장 벌칙 (제49조- 제 53조)

부칙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법은 도시의 유통 업무 시가지의 정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통 기능의 향상 및 도로 교통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그로써 도시 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서 "유통 업무 시설"은 제5조제1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 열거한 시설을 말한다.

2. 이 법률에서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은 제7조제1항 유통 업무 단지에 대한



도시 계획법(쇼와 43년 법률 제100호) 및 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행되는 동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유통 업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부지 조성, 조성된 부지의 처리 및 그 부지와 함께 정비되어야 공공시설 및 공익적인 시설 부지 조성 또는 그 시설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이 법률에서 "시행자"라 함은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이 법률에서 "기업 도시"는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토지의 지역을 말한다.
5. 이 법률에서 "공공 기관"이라함은 도로, 자동차 주차장, 기타 정령으로 지정하는 공중에 제공해주는 시설을 말한다.
6. 이 법률에서 "공익적인 시설"이라함은 정부 기관, 의료 시설, 기타 시설, 유통 업무 지구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것을 말한다.
7. 이 법률에서 "조성 시설 등"이라함은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에 의해 조성된 부지와 정비된 시설을 말한다.
8. 이 법률에서 "조성 부지 등"은 조성 시설 등 중에서 공공시설 및 그 부지가 아닌 것을 말한다.
9. 이 법률에서 "처분 계획"은 시행자가 지휘 조성 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 제2장 유통 업무 시설의 정비에 관한 기본 지침과 정책

(기본 지침)

### 제3조

주무대신은 유통 업무 시설의 정비에 관한 기본 지침(이하 이 장에서 "기본 지침"이라고 한다)을 결정해야한다.

2. 기본 지침에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 다음 조 제1항의 기본 정책의 지침이 될 것을 결정해야한다.

- 1) 유통 업무 시설의 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2) 유통 업무 시가지를 정비해야 도시의 설정에 관한 사항
- 3) 유통 업무 시설의 기능 및 위치에 관한 사항
- 4) 유통 업무 시설의 정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

3. 주무대신은 기본 지침을 작성함에는 미리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주무대신은 기본 지침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포하여야한다.

5. 주무대신은 정세의 추이에 의해 필요할 때에는 기본 지침을 변경해야한다.
6.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 지침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기본 방침)

#### 제3조2

도도부현 지사는 기본 지침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주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동조, 다음 조 및 제 36조에서 같다)에 대해 유통 업무 시설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이하 동조 및 다음 조에서 "기본 방침"이라고 한다)을 결정해야한다.

- 1) 상당수의 유통 업무 시설의 입지는 유통 기능의 저하와 자동차 교통 체증이 있는 도시로 유통 업무 시가지를 정비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
  - 2) 고속 자동차 국도, 기타 고속 수송에 관한 시설의 정비 상황, 토지 이용 동향 등의 상으로 상당수의 유통 업무 시설의 입지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유통 기능의 저하와 자동차 교통 체증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로 유통 업무 시가지를 정비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
2. 기본 방침에 대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결정해야한다.
- 1) 유통 업무 시가지를 정비해야 도시에 관한 사항
  - 2) 유통 업무 시설의 기능과 위치에 대한 기본 사항
  - 3) 유통 업무 지구의 수, 위치, 규모 및 기능에 대한 기본 사항
  - 4) 유통 업무 지구의 유통 업무 시설의 종류, 규모 및 기능에 대한 기본 사항
  - 5) 유통 업무 시설의 정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
3. 기본 방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감안하여 결정해야한다.
- 1) 물자 유통량의 전망
  - 2) 물자 유통에 관한 기술의 향상 및 유통기구의 개선 전망
  - 3) 자동차 교통의 전망
  - 4)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 시설 건설의 전망
4. 기본 방침은 국토 형성 계획, 수도권 정비 계획, 긴키 지역 정비 계획, 중부권 개발 정비 계획, 기타 국토 계획이나 지역 계획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계획과의 조화가 유지되는 것 이어야 한다.
5. 도도부현 지사는 기본 방침을 결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6. 도도부현 지사는 기본 방침을 결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주무대신과 협의해야 한다.
7. 주무대신은 다음에 열거하는 관점에 입각하여 전항의 협의를 해야한다.

- 1) 해당 정책에 관한 도시가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며, 기본 지침을 준수하는 것인지 아닌지.
  - 2) 제2항 제2호에서 제5호까지 열거한 사항으로 기본 지침을 준수하는 것으로인지 아닌지.
8. 주무대신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있어서는 총무 대신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9. 도도부현 지사는 기본 방침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포하여야한다.
10. 제4항에서 전항까지의 규정은 기본 방침의 변경에 준용한다.

### 제3장 유통 업무 지구 및 유통 업무 단지

(유통 업무 지구)

#### 제4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정책에 관한 도시 지역 중 간선 도로, 철도 등의 교통 시설의 정비 상황에 비추어, 유통 업무 도시로 정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도시의 유통 기능의 향상 및 도로 교통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 계획에 유통 업무 지구를 결정할 수 있다.

2. 유통 업무 지구에 대한 도시 계획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정책에 따라 결정해야한다.

3. 국토교통대신, 도도부현 또는 지방자치법(쇼와 22년 법률 제67호) 제 252조의 19 제1항의 지정 도시(다음 조 제1항에서 "지정 도시"라고 한다)는 유통 업무 지구에 대한 도시 계획을 결정하려고 할 때에는, 함께 해당 지역이 유통 업무 도시로 서비스하는 데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한 도시 계획을 결정해야한다.

(유통 업무 지구의 규정)

#### 제5조

어느 누구도 유통 업무 지구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아닌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되고, 또한 시설을 개축하거나 또는 용도를 변경해서 다음 각호의 중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시설 이외의 시설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도도부현 지사(지정 도시 및 지방자치법 제 252조 22 제1항의 핵심시에서는 각각 그 장. 다음 조에서 같다)가 유통 업무 지구의 기능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또는 공익상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인정되고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트럭 터미널, 철도화물역, 기타 화물 위탁 도매를 위한 시설
  - 2) 도매 시장
  - 3) 창고, 야외 주차장이나 저장 탱크(정령으로 지정하는 위험물의 보관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목재 저장 창고
  - 4) 상옥<sup>36)</sup> 또는 창고
  - 5) 도로화물 운송업, 화물 운송 취급 업무, 서신 납품 업체, 창고 또는 도매업에 제공되는 사무소 또는 점포
  - 6) 전호에 규정된 사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유통 업무에 제공하는 사무소
  - 7) 금속판, 금속 와이어 또는 종이 절단, 목재 인자 그 외에 물자의 유통 과정에서 단순 가공 사업으로 정령으로 지정하는 것에 제공해주는 공장
  - 8) 얼음이나 냉동 사업에 대해 제공되는 공장
  - 9) 전 각호에 규정된 시설에 부대하는 자동차 주차장이나 자동차 차고
  - 10) 자동차에 직접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차량 정비 공장이나 자동차 정비 공장
  - 11) 전 각호에 규정된 것 외에 유통 업무 지구의 기능을 해칠 우려가 없는 시설로 정령으로 지정하는 것
2. 공공시설 또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공익적인 시설의 건설 및 개축과 유통 업무 지구에 대한 도시 계획이 결정된 때에 이미 착수한 건설 및 개축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유통 업무 지구는 건축 기준법(쇼와 25년 법률 제 201호) 제48조 및 제 49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위반 시설에 대한 조치)

#### 제6조

도도부현 지사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시설의 이전, 습기 매각이나 개축 또는 용도 변경(이하 이 조 및 제 49조에서 "시설 이전 등"이라고 한다)을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 이전 등을 명하는 경우에도 과실 없이 그 기관의 이전 등을 명하는 자를 확지할 수 없는 경우, 도도부현도 지사는 그 사람의 부담에 대해서 그 시설 이전 등을 스스로 수행하거나 또는 그 명령한 자나 위임된 자에게 이것을 수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이전 등을 하는 지 및 그 기한까지 시설 이전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도부현 지사 또는 그 명령한 자나 위임한 자가 시설 이전 등을 행할 것을 공고해야한다.

36) 수송 화물을 보관·선별하거나, 작업 또는 대기하는 데 쓰려고 부두나 역 가까이에 지은 건물

3.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이전 등을 행하게 하려고 하는 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제시해야 한다.

(유통 업무 단지에 관련된 도시 개발 사업 등 일정 지역에 대하여 도시 계획)

#### 제6조2

도시 계획법 제12조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 업무 단지에 관련된 도시 개발 사업 등 일정 지역에 대하여 도시 계획에 결정해야 되는 지역은 유통 업무 지구의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토지 지역 이어야 한다.

- 1) 유통 업무 지구 외 간선 도로, 철도 등의 교통 시설 이용이 용이한 것
- 2) 좋은 유통 업무 단지로 일체적으로 정비되는 자연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
- 3) 해당 지역 내의 토지의 대부분이 건물 부지로 이용되고 있지 않은 것

(유통 업무 단지에 대한 도시 계획)

#### 제7조

도시 계획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 업무 단지에 대한 도시 계획에서 결정해야 되는 지역은 유통 업무 지구의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토지 지역이어야 한다.

- 1) 전조 각호에 규정하는 조건에 해당한다.
- 2) 해당 지역 내에서 정비되는 트럭 터미널, 철도화물역이나 중앙 도매 시장과 이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타 유통 업무 시설 부지가 이들의 시설에 화물량과 이러한 시설 배치에 따라 적정 규모인 것
2. 유통 업무 단지에 대한 도시 계획에서는 전항 제2호의 유통 업무 시설 부지 위치 및 규모 및 공공시설 및 공익적인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결정해야한다.
3. 유통 업무 단지에 대한 도시 계획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부지 면적에 대한 비율이나 총 면적의 부지 면적에 대한 비율, 건축물의 높이 또는 벽면의 위치 제한을 결정해야한다.

#### 제8조

유통 업무 단지에 대한 도시 계획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 1) 도로, 자동차 주차장 부대시설에 대한 도시 계획이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그 도시 계획에 부합하도록 결정한 것
- 2) 해당 지역이 유통 업무 시설이 제대로 배치하며, 각 유통 업무 시설을 연결하

는 적절한 배치 및 규모의 도로, 기타 주요 공공시설을 비치하여 유통 업무 지구의 중심으로 일체적으로 구성 되도록 결정한 것

#### 제4장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

제1절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 시행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의 시행)

제9조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은 도시 계획 사업으로 시행한다.

(시행자)

제10조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독립 행정 법인 도시 재생기구 (이하 "계획"이라고 한다)가 시행한다.

제2절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제24조  
삭제

제3절 시행 계획 및 처리 계획  
(시행 계획 및 처리 계획)

## 제25조

시행자는 시행 계획 및 처분 계획을 결정해야한다.

2. 시행 계획에서는 국토교통성령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지역(사업지를 가공 지역으로 나눌 때, 사업 지와 가공 구역), 설계 및 자금 계획을 결정해야한다.
3. 처분 계획에서는 조성 시설 등의 처리 방법과 처분 가액에 관한 사항 및 처리 후 조성 부지 등의 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한다.
4. 이 법률에 규정하는 것 외에, 시행 계획 및 처리 계획 조정 기술 기준 추가 시행 계획 및 처리 계획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성령으로 지정한다.

(처분 계획의 인가 등)

## 제26조

시행자는 처분 계획을 결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기구는 국토교통대신의 승인을 받고, 지방자치단체는 도도부현 지사(도도부현에는 국토교통대신)과 협의하고 동의를 얻어야한다. 이것을 변경하려고하는 경우(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마찬가지로 한다.

2. 시행자가 시행 계획을 결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이를 도도부현 또는 기구는 국토교통대신에게, 그 외의 사람은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것을 변경하는 경우(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마찬가지로 한다.

(처분 계획의 기준)

## 제27조

처분 계획에서는 조성 부지 등의 처분 금액은 토지 종류 등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그 조성 부지 등의 취득 및 조성 또는 정비에 필요한 비용(공공시설 및 공익적인 시설 부지 조성과 그 시설의 정비에 필요한 비용 중 그 조성 부지 등의 부지에 배분되어야 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및 그 조성 부지 등의 위치, 정의 및 용도를 감안하여 결정해야한다.

## 제28조

처분 계획에서는 처리 후 조성 시설 등 중 도시 계획이 정해져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 계획에 맞도록, 다른 것에 대해서는 해당 유통 업무 단지에 걸맞는 규모 및 용도의 시설이 건설되도록 결정해야한다.



(시행 계획 및 처리 계획에 대한 협의)

제29조

시행자는 시행 계획 또는 처분 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행 계획이나 처리 계획 또는 그 변화에 관계가 있는 공공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리자가 되는 사람, 기타 정령으로 지정하는 사람과 협의해야한다.

제4절 조성 시설 등의 처분 등

(공사 완료의 공고)

제30조

시행자는 사업 지역(사업지를 가공 구역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가공 구역.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공사(시행 계획에서 특히 결정하는 공사를 제외한다)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것을 도도부현 지사(시행자가 기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대신.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고해야한다.

2.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그 신고에 관한 공사가 시행 계획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사업지에 대한 공사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관리)

제31조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 기관은 전조 제2항의 공고일 다음날부터 그 공공시설이 속하는 도시의 관리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해야 할 사람이 따로 있을 때, 또는 처분 계획에 특히 관리해야 할 사람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 관리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2. 시행자는 전조 제2항의 공고일 이전에 공공시설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공공시설을 관리해야 할 사람에게 그 관리를 인수할 수 있다.

3. 시행자는 전조 제2항 공고일 다음날부터 공공시설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공사가 완료된 때에 그 공공시설을 관리해야 할 사람에게 그 관리를 인수할 수 있다.

4. 공공시설을 관리해야 할 사람은 전 두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부터 그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 인계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에 대한 공사가 시행 계획에서 정한 설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외에는 그 인계를 거부할 수 없다.

(공공시설에 제공해주는 토지의 귀속)

제32조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의 공공시설 대신에 새로운 공공시설이 설치되게 될 경우에는 종전의 공공시설에 제공되고 있던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하게 되는 것은 30조 제2항 공고 다음날부터 시행자에 귀속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처분 계획이 정하는 새로운 공공시설에 제공해주는 토지는 그 날 각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2.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에 제공해주는 토지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 및 처리 계획에 특별한 결정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30조 제2항 공고 다음날부터 그 공공시설을 관리해야 할 사람(그 사람이 지방자치법 제2조제9항 제1호로 규정하는 제1호 법정 수탁 사무(이하 그냥 "제1호 법정 수탁 사무"라고 한다)로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국가)에게 귀속된다.

(조성 시설 등의 처분)

제33조

시행자는 조성 시설 등이 법률 및 처리 계획에 따라 처분해야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해 시행한 조성 시설 등의 처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처분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성 부지 등의 양수인의 공모)

제34조

시행자는 조성 부지 등에 대해서 정령으로 특별한 결정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지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공모해야한다.

(조성 부지 등의 양수인의 자격)

제35조

공모를 통한 조성 부지 등의 양수인은 적어도 다음 각호에 규정된 조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 1) 조성 부지 등의 부지에서 스스로 유통 업무 시설을 운영하려는 사람
- 2) 유통 업무 시설의 건설과 경영에 필요한 자금과 신용이 있는 사람
- 3) 양도 대가의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

(조성 부지 등의 양수인의 선발)

제 36조

시행자는 조성 부지 등의 양수인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한 순서에 따라  
정당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그 양수인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 1) 유통 업무 시설 부지를 그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제공한  
자
- 2) 해당 유통 업무 지구에 속하는 도시 지역에 있는 유통 업무 시설 부지에 대신  
해서 유통 업무 시설 부지를 취득하고자하는 자
- 3) 해당 유통 업무 지구에 속하는 도시 지역에 유통 업무 시설이 있는 사람으로,  
조성 부지 등의 부지에 그 유통 업무 시설과 동일한 업종에 속하는 유통 업  
무 시설을 신설하려고하는 자(전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4) 그 외의 자

(유통 업무 시설의 건설 의무)

#### 제37조

시행자로부터 유통 업무 시설을 건설할 부지를 넘겨받아 자(그 승계인을 포함하  
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정령으로 지정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시행자가  
정한 기간 내에 국토교통성령으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 업무 시설의 건설 공  
사 기간, 공사 개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자의 승인을 받아 그 계획에  
따라 유통 업무 시설을 건설해야한다.

2. 시행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정한 기간 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는 절차를 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은 계획에 따라 업무 시설을 건설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그 부지의 양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조성 부지 등에 관한 권리의 처분 제한)

#### 제 38 조

제20조제2항 공고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년간은 조성 부지 등 또는 조성 부지  
등의 부지 위에 지어진 유통 업무 시설 또는 공익적인 시설에 관한 소유권, 지상  
권리, 질권, 사용 대차에 의한 권리 또는 임차권, 기타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은 국토교통성령으로 지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가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정령으로 지정하는 자인  
경우
- 2) 상속, 기타 일반 승계는 해당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 3) 체납 처분, 강제 집행,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예제의 경매를 포함) 또는 기업  
담보권을 실행하여 해당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 4) 토지 수용권법(쇼와 26년 법률 제 219호)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거나 또는  
사용하는 경우

5) 기타 정령으로 지정하는 경우

2. 전항에 규정하는 승인에 대한 처리는 그러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자가 그 설정 또는 이전에 의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할 수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 설정 또는 이전을 상대방이 처분 계획에서 정해진 처리 후 조성 부지 등의 이용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그 조성 부지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고려해야한다.
3. 제1항에 규정된 승인은 처분 계획에서 정한 처리 후 조성 부지 등의 이용 규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첨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그 승인을 받은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도서 비치 등)

제39조

시행자는 제30조제2항 공고가 있으면, 조성 시설 등에 속하는 시정촌의 장 대해 국토교통성령으로 지하는 바에 따라 그 성 시설 등이 속하는 지역을 표시한 도서를 송부해야 한다.

2. 전항의 도서를 송부 받은 시정촌장은 제30조제2항의 공고를 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년간 해당 도서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에 비치해두고,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때, 이것을 열람할 수 있어야한다.
3. 도도부현 지사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 공고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년간,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임을 표시한 표지를 설치해야한다.
4. 어느 누구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판을 도도부현 지사의 무단으로 이전하거나 혹은 습기를 매각하거나 또는 파손, 혹은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5절 보칙

(측량을 위한 표지의 설치)

제39조2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시행자는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 시행 준비 또는 실행에 필요한 측량을 시행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지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2. 어느 누구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판 설치를 무단으로 이전하거나 혹은 습기를 매각하거나 또는 파손, 혹은 파괴해서는 안 된다.

(관계 부서<sup>37)</sup> 열람 등)

제39조3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시행자는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 시행 준비 또는 실행을 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거나 또는 시행하는 토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대해, 또는 기타 관공서의 장에 대해 무상으로 필요한 부서의 조회 혹은 사본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 혹은 등기 사항 증명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건축물 등의 수용 신청)

제39조4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도시 계획법 제69조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토지 수용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또는 권리를 수용하는 경우에, 권리에 의한 해당 토지 또는 그러한 권리의 목적인 토지에 건축물, 기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공작물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토지 수용권법 제 87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비용 부담)

제 40조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한다.

(서류의 송부를 대신하는 공고)

제41조

시행자는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의 시행에 관해 서류를 송부하는 경우에 송부를 받아야 하는 자가 그 서류의 수령을 거절했을 때, 또는 그 사람의 주소, 거주지 주소, 기타 서류를 송부 할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공고하는 것으로 서류의 송부를 대신할 수 있다.

2. 전항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 그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이 경과한 날을 해당 서류가 송부를 받아야 하는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자금 조달에 대한 배려 등)

제42조

국가는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에 관하여 고려하는 것으로 한다.

---

37) 기관의 장부(帳簿)나 문서(文書)

2. 나라가 조성 부지 등의 부지를 넘겨받아 유통 업무 시설을 건설하고자하는 자 또는 유통 업무 단지에 대한 도시 계획에 따라 유통 업무 시설을 건설하고자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금의 알선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3. 농림수산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유통 업무 단지 지역의 농지 또는 채초방조지를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 또는 유통 업무 단지에 대한 도시 계획에 적합한 유통 업무 시설에 제공되는 농지법(쇼와 27년 법률 제 229호) 규정에 의한 허가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의 시행 또는 유통 업무 시설의 건설이 촉진되도록 고려하는 것으로 한다.

(기술 지원 신청)

제43조

도도부현과 기구는 국토교통대신에 대해서, 시정촌은 국토교통대신과 도도부현 지사에 대해서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 시행 준비 또는 실행을 위한 각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인력의 기술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자에 대한 감독 등)

제44조

국토교통대신은 시행자인 기구에 대해, 기구가 정한 시행 계획 또는 기구가 행하는 공사 혹은 처분이 이 법률, 이 법률에 근거한 명령 혹은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인 도시 계획 사업의 내용 또는 시행 계획이나 처리 계획에 따라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시행 계획의 변경 또는 공사 중단이나 변경이나 처분의 금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대신은 시행자인 도도부현에 대해 도도부현 지사는 시행자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각각 그 사람이 정한 시행 계획 또는 그 사람이 행하는 공사 혹은 처분이 이 법률, 이 법률에 근거한 명령이나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인 도시 계획 사업의 내용 또는 시행 계획이나 처리 계획에 따라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시행 계획의 변경 또는 공사 중단이나 변경이나 처분의 금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시행 계획의 변경 또는 그 공사의 중단이나 변경 혹은 그 처분의 금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4. 국토교통대신은 위법 또는 부당한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처분이 이

루어졌을 때에는 조성 부지 등의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승인 처리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관련 공공시설의 정비)

제4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공공시설의 정비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관계 행정 기관과의 조정)

제46조

국토교통대신, 유통 업무 지구, 유통 업무 단지에 관련된 도시 개발 사업 등 예정 지역 또는 유통 업무 단지에 대한 도시 계획을 결정하거나 또는 그 결정, 변경 사항에 동의하려고 할 때에는 먼저 농림수산대신, 경제산업대신과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2 국토교통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계획을 승인하거나 또는 처분 계획에 동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처분 계획에 관한 조성 부지 등의 부지에 건설 될 유통 업무 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기타 처분을 하는 권한이 있는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한다.

(부동산 등기법의 특례)

제47조

사업 지역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내용은 정령으로 부동산 등기법(평성 십6년 법률 제123호)의 특례를 결정할 수 있다.

## 제5장 기타 조항

(주무대신)

제47조2

제2장의 주무대신은 농림수산대신, 경제산업대신과 국토교통대신으로 한다.

(권한의 위임)

제47조3

제3장 및 제4장에서 규정하는 국토교통대신의 권한은 국토교통성령으로 지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역 정비 국장 또는 북해도 개발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정령에의 위임)

제48조

이 법률에서 특히 결정한 것 외에 이 법률에 의해 해야 하는 공고 방법, 기타 이 법률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지정한다.

(경과 조치)

제48조2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령 또는 국토교통성령을 제정하거나 또는 개폐하는 경우에는 각각 정령 또는 국토교통성령으로 그 제정 또는 개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소요 경과 조치(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를 포함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업무 구분)

제48조3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지방 공공단체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 중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제1호 법정 수탁 사무로 한다.

- 1) 도도부현이 제30조제2항,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3항과 제4항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도도부현 또는 기구가 시행하는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 2) 시정촌이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도도부현 또는 기구가 시행하는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기타 처분을 하는 권한이 있는 행정 기관(지방 자치 단체에 한한다)이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 (다른 법률 의해 해당 권한에 속하는 업무가 제1호 법정 수탁 사무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시정촌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 중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9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제2호 법정 수탁 사무(이하 그냥 "제2호 법정 수탁 사무"라고 한다)로 한다.
- 1) 제39조제2항에 규정된 업무(도도부현 이외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기타 처분을 하는 권한이 있는 시정촌이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다른 법률에 의해 해당 권한에 속하는 업무가 제2호 법정 수탁 사무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제6장 벌칙

### 제49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시설의 이전 등을 하지 않은 자
- 2)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행자가 정한 기간 내에 계획 승인을 받는 절차를 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은 계획에 따라 유통 업무 시설을 건설하지 않은 자
- 3)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항에 규정된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고, 조성 부지 등 또는 조성 부지 등의 부지 위에 지어진 유통 업무 시설 또는 공익적인 시설을 권리자에게 인도한 자
- 4)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기한까지 일정한 용도의 시설을 건설해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을 붙여 한 자로, 그 조건을 위반하고, 그 용도 이외의 시설을 건설 것

### 제50조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1조

제39조제4항 또는 제39조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39조제3항 또는 제39조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판을 이전하거나 혹은 습기하거나 또는 파손, 혹은 파괴 한 사람은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2조

제38조제1항의 승인에 대해서 허위 신청을 한 사람은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3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사람의 대리인, 고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49조또는 제 50조에 규정된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하여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시행 기일)

1.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42년 7월 31일 법률 제102호) 발췌

(시행 기일)

1.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43년 6월 15일 법률 제101호) 발췌

이 법률(제 1조를 제외한다)은 새로운 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45년 6월 1일 법률 제109호) 발췌

(시행 기일)

1.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47년 7월 1일 법률 제111호) 발췌

(시행 기일)

1.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49년 6월 1일 법률 제67호) 발췌

(시행 기일)

1.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49년 6월 1일 법률 제69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50년 6월 25일 법률 제45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53년 7월 5일 법률 제87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된 규정은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64조4 제1항, 제 66조, 제 67조, 제68조제1항, 제2항과 제4항, 제69조및 제69조2 제2항 개정 규정 제69조3 다음에 한 조를 추가하는 개정 규정, 제70조제1항 및 제3항 개정 규정, 동조를 제 71조로하는 개정 규정 및 제 72조를 제외하고, 제 71조를 제 72조로하는 개정 규정 쇼와 54년 1월 1일
- 2) 제18조8, 제22조제2항 및 제22조3 제2항의 개정 규정, 제78조제6항을 삭제하는 개정 규정, 제80조제2호와 제 81조의 개정 규정, 제82조제2항 표의 개정 규정 (민물 구역 수산 연구소 향을 삭제한 부분에 한한다), 제 83조의 개정 규정, 동조의 다음에 한 조를 추가하는 개정 규정 및 제 87조의 개정 규정, 쇼와 54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각 규정마다 정령으로 지정한 날
- 3) 제18조제3항, 제18조3 제2항 및 제21조제2항의 개정 규정, 쇼와 55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서 각 규정마다 정령으로 지정한 날

부칙(쇼와 54년 3월 30일 법률 제5호) 발췌

(시행 기일)

1 이 법률은 민사 집행법(쇼와 54년 법률 제4호)의 시행 일자(쇼와 5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56년 5월 22일 법률 제48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부칙 제 21조에서 제 55조까지의 규

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5년 5월 26일 법률 제53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기본 방침에 관한 경과 조치)

제2조

이 법률 시행 전에 이 법에 의한 개정 전 유통 업무 시가지의 정비에 관한 법률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유통 업무 시설의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은 이 법에 의한 개정 후 유통 업무 시가지의 정비에 관한 법률 제3조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유통 업무 시설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으로 본다.

(조성 부지 등의 양수인의 선발에 관한 경과 조치)

제3조

유통 업무 시가지의 정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으로,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시행중인 것에 관한 동조 제8항의 조성 부지 등의 양수인을 공모하는 경우의 선발 순서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산업 기반 정비 기금의 지분의 환불을 금지 특례)

제4조

정부와 일본개발은행 이외의 출자자는 산업 기반 정비 기금에 대해, 이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1개월을 경과한 날까지의 기간에 한해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산업 기반 정비 기금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 민간 사업자의 능력 활용에 의한 특정 시설의 정비 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주식에 관련된 출자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환불해야한다. 이 경우, 산업 기반 정비 기금은 그 환불을 금액에 의해 자본금을 감소하는 것으로 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제5조

이 법률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5년 11월 12일 법률 제89호) 발취

(시행 기일)

제1 조

이 법률은 행정 절차법(평성 5년 법률 제88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자문 등이 되는 불이익 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제2조

이 법률 시행 전 법령에 따라 위원회, 기타 합의제의 기관에 대하여 행정 절차법 제 13조에 규정된 청문이나 변명 기회 부여 절차, 기타 의견 진술을 위한 절차에 해당하는 절차가 되는 자문, 기타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자문, 기타 요구에 관한 불이익 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의한 개정 후 관련 법률의 규정에 관계 없이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제13조

이 법률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청문에 관한 규정 정리에 따른 경과 조치)

제14조

이 법률 시행 전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열린 청문, 청문회(불이익 처분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이들을 위한 절차는 이 법에 의한 개정 후 관련 법률의 해당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정령에의 위임)

제15조

부칙 제 2조에서 전조까지 결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지정한다.

부칙(평성 6년 6월 29일 법률 제49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법률 중 제1장의 규정 및 다음 각 규정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평성 6년 법률 제48호) 중 지방자치법(쇼와 22년 법률 제67호) 제 2편 제12장의 개정 규정의 시행일부터 제2장의 규정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 중 지방자치법 제 3편 제3장 개정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1년 6월 16일 법률 제76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부칙 제 17조에서 제 72조까지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1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된 규정은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 250조 다음 5조, 절명 및 두관과 관명을 추가하는 개정 규정 (동법 제 250조 9 제1항에 관한 부분(두 의원의 동의를 얻는 것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한한다), 제40조중 자연 공원법 부칙 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 규정(동법 부칙 제10항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 244조의 규정(농업 개혁 조장법 제14조3 개정 규정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및 제 472조의 규정(시정촌 합병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8조및 제 17조의 개정 규정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 7조, 제 10조, 제 12조, 제59조단, 제60조제 4항 및 제5항, 제 73조, 제 77조, 제 157조 제4항에서 제6항까지 제 160조, 제 163조, 제 164조 및 제 202조의 규정 공포한 날

(유통 업무 시가지의 정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제139조

시행일 전에 제 436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유통 업무 시가지의 정비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구 유통 업무 도시법"이라고 한다) 제3조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유통 업무 시설의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이하 이 항에서 "기본 방침"이라고 한다)은 제 436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 유통 업무 시가지의 정비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신 유통 업무 도시법"이라고 한다) 제3조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진행 기본 방침으로 본다.

2.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구 유통 업무 도시법 제3조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되는 승인 신청은 신 유통 업무 도시법 제3조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협의 제기로 본다.

3. 시행일 이전에 구 유통 업무 도시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인가 또는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승인 신청은 각각 신 유통 업무 도시법 제 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동의 또는 협의 제기로 본다.

4. 시행일 이전에 구 유통 업무 도시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대신이 도도부현에 한 명령 또는 도도부현 지사가 그 외의 시행자에 대하여 한 명령은 각각 신 유통 업무 도시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대신이 도도부현에 요청 또는 도도부현 지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하는 요청으로 본다.

(국가 등의 업무)

제159조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 각각의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 이 법 시행 전에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정령에 의해 관리되거나 집행하는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사무(부칙 제 161조에 "국가 등의 사무"라고 한다)는 법 시행 후, 지방 공공단체가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정령에 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취급하는 것으로 한다.

(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제160조

이 법률(부칙 제1조각호에 규정된 조항은 해당 각 조항. 이하 이 조 및 부칙 제 163조에서 같다)의 시행 전에 개정 전 각각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한 허가 등의 처분, 기타 행위 (이하 이 조에서 "처분 등의 행위"라고 한다) 또는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개정 전 각각의 법률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허가 등의 신청, 기타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신청 등의 행위"라고 한다)로, 이 법률의 시행일에 이 활동에 관한 행정 사무를 해야 할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되는 것은, 부칙 2조에서부터 전조까지의 규정 또는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이것에 근거한 명령을 포함한다)의 경과 조치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률의 시행일 이후의 개정 후

각각의 법률 적용에 대해서는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의 해당 규정에 의한 처분 등의 행위 또는 신청 등의 행위로 본다.

2. 이 법 시행 전에 개정 전 각각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기관에 신고, 보고, 제출, 기타 수속을 해야 하는 사항이 법률의 시행일 전에 그 절차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률 및 이에 근거한 정령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것 외에, 이것을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해당 기관에 보고, 신고, 제출, 기타 수속을 해야 하는 사항이 절차가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법에 의한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불복신청<sup>38</sup>)에 관한 경과 조치)

제161조

시행일 전에 한 국가 등의 사무에 관한 처분에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이하 이 조에서 "처분청"이라고 한다)에 시행일 전에 행정 불복 심사법에 규정하는 상급 행정청(이하 이 조에서 "상급 행정청"이라고 한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법에 의한 이의 신청은 시행일 이후에도 그 처분청에 이어 상급 행정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 불복 심사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처분청의 상급 행정청으로 간주된 행정청은 시행일 이전에 그 처분청의 상급 행정청이었던 행정청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에도 상급 행정청으로 간주된 행정청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경우, 그 기관이 행정 불복 심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로 하는 업무는 새로운 지방자치법 제2조제9항 제1호로 규정하는 제1호 법정 수탁 사무로 한다.

(수수료에 관한 경과 조치)

제 162조

시행일 이전에 이 법에 의한 개정 전 각각의 법률(이것에 근거한 명령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 법률 및 이에 근거한 정령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것 외에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제 163조

이 법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38) 불복(不服) 신청(申請): ① 행정 처분을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 취소, 변경을 관계 행정 기관에 청구함  
② 원 판결에 대해 불복할 때, 동일 또는 상급 법원에 그 취소, 변경의 재판을 요구함



(기타 경과 조치 정령에의 위임)

제164조

이 부칙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 조치(별칙에 관한 경과 조치를 포함한다)는 정령으로 지정한다.

2. 부칙 제 18조, 제51조 및 제 184조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지정한다.

(검토)

제 250조

신 지방자치법 제2조제9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1호 법정 수탁 사무는 가능한 한 새로 마련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신 지방자치법 별표 제1호로 내거는 것 및 신 지역 자치법에 근거한 정령에 표시된 것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검토를 추가하고 적절한 수정을 실시해야한다.

제251조

정부는 지방 공공단체가 사무와 사업을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에 따라 지방세 재원의 충실한 확보의 방도에 대해 경제 상황의 추이 등을 감안하면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제252조

정부는 의료 보험 제도, 연금 제도 등의 개혁에 따라 사회 보험 업무 처리 체제, 이것에 종사하는 직원의 분연의 자세 등에 대해서 피보험자 등의 편의를 확보, 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부칙(평성 11년 12월 22일 법률 제 160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제2조 및 제 3조를 제외한다)은 평성 1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4년 7월 31일 법률 제100호)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민간 사업자에 의한 서신의 송부에 관한 법률(평성 14년 법률 제99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제2조

이 법률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기타 경과 조치 정령에의 위임)

제3조

전조에 명시된 것 이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지정한다.

부칙(평성 14년 12월 11일 법률 제146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독립 행정법인 중소기업 기반 정비기구(이하 "기구"라고 한다)의 성립 시부터 시행한다.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

제51조

이 법률(부칙 제1조단, 각호에 규정된 조항은 해당 각 조항.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이 부칙 규정에 의해 또한 종전의 예가 되는 사항에 관한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정령에의 위임)

제52조

이 부칙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지정한다.

부칙(평성 15년 6월 20일 법률 제100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6년 4월 21일 법률 제35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구분에 따라 그 각호에서 결정되는 날 또는 시간부터 시행한다.

- 1) 제 2조, 다음 조(중소기업 종합 사업단법 및 기계 장치 신용 보험법 폐지 등에 관한 법률(평성 14년 법률 제146호) 부칙 제 9조에서 제 18조까지의 개정 규정을 제외한다) 및 부칙 3조에서 제 7조까지 제 11조, 제22조 및 제 30조의 규정 공포한 날

부칙(평성 16년 6월 18일 법률 제124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신 부동산 등기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제2조

이 법률의 시행일이 행정 기관이 보유하는 개인 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이후에 있는 경우에는 제52조중 상업 등기법 제114조 3 및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의 개정 규정 중 "제114조 3"인 것은 "제114조 4"라고 한다.

부칙(평성 17년 7월 29일 법률 제89호) 발췌

(시행 기일 등)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한 일 (이하 "시행일"이라고 한다)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항 및 부칙 제27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정령에의 위임)

제27조

이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지정한다.

유통 업무 시가지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쇼와 42년 1월 6일 정령 제3호)

최종개정 : 평성 16년 5월 26일 정령 제 181호

내각은 유통 업무 시가지의 정비에 관한 법률(쇼와 41년 법률 제110호) 제2조제5항, 제5조제1항 제3호 및 제9호, 제14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 29조, 제 34조, 제 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1호 및 제 48조의 규정에 따라 이 정령을 제정한다.

(공공시설)

제1조

유통 업무 시가지의 정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5항의 정령으로 지정하는 공중에 제공되는 시설은 공원, 광장, 녹지, 하수, 하천, 수로, 운하, 제방 등으로 한다.

(위험물)

제2조

법 제5조제1항 제3호의 정령으로 지정하는 위험물은 건축 기준법(쇼와 25년 법률 제201호) 별표 둘째 제2항 제1호 1에서 3까지, 11과 13에 규정된 물품으로 한다.

2. 법 제5조제1항 제3호 정령으로 지정한 창고, 야적장 또는 저장 탱크(이하 "창고 등"이라고 한다)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쇼와 25년 정령 제 338호) 제 130조 9 제1항의 표 상업지역 란에 명시된 수량을 넘는 전항의 위험물의 보관에 제공되는 것(제 1 석유류, 제 2석유류 또는 제 3 석유류의 보관에 제공되는 지하 저장 탱크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3.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 116조 제2항의 규정은 창고 등에 관한 제1항의 위험물의 수량 제한에 대한 동조 제3항의 규정은 창고 등에 관한 제1항의 위험물 중 동령 제 130조 9제1항의 표 제2항에서 제4항까지 규정된 위험물 수량의 한도에 관하여 준용한다.

(물자의 유통 과정에 경미한 가공 사업)

제3조

법 제5조제1항 제7호 물품의 유통 과정에서 단순 가공 사업으로 정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1) 판유리나 커튼, 바닥 깔개 및 이와 유사한 섬유제품의 절단 사업
- 2) 가구, 창호 또는 자전거 부품을 조립하는 것에 의한 이들의 제품 또는 반제품으로 하는 사업
- 3) 포장 또는 포장재 사업
- 4) 상품 또는 그 포장이나 포장재에 제품명, 기타 사항의 표시를 하거나 또는 그러한 표시가 된 것을 붙이는 사업

(유통 업무 지구의 기능을 해칠 우려가 없는 시설)

#### 제4조

법 제5조제1항 제11호의 유통 업무 지구의 기능을 해칠 우려가 없는 시설에서 정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1) 농산물, 축산물이나 수산물 처리 혹은 가공 또는 목재, 종이 혹은 합성수지 포장재 제조 사업에 대한 공장
- 2) 유통 업무 지구에서 유통 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주로해서 종업자의 임시 휴업에 제공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 3) 액화 석유 가스 판매소
- 4) 계량법(평성 4년 법률 제51호) 제 107조에 규정된 계량증명 사업에 대해 제공되는 사업소

(시행 계획 및 처리 계획에 대해 협의해야 하는 자)

#### 제5조

법 제29조정령으로 지정하는 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자로 한다.

- 1) 다음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 부지 등의 양수인으로 특정되는 자
- 2) 공공시설이 아닌 공중에 제공해주는 시설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 것의 관리자

(양수인 공모를 하지 않은 조성 부지 등)

#### 제6조

시행자는 다음에 열거 조성 부지 등에 대해서는 공모를 하지 않고 양수인을 결정할 수 있다.

- 1) 토지 수용권법(쇼와 26년 법률 제 219호) 제 3조에 규정된 사업에 대해 제공되는 조성 부지 등
- 2) 전호에 규정된 것 외에 다음에 열거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부지의 조성 부지 등
  - ① 해당 부지의 용도, 위치와 규모, 유통 업무 단지에 대한 도시 계획에서 정해져 있는 것

② 법 제3조2 제1항의 유통 업무 시설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에서 정한 유통 업무 지구의 규모에 비추어 적정한 규모로, 해당 지역에 위치한 것이 해당 기본방침에서 정한 그 지역 기능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유통 업무 시설을 건설하는 법인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각각 다음에 규정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부지인 것

- (1) 해당 유통 업무 시설을 법 제35조제1호와 제2호(유통 업무 시설의 건설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규정된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임대 또는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지방 공공단체가 자본금, 기본금,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의 3분의 1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것, 기타 그 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자금과 신용을 가진 자
- (2) 해당 유통 업무 시설을 법 제35조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임대 또는 양도하는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쇼와 24년 법률 제 181호)에 의한 사업 협동조합, 사업 협동 소조합 또는 협동조합 연합회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과 신용을 가진 자
- (3) 해당 유통 업무 시설을 스스로 경영하는 농업 협동조합법(쇼와 22년 법률 제132호) 제10조제1항 제8호의 사업을 하는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농업 협동조합 연합회

2.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제공되는 조성 부지 등은 시행자가 스스로 그러한 용도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고 방법 등)

제7조

법 제30조제2항 공고는 관보, 공보 및 기타 소정의 방법으로 진행해야한다.

제8조

법 제41조제1항의 공고는 공보, 기타 소정의 방법으로 할뿐만 아니라 해당 공보, 기타 소정의 방법에 의한 공고를 한 날부터 기산하여 10일간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을 시행해야하는 토지의 구역 또는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의 사업 지역 내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해서 실행해야한다.

2. 전항의 경우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토지의 구역 또는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의 사업 지역에 속하는 도시 및 서류의 송부를 할 사람의 주소 또는 그 사람의 마지막 주소에 속하는 시정촌의 장은 시행자의 요청에 의해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가 되는 내용의 공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는 동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고가 있는 날

(두 개 이상의 시정촌 장의 공고가 있을 때에는 마지막 공고가 있던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을 경과한 날까지 해야 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해 시정촌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는 도도부현 또는 독립 행정 법인 도시 재생기구가 시행하는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에 관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쇼와 22년 법률 제67호) 제2조제9항 제1호로 규정하는 제1호 법정 수탁 사무로 하고, 도도부현 이외의 지방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에 관한 것은 동항 제2호에 규정하는 제2호 법정 수탁 사무로 한다.

4. 법 제41조제1항의 공고가 있는 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국토교통성령에의 위임)

제9조

법 및 이 정령으로 정하는 것 외에 법 및 이 정령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절차, 기타 사항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44년 6월 13일 정령 제 158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법의 시행일(쇼와 4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45년 12월 2일 정령 제 333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건축 기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쇼와 45년 법률 제109호. 이하 "개정법"이라고 한다)의 시행일(쇼와 4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53년 6월 16일 정령 제 239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60년 4월 23일 정령 제111호)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62년 3월 20일 정령 제54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쇼와 6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5년 5월 12일 정령 제 170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도시 계획법 및 건축 기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 "개정법"이라고 한다)의 시행일(평성 5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시행령 등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제13조

이 정령의 시행 시 현재 구 도시 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도시 계획 구역에 관한 용도 지역에 대해서는 이 정령의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을 경과한 날까지의 사이에는 이 정령에 의한 개정 후의 다음에 열거한 정령의 규정 중 용도 지역에 관한 부분은 적용하지 않으며, 이 정령의 개정 이전의 다음에 열거한 정령 규정 중 용도 지역에 관한 부분은 또한 그 효력이 있다.

- 1) 지방자치단체 수수료령
- 2) 주택금융공고법 시행령
- 3) 택지 건물 거래업법 시행령
- 4) 유통 업무 시가지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평성 5년 10월 6일 정령 제 329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법의 시행일(평성 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5년 11월 8일 정령 제 354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유통 업무 시가지의 정비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일(평성 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1년 11월 10일 정령 제 352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평성 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2년 6월 7일 정령 제 312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내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11년 법률 제88호)의 시행일(평성 13년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3년 9월 5일 정령 제 286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평성 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4년 11월 13일 정령 제 331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건축 기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일(평성 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제4조

이 정령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16년 4월 9일 정령 제 160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평성 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6년 5월 26일 정령 제 181호) 발취

이 정령은 기구의 설립 시부터 시행한다.

유통 업무 시가지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쇼와 42년 1월 27일 건설부령 제3호)

최종개정 : 평성 19년 8월 3일 국토교통성령 제75호

유통 업무 시가지의 정비에 관한 법률(쇼와 41년 법률 제110호) 제5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 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4항, 제 26조, 제 34조,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및 제3항 및 유통 업무 시가지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쇼와 42년 정령 제3호) 제 4조, 제 6조, 제9조제2항 및 제11조규정에 의거, 유통 업무 시가지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다음 같이 결정한다.

(법 제5조제2항 국토교통성령으로 지정하는 공익적인 시설)

제1조

유통 업무 시가지의 정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제2항 국토교통성령으로 지정하는 공익적인 시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 2) 전기 사업법(쇼와 39년 법률 제 170호)에 의하여 전기 사업에 대해 제공되는 전기 공작물 가스 사업법(쇼와 29년 법률 제51호)에 의한 가스 사업(동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반 가스 사업과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간이 가스 사업에 한한다)에 대해 제공해주는 가스 공작물, 수도, 통신용으로 제공해주는 시설과 철도, 궤도, 삭도<sup>39)</sup> 또는 무궤도 전차에 제공되는 시설(전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3) 은행, 신용 협동조합이나 신용 협동조합 또는 협력 은행이나 신용 금고 연합회의 영업소

제2조

삭제

39) 지주 또는 임목을 이용하여 와이어로프 또는 강선 등을 설치하여 원목을 나르거나 자재 인원 수송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가선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사업지 위치도 및 사업 지구 지역도)

제9조

법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지역(사업지를 가공 지역으로 나눌 때, 사업지와 가공 구역. 이하 이 조 및 다음 조 제3항에서 같다)은 사업지 위치도 및 사업 장소 지역 지도를 작성하고 결정해야한다.

2. 전항의 사업지 위치도는 축척 25000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형도여야 한다.

3. 제1항의 사업 지구 지도는 배율 2500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지의 지역 및 그 지역을 분명히 표시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도도부현, 시정촌, 시정촌 지역 내 도시의 및 토지의 지번 및 형상을 표시한 것이어야 한다.

(설계도)

제10조

법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설계는 설계 설명서 및 설계도를 작성하고 결정해야한다.

2. 전항의 설계 설명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해야한다.

- 1) 설계 방침
- 2) 토지 이용 계획

- 3) 도시 구획 조정 계획(처분 후의 조성 부지 등으로 부지에 건설 될 유통 업무 시설과 공익적인 시설 배치의 가정을 포함한다)
  - 4) 공공시설 및 공익적인 시설 정비 계획
  - 5) 부대사업의 개요
3. 제1항의 청사진은 배율 2500분의 1 이상으로 사업 지역과 도시 지역의 경계 및 조성 시설 등의 위치, 형상 및 종별을 표시한 평면도 및 전항 제3호 및 제4호에 열거한 사항의 개요를 표시한 그 외의 도면이어야 한다.

(자금 계획서)

제11조

법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자금 계획은 별기 양식 제 1의 자금 계획서에 의해 결정해야한다.

(설계 설정에 대한 기술적 기준)

제12조

법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설계의 설정에 대한 동조 제4항에 규정된 기술적 기준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1) 설계는 해당 유통 업무 단지 내에 건설되게 될 공공시설, 공익적인 시설 및 유통 업무 시설의 규모, 구조 등을 고려하여, 이 시설이 일체적으로 작동해 얻을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한다.
- 2) 도시 구역은 지형, 지반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그 도시 구역 내에 건설되는 공공시설, 공익적인 시설 및 유통 업무 시설의 규모, 구조 등을 상정하고 적절한 것이 되도록 결정해야한다.
- 3) 도로와 자동차 주차장은 차량과 보행자 각각의 교통안전과 원활화가 확보되도록 결정해야한다.
- 4) 간선 도로 이외의 도로(보행자 전용 도로를 제외한다)의 폭이 8m(특별한 사정으로 부득이 한 경우에는, 작은 구간에 한해 6m) 이상으로 해야 한다.
- 5) 공원, 녹지 및 광장은 휴식, 운동, 피난 등의 이용 목적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결정하여야한다.
- 6) 하수구는 해당 유통 업무 단지 규모 등에서 상정되는 오수량과 지형, 강수량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빗물 누출을 차질없이 처리하도록 결정해야한다.
- 7) 공익적인 시설은 각각의 기능에 따라, 유통 업무 지구의 편의가 보장되도록 그 위치, 범위 등을 결정해야한다.
- 8) 유통 업무 시설 부지는 해당 부지에 건설되게 될 유통 업무 시설의 용도, 규모, 구조 등을 상정하고 적절한 것이 되도록 결정해야한다. 이 경우 소음, 진동

등에 의한 환경의 악화 방지에 필요한 녹지대, 기타 완충 지대가 위치하도록 고려해야한다.

- 9) 설계는 유통 업무 단지 및 그 주변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유통 업무 단지의 규모, 형상 및 주변의 상황, 유통 업무 단지 내 토지의 지형 및 지반의 성격 및 유통 업무 단지 내에 건설되는 리스크와 유통되는 업무 시설 등의 용도 및 부지의 규모와 배치를 감안하여 유통 업무 단지의 식물의 생육 확보에 필요한 수목의 보존, 표토의 보존,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결정해야한다.

(처분 계획서)

#### 제13조

법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처분 계획은 별기 양식 제 2의 처분 계획서에 의해 결정해야한다.

(처분 계획 또는 변경의 인가 신청 등의 절차)

#### 제14조

법 제26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거나 또는 같은 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신청하려고 하는 시행자는 처분 계획을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처분 계획 변경인가를 받거나 또는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처분 계획 변경 협의를 신청하려고하는 시행자는 처분 계획 중 변경에 관한 사항을 승인 신청서 또는 협의 신청서와 함께 도도부현 또는 독립 행정 법인 도시 재생 기구는 국토교통대신에게, 그 외의 사람은 도도부현 지사에 제출해야한다.

2. 법 제29조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승인 신청서 또는 협의 신청서에 그 협의를 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한다.

(국토교통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 등을 요하지 않는 처분 계획의 변경)

#### 제15조

법 제26조제1항의 국토교통성령에서 지정한 경미한 변경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1) 처분 계획서에 규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변경
- 2) 설계 변경에 따른 조성 시설 등의 면적 변경
- 3) 조성 시설 등의 면적 변경에 따른 처분 가액의 변경
- 4) 조성 부지 등의 취득 및 조성이나 건설에 필요한 비용 또는 공공시설의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변화에 따른 처분 가액의 1할 이내의 변경
- 5) 동일 연도 내에서 처분 시기의 변경

(시행 계획 또는 그 변경 신고 절차)

제16조

법 제26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시행자는 시행 계획을,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시행 계획의 변경 신고를 하고자 하는 시행자는 시행 계획 중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고서와 함께 도도부현 또는 독립 행정 법인 도시 재생 기구에는 국토 교통 대신에게, 그 외의 사람은 도도부현 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2. 법 제 29조의 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 전항의 신고서에는 그 협의를 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한다.

(국토교통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게의 신고를 요하지 않는 시행 계획의 변경)

제17조

법 제26조제2항 국토교통성령으로 지정한 경미한 변경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1) 도시 구획의 경계 또는 조성 시설 등의 위치 혹은 형태의 사소한 변경
- 2) 공사의 사양을 변경하는 설계 변경

(시행 계획 및 처리 계획에 대해 협의해야 하는 자)

제18조

유통 업무 시가지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고 한다) 제5조제2항 국토교통성령으로 지정하는 시설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1. 다음에 열거하는 시설,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의 시행으로 그 효용을 상실 또는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1) 농업용을 위한 연못 및 배수용 기장
- 2) 공업용 수도 사업 법률(쇼와 33년 법률 84호)에 의한 산업용 수도 사업에 대해 제공되는 공업용 수도

2. 다음에 열거하는 시설에서 시행 지역 안에 설치되는 것

- 1) 전기 사업법에 의한 전기 사업에 대해 제공되는 전기 공작물
- 2) 가스 사업법에 의한 가스 사업(동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반 가스 사업 과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간이 가스 사업에 한한다)에 대해 제공해주는 가스 공작물

(조성 부지 등의 양수인의 공모)

제19조

법 제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실시하는 양수인의 공모는 지방 공공단체는



공보에 등재 및 기타 소정의 수단으로, 독립 행정 법인 도시 재생 기구는 배치에 게시에 의해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2. 시행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주요 관계 기관, 언론 기관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주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3. 제1항의 공모는 적어도 신청 접수 시작일 2주 전에 해야 한다.

(유통 업무 시설의 건설 계획)

제20조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 업무 시설을 건설해야 하는 부지를 양도자가 결정하는 유통 업무 시설의 건설 계획은 별기 양식 제 3 유통 업무 시설의 건설 계획서에 도면을 첨부해서 결정해야한다.

2. 전항의 도면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하고, 유통 업무 시설의 건설 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을 대조하는 번호를 붙인 배율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로 해야 한다.

- 1) 해당 부지 경계 및 해당 부지 내의 유통 업무 시설 배치
- 2) 전호 유통 업무 시설의 건설 연도별 구분

(조성 부지 등에 관한 권리의 처분에 대한 승인 신청 절차)

제21조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 부지 등을 공모에 의하지 않고 양도자가 양도받은 것에 따라서 법 제38조제1항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또는 이전하는 경우 별기 양식 제4 또는 제5의 권리 처분 승인 신청서를, 그 외의 경우에는 별기 양식 제4의 권리 처분 승인 신청서를 도도부현 지사에게 제출해야한다.

(시행자가 실행하는 도서의 송부)

제22조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은 법 제30조제2항 공고를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조성 시설 등이 속하는 구역에 포함된 지역의 명칭 및 해당 지역 면적을 기재한 서면에 도면을 첨부해야한다.

2. 전항의 도면은 축척 1000분의 1 이상으로 조성 시설 등이 속하는 지역 및 그 조성 시설 등의 위치, 형상 및 종별을 표시한 평면도로 해야 한다.

(표지의 설치)

제23조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의 설치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표시한 표지에 의해 시행해야한다.

- 1)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구역에 있는 지역의 명칭
- 2) 시행자의 명칭
- 3) 공사 완료 공고의 연월일
- 4) 표지판 설치자의 명칭

(측량 표지)

제24조

법 제39조2 제1항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표지는 표시판에 측량의 목적과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시행자의 명칭을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의 교부)

제25조

건축 기준법(쇼와 25년 법률 제 201호) 제6조제1항 또는 제6조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필증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계획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의 교부를 도도부현 지사(지방자치법(쇼와 22년 법률 제67호) 제 252조 19 제1항의 지정 도시 및 동법 제 252조 20 제1항의 핵심 도시의 경우에는 각각 그 장과, 법 제5조제1항의 업무가 지방자치법 제 153조 제2항(동법 제 2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행정구에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해 시정촌(특별구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사람으로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유통 업무 효율화 기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의 인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의 청문 절차)

제26조

주무대신이 법 제47조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통 업무 효율화 기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의 인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행정 절차법(평성 5년 법률 제88호) 제3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해 행하는 청문 절차에 관해서는 국토교통성 청문 절차 규칙(평성 12년 총리부, 교통성, 건설부령 제1호) 제 2조에서 제 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령 제3조제1항 중 "행정청"인 것은 "유통 업무 시가지의 정비에 관한 법률(쇼와 41년 법률 제110호) 제47조3 제2항 주무대신"으로, 동령 제3 제2항 및 제3항, 제 5조, 제6조제2항에서 제4항까지, 제10조, 제12조제1항 제5호 및 제8호 및 제13조중 "행정청"인 것은 "유통 업무 시가지의 정비에 관한 법률 제47조3 제2항의 주무대신"으로 바꾼다.

(권한의 위임)

제27조

법 제3장 및 제4장에서 규정하는 국토교통대신의 권한 중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지역 정비 국장과 북해도 개발 국장에게 위임한다. 그러나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업무 내용은 국토교통대신 스스로 실행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계획에 대한 협의 및 동의.
- 2)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계획의 신고를 접수하는 것(도도부현이 시행하는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 3) 법 제 43조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에 대해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는 것
- 4)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
- 5) 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지방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 6)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대신과 경제산업대신과 협의하는 것(유통 업무 지구, 유통 업무 단지에 관련된 도시 개발 사업 등 예정 지역 또는 유통 업무 단지에 대한 도시 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에 동의하려고 하는 경우에 한한다).
- 7)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것(도도부현이 시행하는 유통 업무 단지 조성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부칙

이 성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44년 8월 25일 건설부 시행령 제49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성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44년 11월 13일 건설부령 제53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성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49년 8월 1일 건설부 시행령 제10호)

1. 이 성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50년 3월 18일 건설부령 제3호) 발취

1. 이 성령은 도시 계획법 및 건축 기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쇼와 49년 법률 제67호)의 시행일(쇼와 5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51년 1월 30일 건설부령 제2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성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56년 9월 28일 건설부 시행령 제12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성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부칙 제 2조에서 제 20조까지의 규정은 쇼와 5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6년 9월 29일 건설부령 제27호)

이 성령은 행정 절차법의 시행일(평성 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7년 3월 1일 건설부령 제5호)

이 성령은 가스 사업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6년 법률 제42호)의 시행일(평성 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7년 3월 28일 건설부 시행령 제8호)

이 성령은 지방자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6년 법률 제48호) 중 제 2편 제12장의 개정 규정 및 지방자치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평성 6년 법률 제49호) 제1장 규정의 시행일(평성 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1년 4월 26일 건설부 시행령 제14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성령은 건축 기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일(평성 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1년 9월 27일 건설부 시행령 제41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성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조에서 부칙 제 29조까지의 규정은 법 일부의 시행일(평성 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1년 1월 17일 건설부 시행령 제9호)

1. 이 성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성령의 시행 시 현재 있는 이 성령에 의한 개정 전의 양식에 의한 신청서에 대해서는 당분간 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부칙(평성 12년 1월 31일 건설부 시행령 제10호)

이 성령은 평성 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2년 11월 20일 건설부 시행령 제41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성령은 내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11년 법률 제88호)의 시행일(평성 1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2년 12월 14일 총리부, 교통성, 건설부령 제1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명령은 내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11년 법률 제88호)의 시행일(평성 1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5년 3월 28일 국토교통성령 제37호)

이 성령은 평성 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6년 6월 18일 국토교통성령 제70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성령은 평성 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7년 3월 7일 국토교통성령 제12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성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9년 8월 3일 국토교통성령 제75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성령은 평성 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기 양식 제 1

별기 양식 제 2

별기 양식 제 3

별기 양식 제 4

별기 양식 제 5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평성 10년 6월 3일 법률 제92호)

최종개정 : 평성 19년 6월 1일 법률 제70호

제1장 총칙 (제1조- 제 7조)

제2장 기본 방침 (제 8조)

제3장 기본 계획의 승인 등 (제9조- 제 15조)

제4장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 조치

제1절 인증 중심 시가지의 특별 조치 (제16조- 제 39조)

제2절 인정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특별 조치 (제40조- 제 50조)

제3절을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를 위해 그 외의 특별한 조치 (제51조- 제 55조)

제5장 중심 시가지 활성화 본부 (제56조- 제 65조)

제6장 기타 조항 (제66조- 제 73조)

부칙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중심 시가지가 지역 경제와 사회 발전에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에 따라, 최근의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 소비자 생활의 변화 등 사회 경제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고, 중심 시가지의 도시 기능 증진 및 경제 활력의 향상(이하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라고 한다)을 종합적이고 일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와 관련해 기본 이념, 정부의 기본 방침 수립, 시정촌에 의한 기본 계획의 작성 및 그 내각 총리대신의 인정, 해당 인정을 받은 기본 계획에 근거한 사업에 대한 특별 조치, 중심 시가지 활성화 본부의 설치 등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로써 지역의 진흥과 질서 있는 정비를 도모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 및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심 시가지)

제2조

이 법률에 의한 조치는 도시의 중심 시가지로, 다음에 열거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하 "중심 시가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 1) 해당 시가지에 상당수의 소매 상업이 집적해 있고, 도시 기능이 상당 정도 집적되어 있으며, 시정촌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
- 2) 해당 시가지의 토지 이용과 상업 활동 상황 등으로 보어 기능적인 도시 활동의 확보 및 경제 활력 유지에 지장을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
- 3) 해당 시가지의 도시 기능의 증진 및 경제 활력의 향상을 종합적이고 일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해당 시가지에 거주하는 시정촌 및 그 주변 지역의 발전에 유효하고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것

(기본 이념)

제3조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는 중심 시가지가 지역 주민 등의 생활과 교류의 장소임을 감안하면서 지역의 사회, 경제 및 문화 활동의 거점이 되기에 어울리는 매력적인 도시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 및 관련업체가 상호 밀접한 연계를 도모하면서, 주체적의 중요성에 따라 그 노력에 대해 국가가 집중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취지로 실행되어야 한다.

(국가의 책무)

제4조 국가는 전조의 기본 이념에 의해서 그 지역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존중하면서,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 및 실시할 책임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지방자치단체는 제 3조의 기본 이념에 의해서 그 지역의 지리와 자연적인 특성, 문화유산 및 경제 환경 변화를 감안하면서, 국가의 시책과 함께 효과적으로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시책을 책정 및 실시할 책임이 있다.

(사업자의 책무)

제6조

사업자는 제 3조의 기본 이념에 따라 그 사업 활동을 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실시를 위한 협력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의)

제7조

이 법률에서는 "중소 기업인"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중소 소매 상업자"는 주로 소매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 4호에서 제7호까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이 3억엔 이하의 회사 및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직원의 수가 3백 명 이하의 회사 및 개인으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기타 업종(다음 호에서 제4호까지 열거한 업종 및 제5호의 정령으로 지정하는 업종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
  - 2)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이 1억엔 이하의 회사 및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직원의 수가 백 명 이하의 회사 및 개인으로, 도매업(제5호의 정령으로 지정하는 업종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
  - 3)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이 5천만엔 이하의 회사 및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직원의 수가 백 명 이하의 회사 및 개인으로, 서비스업(제5호의 정령으로 지정하는 업종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
  - 4)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이 5천만엔 이하의 회사 및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직원 수가 50 명 이하의 회사 및 개인으로, 소매업(다음 호 정령으로 지정하는 업종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
  - 5)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이 해당 업종에 대해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회사 및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산업별로 정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회사와 개인으로, 정령으로 지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
  - 6) 기업 조합
  - 7) 협력 단체
  - 8) 사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기타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그 연합회로, 정령으로 지정하는 것
2. 이 법률에서 "상업 기반 시설"이라함은 고객, 기타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위한 시설 및 상당수 소매업의 업무를 행하는 자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위한 시설을 말하며, "상업 시설"은 소매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사업에 제공되는 시설로, 상업 기반 시설 이외의 것을 말한다.
3. 이 법률에서 "도시형 신 사업"은 중심 시가지에 모이는 소비자 등의 다양하고 고급화 된 수요에 대응하여 새로운 상품의 생산이나 새로운 업무의 제안 또는 상품의 생산이나 판매 혹은 업무 제공 방식의 개선을 행하는 다음에 열거된 사업으로, 중심 시가지 사업 구조의 고도화 또는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 1) 주로 소비자의 삶에 대해 제공되는 공업 제품의 제조 또는 가공 사업

- 2) 업무를 해당 매체의 제공을 통해서 제공되는 사업
4. 이 법률에서 "도시 복지 시설"이라함은 교육 문화 시설, 의료 시설, 사회 복지 시설, 기타 도시의 거주자 등 공동의 복지 또는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5. 이 법률에서 "공영 주택 등"이라함은 지방자치단체, 지방 주택 공급 공사, 기타 공법상의 법인에서 자신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필요로 하는 정령으로 지정하는 사람에게 임대 또는 양도할 목적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말한다.
6. 이 법률에서 "중심 시가지 공동 주택 공급 사업"은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되는 공동 주택의 건설 및 그 관리 또는 양도에 관한 사업 및 이들에 부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이 법률에서 "중소 소매 상업 고도화 사업"이라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가 실시(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조합원 또는 소속 직원에 의한 실시를 포함한다)하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1) 중소기업진흥법(쇼와 48년 법률 제101호)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점가 진흥 조합 등 주로 중소기업자인 조합원 또는 소속 당원의 경영 근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사업에 쓰이지 않은 점포를 세놓는 사업을 포함한다)
  - 2) 사업 협동조합, 사업 협동 소조합 또는 협동조합 연합회, 주로 중소기업자인 조합원 또는 소속 당원의 경영 근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포를 하나의 단지에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중소기업진흥법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
  - 3) 사업 협동조합 또는 사업 협동 소조합 중소기업자인 조합원을 위한 중소기업진흥법 제4조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제6호에서 "공동사업장"이라고 한다)의 설치 사업
  - 4) 협력 단체로 중소기업진흥법 제4조제3항 제2호로 정하는 사업
  - 5) 둘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합병을 하여 설립된 소매업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해당 회사의 사업장(중소기업진흥법 제4조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의 설치 사업
  - 6) 둘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의 대부분을 출자하고 있는 회사로, 그 회사 및 그 회사에 출자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사업장의 설치 사업 또는 소매업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의 사업장 설치 사업
  - 7) 상공회, 상공 회의소 또는 중소기업이 출자하고 있는 회사로, 정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하 "특정 회사"라고 한다)이나 일반 사단법인 혹은 일반 재단법인(이하 "일반 사단 법인 등"이라고 한다)의 상가 지역, 공단 또는 건물의 내부에 집단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 소매 상업의 경영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행하는 중소 소매 상업 진흥법 제 4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사업에 쓰이지 않은 점포를 세놓는 사업을 포함한다)

8. 이 법률에서 "특정 상업 시설 등의 정비 사업"은 상업 기반 시설 또는 상당한 규모의 상업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전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9. 이 법률에서 "특정 사업"이라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중심 시가지에 도시형 새로운 사업을 실시하는 기업 등의 입지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 상당수의 업체들이 이용하기 위한 것을 제공하는 사업

2) 식품(음·식료품(화훼를 포함한다) 중 약사법(쇼와 35년 법률 제145호)에서 규정하는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 이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동호에서 같다) 소매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이 호에서 "식품 소매업자"라고 한다) 또는 사업 협동조합, 사업 협동 소조합, 협동조합, 기타 정령이 정하는 법인으로, 식품 소매 업체를 직접 혹은 간접의 구성원으로 하는 것의 출자에 관련된 법인으로 정령이 정하는 것이 상당수의 식품 소매 업체의 점포가 집적하는 시설로, 그 시설과 일체적으로 주차장, 휴게소, 기타 해당 시설의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이 정비되어있는 것(이것과 일체적으로 설치하는 창고, 기타 식품에 관한 유통 업무 시설을 포함한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중심 시가지의 식품 유통 촉진에 특히 기여하는 것(제 44조에서 "중심 시가지 식품 유통 촉진 사업"이라고 한다)

3) 그 전부 또는 일부 구간이 중심 시가지에 있는 노선에 관한 일반 승합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도로 교통법(쇼와 26년 법률 제 183호) 제3조제1호 ①에 규정된 일반 승합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말한다)을 하는 자가 그 사업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성령으로 지정하는 것

4) 중심 시가지의 화물 운송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행할 다음에 열거한 사업을 함께 실시하는 사업(이하 "화물 운송 효율화 사업"이라고 한다)

① 특정 중심 시가지에서 모이는 화물 또는 해당 중심 시가지로의 화물의 배달에 필요한 것을 행하기 위해 다음에 열거하는 시설로 정령이 정하는 것을 정비하는 사업

(1) 화물 위탁을 위한 시설

(2) 창고 또는 수화물 센터

(3) (1) 또는 (2)에 규정된 시설에 부대하는 주차장이나 차고

② ①에 규정된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법(평성 원년 법률 83호)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일반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을 말한다) 또는 제 1종 화물 이용 운송 사업(화물 이용 운송 사업법(평성 원년 법률 제82호) 제2조제7항에서 규정하는 제 2종 화물 이용 운송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것

10. 이 법률에서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은 중소 소매 상업 고도화 사업, 특정 상업 시설 등 정비 사업 및 특정 사업으로 민간 사업자가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장 기본 방침

### 제8조

정부는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한 기본 방침(이하 "기본 방침"이라고 한다)을 결정하여야한다.

2. 기본 방침에 대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결정하여야한다.

- 2) 중심 시가지 활성화의 의의 및 목표에 관한 사항
- 3)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실시해야 하는 시책에 관한 기본 방침
- 4) 중심 시가지의 위치와 지역에 대한 기본 사항
- 5) 중심 시가지의 토지 구획 정리법(토지 구획 정리법(쇼와 29년 법률 제119호)에 의한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가지 재개발 사업(도시 재개발법(쇼와 44년 법률 제38호)에 의한 시가지 재개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공중에 제공해주는 시설의 정비, 기타 시가지의 정비 개선을 위한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5) 중심 시가지의 도시 복지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6) 공공 주택 등을 정비 사업, 중심 시가지 공동 주택 공급 사업, 기타 중심 시가지의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 및 그 사업과 일체로 하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7) 중소 소매 상업 고도화 사업, 특정 상업 시설 등 정비 사업, 기타 중심 시가지의 상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조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8) 제4호에서 전호까지 규정하는 사업 및 조치와 일체적으로 추진하는 다음에 열거한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①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위한 사업
  - ② 특정 사업
- 9) 제4호에서 전호까지 규정하는 사업과 조치의 종합적이고 일체적인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10) 중심 시가지의 도시 기능의 집적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11) 기타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중요 사항
- 3. 정부는 기본 방침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전항 제4호에서 제8호까지 및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사업과 조치를 종합적이고 일체적으로 추진하도록 이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 4. 내각 총리대신은 중심 시가지 활성화 본부(제 56조에 규정된 중심 시가지 활성화 본부를 말한다. 다음 조 및 제 14조에서 같다)가 만든 정책의 방안에 대해 의회의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 5. 내각 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결정이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본 방침을 공개해야 한다.
- 6. 정부는 정세의 추이에 의한 필요가 발생했을 때에는 기본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
- 7.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기본 방침의 변경에 준용한다.

### 제3장 기본 계획의 승인 등

(기본 계획의 승인)

#### 제9조

시정촌 기본 방침에 따라 해당 시정촌 지역의 중심 시가지에 대해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일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고 한다)을 만들고 내각 총리대신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 2. 기본 계획에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
  - 1)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에 대한 기본 방침
  - 2) 중심 시가지의 위치와 지역
  - 3)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를 목표
  - 4)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시가지 재개발 사업,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공중에 제 공해주는 시설의 정비, 기타 시가지의 정비 개선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 5) 도시 복지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 6) 공공 주택 등의 정비 사업, 중심 시가지 공동 주택 공급 사업, 기타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 및 그 사업과 일체로 하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지방 주택 공급 공사의 활용으로 중심 시가지 공동 주택 공급 사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 주택 공급 공사의 중심 시가지 공동 주택 공급 사업 촉진에 관한 업무의 실시에 관한 사항)

- 7) 중소 소매 상업 고도화 사업, 특정 상업 시설 등 정비 사업, 기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조치에 관한 사항
  - 8) 제4호에서 전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사업 및 조치와 일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음에 열거한 사업에 관한 사항
    - ①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 ② 특정 사업
  - 9) 제4호에서 전호까지 규정하는 사업 및 조치의 종합적이고 일체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
  - 10) 중심 시가지의 도시 기능 집적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 11) 기타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2) 계획 기간
3. 기본 계획은 도시 계획과 도시 계획법(쇼와 43년 법률 제100호) 제18조2 시정촌의 도시 계획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의 조화가 유지되며, 지방자치법(쇼와 22년 법률 제67호)제2조제4항 기본 구상에 입각한 것이어야 한다.
4. 시정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 계획을 만들려고 할 때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심 시가지 활성화 협의회가 조직되어있는 경우에는 기본 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중심 시가지 활성화 협의회 의견,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심 시가지 활성화 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 제7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그 시정촌 지역을 해당 지구로 상공회 또는 상공회의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시정촌은 지방 주택 공급 공사의 중심 시가지 공동 주택 공급 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지방 주택 공급 공사와 그 설립법인(지방 주택 공급 공사법(쇼와 40년 법률 제124호)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설립 법인을 말하며, 해당 시정촌을 제외한다)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내각 총리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신청이 있는 기본 계획이 다음에 열거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하는 것으로 한다.
  - 1) 정책에 부합하는 것
  - 2) 해당 기본 계획의 실시가 해당 도시의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를 실현하는데 상당 정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는 것
  - 3) 해당 기본 계획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실시될 것이라 전망되는 것
7. 내각 총리대신은 전항의 인증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심 시가지 활성화 본부에 대해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8. 내각 총리대신은 제6항의 인증을 하려고 하는 경우, 제2항 제4호에서 제10호까지 열거한 사항에 대해서, 경제산업대신, 국토교통대신, 총무대신 기타 해당 사항

에 관한 관계 행정 기관의 장(다음 조, 제 12 및 제 13조에서 간단히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라고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9. 내각 총리대신은 제6항의 인정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것을 해당 시정촌에 통지해야한다.

10. 시정촌은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도도부현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의견을 청취한 중심 시가지 활성화 협의회 또는 상공회 혹은 상업 회의소에 그러한 인정을 받은 기본 계획(이하 "인정 기본 계획"이라고 한다)의 사본을 송부하고, 그 내용을 공표해야한다.

11. 도도부현은 인정 기본 계획의 사본을 송부 받은 때에는 시정촌에 대해, 해당 인증 기본 계획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실시에 관해 필요한 조언을 할 수 있다.

(인정에 관한 처리 기간)

제10조

내각 총리대신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동조 제6항의 인정에 관한 처분을 이행해야한다.

2.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은 내각 총리대신이 전항의 처리 기간에 전조 제6항의 인정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동조 제8항의 동의에 대해서 동의 또는 부동의를 취지를 통지해야한다.

(인정 기본 계획의 변경)

제11조

시정촌은 인정 기본 계획의 변경(내각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각 총리대신의 인정을 받아야한다.

2. 제9조제4항에서 제11항까지 및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인증 기본 계획 변경에 준용한다.

(보고의 요구)

제12조

내각 총리대신은 제9조제6항의 인정(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시정촌(이하 "인정 시정촌"이라고 한다)에 대해 인증 기본 계획(인정 기본 계획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수정된 것. 이하 같다)의 실시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은 인증 시정촌에 대해 인정 기본 계획(제9조제2항 제4호에서 제10호까지 열거한 사항에 한한다)의 실시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인정의 취소)

제13조

내각 총리대신은 인정 기본 계획이 제9조제6항 각호 중 하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총리는 미리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한다.

2.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취소에 관해 총리에게 의견을 말할 수 있다.

3. 제9조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취소에 준용한다.

4. 시정촌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도도부현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청취한 중심 시가지 활성화 협의회 또는 상공회나 상공 회의소에게 통지하고 공표해야한다.

(인정 시정촌에 대한 지원 등)

제14조

인정 시정촌은 중심 시가지 활성화 본부에 대해 인정 기본 계획의 시행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해당 인정 기본 계획의 원활하고 안전한 진행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부의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시책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다.

2. 중심 시가지 활성화 본부는 전항의 제안에 대해 검토를 추가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해당 인정 시정촌에 통지하고, 인터넷의 이용,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해야한다.

3. 국가는 인정 도시에 대해 해당 인정 기본 계획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실시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 및 추가 원조를 하도록 노력해야한다.

4. 전 세항에 규정된 것 외에 국가 및 인정 시정촌은 해당 인정 기본 계획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실시가 촉진되도록 상호 협력을 도모하면서 협력해야한다.

(중심 시가지 활성화 협의회)

제15조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 만들려고 하는 기본 계획 및 인정 기본 계획과 그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 기타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를 종합적이고 일체적인 추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제 1와 제2호에 규정된 자는 중심 시가지에 대해 협의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공동으로 중심 시가지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조직 할 수 있다.

1) 그러한 중심 시가지의 도시 기능의 증진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위한 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합한 사람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것 중 하나 이상인 자

① 중심 시가지 정비 추진기구(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중심 시가지 정비 추진 계획을 말한다. 다음 조, 제18조 및 제 19조에서 같다)

② 양호한 시가지 형성을 위한 마을 만들기의 추진을 도모하는 사업 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정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

2) 중심 시가지의 경제 활력 향상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합한 자로 다음에 열거하는 것 중 하나 이상인 자

① 그 중심 시가지 지역을 해당 지구로 상공회 또는 상공 회의소

② 상업 등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 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일반 사단법인 등 또는 특정 회사에 있어 정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

2. 중심 시가지에서 제9조제2항 제4호에서 제8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중심 시가지에서 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항 각호에 규정된 사람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를 조직했을 때는 지체없이 내각부령 경제 산업 성령 국토 교통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와 내각부령 경제 산업 성령 국토 교통 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4. 제1항 제1호 ①과 ② 및 제2호 ①과 ②에 규정된 사람 및 다음에 열거하는 자로서 협의회 구성원이 아닌 자는 자신을 협의회 구성원으로 추가하도록 협의회에 신청할 수 있다.

1) 중심 시가지에서 제9조제2항 제4호에서 제8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자

2) 전항에 규정된 사람 외에 인정 기본 계획과 그 실시에 관해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

3) 중심 시가지를 그 지역에 포함하는 시정촌

5.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로부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제기가 있을 경우에 협의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기를 거절할 수 없다.

6.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항에 규정된 자에 대해 협의회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7.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 기관과 독립 행정 법인 중소기업 기반 정비기구의 장 및 민간 도시 개발 추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쇼와 62년 법률 제62호 제 20조에 "민간 도시 개발법"이라고 한다)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민간 도시 개발 추진기구의 대표에 대한 자료 제공, 의견 표명, 설명 및 기타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8. 협의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항에 규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9. 협의회는 시정촌에 대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 만들려고 하는 기본 계획 및 인정 기본 계획과 그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10. 제1항의 협의를 하기위한 회의에서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 협의회의 구성원은 그 협의 결과를 존중해야한다.
11. 전 조항에 명시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제4장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 조치

### 제1절 인정 중심 시가지의 특별 조치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환지 계획에서 결정하는 보류지의 특례)

#### 제16조

인정 기본 계획에서 제9조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사항으로 결정된 토지 구획 정리 사업으로 토지 구획 정리법 제3조제4항, 제3조2 또는 제3조3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적의 환지계획(인정 기본 계획에서 정한 중심 시가지(이하 "인정 중심 시가지"라고 한다) 지역의 택지에 대해 결정된 것에 한한다)에서는 도시 복지 시설(인정 중심 시가지 지역의 주민 등 공동의 복지 또는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에 한한다)에 국가, 지방 공공단체, 중심 시가지 정비 추진기구, 기타 정령이 정하는 자가 설치하는 것(동법 제2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공공시설을 제외하고, 인정 기본 계획 제9조제2항 제5호에 규정된 사항으로 토지 구획 정리 사업과 함께 그 정비가 결정된 것에 한한다) 또는 공영 주택 등(인정 기본 계획에서 제9조제2항 제6호에 규정된 사항으로 토지 구획 정리 사업과 함께 그 정비가 결정된 것에 한한다)에 대해 제공하기 위하여 특정 토지를 환지로 결정하지 않고, 토지를 보류지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보안림의 지적에 대하여 그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시행하는 토지 지역의 택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한, 영소작권, 임차권, 기타 택지를 사용하거나 반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2. 토지 구획 정리법 제104조제1항과 제108조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에서 정한 보유지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08조제1항 중 "제3조제4항 혹은 제5항"인 것은 "제3조제4항"으로, "제104조제11항"인 것은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04조제11항"으로 바꾸는 것으로 한다.

3.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에서 정한 보유지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토지 구획 정리법 제103조제4항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날에서 종전의 택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한, 영소작권, 임차권, 기타 택지를 사용하거나 또는 수익에 대한 권리가 있는 자에게는 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보유지의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해야한다. 토지 구획 정리법 제109조제2항 규정은 이러한 경우에 준용한다.
4. 토지 구획 정리법 제85조제5항 규정은 동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와 결정에 대해서 준용한다.

(외부 주차장에 대한 도시 공원의 점유 특례 등)

#### 제17조

시정촌은 기본 계획에 주차장법(쇼와 32년 법률 제106호) 제3조주차장 정비 지구 내에 정비되어야 하는 동법 제4조제2항 제5호의 주요 외부 주차장(도시 계획에서 정한 외부 주차장을 제외한다)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경우, 그 기본 계획이 제9조제6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동법 제4조제1항 주차장 정비 계획에서 해당 외부 주차장의 정비에 관한 사항의 내용에 맞게 해당 위치, 규모, 정비 주체와 정비 목표, 연차를 밝힌 외부 주차장의 정비에 관한 사업 계획의 개요를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정촌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 정비 계획에 도시 공원법(쇼와 31년 법률 제79호) 제2조제1항 도시 공원의 지하에 설치되는 외부 주차장의 정비에 관한 사업 계획의 개요(이하 동조에서 "특정 주차장 사업 개요"라고 한다)를 결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 주차장 사업 개요에 대해 미리 공원 관리자(동법 제5조제1항 공원 관리자를 말한다. 다음 항에서 동일하다)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3. 전항의 특정 주차장 사업 개요가 결정된 주차장법 제4조제4항(동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의한 주차장 정비 계획의 공표일로부터 2년 내에 해당 특정 주차장 사업 개요에 근거한 도시 공원 지하 점유에 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가 도시 공원법 제 7조의 규정에 따른 정령이 정하는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해 공원 관리자는 동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허가를 해야한다.

(중심 시가지 공중 개방 장소 등의 설치 및 관리)

#### 제18조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심 시가지 정비 추진 계획은 인정 중심 시가지 구역 내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토지 등에 녹지, 광장,

기타 공공의 광활한 주차장, 기타 해당 인정 중심 시가지 지역의 거주자 등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하 "중심 시가지 공중 개방 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고 해당 중심 시가지 공중 개방 장소 등을 관리할 수 있다.

(도시의 미관 풍치를 유지하기 위해 수목의 보존에 관한 법률의 특례)

#### 제19조

중심 시가지 정비 추진 계획이 전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중심 시가지 공중 개방 장소 등의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으로 도시의 미관 풍치를 유지하기 위해 수목의 보존에 관한 법률(쇼와 37년 법률 제142호)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존 나무 또는 저장 수목으로 지정된 것에 관하여 동법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법 제5조제1항 중 "소유자"인 것은 "소유자 및 추진기구(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중심 시가지 정비 추진 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동법 제6조제2항 및 제 8조에서 "소유자"인 것은 "추진 계획"으로 동법 제9조중 "소유자"인 것은 "소유자 또는 추진기구"로 한다.

(민간 도시 개발법의 사업용 토지 적정화 계획 승인의 특례)

#### 제20조

인정 중심 시가지 지역의 민간 도시 개발 사업(민간 도시 개발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민간 도시 개발 사업을 말한다)에 대해 제공되는 토지의 형상, 면적 등을 적정화하는 계획에 대해 민간 도시 개발법 제14조2 제1항 혹은 제2항 또는 제 14조13 제1항의 인정 신청이 있는 경우의 민간 도시 개발법 제14조3의 규정(민간 도시 개발법 제14조13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바꾸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적용에 대해서는 민간 도시 개발법 제14조3 제1호 중 "다음에 열거하는"인 것은 "다음 ①, ③ 및 ④에 규정된"으로 한다.

(도시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 제2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계획법 제6조2 도시 계획 지역의 정비, 개발 및 보전 정책, 동법 제7조2 도시 재개발 정책 등 또는 동법 제18조2 시정촌의 도시 계획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에 따라 인정 기본 계획의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토지 구획 정리 사업 또는 시가지 재개발 사업의 시행, 도로, 공원, 주차, 기타 공공의 용으로 제공해주는 시설의 건설,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중심 시가지 공동 주택 공급 사업 계획의 인정)

제22조

중심 시가지 공동 주택 공급 사업을 실시하려고하는 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심 시가지 공동 주택 공급 사업 실시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시정촌 장의 인정을 신청 할 수 있다.

2. 그러한 계획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해야한다.

- 1) 중심 시가지 공동 주택 공급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
- 2) 공동 주택의 규모 및 배치
- 3) 주택 가구 수 및 규모, 구조 및 설비
- 4) 공동 주택 건설 사업에 관한 투자 계획
- 5) 주택을 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 ① 임대 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임차인의 모집과 선정 방법에 관한 사항
  - ② 임대 주택의 임대료 및 기타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
  - ③ 임대 주택의 관리 방법 및 기간
- 6) 주택이 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 ① 분양 주택의 양수인 자격 및 양수인의 모집 및 선정 방법에 관한 사항
  - ② 분양 주택의 가액 기타 양도 조건에 관한 사항
  - ③ 양도 후 분양 주택의 용도를 주거 이외의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규제하기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 7) 기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인정 기준)

제23조

시정촌 장은 전조 제1항의 인정(이하 이 조에서 제 29조까지에 있어서 "계획 승인"이라고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에 관한 동항 계획이 다음에 열거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획의 승인을 할 수 있다.

- 1) 제9조제2항 제6호에 규정된 사항으로 인정 기본 계획에 정해져있는 것들을 충족시키는 것
- 2) 양호한 주거 환경의 확보, 기타 시가지 환경의 확보 또는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
- 3) 도시 복지 시설(주민 공동의 복지 또는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것에 한한다. 이하 동호 및 제7호에서 같다)의 정비와 함께 건설하거나 또는 도시 복지 시설과 접해 있는 것 혹은 인접한 것
- 4) 공동 주택이 지하실을 제외한 층수가 3 이상의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또한, 그 건축물의 부지 면적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

- 5) 주택 가구의 수가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가구 수 이상일 것
- 6) 주택의 규모, 구조 및 설비가 해당 주택의 입주자의 가족 구성 등을 감안하여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
- 7) 공동 주택 건설 사업자(그 사업과 함께 도시 복지 시설의 정비를 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 복지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한 자금 계획이 그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것
- 8) 주택이 임대 주택인 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
  - ① 임대 주택 임차인의 자격을 다음 (1) 또는 (2)에 규정된 것으로 하고 있는 것
    - (1) 자신이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
    - (2) 자신이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
  - ② 임대 주택의 임대료 금액이 근방 동종 주택의 임대료 금액과 균형을 잃지 않도록 결정된 것
  - ③ 임대 주택의 임차인의 모집과 선정 방법 및 임대 조건이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결정될 것
  - ④ 임대 주택의 관리 방법이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
  - ⑤ 임대 주택의 관리 기간이 주택 사정의 실태를 감안하여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일 것
- 2) 주택이 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
  - ① 분양 주택의 양수인의 자격을 다음 (1)에서 (3)까지 중 하나에 규정된 것으로 하고 있는 것
    - (1) 자신이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
    - (2) 친족의 거주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이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
    - (3) 자신이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
  - ② 분양 주택의 임대료 금액이 근방 동종 주택의 임대료 금액과 균형을 잃지 않도록 결정된 것
  - ③ 분양 주택의 임차인의 모집과 선정 방법 및 임대 조건이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결정될 것
  - ④ 양도 후 분양 주택의 용도 주택 이외의 용도로 변경 규제가 건축 기준법(쇼와 25년 법률 제 201호) 제69조또는 제76조3 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 협정 체결에 의해 이루어진 것, 기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계획 인정의 통지)

제24조

시정촌 장은 계획 승인을 할 때 신속하게 그 취지를 관계 도도부현 지사에 통지해야한다.

(인정 계획의 변경)

제25조

계획의 인정을 받은 자(다음 조부터 제 31조까지 및 제 71조에서 "인정기관"이라고 한다)는 그 계획의 인정을 받은 제22조제1항의 계획(제28조및 제 31조에서 "인정계획"이라고 한다)의 변경(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정촌 장의 인정을 받아야한다.

2. 전 두 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인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보고의 요구)

제26조

시정촌 장은 인정 사업자에게 중심 시가지 공동 주택 공급 사업의 실시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지위의 승계)

제27조

인정 사업자의 일반 승계인 또는 인정 기관에서 중심 시가지 공동 주택 공급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의 토지 소유권, 기타 그 중심 시가지 공동 주택 공급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시정촌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인정기관이 보유하고 계획의 승인에 따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개선 명령)

제28조

시정촌 장은 인정 기관 인정 계획(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인정이 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것. 제 31조에서 같다)에 따라 중심 시가지 공동 주택 공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인정 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계획 인정의 취소)

제29조

시정촌 장은 인정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획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전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2) 부정한 수단으로 계획의 인정을 받은 때.
2. 제 24조의 규정은 시정촌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를 한 경우에 준용한다.

(비용의 보조)

제30조

지방자치단체는 인정 업체에 대해 중심 시가지 공동 주택 공급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2. 국가는 지방 공공단체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에 관한 중심 시가지 공동 주택 공급 사업에 의해 건설된 주택의 임대료 또는 금액)

제31조

인정 사업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에 관한 중심 시가지 공동 주택 공급 사업의 인정 계획에서 정한 임대 주택의 관리 기간 동안의 임대료에 해당 임대 주택 건설에 필요한 비용, 이자, 수리비용, 행정비용, 손해보험료, 지대에 해당하는 금액, 공과금, 기타 필요한 비용을 참작하여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해서 계약하거나 또는 수령해서는 안 된다.

2. 전항의 임대 주택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건축 물가, 기타 경제 사정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변동 후에 해당 임대 주택 건설에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한다.

3. 인정 사업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에 관한 중심 시가지 공동 주택 공급 사업으로 건설되는 분양 주택의 가격에 해당 분양 주택 건설에 필요한 비용, 이자, 분양 사무 비용, 공과금, 기타 필요한 비용을 참작하여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해서 계약하거나 또는 수령해서는 안 된다.

(자금의 확보 등)

제3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심 시가지 공동 주택 공급 사업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자금의 확보 또는 그 융통의 알선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지방 주택 공급 공사 업무의 특례)

제33조

지방 주택 공급 공사의 중심 시가지 공동 주택 공급 사업 촉진에 관한 업무의 실



시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인정 기본 계획에 관한 인증 중심 시가지 지역 내에서 지방 주택 공급 공사는 지방 주택 공급 공사법 제 21조에 규정된 업무 외에 위탁에 의해 중심 시가지 공동 주택 공급 사업 실시 및 중심 시가지 공동 주택 공급 사업으로서 스스로 또는 위탁에 의해 실행하는 공동 주택의 건설과 일체로 건설하는 것이 적당한 상점, 사무실 등에 대해 제공되는 시설 및 그 공동 주택이 가진 단지 거주자의 편의에 제공되는 시설의 건설 및 임대, 기타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 주택 공급 공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방 주택 공급 공사법 제49조제3호 중 "제 21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인 것은 "제 21조에서 규정하는 업무 및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규정된 업무"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주택 건설)

#### 제34조

지방자치단체는 중심 시가지 공동 주택 공급 사업의 실시, 기타 인정 중심 시가지 구역 내의 주택 공급 상황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호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는 주택의 건설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2. 국가는 지방 공공단체가 인정 중심 시가지 지역 내에서 제 23조의 규정에 준하여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택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지방 주택 공급 공사의 설립 요건에 대한 특례)

#### 제35조

인정 시정촌인 시에 대한 지방 주택 공급 공사법 제8조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조 중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인 것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지 혹은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인정 시정촌인 시"로 한다.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의 특례)

#### 제36조

도도부현 및 지방자치법 제 252조 19 제1항의 지정 도시(이하 이 조와 다음 조 및 제 55조에서 "도도부현 등"이라고 한다)는 인정 중심 시가지 지역(해당 지역에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2종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특례 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해진 지역을 제외한다) 중, 대형 소매점(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평성 10년 법률 제91호)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소매

점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속한 입지를 촉진하는 것에 의해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특히 필요한 지역(이하 "제 1종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특례 지역"이라고 한다)을 결정할 수 있다.

2. 도도부현 등은 제 1종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특례 지역을 결정할 때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해야한다.

3. 전항의 공고일(제 1종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특례 지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조 제1항에서 준용한 전항의 공고일) 이후에는 제 1종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특례 지역(제 1종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특례 지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 후의 것)의 대규모 소매 점포에 대해서는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제5조, 제6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 제7조에서 제10조까지, 제11조제3항, 제14조및 부칙 제5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4. 도도부현 등은 제 1종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특례 지역의 방안을 만들려고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인정 시정촌과 협의해야한다.

5. 인정 시정촌은 인정 기본 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도부현 등에 대해서 제 1종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특례 지역의 방안을 기재한 서면으로 제 1종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특례 지역을 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6. 도도부현 등은 제 1종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특례 지역의 방안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다른 주민 등(그 제 1종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특례 지역에 거주하는 자, 해당 지역에서 사업 활동을 행하는 자, 그 지역 내에 있는 상공회 또는 상공 회의소, 기타 단체, 기타 해당 제 1종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특례 지역의 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8항 및 제9항에서 동일하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7. 도도부현 등은 제 1종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특례 지역을 결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 1종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특례 지역의 방안을 공고하고 그 공고일로부터 2주일간 공중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8. 전항의 공고에 관한 제 1종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특례 지역의 방안은 다음 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 등이 해당 제 1종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특례 지역의 방안에 대해 도도부현 등에 의견을 제출함에 있어 참고가 될 것인 사항으로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야한다.

9.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을 때 주민 등은 동항의 열람 기간 만료일까지, 열람 가능한 제 1종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특례 지역의 방안에 대해 도도부현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0. 제 1종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특례 지역에서 대형 소매점을 설치하는 자는 그 대형 소매점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 보전에 대한 적절한 배려를 하고, 해당 대형 소매점을 유지 및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1. 전항의 대규모 소매 점포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소매업자는 그러한 대규모 소매 점포를 설치하는 자가 동항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배려를 행해 해당 대규모 소매 점포의 유지 및 운영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7조

전조 제2항과 제4항에서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 1종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특례 지역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2. 제 1종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특례 지역의 변경 또는 폐지의 경우 그러한 변경 또는 폐지에 따른 제 1종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특례 지역이 아니게 된 지역에서 현재 대규모 소매 점포를 설치하고 있는 자는 전항에서 준용하는 전조 제2항의 공고일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제5조제1항 제4호에서 제6호까지 규정된 사항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동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서 제6호까지 열거한 사항에서 해당 변경에 관한 것 이외의 것을 도도부현 등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동법 부칙 제 5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신고는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로 본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중 변경에 관한 사항 이외의 신고는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로 본다. 그러나 동법 제5조제3항과 제4항 및 제 7조에서 제 9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독립 행정 법인 중소기업 기반 정비기구가 실행하는 상업 활성화, 도시형 신 사업 입지 촉진 사업)

### 제 38조

독립 행정 법인 중소기업 기반 정비기구(이하 이 조 및 제 42조에서 "계획"이라고 한다)는 인정 중심 시가지의 상업 활성화 및 도시형 새로운 사업을 실시하는 기업 등의 입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1) 인정 중심 시가지에서 다음에 열거하는 시설의 정비 및 관리 사업을 할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출자를 행하거나 또는 출자를 한 해당인의 위탁을 받아 이들 시설(①에 규정된 시설에는 이와 함께 정비되는 상업 시설을 포함한다)의 정비 혹은 임대, 기타 관리 사업을 실시하는 것

① 상업 기반 시설

- ② 도시형 신 사업 기술에 관한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이 도시형 신 사업 기술에 관한 연구 개발을 행하는 자에게 제공해주는 것, 도시형 신 사업 기술에 관한 연구 개발과 그 기업화를 행하기 위한 사업장 또는 도시형 새로운 사업에 관한 제품이나 용역의 전시 및 판매 혹은 제공을 위한 시설
- 2) 인정 중심 시가지에서 도시형 새로운 사업에 대해 제공되는 공장이나 사업장 또는 그 공장 혹은 해당 사업장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시설의 정비 및 이들의 임대, 기타 관리 및 양도를 실시하는 것
2. 기구는 전항의 업무 외에 인정 중심 시가지의 상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 사회의 개척, 다른 고객의 증가에 기여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 및 연수, 기타 소매업의 업무를 행하는 경영 효율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인정 중심 시가지의 상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에 필요한 자금의 출자를 실시한다.
3. 기구는 이전 두 항의 업무 외에 독립 행정 법인 중소기업 기반 정비기구법(평성 14년 법률 제147호) 제15조제1항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탁을 받아,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 1) 인정 중심 시가지의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도시형 새로운 사업에 대해 제공되는 공장이나 사업장의 정비 및 이들의 임대, 기타 관리 및 양도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구가 실시하는 동항 제1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도시형 새로운 사업에 대해 제공되는 공장이나 사업장(이하 동호에서 "공장 등"이라고 한다)의 정비와 함께 정비되어야 하는 공중에 제공되는 시설 및 그 공장 등의 이용자 편의를 제공해주는 시설의 정비 및 그 시설의 임대, 기타 관리 및 양도
- 3) 전 두 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된 기술 지원 및 중심 시가지의 상업 활성화 및 도시형 새로운 사업을 실시하는 기업 등의 입지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기술 지원

(공통 승차 배 티켓)

#### 제39조

운송 사업자는 인정 기본 계획에서 제9조제2항 제8호 ①에 규정된 사항으로 결정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인정 중심 시가지에 내방하는 여객 또는 인정 중심 시가지 지역 내에서 이동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승차 배 티켓(둘 이상의 운송 사업자가 기간, 구간, 그 외의 조건을 결정하고 공동으로 발행하는 증표로, 그 증표를 제시하는 것에 의해 해당 조건 범위 내에서 해당 각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에 관한 운임 또는 요금 할인을 하려고 하면,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취지를 공동으로 국토교통대신에 신고할 수 다.

2. 전항의 신고를 한 사람은 철도 사업법(쇼와 61년 법률 제92호) 제16조제3항 후

단이나 제36조후단, 궤도법(다이쇼 10년 법률 제76호) 제11조제2항, 도로 운송법 제9조제3항 후단 또는 해상 운송법(쇼와 24년 법률 제 187호) 제8조제1항 후단(동법 제 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제2절 인정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특별 조치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 계획 승인)

### 제40조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인정 기본 계획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을 실시하려고 하는 자(제7조제7항 제5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호에 기재된 바와 같이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중소기업인으로 하고, 동항 제6호에 규정된 사람은 동호에 규정된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중소기업자를, 동항 제7호에 규정된 사람은 특정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동조 제8항 및 제9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자"이라고 한다)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 계획"이라고 한다)을 작성하고 주무대신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신청은 시정촌을 통해 시도해야한다. 이 경우 시정촌은 해당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 계획을 검토해 의견을 교부하고, 주무대신에게 송부해야한다.

3.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 계획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해야한다.

- 1)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의 목표 및 내용
- 2)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의 실시 시기
- 3)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금액 및 그 조달 방법

4. 주무대신은 제1항의 인정 신청이 된 경우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 계획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하는 것으로 한다.

- 1) 전항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이 기본 방침 중 제8조제2항 제7호 및 제8호에 규정된 사항의 내용에 비추어 적절한 것
- 2) 해당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이 안정적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 것

- 3)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이 화물 운송 효율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그 화물 운송 효율화 사업이 제 1종 화물 이용 운송 사업 또는 화물 자동차 이용 운송(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법 제2조제7항 화물 자동차 이용 운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이 화물 이용 운송 사업법 제6조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또는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법 제5조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
- 4)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이 중소 소매 상업 고도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중소 소매 상업 고도화 사업의 적절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한 요구 사항으로 정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 및 그러한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자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사업에 대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토지 또는 점포의 건물 상당수의 소유자 등의 협력을 얻어서 실시하는 대처로, 그 중소 소매 상업 고도화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에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
5.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경우에는 관계 도도부현에 대해 신속하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한다.

(인정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 계획의 변경 등)

#### 제41조

전조 제4항의 인정을 받은 자(이하 "인정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자"라고 한다)는 그 인정에 관련된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 계획(이하 "인정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 계획"이라고 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대신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2. 주무대신은 인정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자가 만든 인정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 계획(전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인증이 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것. 이하 같다)에 따라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이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3. 전조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목의 인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독립 행정 법인 중소기업 기반 정비기구가 실행하는 상업 활성화 업무)

#### 제42조

기구는 인정 중심 시가지의 상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정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자가 인정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 계획에 따라 행하는 특정 상업 시설 등 정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회사채(사채, 주식 등에 관한 법률(평성 13년 법률 제75호) 제66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단기 사채를 말한다) 및 해당 기금의 차입에 관한 채무 보증을 실시한다.

(중소기업 신용 보험법의 특례)

제43조

중소기업 신용 보험법(쇼와 25년 법률 제 264호)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반 보험 (이하 이 조에서 "저축 보험"이라고 한다), 동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무담보 보험 (이하 이 조에서 "무담보 보험"이라고 한다) 또는 동법 제3조3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별 소액 보험(이하 이 조에서 "특별 소액 보험"이라고 한다)의 보험 관계로, 중심 시가지 상업 등 활성화 관련 보증(동법 제3조제1항, 제3조2 제1항 또는 제3조3 제1항에 규정된 채무 보증으로 인정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 계획에 근거한 제7조제7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에 명시된 중소 소매 상업 고도화 사업 또는 동조 제9항 제1호에 규정된 특정 사업(특정 회사 또는 일반 사단법인 등이 그 특정 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 특정 회사 또는 그러한 일반 사단법인 등이 스스로 실시하는 도시형 새로운 사업에 대해 제공해주는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에 관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중소기업에 관한 것에 대하여 다음의 표 위의 입력란에 규정된 동법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에서 같은 표에 있는 중란에 규정된 어휘는 이 표 하란에 규정된 어휘로 한다.

제3조제1항 보험 가액의 합계액이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심 시가지 상업 등 활성화 관련 보증(이하 "중심 시가지 상업 등 활성화 관련 안전"이라고 한다)에 관한 보험 관계의 보험 가액 합계액 및 기타 보험 관계의 보험 가액 합계액과 각각

제3조2 제1항 및 제3조3 제1항 보험 가액의 합계액이 중심 시가지 상업 등 활성화 관련 안전에 대한 보험 관계의 보험 금액의 합계액이 다른 보험 관계의 보험 가액의 합계액과 각각

제3조2 제3항 해당 차입금 금액 중 중심 시가지 상업 등 활성화 관련 안전 및 기타 안전에 대해 각각 해당 차입금 금액 중

해당 채무자 중심 시가지 상업 등 활성화 관련 안전 및 기타 안전에 대해 해당 채무자

제3조3 제2항 해당 보증을 한 중심 시가지 상업 등 활성화 관련 안전 및 기타 안전에 대해 각각 해당 보증을 했다

해당 채무자 중심 시가지 상업 등 활성화 관련 안전 및 기타 안전에 대해 해당 채무자

2. 인정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 계획에 근거해 제7조제7항 제7호에서 정하는 중소 소매 상업 고도화 사업 또는 동조 제9항 제1호에 규정된 특정 사업 (이하 이 조에서 "인정 중소 소매 상업 고도화 지원 등 사업"이라고 한다)을 실시하는 일반 사단법인 등(일반 사단법인은 그 사원총회에서 의결권 2분의 1 이상을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 일반 재단 법인은 설립 시 출자받은 재산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 중소기업인에 의해 출자된 것에 한한다)에 그 인정 중소기업 소매 상업 고도화 지원 등 사업 실시에 필요한 자금에 관한 중소기업 신용 보험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조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무 보증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 사단법인 등을 동법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인으로 간주하고, 동법 제 3조, 제3조2와 제 4조에서 제 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3조제1항과 제3조2 제1항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이 약관에서 "차입"인 것은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규정된 인정 중소기업 소매 상업 고도화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 자금의 차입"으로 한다.

3. 일반 보험 또는 무담보 보험의 보험 관계로, 중심 시가지 상업 등의 활성화 지원 관련 보증(중소기업 신용 보험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조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무 보증으로, 특정 회사 또는 전항의 일반 사단법인 등이 하는 인정 중소기업 소매 상업 고도화 지원 등의 사업(특정 회사 또는 일반 사단법인 등이 해당 인정 중소기업 소매 상업 고도화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 회사 또는 그러한 일반 사단법인 등이 스스로 실시하는 도시형 새로운 사업에 대해 제공해주는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에 관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에 대하여 중소기업 신용 보험법 제3조제1항 및 제3조2 제1항과 제3항 규정의 적용은 동법 제3조제1항 중 "2억엔"인 것은 "4억엔(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규정된 인정 중소기업 소매 상업 고도화 지원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하 "중심 시가지 상업 등 활성화 지원 기금"이라고 한다) 이외의 기금에 관한 채무 보증에 대한 보험 관계는 2억원)" 및 동법 제3조2 제1항 및 제3항 중 "8천만엔"인 것은 "1억 6천만엔(중심 시가지 상업 등의 활성화 지원 자금 이외의 자금 조달에 관한 채무 보증에 대한 보험 관계에 대해서는 8천만엔)"으로 한다.

4. 일반 보험의 보험 관계로, 중심 시가지 상업 등의 활성화 관련 보증 또는 중심 시가지 상업 등의 활성화 지원 관련 보증에 관한 것에 대하여 중소기업 신용 보험법 제3조제2항 과 제5조규정의 적용은 동법 제3조제2항 중 "100분의 70"으로, 그리고 동법 제5조중 "100분의 70(무담보 보험 특수 소액 보험, 유동 자산 담보 보험, 공해 방지 보험, 에너지 대책 보험, 해외 투자 관련 보험, 신 사업 개척 보험, 기업 재생 보험과 특정 사채 보험은 100분의 80)"인 것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5. 일반 보험, 무담보 보험 또는 특별 소액 보험 보험 관계로, 중심 시가지 상업 등의 활성화 관련 보증 또는 중심 시가지 상업 등 활성화 지원 관련 보증에 관한 것에 대한 보험료의 금액은 중소기업 신용 보험법 제4조규정에 관계없이, 보험 금액에 연 100분의 2 이내에 정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식품 유통 구조 개선 촉진기구 업무의 특례)

제44조

식품 유통 구조 개선 촉진법(평성 3년 법률 제59호)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 유통 구조 개선 촉진기구는 동법 제12조각호에 규정된 업무 외에 인정 중심 시가지의 식품의 유통의 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1) 인정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 계획에 관한 중심 시가지 식품 유통 촉진 사업 (이하 이 조에서 "인정 식품 유통 촉진 사업"이라고 한다)에 필요한 자금의 차입에 관한 채무를 보증하는 것
- 2) 인정 식품 유통 촉진 사업에 대해서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해당 인증 식품 유통 촉진 사업에 참여하는 것
- 3) 인정 식품 유통 합리화 사업을 실시하는 사람의 위탁을 받아 인정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 계획에 따라 시설의 정비를 실시하는 것
- 4) 인증 식품 유통 합리화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해 필요한 자금의 알선을 수행하는 것
- 5) 전 각호에 규정된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

(식품 유통 구조 개선 촉진법의 적용)

제45조

전조의 규정에 의해 식품 유통 구조 개선 촉진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식품 유통 구조 개선 촉진법 제13조제1항 중 "전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인 것은 "전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 및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중심 시가지 활성화 법"이라고 한다) 제44조제1호로 열거한 업무"로, 동법 제14조제1항 중 "제12조제1호에 규정된 업무"인 것은 "제12조제1호에 규정된 업무 및 중심 시가지 활성화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업무"로, 동법 제18조제1항, 제19조 및 제20조제1항 제1호 중 "제12조각호에 규정된 업무"인 것은 "제12조각 호에 규정된 업무 또는 중심 시가지 활성화법 제44조각호에 규정된 업무"로, 동항 제3호 중 "이 장"인 것은 "이 장 혹은 중심 시가지 활성화 법"으로 한다.

(도로 교통법의 특례)

제46조

제7조제9항 제3호에 규정된 사업을 실시하는 인정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이 인정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 계획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도로 운송법 제15조제1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동조

제3항 혹은 동법 제15조3 제2항 신고를 이행해야 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 관계없이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대신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화물 이용 운송 사업법과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법의 특례)

#### 제47조

화물 운송 효율화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자로 제 1종 화물 이용 운송 사업에 관하여 화물 이용 운송 사업법 제3조제1항 등록(이하 이 조에서 "제 1종 화물 이용 운송 사업 등록"이라고 한다)을 받지 않은 것 또는 화물 자동차 이용 운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법 제 3조의 허가(동법 제9조제1항의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는 것이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 계획에 따라 실시하려고하는 사업이 제 1종 화물 이용 운송 사업 또는 화물 자동차 이용 운송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이 그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 계획에 대해 제40조제4항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자는 제 1종 화물 이용 운송 사업 등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거나 또는 화물 자동차 이용 운송을 행하는 자로서의 동법 제9조제1항의 인가(이하 "화물 자동차 이용 운송 변경 승인"이라고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제 1종 화물 이용 운송 사업 등록 또는 화물 자동차 이용 운송 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는 해당 인정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 계획 중 화물 이용 운송 사업법 제5조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이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또는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법 제4조제1항 제2호와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동조 제1항 제2호 사업 계획으로 간주하고, 화물 이용 운송 사업법 또는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법 규정을 적용한다.

3. 화물 운송 효율화 사업을 실시하려고하는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자로 제 1종 화물 이용 운송 사업 등록 또는 화물 자동차 이용 운송 변경 허가를 받은 것(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1종 화물 이용 운송 사업 등록 또는 화물 자동차 이용 운송 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는 제외한다)이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 계획에 따라 실시하려고하는 사업이 제 1종 화물 이용 운송 사업 또는 화물 자동차 이용 운송에 해당하며, 이것을 실시함에 있어서 화물 이용 운송 사업법 제7조제1항의 변경 등록을 받거나 혹은 동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거나 또는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법 제9조제1항의 인증을 받거나 혹은 동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해당 특정 민간 중심 시

가지 활성화 사업이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제40조제4항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변경 등록을 받거나 혹은 신고를 하거나 또는 인가를 받거나 혹은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4. 화물 운송 효율화 사업을 실시하는 인정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자가 인정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 계획에 따른 제 1종 화물 이용 운송 사업 또는 화물 자동차 이용 운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화물 이용 운송 사업법 제7조제1항 변경의 등록을 받거나 혹은 동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거나 또는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법 제9조제1항의 인증을 받거나 혹은 동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해야하는 사항을 해당 인정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이 그 인정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 계획에 대해 제41조제1항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정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변경 등록을 받거나 혹은 신고를 하거나 또는 인가를 받은, 혹은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5. 화물 운송 효율화 사업을 실시하는 인정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의 중 제7조제9항 제4호에 규정된 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사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기타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조합 또는 그 연합회로, 정령이 정하는 것 또는 일반 사단법인 인 경우에는 그 인정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이 인정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제 1종 화물 이용 운송 사업으로 화주<sup>40)</sup>를 인정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의 구성원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화물 이용 운송 사업법 제8조제1항과 제 9조(동법 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6. 화물 운송 효율화 사업을 실시하는 인정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자인 제 1종 화물 이용 운송 사업자(제 1종 화물 이용 운송 사업 등록을 받은 자를 말한다)가 인정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자인 다른 운송 사업자와 인정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 계획에 따른 화물 이용 운송 사업법 제 11조에서 규정하는 운송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정에 대해 사전에 동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인정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 계획에 따라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다.

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1종 화물 이용 운송 사업 등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련된 등록부에 기재, 그 외의 절차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다.

---

40) 荷主, 짐의 주인, 하물의 주인

(지방세 불균일 과세에 따른 조치)

제48조

지방세법(쇼와 25년 법률 제226호)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정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 계획에 관한 상업 기반 시설 중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그 사업 기반 시설 설치를 위해 제공되는 주택 또는 그 부지의 토지 취득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또는 그 상업 기반 시설에 제공되는 주택이나 건축물 혹은 이들 부지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관한 불균일 과세를 하는 경우 이들 조치가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교부세법(쇼와 25년 법률 제 211호) 제14조규정에 의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각 년도의 기준 재정 수입액은 동조 규정에 관계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각 년도분의 수입 감소 금액(재산세에 대한 이러한 조치에 따른 수입 감소 규모에 있어서는 이러한 조치를 한 최초 년도 이후 3개년도의 것에 한한다) 중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동조 규정에 의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각 연도(이 조치가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입 감소 액수를 해당 각 연도의 다음 연도)의 기준 재정 수입액이 되어야 할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지도와 조언)

제4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정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 인정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 계획에 관한 사업을 적합하게 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보고 요구)

제50조

주무대신은 인정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의 실시 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절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를 위한 기타 특별 조치

(중심 시가지 정비 추진 계획의 지정)

제51조

시정촌 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으로 다음 조에 규정된 업무를 공정

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그 신청에 따라 중심 시가지 정비 추진 계획(이하 "추진 계획"이라고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시정촌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한 경우에는 그 추진기구의 명칭, 주소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공시해야한다.
3. 추진 기구는 그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것을 시정촌 장에게 신고해야한다.
4. 시정촌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 신고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한다.

(추진기구의 업무)

제52조

추진 기구는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를 수행해야한다.

- 1) 중심 시가지의 정비 개선에 관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보 제공, 상담, 기타 지원을 하는 것.
- 2) 중심 시가지의 정비 개선에 기여하는 건축물, 기타 시설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인정 기본 계획의 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그 사업에 참여하는 것
- 3) 중심 시가지 정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토지에 정령으로 정하는 것의 취득, 관리 및 양도를 실시하는 것
- 4) 중심 시가지 공중 개방 장소 등의 설치 및 관리를 실시하는 것
- 5) 중심 시가지의 정비 개선에 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는 것
- 6) 전 각호에 규정된 것 외에 중심 시가지 정비 개선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

(감독 등)

제53조

시정촌 장은 전조 각호에 규정된 업무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진 계획에 대해 해당 업무에 관해 보고를 시킬 수 있다.

2. 시정촌 장은 추진 기구가 전조 각호에 규정된 업무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진 계획에 대해서 그 업무의 운영 개선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3. 시정촌 장은 추진 기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시정촌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1조제1항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전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취득에 관한 업무에 대한 소요 경과 조치는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보의 제공 등)

#### 제54조

국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추진 계획에 대해 그 업무의 실시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 혹은 통보를 하는 것으로 한다.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의 특례)

#### 제55조

도도부현 등은 중심 시가지 지역(해당 지역에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1종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특례 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해진 지역을 제외한다)에 대규모 소매 점포의 신속한 입지를 촉진함으로써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지역(이하 "제 2종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특례 지역"이라고 한다)을 결정할 수 있다.

2.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36조제2항의 공고일(제 2종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특례 지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3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36조제2항의 공고일) 이후에는 제 2종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특례 지역(제 2종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특례 지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 후의 것)의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한 대형 소매점의 신설 또는 동법 제6조제1항 혹은 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간주되는 제37조제2항 규정에 의한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신고 및 동법 부칙 제5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간주되는 동법 부칙 제5조제1항(동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 제5항에서 같다)에 관한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 내용은 동법 제5조제4항 제6조제4항, 제8조 및 제 9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제 2종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특례 지역에 관한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제5조제1항과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는 동법 제5조제2항(동법 제6조제3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관계없이,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야한다.

4. 제36조제2항, 제4항에서 제9항까지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은 제 2종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특례 지역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제4항 중 "인정 도시"인 것은 "시정촌"으로, 동조 제5항 중 "인정 시정촌은 인정 기본 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인것은 "시정촌은 중심 시가지에서 대규모 소매 점포의 신속한 입지를 촉진함으로써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로 본다한다.

5. 제 2종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특례 지역의 변경 또는 폐지가 된 경우에는 그 변경 또는 폐지에 따라 제 2종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특례 지역이 아니게 된 지역에 관한 변경 또는 철회 전의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한 대형 소매점의 신설 또는 동법 제6조제1항 혹은 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한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은 그 변경 또는 폐지 이후에도 동법 제5조제4항 제6조제4항, 제8조 및 제 9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제5장 중심 시가지 활성화 본부

(설치)

제56조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각에 중심 시가지 활성화 본부고 (이하 "본부"라한다)를 둔다.

(소장 업무)

제57조

본부는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 1) 기본 정책 방안의 작성에 관한 것
- 2) 인정 신청이 되는 기본 계획에 대한 의견(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리에 대한 언급 의견을 말한다)에 관한 것.
- 3) 전호에 규정된 것 외에 정책 기반 시책의 실시 추진에 관한 것.
- 4) 전 세 호에 규정된 것 외에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시책으로 중요한 것의 기획과 계획 및 종합 조정에 관한 것.

(조직)

제58조

본부는 중심 시가지 활성화 본부장, 중심 시가지 활성화 부 본부장 및 중심 시가지 활성화 본부 직원으로 조직한다.

(중심 시가지 활성화 본부장)

제59조

본부의 장은 중심 시가지 활성화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고 한다)으로 한다.

2. 본부장은 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중심 시가지 활성화 부 본부장)

제60조

본부에 중심 시가지 활성화 부 본부장(이하 "부 본부장"이라고 한다)을 둔다

2. 부 본부장은 본부장의 직무를 돕는다.

(중심 시가지 활성화 본부원)

제61조

본부에 중심 시가지 활성화 본부 직원(다음에서 "본부 직원"이라고 한다)을 둔다.

2. 본부원은 본 부장과 부 본부장을 제외한 모든 국토대신으로 형성한다.

(자료의 제출, 기타 협조)

제62조

본부는 그 소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 행정 기관, 지방자치단체, 독립 행정 법인(독립 행정 법인 통칙법(평성 11년 법률 제103호)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독립 행정 법인을 말한다) 및 지방 독립 행정 법인(지방 독립 행정 법인법(평성 15년 법률 제118호)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방 독립 행정 법인을 말한다)의 장 및 특수 법인(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해 특별히 설립 활동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총무성 설치법(평성 11년 법률 제91호) 제4조제15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의 대표자에 대해 자료 제출, 의견 표명, 설명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2. 본부는 그 소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도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업무)

제63조

본부에 관한 사무는 내각 관방에 처리하고, 명을 받아 내각 관방 부장관보가 처리한다.

(주임 대신)

제64조

본부에 관련된 사항은 내각법(쇼와 22년 법률 제5호)에서 말하는 주임 대신은 내각 총리대신으로 한다.

(정령에의 위임)

제65조

이 법률에 명시된 것 외에 본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6장 기타 조항

(지방채에 대한 배려)

제66조

지방자치단체가 인정 기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으키는 지방채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금 사정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 허락하는 한 특별한 배려를 해야한다.

(기금의 확보)

제6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 수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인정 기본 계획의 달성에 이바지하는 시설의 정비, 기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에 노력해야한다.

(주무대신)

제68조

제40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 제41조제1항과 제2항 및 제 50조의 주무대신은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을 관할하는 내각으로 한다.

(권한의 위임)

제69조

이 법에 의한 권한은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지분부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벌칙)

제70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사람
- 2) 제55조제3항 첨부 서류에 허위 기재를 해서 제출한 자

제71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받은 인정 사업자로 해당 보조에 관한 중심 시가지 공동 주택 공급 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에 관하여 제 2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촌 장의 명령을 위반한 것
- 2)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72조

제26조또는 제 5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3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사람의 대리인, 고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해, 전 세 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 각 조항의 벌금을 부과한다.

부칙 첨부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삭제

## 제3조

### 삭제

## 제4조

### 삭제

(국가의 무이자 대출 등)

## 제5조

국가는 당분간 도도부현에 대해 인정 중심 시가지의 상업 기반 시설이나 상업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일본 전신 전화 주식회사의 주식 매도 수입의 활용에 의한 사회 자본의 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쇼와 62년 법률 제86호) 제2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 그 도도부현이 스스로 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는 기금의 일부를 도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에 관련된 법인 또는 중소 소매 상업 고도화 사업을 실시하는 인정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 사업자가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 해당 도도부현이 보조하는 비용에 충당하는 기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이자로 대부할 수 있다.

2. 국가는 당분간 시정촌에 대해 인증 중심 시가지의 상업 기반 시설이나 상업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일본 전신 전화 주식회사의 주식 매도 수입의 활용에 의한 사회 자본의 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 해당 시정촌이 스스로 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는 기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에 관련된 법인 또는 중소 소매 상업 고도화 사업을 실시하는 인정 특정 민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자가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 해당 시정촌이 보조하는 비용에 충당하는 기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이자로 대부할 수 있다.

3. 전 이항의 국가 대출 상환 기간은 5년(2년 이내의 거치 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4. 전항에 명시된 것 외에,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의 상환 방법, 상환 기한을 앞당기거나 기타 상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5. 국가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부 대상인 사업에 대해 해당 대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하는 것으로 그 수당은 대부의 상환 시에 해당 대출의 상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6.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를 받은 무이자 대출에 대해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 결정된 상환 기한을 앞당겨 상환을 하는 경우(정령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전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 해당 상환은 상환 기한 도래 시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부칙(평성 10년 10월 1일 법률 제113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1년 6월 11일 법률 제73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부칙 제17조에서 제19조 및 제 2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평성 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1년 6월 16일 법률 제76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부칙 제 17조에서 제 72조까지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1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검토)

제 250조

새로운 지방자치법 제2조제9항 제1호로 규정하는 제1호 법정 수탁 사무는 가능한 새로 마련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지방자치법 별표 제 1에 내거는 것과 새로운 지역 자치법에 근거한 정령에 표시된 것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검토를 추가하고 적절한 검토를 실시해야한다.

#### 제251조

정부는 지방 공공단체가 사무와 사업을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에 따라 지방세 재원의 충실한 확보의 방도에 대해 경제 상황의 추이 등을 감안하면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 제252조

정부는 의료 보험 제도, 연금 제도 등 개혁에 따라 사회 보험 업무 처리 체제, 이것에 종사하는 직원의 본연의 자세 등에 대해서 피보험자 등의 편의를 확보, 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부칙(평성 11년 12월 3일 법률 제146호) 발췌

(시행 기일)

####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 제14조

이 법률(부칙 제1조단, 글에서 규정하는 조항은 그 규정.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이 부칙 규정에 의하여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 경우 이 법 시행 후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정령에의 위임)

#### 제15조

부칙 제2조에서 전조까지 결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평성 11년 12월 22일 법률 제 160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제2조 및 제 3조를 제외한다)은 평성 13년 1월 6일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1년 12월 22일 법률 제 222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된 규정은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 제 4조의 규정 및 제7조중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 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 제 9조의 개정 규정 및 부칙 제 4조에서 제 6조까지의 규정, 부칙 제15조중 심한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 재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쇼와 37년 법률 제 150호) 제 13조의 개정 규정, 부칙 제 16조의 규정, 부칙 제18조중 중소 소매 상업 진흥법(쇼와 48년 법률 제101호) 제5조2의 개정 규정, 부칙 제20조중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 및 양호한 고용 기회의 창출을 위한 고용 관리 개선 촉진에 관한 법률(평성 3년 법률 제57호) 제11조개정 규정, 부칙 제23조중 중소기업 유통업무 효율화 촉진법(평성 4년 법률 제65호) 제 8조의 개정 규정, 부칙 제25조중 에너지 등의 사용 합리화 및 재생 자원 이용에 관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평성 5년 법률 제18호) 제 22의 개정 규정, 부칙 제 26I조, 제27조 및 제29조 규정, 부칙 제30조중 중심 시가지에 있어서 시가지 정비 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평성 10년 법률 제92호) 제 25조의 개정 규정, 부칙 제31조중 신사업 창출 촉진법(평성 10년 법률 제 152호) 제 21조의 개정 규정, 부칙 제32조중 중소기업 경영혁신 지원법(평성 11년 법률 제18호) 제 7조, 제12조 및 부칙 제 3조의 개정 규정, 부칙 제34조중 산업 활력 재생 특별 조치법(평성 11년 법률 제131호) 제25조 및 제 27조의 개정 규정, 부칙 제35조중 중앙성청 등 개혁 관계법 시행법 제 902의 개정 규정 및 부칙 제 36조의 규정 평성 12년 4월 1일

부칙(평성 11년 12월 22일 법률 제 223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2년 3월 31일 법률 제16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제8조 및 제10조(석유 대체 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제24조 및 제 25조의 개정 규정에 한한다) 및 부칙 제2조에서 제7조까지, 제10조제 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에서 제 21조까지 및 제29조의 규정은 평성 14년 3월 31일부터 제4조, 제6조, 제9조 및 제 10조(석유 대체 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부칙 제 23조의 개정 규정에 한한다) 및 부칙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6조 및 제22조에서 제 27조까지의 규정은 같은 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2년 5월 19일 법률 제73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일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2년 5월 26일 법률 제86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14년 3월 31일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2년 12월 1일 법률 제136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3년 6월 27일 법률 제75호) 발취

(시행 기일 등)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14년 4월 1일(이하 "시행일"이라고 한다)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발행되는 단기 사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

제7조

시행일 전에 한 행위 및 이 부칙 규정에 의하여 또한 그 효력이 있게 되는 경우, 시행일 이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기타 경과 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제8조

이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지정한다.

(검토)

제9조

정부는 이 법 시행 후 5년을 경과한 경우에도 이 법률의 시행 상황, 사회 경제 정세의 변화 등을 감안해 대체 기관에 관한 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추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평성 13년 12월 7일 법률 제146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4년 2월 8일 법률 제1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4년 3월 31일 법률 제11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4년 6월 12일 법률 제65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1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

제84조

이 법률(부칙 제1조각호에 규정된 규정에 있어서는 그 조항.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이 부칙 규정에 의하여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하는 것으로 되는 경우의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기타 경과 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제85조

이 부칙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지정한다.

(검토)

제86조

정부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했을 경우에 새로운 회사채 등 대체법, 금융 상품 거래법 시행 상황, 사회 경제 정세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회사채 등 대체법 제2조제12항에 규정하는 가입자 보호 기금, 금융 상품 거래법 제2조제 29항에 규정된 금융 상품 거래 청산 기관에 관한 제도에 대해 검토를 추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부칙(평성 14년 6월 19일 법률 제77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4년 11월 22일 법률 제109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4년 12월 6일 법률 제134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4년 12월 11일 법률 제146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부칙 제 3조에서 규정하는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1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

제51조

이 법률(부칙 제1조단, 각호에 규정된 조항은 해당 각 조항.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이 부칙 규정에 의하여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 것이 되는 사항에 관한 이 법률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정령에의 위임)

제52조

이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지정한다.

부칙(평성 15년 5월 30일 법률 제54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

제38조

이 법률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기타 경과 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제39조

이 법률에 규정된 것 이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검토)

제40조

정부는 이 법률 시행 후 5년을 경과한 경우에 이 법에 의한 개정 후 규정의 실시 상황, 사회 경제 정세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이 법에 의한 개정 후 금융 제반 제도에 대한 검토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부칙(평성 15년 6월 20일 법률 제100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6년 3월 31일 법률 제14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타 경과 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제82조

이 부칙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평성 16년 4월 21일 법률 제35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일부터 시행한다.

- 1) 제 2조, 다음 조(중소기업 종합 사업단법 및 기계 장치 신용 보험법 폐지 등에 관한 법률(평성 14년 법률 제146호) 부칙 제 9조에서 제 18조까지의 개정 규정을 말한다) 및 부칙 3조에서 제 7조, 제 11조, 제22조 및 제 30조의 규정 공포한 날
- 2) 전호에 규정된 규정 이외의 규정 독립 행정 법인 중소기업 기반 정비기구(이하 "기구"라고 한다)의 성립 시기

부칙(평성 16년 6월 9일 법률 제88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한 일(이하 "시행일"이라고 한다)부터 시행한다.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

제 134조

이 법률(부칙 제1조단, 글에서 규정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이 부칙 규정에 의하여 또한 중전의 예에 의하는 경우와 또한 그 효력이 있게 되는 경우, 이 법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또한 중전의 예에 의한다.

(기타 경과 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제 135조

이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검토)

제 136조

정부는 이 법 시행 후 5년을 경과한 경우에 이 법에 의한 개정 후 규정의 실시 상황, 사회 경제 정세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이 법에 의한 개정 이후 주식 등의 거래와 관련된 결제 제도에 대한 검토를 추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부칙(평성 17년 3월 31일 법률 제21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타 경과 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제89조

이 부칙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평성 17년 4월 27일 법률 제34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7년 7월 26일 법률 제87호) 발췌

이 법률은 회사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8년 6월 2일 법률 제50호) 발췌

(시행 기일)

1. 이 법률은 일반 사단 재단 법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조정 정책)

2. 범죄의 국제화와 조직 및 정보 처리의 고도화에 대처하기 위한 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18년 법률 제 호)의 시행일이 시행일 이후가 되는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이 법의 집행 전날 사이의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및 범죄 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평성 11년 법률 제136호. 다음 항에서 "조직 범죄 처벌법"이라고 한다) 별표 제 62호의 규정의 적용은 동호 중 "중간 법인법(평성 13년 법률 제49호) 제 157조(이사 등의 특별 배임)의 죄를"인 것은 "일반 사단 법인 및 일반 재단 법인에 관한 법률(평성 18년 법률 제48호) 제 334조 (이사 등의 특별 배임)의 범죄"로 한다.

3. 전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이 항의 경우에 있어서 범죄의 국제화와 조직 및 정보 처리의 고도화에 대처하기 위한 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일 전날까지의 조직 범죄 처벌법 규정의 적용 내용은 제 4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하는 것으로 되는 경우, 구 중간 법인법 제 157조(이사 등의 특별 배임)의 범죄는 조직 범죄 처벌법 별표 제62호에 규정된 범죄로 간주한다.

부칙(평성 18년 6월 7일 법률 제54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검토)

제2조

정부는 이 법률 시행 후 10년 이내에 제1조규정에 의한 개정 후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신법"이라고 한다)의 시행 상황에 대해 검토를 추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중심 시가지에 있어서 시가지 정비 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제3조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제1조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중심 시가지에 있어서 시가지 정비 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본 계획(이하 "구 기본 계획"이라고 한다)에서 동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사항으로 토지 구획 정리 사업과 함께 구법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시설의 정비가 정해져있는 경우의 동항의 규정에 의한 그 토지 구획 정리 사업 계획에 결정하는 보류지의 특례에 대해서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제4조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중심 시가지 정비 추진 계획은 신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중심 시가지 정비 추진 계획으로 본다.

2. 전항에 지정된 것으로 간주된 중심 시가지 정비 추진 계획은 신법 제52조각호에 규정된 업무 외에 구법 제11조제2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해야한다. 이 경우 구법 제12조 및 제 13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제5조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이전 기본 계획에 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 주차장의 정비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있는 경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주차장 사업 개요 결정 절차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 공원 지하 점유에 대한 권한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제6조

이 법률 시행 전에 구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신청이 된 동항의 특정 사업 계획으로, 이 법률의 시행 시 인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의 처리가 되지 것에 대해서 관할 내각의 인정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예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구법 제16조제1항의 특정 사업 계획은 제16항 및 부칙 제 14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구법 제17조제2항 인증 특정 사업 계획으로 본다.

3. 전항의 특정 사업 계획을 실시하는 자는 부칙 제9조제2항, 제10조제 1항, 제 12조, 제13조 및 제 15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구법 제 17조의 제2항의 인정 특정 사업자로 본다.

4. 제2항의 특정 사업 계획에 근거한 구법 제4조제4항 제2호에 규정된 특정 사업은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구법 제26조제2항 인증 중소 소매 상업 고도화 지원 등의 사업으로 본다.

5. 제2항의 특정 사업 계획에 관한 구법 제4조제4항 제3호의 중심 시가지 식품 유통 합리화 사업은 부칙 제11조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구법 제27조제1호 인증 식품 유통 합리화 사업으로 본다.

6. 구법 제17조제2항 인정 특정 사업 계획 변경 승인 및 취소에 대해서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제7조

구법 제19조제2항 중소 소매 상업 고도화 사업 구상 변경 승인 및 취소에 대해서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제8조

이 법 시행 전에 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신청이 된 동항 중소 소매 상업 고도화 사업 계획으로, 이 법률의 시행 시 인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의 처리가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경제산업대신의 인정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예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구법 제20조제1항의 중소 소매 상업 고도화 사업 계획, 제5항 및 부칙 제 14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구법 제21조제2항의 인증 중소 소매 상업 고도화 사업 계획으로 본다.

3. 전항의 중소 소매 상업 고도화 사업 계획을 실시하는 자는 부칙 제10조제1항 및 제 15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구법 제21조제1항의 인증 중소 소매 상업 고도화 사업자로 간주한다.

4. 제2항의 중소 소매 상업 고도화 사업 계획에 근거한 구법 제4조제5항, 제7호의 중소 소매 상업 고도화 사업은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구법 제26조제2항의 인증 중소 소매 상업 고도화 지원 등의 사업으로 본다.

5. 구법 제21조제2항의 인증 중소 소매 상업 고도화 사업 계획 변경 승인 및 취소에 대해서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제9조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구법 제22조제1항(동항 제2호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에 따라 독립 행정 법인 중소 기업 기반 정비기구(이하 "기구"라고 한다)가 정비 또는 관리하고 있는 동호에서 규정하는 공장이나 사업장 또는 시설에 관한 동호에서 규정하는 기구의 업무 내용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2. 구법 제17조제1항의 인정 특정 사업에 관한 구법 제22조제2항 제1호로 규정하는 채무 보증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제10조

구법 제17조제1항의 인정 특정 사업자 및 구법 제21조제1항의 인증 중소 소매 상업 고도화 사업에 관한 구법 제2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심 시가지 상업 등 활



성화 관련 보증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중심 시가지 상업 등 활성화 지원 관련 안전에 관하여 동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신용 보험법(쇼와 25년 법률 제 264호)의 특례에 대해서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2. 구법 제26조제2항의 인증 중소 소매 상업 고도화 지원 등 사업을 실시하는 공익 법인이 그 인증 중소 소매 상업 고도화 지원 등 사업 실시에 필요한 자금에 관한 중소기업 신용 보험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조2 제1항에 규정된 채무 보증을 받은 것에 관하여 구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제11조

구법 제27조제1항 인증 식품 유통 촉진 사업에 관한 동조 각호에 규정하는 식품 유통 구조개선 촉진기구의 업무 내용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제12조

구법 제17조제1항 인정 특정 사업자에 관한 구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교통법(쇼와 26년 법률 제183호)의 특별한 내용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제13조

구법 제17조제1항 인정 특정 사업자에 관한 구법 제30조규정에 의한 화물 이용 운송 사업법(평성 원년 법률 제82호) 및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법(평성 원년 법률 제83호)의 특별한 내용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제14조

이 법률의 시행 일전에 구법 제17조제2항의 인증 특정 사업 계획 또는 구법 제21조제2항 인증 중소 소매 상업 고도화 사업 계획에 관한 상업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 지역 공공단체가 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취득세 또는 재산세에 관한 불균일 과세를 할 경우의 지방 교부세법(쇼와 25년 법률 제 211호)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지방자치단체 기준 재정 수입액의 산정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제15조

구법 제17조제1항 인정 특정 사업자 및 구법 제21조제1항의 인증 중소 소매 상업 고도화 사업에 관한 구법 제 36조에 규정된 신고의 요구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

제16조

이 법률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이 법 부칙에 종전의 예에 의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법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2. 신법 제36조제1항에 규정된 제 1종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특례구역 또는 신법 제55조제1항에 규정된 제 2종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 특례 구역에 관한 공고일 전에 한 해당 공고에 관한 지역의 대형 소매점(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평성 10년 법률 제91호) 제2조제2항에 규정된 대규모 소매 점포를 말한다)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의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19년 6월 1일 법률 제70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성 10년 7월 23일 정령 제 263호)

최종개정 : 평성 19년 3월 2일 정령 제39호

내각은 중심 시가지에 있어서 시가지 정비 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평성 10년 법률 제92호) 제4조제3항 제3호 및 제6호, 제4항 제3호 및 제5호 ① 및 제5항 제7호, 제7조제1항 및 제3항, 제11조제3호, 제18조제1항, 제20조제4항(동법 제2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24조, 제 25조, 제26조제5항, 제30조제5항 및 제40조규정에 의거, 이 정령을 제정한다.

(중소기업인의 범위)

제1조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조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정령으로 지정하는 업종 및 그 업종별 자본 금액 또는 출자 총액 및 고용인의 수는 다음 표와 같다.

업종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	직원 수
고무 제품 제조업(자동차 또는 항공기용 타이어 및 튜브 제조 및 산업용 벨트 제조를 제외한다)	3억엔	900명
소프트웨어 업체 또는 정보 처리 서비스업	3억엔	300명
여관업	5000만엔	200명

2 법 제7조제1항 제8호 정령으로 지정하는 조합 및 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사업 협동조합과 사업 협동 소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
- 2) 수산물 가공업 협동조합 및 수산물 가공업 협동조합 연합회
- 3) 상공 조합 및 상공 조합 연합회
- 네) 상점가 진흥 조합 및 상점가 진흥 조합 연합회

(특정 회사의 요건)

제2조

법 제7조제7항 제7호 정령으로 지정하는 요건은 기업에 있어서는 총 주주(주주 총회에서 결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의 전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를 제외한다. 이하동조, 제5조 및 제10조제5항 제2호 및 제6항 제1호에서 같다)의 의결권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이하 이 조 및 제10조제6항 제1호에서 "대기업"이라고 한다)에 있는 의결권의 비율이 2분의 1 미만일 것(독립 행정 법인 중소기업 기반 정비기구가 출자하는 경우에는 독립 행정 법인 중소기업 기반 정비기구의 출자 후에 총 주주의 의결권을 점유하는 대기업이 가진 의결권의 비율이 2분의 1 미만인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 주식회사(회사법(평성 17년 법률 제86호) 제 57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제5조 및 제10조제5항 제2호에서 동일하다)는 사원(업무 집행 권한이 없는 것을 제외한다)에 점유하는 대기업 사원의 비율이 2분의 1 미만인 것으로 한다.

(중심 시가지 식품 유통 합리화 사업의 실시 주체에 출자 또는 각출하는 법인 등)

제3조

법 제7조제9항 제2호 사업 협동조합, 사업 협동 소조합, 협동조합, 기타 정령으로 지정하는 법인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사업 협동조합과 사업 협동 소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
- 2) 협업 조합, 상공 조합 및 상공 조합 연합회
- 3) 생활 위생 동업 조합 및 생활 위생 동업 소조합, 생활 위생 동업 조합 연합회
- 4)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연합회
- 5) 농업 협동조합 연합회
- 6) 수산업 협동조합 및 수산물 가공업 협동 조합 연합회
- 7) 삼림 조합 연합회

2. 법 제4조제4항 제3호 출자 또는 각출에 관련된 법인으로 정령이 정하는 것은 식품 소매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한다.

(화물 운송 효율화 사업에 관한 시설)

제4조

법 제7조제9항 제4호 ① 정령으로 지정하는 시설은 특정 중심 시가지에서 화물의 집화<sup>41)</sup> 또는 그러한 중심 시가지에 화물 배달을 계속하는 일반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자(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법(평성 원년 법률 제83호) 제 3조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또는 제 1종 화물 이용 운송 사업자(화물 이용 운송 사업법(평성 원년

41) 화물이나 상품 따위를 한곳에 모이게 하거나 모여둠. 또는 그 화물이나 상품

법률 제82호) 제2조제7항에서 규정하는 제 1종 화물 이용 운송 사업에 대해서 동 법 제3조제1항 등록을 받은 자를 말한다)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이용하는 시설로 한다.

(중심 시가지 활성화 협의회를 조직 할 수 있는 자의 요건)

#### 제5조

법 제15조제1항 제1호 ④에서 규정하는 회사에 관해 정령으로 지정하는 요건은 해당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총 주주의 의결권을 차지하는 시정촌(조직하려고 하는 중심 시가지 활성화 협의회에 관한 중심 시가지를 그 지역에 포함하는 시정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는 의결권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것,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사원 안에 시정촌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법 제15조제1항 제2호로 정령이 정하는 요건은 일반 사단법인 또는 일반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일반 사단 법인으로서 그 직원들 사이에 시정촌이 있는 것 또는 일반 재단법인으로서 그 기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가 시정촌에 의해 각출되는 것, 특정 회사인 경우에는 주식회사로 총 주주의 의결권을 차지하는 시정촌에 있는 의결권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것 또는 지분 회사로서 그 직원의 사이에 시정촌이 있는 것으로 한다.

(보유지에서 도시 복지 시설을 설치하는 자)

#### 제6조

법 제16조제1항 정령으로 지정한 자는, 국가(국가의 전액 출자에 관한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본금,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 한다.

(도시 복지 시설 등의 용지로 처분된 보유지의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의 교부 기준)

#### 제7조

법 제1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교부해야하는 금액은 처분된 보유지의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시행 이전의 택지 가액의 총액으로 나누어 얻은 수치를 토지 구획 정리법(쇼와 29년 법률 제119호) 제103조제4항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는 종전의 택지 또는 그 택지에 보존하고 지상권한, 영소작권, 임차권, 기타 택지를 사용, 혹은 수익 권리를 토지 구획 정리법 시행 이전 가격에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중심 시가지 공동 주택 공급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국가의 보조)

제8조

법 제30조제2항 규정에 의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액수는 중심 시가지 공동 주택 공급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공동 주택 건설에 관한 것에 한한다) 중 공동 주택의 공용 부분과 입주자 공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서 "공동 주택의 공용 부분 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그 액수가 공동 주택의 공용 부분 등에 관한 비용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지방 공공단체가 하는 주택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제9조

법 제34조제2항 규정에 의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액수는 지방 공공단체가 하는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공동 주택의 공용 부분 등에 관한 비용 금액 3분의 1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중소 소매 상업 고도화 사업의 적절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한 요구 사항)

제10조

법 제40조제4항 제4호(법 제4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령으로 지정하는 요건은 법 제7조제7항 제7호에 명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다.

- 1) 해당 상가 진흥 조합 등의 조합원이나 소속 당원의 수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일 것
- 2) 해당 상가 진흥 조합 등의 조합원이나 소속 당원의 3분의 2 이상이 중소기업인업자 또는 중소기업 서비스 업체(서비스업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제7조제1항 제2호에서 제7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중소기업 사업자의 수가 중소기업 서비스 업자 수 이상일 것
- 3) 해당 상가 진흥 조합 등의 조합원 또는 소속원이 그 점포의 기타 시설을 신설 또는 개조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조합원 또는 소속원이 신설하거나 또는 개장하는 점포의 기타 시설 부지 면적의 합계 중 중소기업이 신설하거나 또는 개장하는 점포의 기타 시설에 관한 부분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조합원 또는 소속원의 2분의 1 이상(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 또는 소속 직원 중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람)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것

2. 법 제40조제4항 제4호 정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법 7조 제7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다.

- 1) 사업 협동조합, 사업 협동 소조합 또는 협동조합 연합회(이하 이 항에서 "사업 협동조합 등"이라고 한다)의 조합원 또는 소속 직원의 수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일 것.
- 2) 그 사업 협동조합 등의 조합원이나 소속 당원의 3분의 2 이상이 중소 소매 상인업자 또는 중소 서비스 업자로, 중소 소매 상업자의 수가 중소 서비스 업자 수 이상일 것
- 3) 그 사업 협동조합 등의 모든 조합원 또는 소속 직원이 해당 단지에 점포를 설치한 것

3. 법 제40조제4항 제4호 정령이 정하는 요건은 법 제7조제7항 제3호에 명시된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해당 조합의 조합원 수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일 것
- 2) 해당 조합의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중소 소매 상인업자 또는 중소 서비스 업자로 중소 소매 상업자의 수가 중소 서비스 업자 수 이상일 것
- 3)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중소 소매 상업자인 무슨가 그 공동 매장에서 소매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
- 4) 그 공동 점포 중 소매업에 속하는 사업에 대해 제공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일 것

4. 법 제40조제4항 제4호 정령으로 지정하는 요건은 법 제7조제7항 제4호에 명시된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해당 조합의 조합원 수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일 것
- 2) 해당 조합이 중소 소매 상업자인 것
- 3) 해당 조합이 그 점포를 주로 소매업에 속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것
- 4) 해당 점포 중 소매업에 속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 전항 제4호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일 것

5. 법 제40조제4항 제4호 정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법 7조 제7항 제5호 및 제6호에 명시된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해당 합병 혹은 출자를 하려고 하거나 또는 출자를 하고 있는 중소 소매 상업자의 수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일 것.
- 2) 법 제7조제7항 제6호에 규정된 회사는 주식회사로 총 주주의 의결권을 차지하는 중소 소매 상업자가 가진 의결권 비율이 10분의 7 이상인 것 또는 주식회사로서 그 직원(업무 실행권을 가지지 않을 것을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중소 소매 상업자의 비율이 2분의 1을 초과하는 것
- 3) 법 제7조제7항 제5호에 명시된 사업 또는 동항 제6호에 명시된 사업 중 사업

장 설치 사업에 있어서는 회사가 해당 점포를 주로 소매업에 속하는 사업에 제공하는 것

- 4) 법 7조 제7항 제6호에 명시된 사업 중 공동 사업장 설치 사업에 있어서는 그 공동 점포가 주로 동호에 규정된 회사 또는 그 회사에 출자하려고 하거나 혹은 출자하고 있는 중소 소매 사업자가 경영하는 소매업에 속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것.
- 5) 해당 점포 또는 공동 점포 중 소매업에 속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 제3항 제4호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일 것
6. 법 제40조제4항 제4호 정령이 정하는 요건은 법 제7조제7항 제7호에 명시된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법 제7조제7항 제7호의 특정 회사가 주식회사로, 해당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
    - ① 해당 특정 회사에 출자하려고 하거나 또는 출자하고 있는 사람의 3분의 2 이상이 중소 기업인일 것
    - ② 해당 특정 회사의 주주 중 가진 의결권의 총 주주의 의결권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대기업이 아닌 것
    - ③ 해당 특정 회사의 주주 중 사건의결권의 총 주주의 의결권 비중이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대기업이 아닌 것
  - 2) 공동 점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
    - ① 그 공동 매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3분의 2 이상이 중소 소매 상인업자 또는 중소 서비스 업자로 중소 소매 사업자의 수가 중소 서비스 업자 수 이상일 것
    - ② 그 공동 점포 중 소매업에 속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 제3항 제4호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일 것

(보험료율)

제11조

법 제43조제5항 정령으로 지정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증을 한 차입 기간(중소기업 신용 보험법 시행령(쇼와 25년 정령 제 350호)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차입 기간을 말한다) 1년마다 중소기업 신용 보험법(쇼와 25년 법률 제 264호)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반 보험에 있어서는 0.41퍼센트(어음 특별 보증(동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어음 특별 보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일하다) 및 당좌 대월 특별 보증(동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당좌 대월 특별 보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일하다)의 경우는 0.35퍼센트), 동법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무담보 보험에 있어서는 0.29퍼센트(어음 특수 안전 및 당좌 대월 특수 보증의 경우에는



0.25퍼센트), 동법 제3조3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별 소액 보험에 있어서는 0.19퍼센트(어음 특수 보증과 당좌 대월 특수 보증의 경우에는 0.15퍼센트)로 한다.

(화물 이용 운송 사업법의 특례에 관한 조합 또는 그 연합회)

제12조

법 제47조제5항 정령으로 지정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사업 협동조합이나 사업 협동 소조합 또는 협동조합 연합회
- 2) 상공 조합이나 상업 조합 연합회

(중심 시가지 정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토지)

제13조

법 제52조제3호 정령으로 지정하는 토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도로, 공원, 주차, 기타 공공용으로 제공해주는 시설 또는 공용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에 대해 제공해주는 토지
- 2) 도시 계획법(쇼와 43년 법률 제100호) 제4조제7항에서 규정하는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 제공해주는 토지
- 3) 법 제5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제공해주는 토지
- 4) 중심 시가지 지역 내에서 행해지는 전 세 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관한 대체지에 제공해주는 토지

(권한의 위임)

제14조

법 제39조제1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제46조 및 제50조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대신의 권한은 지방운수국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첨부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법의 시행일(평성 10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의 대출금 상환 기간 등)

제2조

법 부칙 제5조제3항 정령으로 지정하는 기간은 5년(2년의 거치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 전항의 기간은 일본 전신 전화 주식회사의 주식 매도 수입의 활용에 의한 사회 자본의 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쇼와 62년 법률 제86호)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꾸어 준용되는 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 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쇼와 30년 법률 제 179호)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결정(이하 "대부 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해 해당 대출 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대부금(이하 "국가의 대부금"이라고 한다)의 교부를 완료한 일(그 날이 해당 대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 전날 이후의 일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말일의 전전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3. 국가의 대부금의 상환은 동등 연간 지출 상환의 방법으로 해야한다.

4. 국가는 국가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 대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전 세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상환 기간을 앞당겨 상환시킬 수 있다.

5. 법 부칙 제5조제6항의 정령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 기한을 앞당겨 상환을 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평성 11년 6월 23일 정령 제 204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평성 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1년 8월 18일 정령 제 256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도시 기반 정비 공단 법률(이하 "공단법"이라고 한다)의 일부 시행일(평성 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1년 12월 3일 정령 제 386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제6조

이 정령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이 정령의 부칙에서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 경우의 이 정령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12년 3월 29일 정령 제132호)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평성 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평성 12년부터 평성 15년까지의 사이에 제1조규정에 의한 개정 후 소규모 기업 자등 설비 도입 자금 조성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동항 중 "현의 특별 회계"인 것은 "중소기업 활동의 활성화 등을 위한 중소기업 관련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11년 법률 제 222호)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중소기업 근대화 자금 등 조성법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현 특별 회계 결산상의 동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설비 근대화 자금의 대출 금액 및 현 특별 회계"로 한다.

부칙(평성 12년 6월 7일 정령 311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내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11년 법률 제88호)의 시행일(평성 1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2년 9월 13일 정령 제 423호)

이 정령은 평성 1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4년 2월 8일 정령 제27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4년 10월 30일 정령 제 321호)

이 정령은 철도 사업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일(평성 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6년 5월 26일 정령 제 181호) 발취

이 정령은 기구의 설립 때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6년 10월 27일 정령 제 326호)

이 정령은 평성 1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7년 4월 1일 정령 제103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평성 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8년 4월 26일 정령 제 180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회사법의 시행일(평성 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8년 8월 11일 정령 제 265호)

이 정령은 중심 시가지에 있어서 시가지 정비 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등의 법률(평성 18년 법률 제54호)의 시행일(평성 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9년 3월 2일 정령 제39호)

이 정령은 일반 사단법인 및 일반재단 법인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평성 18년 8월 18일 내각부령 제77호)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평성 10년 법률 제92호) 제1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법 제11조제1항의 내각부령으로 지정하는 경미한 변경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1) 지역의 명칭 변경 또는 지번 변경에 따른 범위 변경
  - 2) 기본 계획에서 정한 사업 및 조치의 실시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계획 기간의 6개월 이내의 변경
  - 3) 전 두 호에 규정된 것 외에 기본 계획의 실시예 지장이 없다고 총리가 인정하는 변경

부칙

(시행 기일)

제1조

이 부령은 법의 시행일(평성 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의 중심 시가지 활성화 협의회  
조직 공표에 관한 명령  
(평성 18년 8월 18일 내각부,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령 제2호)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평성 10년 법률 제92호)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의 중심 시가지 활성화 협의회 조직 공표에 관한 명령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선전하는 사항)

제1조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평성 10년 법률 제92호.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한 공표는 아래 열거한 사항을 이행해야한다.

- 1) 중심 시가지 활성화 협의회 구성원의 성명 또는 명칭
- 2) 중심 시가지 활성화 협의회 규약의 내용

(공표 방법)

제2조

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한 공표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에서 공중이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동시에 인터넷 이용,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부칙

이 명령은 중심 시가지에 있어서 시가지 정비 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등의 법률(평성 18년 법률 제54호)의 시행일(평성 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44조에 규정된 업무에 관련된 식품유통  
구조개선촉진기구에 관한 성령  
(평성 10년 7월 23일 농림수산성령 제63호)

최종개정 : 평성 18년 8월 14일 농림수산성령 제73호

중심 시가지에 있어서 시가지 정비 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 (평성 10년 법률 제92호)을 실시하기 위해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에 관  
한 법률 제 44조에 규정된 업무에 관련된 식품 유통 구조 개선 촉진 기구에 관한  
성령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부칙

이 성령은 중심 시가지에 있어서 시가지 정비 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  
적 추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평성 10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8년 8월 14일 농림수산성령 제73호)

이 성령은 중심 시가지에 있어서 시가지 정비 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  
적 추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등의 법률 시행일(평성 18년 8월 22일)부  
터 시행한다.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8조지방세 불균일 과세에 따른 조치가 적용되는 경우 등을 정하는 성령  
(평성 11년 3월 29일 자치성령 제9호)

최종개정 : 평성 20년 3월 31일 총무성령 제41호

중심 시가지에 있어서 시가지 정비 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 (평성 10년 법률 제92호) 제 34조의 규정에 따라 중심 시가지에 있어서 시가지 정비 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 제 34조의 지방세 불균일 과세에 따른 조치가 적용될 경우 등을 정하는 성령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법 제 48조에 규정된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제1조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 48조에서 규정하는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 관한 법 9조 제 10항 규정에 의한 인증 기본 계획을 공개한 일자(제 3조에 "공표일"이라고 한다)가 속하는 연도 전 세 년도의 각 연도에 관한 지방 교부세법(쇼와 25년 법률 제 211호) 제14조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 재정 수입액을 동법 제11조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 재정 수요액으로 나누어 얻은 수치를 합산한 것의 3분의 1 수치가 0.49에 미치지 않는 도도부현은 0.72에 미치지 않은 시정촌으로 한다.

(법 제 48조에서 규정하는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상업 기반 시설)

제2조

법 제 48조에서 규정하는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상업 기반 시설은 다음 항에서 규정하는 대상 시설로 아래에 열거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그 대상 시설에 제공되는 주택이나 건축물(그 대상 시설에 제공해주는 부분으로 제한하며, 사무실, 기숙사 또는 숙박 시설, 놀이터 시설, 음식점, 다방이나 물품 판매 시설 중 그 이용에 대한 대가 혹은 부담으로 지불해야하는 금액을 결정하고 있는 시설(이하 "회사 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을 구성하는 감가상각자산(소득세법 시행령(쇼와 40년 정령 제96호) 제6조제 1호와 제2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쇼와 40년 정령 제97호) 제13조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것에 한한다) 취득 가액의 합계액이 3천만엔(법 제7조제8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있어서는 3억원)을 넘는 것

2) 회원 그 외에 해당 대상 시설을 일반객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권리가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시설 이외의 것

2.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고객, 기타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

2) 상당수의 소매업 업무를 행하는 자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 교육이나 회의에 제공해주는 것과 고객을 위해 공동으로 짐 놓는 장소를 제공해주는 것

(법 제 48조에서 규정하는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3조

법 제 48조에서 규정하는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세목마다 각각 해당 각호에 정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동산 취득세 공표일(그 공표일이 평성 22년 3월 31일 이전인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부터 기산하여 3년 안에 전조 제1항에 규정된 상업 기반 시설을 설치한 자(이하 "상업 기반 시설 설치자"라고 한다)에 대해서, 해당 설치한 상업 기반 시설에 제공되는 주택(그 상업 기반 시설에 제공해주는 부분으로 제한하며, 사무실 등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지에 있는 토지의 취득(공표일 이후 취득에 한하며, 토지의 취득은 그 취득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일년 이내에 그 토지를 부지로 해당 주택 건설 착수가 있는 경우의 그 토지 취득에 한한다)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동산 취득세에 불균일 과세를 하기로 하는 경우

2) 재산세 상업 기반 시설 설치에 관하여 그 설치한 상업 기반 시설에 제공되는 주택이나 건축물(그 상업 기반 시설에 제공해주는 부분으로 제한하며, 사무실 등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이들 부지인 토지의 취득(공표일 이후 취득한 것에 한정하며, 토지에 대해서는 그 취득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일년 이내에 그 토지를 부지로 주택 또는 건축물 건설의 시작이 된 경우의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에 불균일 과세를 하기로 하는 경우

### 부칙

이 성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2년 3월 29일 자치성 시행령 제16호)

(시행 기일)

1. 이 성령은 평성 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제1조규정에 의한 개정 후 농촌 지역 공업 등 도입 촉진법 제10조지역 등을 정하는 성령 제 2조의 규정은 이 성령의 실행일 이후에 신설된 또는 증설되는 생산 설비에 대해 적용하고, 이날 전에 신설된 또는 확장된 생산 설비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3.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 수입 촉진 및 대내 투자 사업 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 제 15조의 지방세 불균일 과세에 따른 조치가 적용될 경우 등을 정하는 성령 제2조2 제1항 제1호와 동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이 성령의 실행일 이후에 신설된 또는 증설하는 감가상각 자산에 대하여 적용하고, 이날 이전에 신설된 또는 확장된 감가상각 자산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12년 9월 14일 자치성 시행령 제44호)

이 성령은 내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11년 법률 제88호)의 시행일(평성 1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4년 3월 31일 총무성령 제43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성령은 평성 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6년3월 31일 총무성령 제74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성령은 평성 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8년 3월 31일 총무성령 제51호)

이 성령은 평성 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8년 8월 21일 총무성령 제107호)

이 성령은 중심 시가지에 있어서 시가지 정비 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등의 법률(평성 18년 법률 제54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20년 3월 31일 총무성령 제41호)

이 성령은 평성 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역 공공 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  
(평성 19년 5월 25일 법률 제59호)

최종개정 : 평성 20년 5월 30일 법률 제49호

제1장 총칙 (제 1조, 제 2조)

제2장 정책 등 (제 3조, 제 4조)

제3장 지역 공공 교통 종합 통합 계획의 수립 및 실시

제1절 지역 공공 교통 종합 통합 계획의 수립 (제5조- 제 7조)

제2절 궤도 운송 고도화 사업 (제8조- 제 12조)

제3절 도로 운송 고도화 사업 (제13조- 제 17조)

제4절 해상 운송 고도화 사업 (제8조- 제 20조)

제5절 환승 원활화 사업 (제21조- 제 25조)

제5절 2 철도 사업 재구축 사업 (제25조2 - 제25조 4)

제6절 철도 재생 사업 (제 26조, 제 27조)

제7절 일반 조항 (제 28조, 제 29조)

제4장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의 원활화 (제30조- 제 36조)

제5장 기타 조항 (제37조- 제 42조)

제6장 벌칙 (제 43조, 제 44조)

부칙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최근의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대한 고객의 선호도 변화에 따른 지역 공공 교통의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것 등 사회 경제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의 자립적인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보장, 활력있는 도시 활동의 실현, 관광, 기타 지역 간의 교류 원활화 및 교통에 관한 환경 부하의 저감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지역 공공교통 활성화 및 재생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해 지는 것에 따라 시정촌의 지역 공공교통 종합 통합 계

획 수립 및 지역 공공교통 특정 사업의 실시에 관한 조치 및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정함으로써 지역 공공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을 위한 지역의 주체적인 노력과 창의적인 연구를 종합적, 일체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로써 활력이 넘치는 지역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 제2조

이 법률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용어의 의미는 각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지방 공공 교통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의 이동 또는 관광 여객, 기타 해당 지역을 내방하는 사람의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공공 교통수단을 말한다.
- 2) 공공교통 사업자 등은 아래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 ① 철도 사업법(쇼와 67년 법률 제92호)에 의한 철도 사업자(여객의 운송을 담당하는 자와 여객 운송하는 철도 사업자에게 철도 시설을 양도하거나 또는 사용하게 하는 것에 한한다)
  - ② 궤도법(대정 10년 법률 제76호)에 의한 궤도 경영자(여객 운송을 하는 자에 한한다)
  - ③ 도로교통법(쇼와 26년 법률 제 183호)에 의한 일반 승합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자 및 일반 승용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자
  - ④ 자동차 터미널법(쇼와 34년 법률 제136호)의 버스 터미널 사업을 영위하는 자
  - ⑤ 해상 운송법(쇼와 24년 법률 제 187호) 제2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일반 여객 정기 항로 사업(우리나라의 항구와 우리나라 이외 지역 항구 사이 또는 우리나라 이외 지역의 각 항구 사이의 항로를 결정하게 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국내 일반 여객 정기 항로 사업" 한다) 동법 제19조6-2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운송하는 화물 정기 항로 사업(우리나라의 항구와 우리나라 이외 지역 항구 사이 또는 우리나라 이외 지역의 각 항구 사이의 항로를 결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동법 제2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운송하는 부정기 항로 사업(승합 여객의 운송을 하는 것으로 한하며, 우리나라의 항구와 우리나라 이외 지역 항구 사이 또는 우리나라 이외 지역의 각 항구 사이의 것을 제외한다) (이하 "국내 일반 여객 정기 항로 사업 등"으로 총칭한다)을 영위하는 자
  - ⑥ ①부터 ⑤까지 규정하는 자 이외의 자로 철도 사업법에 의한 철도 시설 또

는 해상 운송 법에 의한 수송 시설(선박을 제외한 국내 일반 여객 정기 항로 사업 등에 제공하는 것에 한한다)로, 공공 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의 승강, 대합, 기타의 것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것

- 3) 도로 관리자 도로법(쇼와 27년 법률 제 180호)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도로 관리자를 말한다.
- 4) 항만 관리자 항만법(쇼와 25년 법률 제 218호)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항만 관리자를 말한다.
- 5) 지방 공공 교통 특정 사업 궤도 운송 고도화 사업, 도로 교통 고도화 사업, 해상 운송 고도화 사업, 환승 원활화 사업, 철도 사업 재구축 사업과 철도 재생 사업을 말한다.
- 6) 궤도 운송 고도화 사업 궤도법에 의한 궤도 사업(여객 운송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여객 궤도 사업"이라고 한다)으로, 보다 뛰어난 가속과 감속의 성능이 있는 차량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정시성의 확보(설정된 발착 시간에 따라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속달 향상(목적지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쾌적성 확보, 기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운송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그로써 지역 공공 교통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 7) 도로 교통 고도화 사업 도로 교통법에 의한 일반 승합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이하 그냥 "일반 승합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이라고 한다)으로, 도로 관리, 도도부현 공안위원회 (이하 "공안위원회"라고 한다), 기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자가 강구하는 도로 교통의 원활화에 기여하는 조치와 함께 대형 자동차의 이용, 그 외에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정시성 확보, 속달성 향상, 쾌적성 확보, 기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운송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그로써 지역 공공 교통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 8) 해운 고도화 사업 국내 일반 여객 정기 항로 사업 등으로, 보다 뛰어난 가속과 감속의 성능을 가진 선박의 이용, 그 외에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정시성 확보, 속달성 향상, 쾌적성 확보, 기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운송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그로써 지역 공공 교통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 9) 환승 원활화 사업 다른 공공 교통 사업자 등의 사이에서 승객의 환승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사업으로, 운행 계획 개선, 공통 승차 배 티켓(둘 이상의 운송 사업자(제2호 ①에서 ③까지 및 ⑤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기간, 구간, 그 외의 조건을 정해서 공동으로 발행하는 증표로, 그 증표를 제시함으로써 해당 조건 범위 내에서 해당 각 운송 사업자의 운송 서비스

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25조제1항에서 같다)의 발행, 교통 결절 시설(공공 교통 기관을 이용하는 승객의 승차 및 환승 시설을 말한다)의 승강장 개선, 기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2 철도 사업 재구축 사업 최근의 경영 상황에 따라 그 유지가 곤란해지거나 또는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여객 철도 사업(철도 사업법에 의한 철도 사업 중 여객 운송을 하는 자와 여객 운송을 하는 철도 사업자에게 철도 시설을 양도하거나 또는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경영 개선을 도모함과 동시에, 시정촌, 그 외의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다음에 열거하는 사업의 구조 변경을 하는 것에 의해 해당 여객 철도 사업에 관한 노선의 수송 정비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철도 재생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① 사업의 양도 및 양수
- ②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 ③ ①과 ②에 규정된 것 외에 사업 실시 주체의 변경
- ④ ①에서 ③까지 열거한 것 외에도 중요한 자산의 양도 및 양수, 기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업 구조의 변화

10) 철도 재생 사업철도 사업법 제28조2 제1항 규정에 의한 폐업 신고(이하 "폐업 신고"라고 한다)가 된 철도 사업에 대해 시정촌, 기타의 지원은 해당 철도 사업의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1) 지방 공공 교통 일체형 외부 주차장 정비 사업 주차장법(쇼와 32년 법률 제106호) 제3조주차장 정비 지구 내에 정비되어야 하는 동법 제4조제2항 제5호 주요 외부 주차장 (도시 계획에서 정한 외부 주차장을 제외한다)의 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궤도 운송 고도화 사업 또는 도로 교통 고도화 사업과 일체가 되어 지역 공공 교통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12)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 지역의 여객 수송 수요에 적합한 효율적인 운송 서비스로, 다음에 열거하는 사업 중 둘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며, 그 둘 이상의 기업에서 동일한 차량 또는 선박을 사용하여 일관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① 여객 철도 사업 또는 여객 궤도 사업
- ② 일반 승합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 ③ 국내 일반 여객 정기 항로 사업 등



## 제2장 기본 방침 등

(기본 방침)

### 제3조

주무대신은 지역 공공 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을 종합적, 일체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 공공 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 원활화에 관한 기본 방침(이하 "기본 방침"이라고 한다)을 결정해야 한다.

2. 기본 방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

- 1) 지역 공공 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의 의의와 목표에 관한 사항
- 2)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지역 공공 교통 종합 통합 계획 수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3) 지방 공공 교통 특정 사업, 기타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지역 공공 교통 종합 통합 계획에 명시된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4)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5) 기타 지역 공공 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사항

3. 주무대신은 정세의 추이에 의한 필요가 발생할 때에는 기본 방침을 변경해야 한다.

4. 주무대신은 기본 방침을 결정하거나 또는 이것을 변경하려고 할 때, 국가 공안 위원회와 환경부대신과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5. 주무대신은 기본 방침을 결정하거나 또는 이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는 것으로 한다.

(국가 등의 노력 의무)

### 제4조

국가는 도시, 공공 교통 사업자 등 기타 관계자가 하는 지역 공공 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을 원활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 정리, 분석 및 제공, 연구 개발 추진 및 인력 양성과 자질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2. 도도부현은 시정촌, 공공 교통 사업자 등 기타 관계자가 하는 지역 공공 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각 시정촌의 지역을 초월한 광역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조언과 원조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도시는 공공 교통 사업자 등 기타 관계자와 협력하고 상호 긴밀한 연계를 도모하면서 주체적으로 지역 공공 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종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공공 교통 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여객 운송 정보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지역 공공 교통의 이용을 원활화하기 위해 정보 제공 및 그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장 지역 공공 교통 종합 통합 계획 수립 및 실시

#### 제1절 지역 공공 교통 종합 통합 계획 수립

(지역 공공 교통 종합 통합 계획)

##### 제5조

시정촌 기본 방침에 따라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또는 공동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대해 지역 공공 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을 종합적이고 일체적으로 추진하기위한 계획(이하 "지역 공공 교통 종합 통합 계획"이라고 한다)을 만들 수 있다.

2. 지방 공공 교통 종합 협력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해야한다.

- 1) 지역 공공 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의 종합적, 일체적인 추진에 관한 기본 방침
- 2) 지방 공공 교통 종합 통합 계획 지역
- 3) 지방 공공 교통 종합 통합 계획의 목표
- 4) 지난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과 그 실시 주체에 관한 사항
- 5) 계획 기간
- 6) 전 각호에 규정된 것 외에 지역 공공 교통 종합 통합 계획의 실시에 관해 해당 시정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앞에서 저 4호에 규정된 사항은 지역 공공 교통 특정 사업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4. 지방 공공 교통 종합 통합 계획은 도시 계획, 도시 계획법(쇼와 43년 법률 제 100호) 제18조2 시정촌의 도시 계획에 관한 기본 방침,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평성 10년 법률 제92호) 제9조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 일체적으로 추진하기위한 기본 계획과 노인, 장애인 등의 이동의 원활화 원활화에 관한 법률(평성 18년 법률 제91호) 제25조이동 등의 원활화에 관한 사업의 중점적, 일체적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구상과 조화가 유지되며, 지방자치법(쇼와 22년 법률 제67호) 제2조제4항 기본 구상에 입각한 것이어야 한다.

5. 도시는 지역 공공 교통 종합 통합 계획을 만들려고 할 때에는 미리 주민, 지역 공공 교통 이용자, 기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6. 도시는 지역 공공 교통 종합 통합 계획을 만들려고 할 때, 이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하고 하는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다음 조 제1항의 협의회가 조직

되어있는 경우 협의회의 협의를 동향의 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공공 교통 사업자 등 도로 관리, 항만 관리, 기타 지역 공공 교통 종합 통합 계획을 결정하려고 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전망되는 자와 관련된 공안위원회와 협의를 해야한다.

7. 도시는 지역 공공 교통 종합 통합 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주무대신, 시 및 관련 공공 교통 사업자 등 도로 관리, 항만 관리, 기타 지역 공공 교통 종합 통합 계획에 명시된 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는 자 및 관련된 공안위원회에게 지역 공공 교통 종합 통합 계획을 송부해야한다.

8. 주무대신 및 도도부현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공공 교통 종합 통합 계획 송부를 받은 때에는 시정촌에 대해 필요한 조언을 할 수 있다.

9. 제5항부터 전항까지 규정은 지역 공공 교통 종합 통합 계획의 변경에 준용한다.

(협의회)

#### 제6조

지방 공공 교통 종합 통합 계획을 만들려고 하는 시정촌은 지역 공공 교통 종합 통합 계획 수립에 관한 협의 및 지역 공공 교통 종합 통합 계획의 실시에 관한 연락 조정을 하기위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편성 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다음에 열거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지방 공공 교통 종합 통합 계획을 만들려고 하는 시정촌

2) 관련 공공 교통 사업자 등 도로 관리, 항만 관리, 기타 지역 공공 교통 종합 통합 계획을 결정하려고 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전망되는 자

3) 관련 공안위원회 및 지역 공공 교통의 이용자, 학자, 기타 그 시정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를 조직하는 시정촌은 동항에 규정된 협의를 할 뜻을 전항 제2호에 규정된 자에게 통지해야한다.

4.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통지에 관한 협의에 따라야 한다.

5. 협의회에서 협의를 된 사항에 대해서 협의회의 구성원은 그 협의 결과를 존중해야한다.

6. 주무대신 및 도도부현은 지역 공공 교통 종합 통합 계획 수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회의 구성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언을 할 수 있다.

7. 전 조항에 명시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가 결정한다.

(지역 공공 교통 종합 통합 계획 수립 등의 제안)

제7조

다음에 열거하는 자는 시정촌에 지역 공공 교통 종합 통합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것을 제안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기본 정책에 입각하여 그 제안에 관한 지역 공공 교통 종합 통합 계획의 초안을 만들고, 이것을 게시해야한다.

- 1) 공공 교통 사업자 등 도로 관리, 항만 관리, 기타 지역 공공 교통 종합 통합 계획을 결정하려고 하는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
- 2) 지역 공공 교통의 이용이 다른 지역 공공 교통의 이용에 관해 이해 관계가 있는 자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을 받은 시정촌은 그러한 제안에 따라 지역 공공 교통 종합 통합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여부에 대해 지체없이 공개해야한다. 이 경우, 지역 공공 교통 종합 통합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해야한다.

제2절 궤도 운송 고도화 사업

(궤도 운송 고도화 사업의 실시)

제8조

지방 공공 교통 종합 통합 계획에 궤도 운송 고도화 사업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경우, 궤도 운송 고도화 사업을 실시하려고하는 자(지방 공공 교통 외부 주차장 정비 사업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 공공 교통 외부 주차장 정비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자를 포함한다. 셋째 항 다섯째 항의와 다음 기사 첫째 항에서 같다)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해당 지역 공공 교통 종합 통합 계획에 맞게 궤도 운송 고도화 사업을 실시하기위한 계획(이하 "궤도 운송 고도화 실시 계획"이라고 한다)을 만들고 이것에 근거하여 해당 궤도 운송 고도화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2. 궤도 운송 고도화 시행 계획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해야한다.

- 1) 궤도 운송 고도화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
- 2) 궤도 운송 고도화의 사업 내용
- 3) 궤도 운송 고도화 사업의 실시 계획 기간
- 4) 궤도 운송 고도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액수 및 그 조달 방법
- 5) 궤도 운송 고도화 사업의 효과
- 6) 지방 공공 교통 일체형 외부 주차장 정비 사업이 있을 때 그 위치, 규모, 정비 주체와 정비의 목표 연차

- 7) 전 각호에 규정된 것 외에 궤도 운송 고도화 사업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궤도 운송 고도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궤도 운송 고도화 시행 계획을 결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시정촌, 공공 교통 사업자, 도로 관리자 및 공안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궤도 운송 고도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궤도 운송 고도화 실시 계획 제2항 제6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항에 대해 관계 시정촌과 협의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궤도 운송 고도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궤도 운송 고도화 실시 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연계 시정촌, 공공 교통 사업자, 도로 관리자 및 공안위원회에 송부 해야 한다.
6. 전 세 항의 규정은 궤도 운송 고도화 실시 계획 변경에 대한 준용한다.

(궤도 운송 고도화 실시 계획의 승인)

#### 제9조

궤도 운송 고도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대신에 대해 궤도 운송 고도화 실시 계획이 지역 공공 교통의 활성화와 재생을 적절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적당하다는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신청은 관련된 지역을 통해 실행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시정촌은 그러한 궤도 운송 고도화 실시 계획을 검토하고 의견을 교부하고, 국토교통대신에게 송부해야 한다.
3. 국토교통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궤도 운송 고도화 시행 계획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해야 한다.
  - 1) 궤도 운송 고도화 시행 계획에 명시된 사항이 기본 방침에 비추어 적절한 것
  - 2) 궤도 운송 고도화 시행 계획에 명시된 사항이 궤도 운송 고도화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위해 적절한 것
  - 3) 궤도 운송 고도화 실시 계획에서 정해진 여객 궤도 사업 내용이 궤도법 제3조 특허 기준을 준수한 것
4. 전항의 인증을 하는 경우에도 궤도법 제3조특허를 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통위원회에게 통지하고, 기타 필요한 절차는 정령으로 정한다.
5. 국토교통대신은 제3항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련 시정촌에 통지해야 한다.
6. 제3항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인증에 관한 궤도 운송 고도화 실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대신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7. 제2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인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8. 국토교통대신은 제3항의 인정에 관한 궤도 운송 고도화 실시 계획(제6항의 변경 인증이 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것. 이하 "인증 궤도 운송 고도화 실시 계획"이라고 한다)이 제3조각호 중 하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또는 동항의 인정을 받은 자가 인증 궤도 운송 고도화 시행 계획에 따라 궤도 운송 고도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9. 제3항의 인정과 제6항 변경 인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다.

(궤도법의 특례)

#### 제10조

궤도 운송 고도화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자(다음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그 궤도 운송 고도화 시행 계획에 관하여 전조 제3항(동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의 인정을 받은 경우, 그 궤도 운송 고도화 실시 계획에 정해진 궤도 운송 고도화 사업 중 궤도법 제 3조의 특허를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조 규정에 의해 특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궤도 운송 고도화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자(궤도를 부설하여 이것을 여객 운송을 행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이하 "궤도 정비 사업"이라고 한다)을 실시하려고 하는 자와 부설된 궤도를 사용하여 여객 운송 사업(이하 "궤도 운송 사업"이라고 한다)을 실시하려고 하는 자와 서로 다른 경우에 한한다)가 궤도 운송 고도화 시행 계획에 관하여 전조 제3항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궤도 운송 고도화 실시 계획에 정해진 궤도 운송 고도화 사업으로 발생하는 궤도 정비 사업 또는 궤도 운송 사업 내용은 궤도법 제 3조의 특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교통대신은 궤도 정비 사업 또는 궤도 운송 사업에 대해서 특허가 그 효력을 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그 특허가 그 효력을 잃고, 혹은 취소된 궤도 정비 사업에 관한 궤도 운송 사업 또는 그 특허가 그 효력을 잃고, 혹은 취소된 궤도 운송 사업에 관한 궤도 정비 사업의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외부 주차장의 정비 등)

#### 제11조

도시는 궤도 운송 고도화 실시 계획에서 지역 공공 교통 일체형 외부 주차장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경우로서 제9조제5항(동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주차장법 제4조제1항 주차장 정비 계획에서 해당 지역 공공 교통 외부 주차장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의 내용에 맞게 해당 위치, 규모, 정비 주체와 정비의 목표 연차를 밝힌 외부 주차장 정비에 관한 사업 계획의 개요를 결정해야한다.

2. 시정촌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 정비 계획에 도시 공원법(쇼와 31년 법률 제79호)제2조제1항 도시 공원의 지하에 설치되는 외부 주차장의 정비에 관한 사업 계획의 개요 (이하 "특정 주차장 사업 개요"이라고 한다)를 결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 주차장 사업 개요에 대해 미리 공원 관리자(동법 제5조제1항 공원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3. 특정 주차장 사업 개요가 정해진 주차장 정비 계획 주차장 법 제4조제4항(동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3항에서 같다) 규정에 의한 공표일부터 2년 내에 해당 특정 주차장 사업 개요에 따라 도시 공원 지하 점유에 대한 허가 신청이 된 경우에는 그 점유가 도시 공원법 제 7조의 규정에 따른 정령으로 정하는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해, 공원 관리자는 동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권한을 부여해야한다.

(지방채의 특례)

#### 제12조

지방자치단체가 공인 궤도 운송 고도화 실시 계획에 정해진 궤도 운송 고도화 사업으로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방 재정법(쇼와 23년 법률 제109호) 제5조각호에서 규정하는 비용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동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용으로 본다.

#### 제3절 도로 운송 고도화 사업

(도로 교통 고도화 사업의 실시)

#### 제13조

지방 공공 교통 종합 통합 계획에 도로 운송 고도화 사업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 교통 고도화 사업을 실시하려고하는 자(지방 공공 교통 일체형 외부 주차장 정비 사업인 경우 해당 지역 공공 교통 일체형 외부 주차장 정비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자를 포함한다.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다음 조 제1항에서 같다)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해당 지역 공공 교통 종합 통합 계획에 맞게 도로 교통 고도화 사업을 실시하기위한 계획(이하 "도로 교통 고도화 실시 계획"이라고 한다)을 만들고 이에 따라 해당 도로 교통 고도화 사업을 실시해야한다.

2. 도로 교통 고도화 시행 계획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해야한다.

- 1) 도로 교통 고도화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
- 2) 도로 교통 고도화 사업의 내용
- 3) 도로 교통 고도화 사업의 실시 계획 기간

- 4) 도로 교통 고도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액수 및 그 조달 방법
  - 5) 도로 교통 고도화 사업의 효과
  - 6) 지방 공공 교통 일체형 외부 주차장 정비 사업이 있을 때 그 위치, 규모, 정비 주체와 정비의 목표 연차
  - 7) 전 각호에 규정된 것 외에 도로 운송 고도화 사업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도로 교통 고도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 교통 고도화 시행 계획을 결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시정촌, 공공 교통 사업자 등 도로 관리자 및 공안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4. 도로 교통 고도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 교통 고도화 실시 계획 제2항 제6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항에 대해 관계 시정촌과 협의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한다.
5. 도로 교통 고도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 교통 고도화 실시 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계 시정촌, 공공 교통 사업자 등 도로 관리자 및 공안위원회에 송부해야한다.
6. 전 세 항의 규정은 도로 운송 고도화 실시 계획 변경에 대한 준용한다.

(도로 교통 고도화 실시 계획의 승인)

#### 제14조

도로 교통 고도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대신에 대해 도로 교통 고도화 실시 계획이 지역 공공 교통의 활성화와 재생을 적절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적당하다는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신청은 관련된 지역을 통해 실행해야한다. 이 경우, 관계 시정촌은 그 도로 교통 고도화 실시 계획을 검토하고 의견을 교부하고, 국토교통대신에게 송부해야한다.
3. 국토교통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도로 운송 고도화 시행 계획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해야한다.
  - 1) 도로 교통 고도화 시행 계획에 명시된 사항이 기본 방침에 비추어 적절한 것
  - 2) 도로 교통 고도화 시행 계획에 명시된 사항이 도로 운송 고도화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위한 적절한 것
  - 3) 도로 교통 고도화 실시 계획에서 정한 일반 승합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의 내용이 도로 운송법 제6조각호에 규정된 기준에 적합하며, 도로 교통 고도화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자가 동법 제7조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
4. 국토교통대신은 전항의 인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하는 도로 관리자에게 국토교통성령 내각부 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공안위원회에 각각 의견을 들어야한다. 그러나 도로 관리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공안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써 국토교통성령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국토교통대신은 제3항 인증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연결하는 시정촌에게 통지해야한다.

6. 제3항의 인정을 받은 자는 그 인증에 관한 도로 교통 고도화 실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대신의 인정을 받아야한다.

7. 제2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인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8. 국토교통대신, 제3항의 인정에 관한 도로 교통 고도화 실시 계획(제6항의 변경 인증이 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것. 이하 "공인 도로 교통 고도화 실시 계획"이라고 한 )이 제3항 각호 중 하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또는 동항의 인정을 받은 자가 인증 도로 교통 고도화 시행 계획에 따르면 도로 운송 고도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9. 제3항의 인정과 제6항의 변경 인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다.

(도로 교통 법률의 특례)

#### 제15조

도로 교통 고도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그 도로 운송 고도화 시행 계획에 관하여 전조 제3항(동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도로 운송 고도화 실시 계획에 정해진 도로 운송 고도화 사업 중 도로 운송법 제4조제1항의 허가 혹은 동법 제15조제1항의 인증을 받거나 또는 동조 제3항 혹은 제4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라 허가 혹은 승인을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외부 주차장의 정비 등)

#### 제16조

시정촌은 도로 운송 고도화 실시 계획에서 지역 공공 교통 일체형 외부 주차장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제14조제5항(동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주차장법 제4조제1항 주차장 정비 계획에서 해당 지역 공공 교통 일체형 외부 주차장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의 내용에 맞게 해당 위치, 규모, 서비스 주체와 서비스 목표 연차를 밝힌 외부 주차장 정비에 관한 사업 계획의 개요를 결정해야한다.

2. 시정촌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 정비 계획에 특정한 주차장 사업 개요를 결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 주차장 사업 개요 미리 공원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3. 특정 주차장 사업 개요가 정해진 주차장 정비 계획주차장법 제4조제4항 규정에 의한 공표일부터 2년 내에 해당 특정 주차장 사업 개요에 따라 도시 공원 지하 점유에 대한 허가 신청이 된 경우에는, 그 점유가 도시 공원법 제7조규정에 따른 정령으로 정하는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해, 공원 관리자 동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 권한을 부여해야한다.

(지방채의 특례)

제17조

지방자치단체가 공인 도로 교통 고도화 실시 계획에 정해진 도로 운송 고도화 사업으로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방 재정법 제5조각호에서 규정하는 비용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동조 제5호 에서 규정하는 비용으로 본다.

제4절 해상 운송 고도화 사업

(해상 운송 고도화 사업의 실시)

제18조

지방 공공 교통 종합 통합 계획에 해운 고도화 사업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경우, 해상 운송 고도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단독으로 또는 협력으로 해당 지역 공공 교통 종합 통합 계획 맞게 해운 고도화 사업을 실시하기위한 계획(이하 "해상 운송 고도화 실시 계획"이라고 한다)을 만들고 이것에 근거하여 해당 해운 고도화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해운 고도화 시행 계획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해야한다.

- 1) 해운 고도화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
- 2) 해운 고도화 사업의 내용
- 3) 해운 고도화 사업의 실시 계획 기간
- 4) 해운 고도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액수 및 그 조달 방법
- 5) 해운 고도화 사업의 효과
- 6) 전 각호에 규정된 것 외에, 해상 운송 고도화 사업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3. 해운 고도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해운 고도화 시행 계획을 결정하려

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시정촌, 공공 교통 사업자, 항만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해운 고도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해운 고도화 실시 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련 시정촌, 공공 교통 사업자, 항만 관리자에게 송부해야한다.

5. 전 두 항의 규정은 해상 운송 고도화 실시 계획 변경에 대한 준용한다.

(해상 운송 고도화 실시 계획 승인)

#### 제19조

해운 고도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대신에 대해 해운 고도화 실시 계획이 지역 공공 교통의 활성화와 재생을 적절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신청은 관련된 지역을 통해 실행해야한다. 이 경우, 관계 시정촌은 그 해상 운송 고도화 실시 계획을 검토하고 의견을 교부하고, 국토교통대신에게 송부해야한다.

3. 국토교통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해운 고도화 시행 계획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해야한다.

- 1) 해운 고도화 시행 계획에 명시된 사항이 기본 방침에 비추어 적절한 것
- 2) 해운 고도화 시행 계획에 명시된 사항이 해상 운송 고도화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위한 적절한 것
- 3) 해운 고도화 실시 계획에서 정한 사업 가운데 국내 일반 여객 정기 항로 사업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내용이 해상 운송법 제4조각호에 규정된 기준에 적합하며, 해상 운송 고도화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자가 동법 제5조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

4. 국토교통대신은 전항의 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련 시정촌에 통지해야한다.

5. 제3항의 인정을 받은 자는 그 인증에 관한 해운 고도화 실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대신의 인정을 받아야한다.

6.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인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7. 국토교통대신, 제3항의 인정에 관한 해운 고도화 실시 계획(제5항의 변경 인증이 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것. 이하 "인증 해운 고도화 실시 계획"이라고 한다)이 제3항 각호 중 하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또는 동항의 인정을 받은 자가 인증 해운 고도화 시행 계획에 따른 해상 운송 고도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8. 제3항의 인정과 제5항의 변경 인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다.

(해상 운송법의 특례)

#### 제20조

해운 고도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그 해운 고도화 시행 계획에 관하여 전조 제3항(동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 해상 운송 고도화 실시 계획에서 정한 해운 고도화 사업 중 해상 운송법 제3조제1항의 허가 혹은 동법 제11조제1항의 인증을 받거나 또는 동조 제3항, 동법 제19조5 제1항 혹은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라 허가 혹은 승인을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동법 제19조5 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관계없이, 전조 제3항의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 제5절 환승 원활화 사업

(환승 원활화 사업의 실시)

#### 제21조

지방 공공 교통 종합 통합 계획에 환승 원활화 사업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경우 환승 원활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단독으로 또는 협력으로 해당 지역 공공 교통 종합 통합 계획에 맞게 환승 원활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이하 "환승 원활화 시행 계획"이라고 한다)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환승 원활화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환승 원활화 시행 계획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

- 1) 환승 원활화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
- 2) 환승 원활화 사업의 내용
- 3) 환승 원활화 사업의 실시 계획 기간
- 4) 환승 원활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액수 및 그 조달 방법
- 5) 환승 원활화 사업의 효과
- 6) 전 각호에 규정된 것 외에 환승 원활화 사업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3. 환승 원활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환승 원활화 시행 계획을 결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시정촌, 공공 교통 사업자 등 도로 관리, 항만 관리자 및 공안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환승 원활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환승 원활화 시행 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련 시정촌, 공공 교통 사업자 등 도로 관리, 항만 관리자 및 공안위원회, 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5. 전 두 항의 규정은 환승 원활화 시행 계획 변경에 준용한다.

(환승 원활화 시행 계획의 승인)

제22조

환승 원활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대신에게 환승 원활화 시행 계획이 지역 공공 교통의 활성화와 재생을 적절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신청은 관련된 지역을 통해 실행해야한다. 이 경우, 관계 시정촌은 환승 원활화 시행 계획을 검토해 의견을 교부하고, 국토교통대신에게 송부해야한다.

3. 국토교통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환승 원활화 시행 계획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해야한다.

- 1) 환승 원활화 시행 계획에 명시된 사항이 기본 방침에 비추어 적절한 것
- 2) 환승 원활화 시행 계획에 명시된 사항이 환승 원활화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위해 적절한 것
- 3) 환승 원활화 시행 계획에서 정한 사업 중 일반 승합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내용이 도로 운송법 제5조제2항에서 준용한 동법 제6조각호에 규정된 기준을 준수한다.
- 4) 환승 원활화 시행 계획에 명시된 사업 가운데 국내 일반 여객 정기 항로 사업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내용이 해상 운송법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한 동법 제4조각호에 규정된 기준을 준수한다.

4. 국토교통대신은 전항의 인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하는 도로 관리자에게 국토교통성령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공안위원회 각각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그러나 도로 관리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공안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국토교통성령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국토교통대신은 제3항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련 시정촌에 통지해야한다.

6. 제3항의 인정을 받은 자는 그 인증에 관한 환승 원활화 시행 계획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국토교통대신의 인정을 받아야한다.

7. 제2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인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8. 국토교통대신, 제3항의 인정에 관한 환승 원활화 시행 계획(제6항의 변경 인증이 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것. 이하 "인증 환승 원활화 시행 계획"이라고 한다)이

제3항 각호 중 하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또는 동항의 인정을 받은 자가 인증 환승 원활화 시행 계획에 따른 환승 원활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9. 제3항의 인정과 제6항의 변경 인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다.

(도로 운송법의 특례)

제23조

환승 원활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그 환승 원활화 시행 계획에 관하여 전조 제3항(동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승 원활화 시행 계획에 명시된 환승 원활화 사업 중 도로 운송법 제15조제1항의 인증을 받거나 또는 동조 제3항 혹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해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환승 원활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그 환승 원활화 시행 계획으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운행 계획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에 대해서 전조 제3항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환승 원활화 시행 계획에 명시된 운행 계획의 변경은 도로 운송법 제15조3 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동항 규정에 관계없이,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대신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해상 운송법의 특례)

제24조

환승 원활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그 환승 원활화 시행 계획에 관하여 제22조제3항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환승 원활화 시행 계획에 명시된 환승 원활화 사업 중 해상 운송법 제11조제1항의 인증을 받거나 또는 동조 제3항, 동법 제19조5 제1항 후단이나 제2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해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동법 제19조5 제1항 후단 또는 제2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관계없이 제22조제3항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2. 환승 원활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그 환승 원활화 시행 계획으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운행 계획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에 대해서 제22조제3항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환승 원활화 시행 계획에 명시된 선박 운항 계획 변경은 해상 운송법 제11조2 제2항의 인증을 받거나 또는 동조 제1항 혹은 동법 제19조5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해야 할 때, 이 규정에 관계없이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대신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공통 승차 배 티켓)

제25조

환승 원활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그 환승 원활화 시행 계획에 관하여 제22조제3항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환승 원활화 시행 계획에 명시된 환승 원활화 사업으로 발행하는 공통 승차 배 티켓에 관한 운임 또는 요금 할인을 하려고 하면,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미리 그 사실을 국토교통대신에 신고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철도 사업법 제16조제3항 후단, 궤도법 제11조제2항, 도로 운송법 제9조제3항 후단 또는 해상 운송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절 2 철도 사업 재구축 사업

(철도 사업 재구축 사업의 실시)

제25조2

지방 공공 교통 종합 통합 계획에 철도 사업 재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 공공 교통 종합 통합 계획을 세우는 도시, 그 철도 사업 재구축 사업에 관한 여객 철도 사업을 경영하는 철도 사업자 및 그 철도 사업자를 대신하여 여객 철도 사업에 관한 노선에서 계속 여객 철도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기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전원의 합의하에 해당 지역 공공 교통 종합 통합 계획에 맞게 철도 사업 구축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 (이하 "철도 사업 재구축 실시 계획"이라고 한다)을 세우고, 이것에 근거하여 해당 철도 사업 재구축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철도 사업 재구축 실시 계획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

- 1) 철도 사업 재구축 사업을 실시하는 노선
- 2) 여객 철도 사업의 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
- 3) 시정촌과 그 외의 사람에 의한 지원의 내용
- 4) 여객 철도 사업의 사업 구조 변화 내용
- 5) 철도 사업 재구축 사업 실시 계획 기간
- 6) 철도 사업 재구축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액수 및 그 조달 방법
- 7) 철도 사업 재구축 사업의 효과
- 8) 전 각호에 규정된 것 외에 철도 사업 재구축 사업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철도 사업 재구축 실시 계획의 승인)

제25조3

철도 사업 재구축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대신에 대해 철도 사업 재구축 실시 계획이 지역 공공 교통의 활성화와 재생을 적절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철도 사업 재구축 실시 계획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하는 것으로 한다.

- 1) 철도 사업 재구축 실시 계획에 명시된 사항이 기본 방침에 비추어 적절한 것
- 2) 철도 사업 재구축 실시 계획에 명시된 사항이 철도 사업 재구축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위해 적절한 것
- 3) 철도 사업 재구축 실시 계획에서 정한 사업 중 다음 ①에서 ⑥까지에 규정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내용이 각 ①에서 ⑥까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 ① 철도 사업법 제3조제1항의 허가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기준
- ② 철도 사업법 제7조제1항의 허용 동조 제2항에서 준용한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기준
- ③ 철도 사업법 제15조제1항의 허용 동조 제3항의 기준
- ④ 철도 사업법 제16조제1항의 허용 동조 제2항의 기준
- ⑤ 철도 사업법 제25조제1항의 허가 동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기준
- ⑥ 철도 사업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허용 동조 제3항에서 준용한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기준

- 4) 철도 사업 재구축 실시 계획에서 정한 사업 중 철도 사업법 제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동법 제26조제1항 혹은 제2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자가 동법 제6조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

3. 국토교통대신은 지방 공공단체가 처리하는 철도 사업법 제2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제 3종 철도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철도 선로를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제 2종 철도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에 한한다)이 정해진 철도 사업 재구축 실시 계획에 대하여 전항의 인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제 3종 철도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동항 제3호 ①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법 제5조제1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 규정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것을 할 수 있다.

4. 제2항의 인증을 하는 경우에도 철도 사업법 제16조제1항의 허가를 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통위원회에 통지해야한다.



5. 제2항의 인정을 받은 자는 그 인증에 관련된 철도 사업 재구축 실시 계획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국토교통대신의 인정을 받아야한다.
6.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인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7. 국토교통대신, 제2항의 인정에 관한 철도 사업 재구축 실시 계획(제5항의 변경 인증이 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것. 이하 "공인 철도 사업 재구축 실시 계획"이라고 한다)이 제2항각호 중 하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또는 동항의 인정을 받은 자가 인증 철도 사업 재구축 실시 계획에 따른 철도 사업 재구축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8. 제2항의 인정과 제5항의 변경 인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다.

(철도 사업법의 특례)

제25조4

철도 사업 재구축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그 철도 사업 재구축 실시 계획에 대한 전조 제2항(동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철도 사업 재구축 실시 계획에서 정한 철도 사업 재구축 사업 중 철도 사업법 제3조제1항 혹은 제25조제1항의 허가 혹은 동법 제7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혹은 제26조제1항 혹은 제2항의 인증을 받거나 또는 동법 제7조제3항 혹은 제16조제3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해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라 허가 혹은 승인을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공인 철도 사업 재구축 실시 계획에서 정한 철도 사업 재구축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그 철도 사업 재구축 사업에 관한 종전의 여객 철도 사업에 대해 폐지를 해야되는 경우에는, 철도 사업법 제28조2 제1항 규정에 관계없이 폐업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제6절 철도 재생 사업

(철도 재생 사업의 실시)

제26조

지방 공공 교통 종합 통합 계획에 철도 재생 사업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 공공 교통 종합 통합 계획을 창조하는 시정촌, 폐업 신고가 된 철도 사업을 운영하는 철도 사업자와 국토교통성령으로 결정하는 자는 그 전원의 합의 하에 해당 지역 공공 교통 종합 통합 계획에 맞게 철도 재생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이하 "철도 조회 실시 계획"이라고 한다)을 세우고 이것에 근거하여 해당 철도 재생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철도 조회 실시 계획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해야한다.
  - 1) 철도 재생 사업을 실시하는 노선
  - 2) 철도 사업의 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
  - 3) 도시의 다른 사람의 지원 내용
  - 4) 철도 재생 사업 실시 계획 기간
  - 5) 전호의 기간 경과 후의 철도 사업자의 철도 사업의 폐업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
  - 6) 전 각호에 규정된 것 외에 철도 재생 사업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3. 폐업 신고가 된 철도 사업을 운영하는 철도 사업자는 그 폐업 신고에 관한 철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제1항의 합의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을 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대신에게 신고해야한다.
4.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철도 조회 실시 계획을 세운 경우,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철도 조회 실시 계획을 국토교통대신에 신고할 수 있다. 이것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다.

(철도 사업법의 특례)

#### 제27조

국토교통대신은 전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에 관한 철도 사업에 대해서 철도 사업법 제28조2 제3항의 통지를 양는 것으로 한다.

2. 전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철도 사업자는 그 신고에 관한 철도 사업에 대해 폐업일을 미루는 것을 국토교통대신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신고를 한 후에는 폐업일을 결정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철도 사업자는 폐업 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 경과 후 전조 제1항의 합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한 철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철도 사업법 제28조2 제1항 규정에 관계없이 폐업일 1개월 전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대신에 신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4. 전조 제1항에 규정된 자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에 관한 철도 재생 실시 계획에서 정한 철도 재생 사업 중 철도 사업법 제7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 후단이나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해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5. 전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철도 회사는 동조 제1항의 철도 재생 실시 계획에서 정한 철도 재생 사업을 실시하고, 동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동항 제5호에 규정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에 따라 동항

제1호에 규정된 노선에 관련된 철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철도 사업법 제28조2 제1항 규정에 관계없이, 폐업일 6개월 전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대신에 신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제7절 일반 조항

(공인 궤도 운송 고도화 사업 등의 실시에 관한 명령 등)

### 제28조

시정촌은 지역 공공 교통 종합 통합 계획에 정해진 궤도 운송 고도화 사업, 도로 교통 고도화 사업, 해상 운송 고도화 사업 환승 원활화 사업이나 철도 사업 재구축 사업(이하 이 항에서 "궤도 운송 고도화 사업 등"이라고 한다)이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궤도 운송 고도화 사업 등을 실시해야 할 경우, 해당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2. 시정촌은 공인 궤도 운송 고도화 실시 계획에 정해진 궤도 운송 고도화 사업, 공인 도로 교통 고도화 실시 계획에 의거 도로 운송 고도화 사업 인증 해운 고도화 시행 계획에 명시된 해상 운송 고도화 사업 인증 환승 원활화 시행 계획에 명시된 환승 원활화 사업 또는 공인 철도 사업 재구축 실시 계획에서 정한 철도 사업 재구축 사업(이하 "공인 궤도 운송 고도화 사업 등"이라고 한다)에 대해서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가 그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대신에게 보고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요청에 관한 인증 궤도 운송 고도화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인증 궤도 운송 고도화 실시 계획, 공인 도로 교통 고도화 실시 계획, 공인 해운 고도화 실시 계획, 공인 환승 원활화 시행 계획 또는 공인 철도 사업 재구축 실시 계획에 따라 해당 공인 궤도 운송 고도화 사업 등을 실시해야한다고 권고 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그 권고를 받은 자가 사업에 대해서 지역 공공 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저해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고를 받은 자에게 그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지방채에 대한 배려)

### 제29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공공 교통 종합 통합 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

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으키는 지방채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금 사정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이 허락하는 한 특별한 배려를 하는 것으로 한다.

#### 제4장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 원활화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 계획 승인)

##### 제30조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을 실시하려고하는 자(이하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자"라고 한다)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실시하려고하는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 계획"이라고 한다)을 세우고 이것을 국토교통대신에게 제출하여 그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 계획이 지역 공공 교통의 활성화와 재생을 적절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적절하다는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 계획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해야한다.

- 1)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
- 2)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의 목표
- 3)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의 내용
- 4)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의 실시시기
- 5)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액수 및 그 조달 방법
- 6) 전 각호에 규정된 것 외에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국토교통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 계획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해야한다.

- 1)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 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기본 방침에 비추어 적절한 것
- 2)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 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위해 적절한 것
- 3)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 계획에서 정한 사업 중 여객 철도 사업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내용이 철도 사업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기준에 적합하며,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자가 동법 제6조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

- 4)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 계획에서 정한 사업 중 여객 궤도 사업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내용이 궤도법 제 3조의 특허 기준을 준수하는 것
  - 5)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 계획에서 정한 사업 중 일반 승합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내용이 도로 운송법 제6조 각호에 규정된 기준에 적합하며,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자가 동법 제7조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
  - 6)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 계획에서 정한 사업 가운데 국내 일반 여객 정기항로 사업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내용이 해상 운송법 제4조 각호에 규정된 기준에 적합하며,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자가 동법 제5조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4. 전항의 인증을 하는 경우에도 궤도법 제 3조의 특허를 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통위원회에 통보하며, 기타 필요한 절차는 정령으로 정한다.
  5. 국토교통대신은 제3항 인증을 시도하는 경우,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된 도로 관리자에게 국토교통성령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공안위원회에 각각 의견을 들어야한다. 그러나 도로 관리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공안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국토교통성령 내각부 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제3항의 인정을 받은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자(이하 "공인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자"라고 한다)는 그 인증에 관한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대신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7. 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인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4항 중 "궤도법 제 3조의 특허"인 것은 "궤도법 제16조제 1 (궤도의 양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혹은 제22조2 허가 또는 동법 제 22조의 허가"로 본다.
  8. 국토교통대신은 제3항의 인정에 관한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 계획(제6항 변경 인증이 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것. 이하 "공인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 계획"이라고 한다)이 제3항 각호 중 하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공인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자가 새로운 인정 지역 여객 운송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9. 제3항의 인정과 제6항의 변경 인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다.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 운임 및 요금)

### 제31조

공인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새로운 인증 지역

여객 운송 사업 계획에서 정한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이하 "공인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이라고 한다)에 대해 그 일관된 운송 서비스에 관한 여객 운임 및 요금(이하 "운임 등"이라고 한다)을 결정하고,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대신에게 신고해야한다. 이것을 변경하려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다.

2. 운임 등의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각 각호에 규정된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1) 여객 철도 사업의 운임 및 요금(철도 사업법 제16조제1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에 한한다)동향의 허가를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상한 범위인 것
- 2) 여객 궤도 사업 운임 및 요금(궤도법 제11조제1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에 한한다)동향의 허가를 받은 운임 및 요금과 동액인 것
- 3) 일반 승합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운임 및 요금(도로 운송법 제9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것에 한한다)동향의 허가를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상한 범위인 것
- 4) 국내 일반 여객 정기 항로 사업 운임(해상 운송법 제8조제3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에 한한다)동향의 허가를 받은 운임의 상한 범위인 것

3. 새로운 공인 지역 여객 운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요금 등을 공시해야한다.

(철도 사업법 등의 특례)

제32조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자가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 계획에 대해 제30조제3항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 계획에서 정한 사업 중 철도 사업법 제3조제1항의 허가 혹은 동법 제7조제1항의 인증을 받거나 또는 동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해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라 허가 혹은 승인을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여객 철도 사업을 영위하는 새로운 공인 지역 여객 운송 사업자가 새로운 인정 지역 여객 운송 사업 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제30조제7항에서 준용한 동조 제3항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 신규 지역 여객 운송 사업 계획에서 정한 사업 중 철도 사업법 제7조제1항 제26조제1항 혹은 제2항 혹은 제27조제1항의 인가를 받거나 또는 동법 제7조제3항, 제28조제1항 혹은 제28조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해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여객 철도 사업을 영위하는 새로운 공인 지역 여객 운송 사업자가 운임 등에 대해서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 운임 등의 중 철도 사업법 제16조제3항 또는제4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해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4. 여객 철도 사업을 영위하는 새로운 공인 지역 여객 운송 사업자가 운임 등에 대해서 전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한 경우, 운임 등의 중 철도 영업법(메이지 33년 법률 제65호)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해야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항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궤도법의 특례)

제33조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자가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 계획에 대해 제30조제3항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 계획에서 정한 사업 중 궤도법 제 3조의 특허를 받아야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조 규정에 의해 특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여객 궤도 사업을 경영하는 새로운 인증 지역 여객 운송 사업자가 새로운 인정 지역 여객 운송 사업 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제30조제7항에서 준용한 동조 제3항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 신규 지역 여객 운송 사업 계획에서 정한 사업 중 궤도법 제 15조, 제16조제1항(궤도의 양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혹은 제22조 2의 허가 또는 동법 제22조 혹은 동법 제 26조에서 준용한 철도 사업법 제27조제1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여객 궤도 사업을 경영하는 새로운 인증 지역 여객 운송 사업자가 운임 등에 대해서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 운임 중 궤도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해야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항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도로 교통법의 특례)

제34조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자가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 계획에 대해 제30조제3항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 계획에서 정한 사업 중 도로 운송 법 제4조제1항의 허가 혹은 동법 제15조제1항의 인증을 받거나 또는 동조 제3항 혹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해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라 허가 혹은 승인을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일반 승합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새로운 공인 지역 여객 운송 사업자가 새로운 인정 지역 여객 운송 사업 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제30조제7항에서 준용한 동조 제3항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공인 지역 여객 운송 사업 계획에서 정한 사업 중 도로 운송법 제15조제1항과 제36조제1항 혹은 제2항 혹은 제37조제1항의 인가를 받거나 또는 동법 제15조제3항 혹은 제4항, 제15조2 제1항

혹은 제38조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해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일반 승합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새로운 공인 지역 여객 운송 사업자가 운임 등에 대해서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 운임 중 도로 운송법 제9조제3항 또는 제5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해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4. 일반 승합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새로운 공인 지역 여객 운송 사업자가 운임 등에 대해서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한 경우, 운임 중 도로 운송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를 해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라 게시를 한 것으로 본다.

(해상 운송법의 특례)

#### 제35조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자가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 계획에 대해 제30조제3항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 계획에서 정한 사업 중 해상 운송법 제3조제1항의 허가 혹은 동법 제11조제1항의 인증을 받거나 또는 동조 제3항, 동법 제19조5 제1항 혹은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해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라 허가 혹은 승인을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동법 제19조5 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관계없이, 제30조제3항의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2. 국내 일반 여객 정기 항로 사업 등을 영위하는 새로운 공인 지역 여객 운송 사업자가 새로운 인정 지역 여객 운송 사업 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제30조제7항에서 준용한 동조 제3항의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새로운 인증 지역 여객 운송 사업 계획에서 정한 사업 중 해상 운송법 제11조제1항 혹은 제18조제1항 제2항 혹은 4항의 인가를 받거나 또는 동법 제11조제3항, 제15조제1항 혹은 제2항, 제19조5 제1항 혹은 제2항 혹은 제20조제2항 혹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해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동법 제19조5 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관계없이, 제30조제7항에서 준용한 동조 제3항의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3. 국내 일반 여객 정기 항로 사업을 영위하는 새로운 공인 지역 여객 운송 사업자가 운임 등에 대해서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 운임 중 해상 운송법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해야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항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4. 국내 일반 여객 정기 항로 사업 등을 영위하는 새로운 공인 지역 여객 운송 사업자가 운임 등에 대해서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한 경우, 운임 중 해상 운송법 제10조또는 제19조6-2(동법 제20조2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해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라 공시를 한 것으로 본다.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 원활화에 대한 배려)

#### 제36조

국토교통대신은 새로운 공인 지역 여객 운송 사업에 관하여 철도 영업법 제 1조, 궤도법 제 14조, 선박 안전법(쇼와 8년 법률 제11호) 제2조제1항과 도로 운송법(쇼와 26년 법률 제 185호) 제 40조에서 제 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 결정 차량 또는 선박에 관련된 보안상의 기술 기준의 작성 및 그 운용에 있어서는, 그 새로운 공인 지역 여객 운송 사업의 실시가 지역 공공 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이바지하는 것에 따라, 해당 새로운 인증 지역 여객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또는 선박 운행의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새로운 공인 지역 여객 운송 사업의 원활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려를 하는 것으로 한다.

### 제5장 기타 조항

(기금의 확보)

#### 제3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공공 교통 종합 통합 계획에서 정한 사업과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확보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보고 요구)

#### 제38조

국토교통대신은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인정 궤도 운송 고도화 사업 등을 실시하는 자 또는 새로운 인증 지역 여객 운송 사업자에게 각각 인정 궤도 운송 고도화 사업 등 또는 공인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의 실시 상황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주무대신)

#### 제39조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주무대신은 동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대신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국토교통대신과 총무대신으로 한다.

2. 제5조제7항 및 제8항, 제6조제6항의 주무대신은 국토교통대신과 총무대신으로 한다.

(권한의 위임)

제40조

이 법에 의한 국토교통대신의 권한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명령에의 위임)

제41조

이 법률에 명시된 것 이외에 이 법률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경과 조치)

제42조

이 법률에 따라 명령을 제정 또는 개폐하는 경우에 해당 명령에 해당 제정 또는 개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소요 경과 조치(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를 포함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 제6장 벌칙

제43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 28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 2) 제 3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제44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사람의 대리인, 고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해 전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도 동조의 형을 과한다.

부칙 첨부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검토)

제2조

정부는 이 법 시행 후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률의 시행 상황에 대해 검토를 추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부칙(평성 20년 5월 30일 법률 제49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검토)

제2조

정부는 이 법 시행 후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률의 시행 상황에 대해 검토를 추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지역 공공 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성 19년 9월 20일 정령 제 297호)

내각은 지역 공공 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평성 19년 법률 제59호) 제 9조제4항(동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제30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 정령을 제정한다.

(궤도 사업의 특허를 요하는 궤도 운송 고도화 실시 계획 등의 승인 신청)

제1조

지역 공공 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동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0조제3항의 인정(궤도법(대정 10년 법률 제76호) 제 3조의 궤도 사업의 특허를 요하는 궤도 운송 고도화 실시 계획 또는 새로운 지역 여객 운송 사업 계획에 관한 것에 한한다)을 받고 자하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방운수국장을 통해 국토교통 대신에게 제출해야한다.

2.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는 이에 규정된 것 외에, 신청서 사본 및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도면을 지방운수국장에게 제출해야한다.

(도로 관리자의 의견 청취)

제2조

지방운수국장은 전조 제1항 신청서의 제출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기한을 지정하여 신청에 관한 궤도가 부설되는 도로의 도로 관리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항의 의견을 제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신청서 제출)

제3조

지방운수국장은 전조 제1항의 의견 제출이 있을 때 또는 동항의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조제1항의 신청서에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대신에게 송부하여야한다.

부칙

이 정령은 지역 공공 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 시행 일자(평성 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역 공공 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평성 19년 9월 26일 국토교통성령 제80호)

최종개정 : 평성 20년 12월 1일 국토교통성령 제97호

지역 공공 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평성 19년 법률 제59호) 및 지역 공공 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 시행령(평성 19년 정령 제 297호)의 규정에 따라 동법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 공공 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제9조2)

제2장 지역 대중 교통 종합 제휴 계획 수립 및 실시

제1절 지역 대중 교통 종합 제휴 계획 수립 (제 10조)

제2절 궤도 운송 고도화 사업 (제11조- 제 14조)

제3절 도로 운송 고도화 사업 (제15조- 제 19조)

제4절 해상 운송 고도화 사업 (제20조- 제 22조)

제5절 환승 촉진 사업 (제23조- 제 30조)

제5절 2 철도 사업 재구축 사업 (제30조2 - 제30조5)

제6절 철도 재생 사업 (제31조- 제 36조)

제3장 새로운 지역 승객 운송 사업 (제37조- 제 44조)

제4장 기타 조항 (제45조- 제 47조)

부칙

제1장 총칙

(정의)

제1조

이 성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지역 공공 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법 제2조제6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조치)

### 제2조

법 제2조제6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조치는 다음에 열거하는 조치 전부를 강구해야한다.

- 1) 보다 뛰어난 가속과 감속 성능을 보유하고 진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높고, 또한 저장되어있는 등 승객이 원활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의 차량을 채택.
- 2) 승객의 승강을 원활히 하기위한 조치(전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와 차량의 좋은 주행 환경을 확보하기위한 조치를 취할 것.

2.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기존의 궤도 노선에서 궤도 운송 고도화 사업을 실시하고자하는 경우 법 제2조제6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조치는 전항 각호에 규정된 조치 중 하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법 제2조제6호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운송 서비스의 질 향상)

### 제3조

법 제2조제6호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운송 서비스의 품질 향상은 정시성 확보, 속도 향상과 쾌적성을 확보한다.

(법 제2조제7호 국토교통성령으로 지정하는 자)

### 제4조

법 제2조제7호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자는 시정촌,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평성 10년 법률 제7호)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 일반 사단법인 또는 일반 재단법인 및 협회회의 구성원으로 한다.

(법 제2조제7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조치)

### 제5조

법 제2조제7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조치는 다음에 열거하는 조치 중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 1) 승차 정원 100명으로, 저장되어있는 등 승객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연계 버스(연계부에 의해 결합된 두 개 이상의 차실로 구성되어, 차체가 굴절하는 특수 구조이고, 앞 차실과 뒷 차실의 연결 및 분리가 노상 등 작업 시설의 장소에서 할 수 없는 구조의 차량으로, 승객이 전후 차실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를 사용할 것.

- 2) 도로 교통 고도화 사업에 대해 제공되는 차량의 위치, 운행 시간 추가 운행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
- 3) 도로 교통의 원활화에 기여하는 조치에 대응하는 기기 또는 시설을 정비한 것
- 4) 승객의 승강을 원활히 하기위한 조치(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강구한 것.

(법 2조 제7호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운송 서비스의 질 향상)

#### 제6조

법 2조 제7호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운송 서비스의 품질 향상은 정시 성 확보, 쾌속성 향상, 쾌적성 확보 및 안전성 향상으로 한다.

(법 2조 제8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조치)

#### 제7조

법 2조 제8호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조치는 다음에 열거하는 조치 중 하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 1) 보다 뛰어난 가속 성능 등이 있는 선박을 채택.
- 2) 보다 쾌적한 선내 시설 등이 있는 선박을 채택.
- 3) 승객의 승강을 원활히 하기위한 조치를 취할 것.
- 4) 항로의 신설, 구조 조정이나 비행 계획의 변경, 기타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법 2조 제8호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운송 서비스의 질 향상)

#### 제8조

법 2조 제8호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운송 서비스의 품질 향상은 정시 성 확보, 쾌속성 향상, 쾌적성 확보 및 편의성 향상으로 한다.

(법 2조 제9호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것)

#### 제9조

법 2조 제9호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에 열거하는 중 하나의 것으로 한다.



- 1) 운행 계획 개선
- 2) 공공 승차권의 발행
- 3) 교통 결절 시설의 승강장 개선
- 4) 승객의 승차에 대한 알기 쉬운 정보 제공
- 5) 전 각호에 규정된 것 외에, 승객의 승차를 원활하게 하기위한 조치

(법 2조 제9호 2 ④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업 구조의 변경)

법 2조 제9호 2 ④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업 구조의 변경은 중요한 자산의 양도 및 양수로 한다.

## 제2장 지역 대중 교통 종합 제휴 계획 수립 및 실시

### 제1절 지역 대중 교통 종합 제휴 계획 수립

(지역 대중 교통 종합 제휴 계획의 작성 방법)

#### 제10조

지방 대중 교통 종합 제휴 계획에 철도 재생 사업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고하는 경우에는 그 철도 재생 사업을 실시하고자하는 노선을 가지고 있는 모든 도시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 제2절 궤도 운송 고도화 사업

(궤도 운송 고도화 실시 계획의 기재 사항)

#### 제11조

법 제8조제2항 제7호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으로 한다.

- 1) 지방 대중 교통 종합 제휴 계획 궤도 운송 고도화 사업과 관련하여 실시되는 사업이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사항
- 2) 궤도 정비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자와 궤도 운송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 ① 궤도 시설 임대료 금액
  - ② 궤도 시설 임대료의 수수 방법
  - ③ 궤도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및 그 기간
  - ④ 궤도 시설의 관리 방법
- 3) 전 두 호에 규정된 것 외에 궤도 운송 고도화 사업의 운영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사항

(궤도 운송 고도화 실시 계획 승인 신청)

#### 제12조

법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궤도 운송 고도화 실시 계획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
- 2) 법 제8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2. 궤도 정비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자와 궤도 운송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 1) 궤도 시설 이용 계약서 사본
  - 2) 궤도 시설 사용료 산출의 기초를 기재한 서류
  - 3) 궤도 시설에 관한 도면
3.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법 제10조제1항과 제2항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신청서 및 전항에 규정된 서류 및 도면 외에 궤도 시행 규칙(대정 12년 내무·철도성령) 제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와 도면 및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궤도 운송 고도화 실시 계획 변경의 승인 신청)

### 제13조

법 제9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 궤도 운송 고도화 실시 계획의 변경 인증을 받고자하는 궤도 운송 고도화 사업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대신에게 제출해야한다.

- 1)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
  - 2)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예전 것과 새로운 것의 대조를 명시한 것)
  - 3) 변경 이유
2.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한다.
- 1) 해당 궤도 운송 고도화 실시 계획에 관한 궤도 운송 고도화 사업의 실시 상황을 기재한 서류
  - 2) 전조 제2항에 규정된 서류 및 도면 중 궤도 운송 고도화 실시 계획 변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된 것
  - 3) 궤도법 시행 규칙 제1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와 도면 및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서 중 궤도 운송 고도화 실시 계획 변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된 것
3. 전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인정 신청에 대해서 준용한다.

(신청서 제출 절차)

### 제14조

지역 공공 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조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법 제9조제3항에 관한 것에 한한다)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으로 한다.

- 1) 신청자의 자산과 신용 정도
- 2) 사업의 성공 여부와 효과
- 3) 도로 관리자의 의견
- 4) 그 외의 철도, 궤도, 삭도 또는 도로교통법(쇼와 26년 법률 제 183호)에 의한 자동차 도로 사업이나 자동차 운송 사업(미 개업을 포함한다)에 미치는 영향
- 5) 근처의 철도, 궤도, 삭도 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 도로 사업이나 자동차 운송 사업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간 신청자 및 신청서 접수한 연도
- 6) 인정의 가부에 대한 의견

### 제3절 도로 운송 고도화 사업

(도로 교통 고도화 실시 계획의 기재 사항)

#### 제15조

법 제13조제2항 제7호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역 대중교통 종합 통합 계획 도로 운송 고도화 사업과 관련하여 실시되는 사업이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도로 교통 고도화 실시 계획 승인 신청)

#### 제16조

법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도로 교통 고도화 실시 계획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
- 2) 법 제13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2. 전항의 경우에도 별표 제 1의 상란에 규정된 조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동항의 중란에 규정된 사항(동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을 기재하고, 동표의 하란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도로 교통 시행 규칙(쇼와 26년 교통부령 제75호) 제14조제3항 규정은 제1항의 인정 신청에 준용한다.

(도로 교통 고도화 실시 계획 변경 승인 신청)

#### 제17조

법 제14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 도로 교통 고도화 실시 계획 변경 인증을 받고자 하는 도로 교통 고도화 사업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
- 2)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옛 것과 새로운 것의 대조를 명시한 것)
- 3) 변경 이유

2. 전항의 신청서에는 그 도로 교통 고도화 실시 계획에 관한 도로 교통 고도화 사업의 실시 상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야한다.

3. 제1항의 경우에 별표 제 1의 입력란에 규정된 조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동표의 중란에 규정된 사항(동항 각호에 열거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기재하고, 전항에 규정된 서류 외에 동표의 하란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해야한다.

(법 제14조제4항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도로 관리자에 대한 의견청문의 방법)

#### 제18조

법 제14조제4항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도로 관리자에 대한 의견청문 방법은 도로 관리자 청문회 관한 성령(쇼와 26년 교통부, 건설부령 제1호)제 1조(제3항을 제외한다), 제 2조(제3항을 제외한다), 제 3조, 제6조및 제 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 시행령 제1조제1항 중 "노선을 결정한 승객 자동차 운송 사업에 대해 도로 교통 시행 규칙(쇼와 26년 교통부령 제75호.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 4조에 근거해, 허가 신청서 또는 제 14조에 따른 승인 신청서("인 것은 "도로 교통 고도화 사업에 대해 지역 공공 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16조또는 제 17조에 따른 신청서(규칙 제16조제2항 또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기재 및 서류의 첨부가 될 것으로, 각 내용이"로, "국토교통대신 또는 지방운수국장"인 것은 "지방운수국장"으로, "허가 신청서 또는 승인 신청서"인 것은 "신청서"로, 동령 제3조제1항 중 "허가 신청서 또는 인가 신청서(이하 "허가 신청서 등"이라고 한다)"인 것은 "신청서"로, "지방운수국장(제1조제3항에 규정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운송감리부장 또는 운수지국장)"인 것은 "지방운수국장"으로, "그 허가 신청서 등"인 것은 "해당 신청서"로, 동령 제6조중 "국토교통대신 또는 지방운수국장"인 것은 "지역교통국장"으로 바꾼다.

(법 제14조제4항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도로 관리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경우)

#### 제19조

법 제14조제4항 단,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도로 관리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경우는 도로 관리자 의견청취에 관한 성령 제 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각호 별기 이외의 부분 중 "도로교통법(쇼와 26년 법률 제 183호.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 91조"인 것은 "지역 공공 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

(평성 19년 법률 제59호.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조제4항"으로, 동조 제1호 중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처분에 따라"인 것은 "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쇼와 26년 법률 제 183호) 제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이것에 의해"로, "에 관한"인 것은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로, 동조 제2호 중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처분에 관한"인 것은 "법 제15조규정에 의하여 도로 운송법 제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로, "그 처분"인 것은 "그 처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동조 제3호 중 "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처분에 관한"인 것은 "법 제15조규정에 의하여 도로운송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로, "그 처분"인 것은 "그 처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한다.

#### 제4절 해상 운송 고도화 사업

(해상 운송 고도화 실시 계획의 기재 사항)

##### 제20조

법 제8조제2항 제6호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역 대중 교통 종합 통합 계획에 해운 고도화 사업과 관련하여 실시되는 사업이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해상 운송 고도화 실시 계획의 인정 신청)

##### 제21조

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해운 고도화 실시 계획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대신에게 제출해야한다.

- 1)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
- 2) 국내 일반 승객 정기 항로 사업, 해상 운송법(쇼와 24년 법률 제 187호)제19조 6 2) 에서 규정하는 자의 운송 화물 정기 항로 사업 또는 동법 제2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운송 부정기 항로 사업의 예
- 3) 법 제18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2. 전항의 경우에 별표 제 2의 상란에 규정된 조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동표의 중란에 규정된 사항(동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을 기재하고, 동표 하란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해야한다.

(해상 운송 고도화 실시 계획 변경 인정의 신청)

#### 제22조

법 제1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 해운 고도화 실시 계획 변경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해상 운송 고도화 사업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대신에게 제출해야한다.

- 1) 성명 또는 명과 주소 및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
- 2) 변경하고자하는 사항 (옛 것과 새로운 것의 대조를 명시한 것)
- 3) 변경 이유

2. 전항의 신청서에는 그 해상 운송 고도화 실시 계획에 관한 해운 고도화 사업의 실시 상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야한다.

3. 제1항의 경우에 별표 제 2의 상란에 규정된 조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동표 중란에 규정된 사항(동항 각호에 열거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기재하고, 전항에 규정한 서류 외에 동표 하란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해야한다.

#### 제5절 환승 원활화 사업

(환승 원활화 시행 계획의 기재 사항)

#### 제23조

법 제21조제2항 제6호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역 대중 교통 종합 통합 계획에 환승 원활화 사업과 관련하여 실시되는 사업이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환승 원활화 시행 계획 승인의 신청)

#### 제24조

법 제22조제1항 규정에 따라 환승 원활화 실시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대신에게 제출해야한다.

- 1)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법 제21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2. 전항의 경우에도 별표 제 1의 상란에 규정된 조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동표 중란에 규정된 사항(동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을 기재하고, 동표 하란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해야한다. 이 경우 별표 제 1의 상란 중 "법 제 15조"인 것은 "법 제23조제1항"으로 바꾼다.

3. 제1항의 경우에 별표 제 2의 상란에 규정된 조항의 적용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동표 중란에 규정된 사항(동항 각호에 열거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기재하고, 동표 하란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해야한다. 이 경우에는 별표 제 2의 규정 항목 중 "법 제 20조"인 것은 "법 제24조제1항"으로 바꾼다.

4. 도로 교통 시행 규칙 제14조제3항 규정은제1항의 인정 신청에 준용한다.

(환승 원활화 시행 계획 변경의 인정 신청)

제25조

법 제22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인정 환승 원활화 시행 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환승 원활화 사업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대신에게 제출해야한다.

- 1) 성명 또는 명과 주소 및 범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
- 2)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옛 것과 새로운 것의 대조를 명시한 것)
- 3) 변경 이유

2. 전항의 신청서에는 해당 환승 원활화 시행 계획에 관한 환승 원활화 사업의 실시 상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야한다.

3. 제1항의 경우에 별표 제 2의 상란에 규정된 조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동표 중란에 규정된 사항(동항 각호에 열거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기재하고, 전항에 규정한 서류 외에 동표 하란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해야한다. 이 경우 별표 제 1의 상란 중 "법 제 15조"인 것은 "법 제 23조제1항"으로 바꾼다.

4. 제1항의 경우에 별표 제 2의 상란에 규정된 조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동표 중란에 규정된 사항(동항 각호에 열거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기재하고, 전항에 규정한 서류 외에 동표 하란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해야한다. 이 경우에는 별표 제 2의 규정 항목 중 "법 제 20조"인 것은 "법 제24조제1항"으로 바꾼다.

5. 도로 교통 시행 규칙 제14조제3항 규정은 제1항의 인정 신청에 준용한다.



(법 제22조제4항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도로 관리자에 대한 의견청문의 방법)  
제26조

법 제22조제4항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도로 관리자에 대한 의견청문 방법은 도로 관리자의 의견청문에 관한 성령 제 1조(제3항을 제외한다), 제 2조(제3항을 제외한다), 제 3조, 제6조 및 제 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 시행령 제1조 제1항 중 "노선을 결정한 승객 자동차 운송 사업에 대해 도로 교통 시행 규칙(쇼와 26년 교통부령 제75호.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 4조에 따른 허가 신청서 또는 제 14조에 따른 승인 신청서("인 것은 "환승 원활화 사업에 대한 지역 공공 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24조 또는 제 25조에 따른 신청서(규칙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기재 및 서류의 첨부가 된 것으로, 동시에 그 내용이"로, "국토교통대신 또는 지방 교통국장"인 것은 "지방운수국장"으로, "허가 신청서 또는 승인 신청서"인 것은 "신청서"로, 동령 제3조제1항 중 "허가 신청서 또는 인가 신청서(이하 "허가 신청서 등"이라고 한다)"인 것은 "신청서"로, "지방운수국장(제1조제3항에 규정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운송감리부장 또는 운수지국장)"인 것은 "지방운수국장"으로, "그 허가 신청서 등"인 것은 "해당 신청서"로, 동령 제6조중 "국토교통대신 또는 지방운수국장"인 것은 "지방운수국장"으로 바꾼다.

(법 제22조제4항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도로 관리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경우)

제27조

법 제22조제4항 단,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도로 관리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도로 관리자의 의견청취에 관한 성령 제 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각호 별기 이외의 부분 중 "도로 교통법(쇼와 26년 법률 제 183호.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 91조"인 것은 "지역 공공 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 (평성 19년 법률 제59호.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2조제4항"으로, 동조 제1호 중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처분에 따라"인 것은 "법 제23조규정에 의하여 도로 교통법(쇼와 26년 법률 제 183호) 제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이에 의해"로, "에 관한"인 것은 "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로, 동조 제2호 중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처분에 관한"인 것은 "법 제23조규정에 의해 도로 운송법 제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로, "그 처분"인 것은 "그 처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로, 동조 제3호 중 "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처분에 관한"인 것은 "법 제23조규정에 의하여 도로 운송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로, "그 처분"인 것은 "그 처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로 바꾼다.

(법 제23조제2항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운행 계획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제28조

법 제23조제2항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운행 계획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중 하나로 한다.

- 1) 노선에 관한 운행 계통 당 운행 횟수를 증가시키는 것(도로 교통 시행 규칙 제15조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것을 제외 한다)
- 2) 1년을 통해 계속해서 운송을 하는 것이 없을 때에는 운송 기간의 변경을 하는 것

(법 제24조제2항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운행 계획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제29조

법 제24조제2항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운행 계획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중 하나로 한다.

- 1) 운항 일정 또는 운항 시간을 변경하는 것(해상운송법 시행 규칙(쇼와 24년 교통부령 제49호) 제11조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 2) 운항이 특정 시기에 제한되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운항 시기를 변경하는 것

(공통 승차 배의 표의 신고)

#### 제30조

법 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통승차 배의 표에 관한 운임 또는 요금 할인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운송 사업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국토교통대신에 공동으로 제출해야한다.

- 1) 공통승차배의 표를 발행하려고 하는 운송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2) 공통승차배의 표를 발행하려고 하는 운송 사업자를 대표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 3) 할인을 하려는 운임 또는 요금의 종류
- 4) 발행하려는 공통승차배의 표의 명칭

- 5) 발행하려는 공통승차배의 표의 발행 가액
- 6) 발행하려는 공통승차배의 표에 관한 기간, 구간, 기타 조건

제5절 2 철도 사업 재구축 사업

(법 제25조2 제1항 국토교통성령으로 지정하는 자)

제30조2

법 제25조2 제1항 국토교통성령으로 지정하는 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자로 한다.

- 1) 지방 대중 교통 종합 통합 계획을 작성하는 시정촌, 철도 사업 재구축 사업에 관한 승객 철도 사업을 경영하는 철도 사업자 및 그 철도 사업자를 대신하여 승객 철도 사업에 관한 노선에 계속해서 승객 철도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자
- 2) 전호에서 열거한 것 이외에 속한 도도부현, 기타 지역 대중 교통 종합 통합 계획을 만든 시정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철도 사업 재구축 실시 계획의 기재 사항)

제30조3

법 제25조2 제2항 제8호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으로 한다.

- 1) 지방 대중 교통 종합 통합 계획에 철도 사업 재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실시되는 사업이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사항
- 2) 전호에 규정된 것 외에 철도 사업 재구축 사업의 운영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사항

(철도 사업 재구축 실시 계획 승인 신청)

제30조4

법 제25조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철도 사업 재구축 실시 계획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법 제25조2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2. 전항의 경우에 별표 제 2-2 상란에 규정된 조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동표 중란에 규정된 사항(동항 각호에 열거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기재하고, 전항에 규정한 서류 외에 동표 하란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해야한다.

3. 철도 사업법 시행 규칙(쇼와 62년 교통부 시행령 제6호) 제2조제3항 과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인정 신청에 준용한다.

(철도 사업 재구축 실시 계획 변경 승인의 신청)

제30조5

법 제25조3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 철도 사업 재구축 실시 계획 변경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대신에게 제출해야한다.

1)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옛 것과 새로운 것을 대조해 명시한 것)

3) 변경 이유

2. 전항의 신청서에는 그 공인 철도 사업 재구축 실시 계획에 관한 철도 사업 재구축 사업의 실시 상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야한다.

3. 제1항의 경우에 별표 제 2-2 상란에 규정된 조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동표 중란에 규정된 사항(동항 각호에 열거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기재하고, 전항에 규정한 서류 외에 동표 하란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해야한다.

4. 철도 사업법 시행 규칙 제2조제3항과 제4항 규정은 제1항의 인정 신청에 준용한다.

제6절 철도 재생 사업

(법 제26조제1항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자)

제31조

법 제26조제1항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련 도도부현, 그 외의 대중교통 종합 통합 계획을 만든 시정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철도 재생 실시 계획의 기재 사항)

#### 제32조

법 제26조제2항 제6호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으로 한다.

- 1) 지방 대중교통 종합 통합 계획에 철도 재생 사업과 관련하여 실시되는 사업이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사항
- 2) 전호에 규정된 것 외에 철도 재생 사업의 운영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사항

(철도 재생 사업의 실시에 관한 협의 개시의 신고 등)

#### 제33조

법 제26조제3항과 제2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국토교통대신에게 제출해야한다.

- 1)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
- 2) 철도 재생 사업을 실시하려고하는 노선

(철도 재생 실시 계획의 신고)

#### 제34조

법 제2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철도 재생 실시 계획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국토교통대신에게 제출해야한다.

- 1)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
- 2) 법 제26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2. 전항의 경우에 별표 제 3 상란에 규정된 조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동표 중란에 규정된 사항(동항 각호에 열거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기재하고, 전항에 규정한 서류 외에 동표 하란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해야한다.

(철도 재생 실시 계획 변경의 신고)

제 35 조

법 제2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철도 재생 실시 계획의 변경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 1)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
- 2)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옛 것과 새로운 것의 대조를 명시한 것)
- 3) 변경 이유

2. 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변경 신고에 대하여 준용한다.

(철도 재생 사업의 철도 사업의 폐지 신고)

제36조

법 제27조제3항과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철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국토교통대신에게 제출해야한다.

- 1)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
- 2) 폐지하고자하는 노선
- 3) 폐지 예정
- 4) 폐지를 필요로 하는 이유

2. 전항의 신고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해야한다.

- 1)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의 현황 등을 기재한 서류
- 2)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에 관한 철도선로를 철도사업법(쇼와 61년 법률 제92호)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제 2종 철도 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 2종 철도 사업자 간의 폐지에 관한 조정 등의 경과를 설명하는 서류

제3장 새로운 지역 승객 운송 사업

(새로운 지역 승객 운송 사업 계획의 기재 사항)

제37조

법 제30조제2항 제6호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새로운 지역 승객 운송 사업의 운영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다.

(새로운 지역 승객 운송 사업 계획의 승인 신청)

#### 제38조

법 제3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지역 승객 운송 사업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대신에게 제출해야한다.

- 1)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
- 2) 법 제30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2. 전항의 경우에 별표 제 4 상란에 규정된 조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동표 중란에 규정된 사항(동항 각호에 열거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기재하고, 전항에 규정한 서류 외에 동표 하란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해야한다.
3. 제16조제3항 및 제30조4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인정 신청에 준용한다.

(새로운 지역 승객 운송 사업 계획의 변경 승인의 신청)

#### 제39조

법 제30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 새로운 지역 승객 운송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새로운 지역 승객 운송 사업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대신에게 제출해야한다.

- 1)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
- 2)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옛 것과 새로운 것의 대조를 명시한 것)
- 3) 변경 이유
2. 전항의 신청서에는 그 새로운 지역 승객 운송 사업 계획에 관한 새로운 지역 승객 운송 사업의 실시 상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야한다.
3. 제1항의 경우에 별표 제 5 상란에 규정된 조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동표 중란에 규정된 사항(동항 각호에 열거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기재하고, 전항에 규정한 서류 외에 동표 하란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해야한다.
4. 제16조제3항 및 제30조4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인정 신청에 준용한다.

(법 제30조제5항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도로 관리자에 대한 의견청취의 방법)  
제40조

법 제30조제5항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도로 관리자에 대한 의견청취 방법에 대해서는 도로 관리자의 의견청취에 관한 성령 제 1조부터 제 3조까지 및 제 6조에서 제 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 시행령 제1조제1항 중 "노선을 결정한 승객 자동차 운송 사업에 대해 도로 교통 시행 규칙(쇼와 26년 교통부령 제75호.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 4조에 따른 허가 신청서 또는 제 14조에 따른 인가 신청서("인 것은 "새로운 지역 승객 운송 사업에 대해 지역 공공 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38조또는 제 39조에 따른 신청서(규칙 제38조제2항 또는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기재 및 서류의 첨부가 된 것으로, 동시에 그 내용이"로, "국토교통대신 또는 지방교통국장"인 것은 "지방운수국장"으로, "허가 신청서 또는 인가 신청서"인 것은 "신청서"로, 동조 제3항 중"노선을 결정한 승객 자동차 운송 사업"인 것은 "새로운 지역 승객 운송 사업"으로 "규칙 제 14조에 따른 허가 신청서("인 것은 "규칙 제38조또는 제 39조에 따른 신청서(규칙 제38조제2항 또는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기재 및 서류의 첨부가 된 것으로, 동시에 그 내용이"로, 동령 제3조제1항 중 "허가 신청서 또는 인가 신청서(이하 "허가 신청서 등"이라고 한다)"인 것은 "신청서"로, "인가 신청서"인 것은 "신청서"로, "그 허가 신청서 등"인 것은 "그 신청서"으로 바꾼다.

(법 제30조제5항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도로 관리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경우)

제41조

법 제30조제5항 단,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도로 관리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경우는 도로 관리자의 의견청문에 관한 성령 제5조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각호 별기 이외의 부분에서 "도로 교통법(쇼와 26년 법률 제 183호.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 91조"인 것은 "지역 공공 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평성 19년 법률 제59호.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0조제5항"으로, 동조 제1호 중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처분에 따라"인 것은 "법 제 34조규정에 의하여 도로 교통법(쇼와 26년 법률 제 183호) 제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통해"로, 동조 제2호 중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처분에 관한"인 것은 "법 제34조규정에 의하여 도로 운송법 제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로, "그 처분"인 것은 "그 처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로, 동조



제3호 중 "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처분에 관한"인 것은 "법 제34조규정에 의하여 도로 운송법 제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로, "그 처분"인 것은 "그 처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로 바꾼다.

(신청서 제출 절차)

#### 제42조

제 14조의 규정은 령 제 3조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법 제30조제3항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 준용한다.

(새로운 지역 승객 운송 사업 운임 등의 신고)

#### 제43조

법 3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요금 등의 설정 또는 변경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운임 등의 설정(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 1)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범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
- 2)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하는 운임 등의 적용 노선 또는 항로
- 3)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하는 요금 등의 종류, 금액 및 신청 방법(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옛 것과 새로운 것의 대조를 명시한 것)
- 4) 적용 기간 또는 구간 다른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조건
- 5) 실시 예정

(새로운 지역 승객 운송 사업 운임 등의 공시 방법 등)

#### 제44조

법 제31조제3항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새로운 지역 승객 운송 사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각 그 각호에 규정된 방법으로 한다.

- 1) 승객 철도 사업철도 운송 규정(쇼와 17년 철도 성령 제3호)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방법
- 2) 승객 궤도 사업 궤도 운송 규정(대정 12년 철도 성령 제4호) 제2조제2항과 제3조에서 규정하는 방법
- 3) 일반 승합 승객 자동차 운송 사업, 승객 자동차 운송 사업, 승객 운송 규칙(쇼와 31년 교통부령 제44호)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방법

- 4) 국내 일반 승객 정기 항로 사업, 해운 시행 규칙 제 7조에서 규정하는 방법
- 5) 해상 운송법 제19조6-2에서 규정하는 자를 운송하는 화물 정기 항로 사업과 동법 제2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를 운송하는 부정기 항로 사업해운 시행 규칙 제21조4에서 규정하는 방법

2, 새로운 지역 승객 운송 사업자는 법 3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운임 등의 변경 신고를 하고, 동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해 운임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실시하려고하는 일자의 적어도 7일 전에는 이것을 해야한다.

## 제4장 기타 조항

(권한의 위임)

### 제45조

법 제3장 제3절에서 제6절까지, 제4장에서 규정하는 국토교통대신의 권한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방운수국장(운수감리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 1) 법 제25조3 제2항 규정에 의한 인정과 동조 제6항에서 준용한 동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변경의 인정에 관한 것(철도 사업법 제7조제3항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한 것과 동법 제16조제3항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한 것으로, 철도 사업법 시행 규칙 제71조제1항 제7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
- 2) 법 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한 것
- 3) 법 제26조제4항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한 것(철도 사업법 제16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한 것(철도 사업법 시행 규칙 제71조제1항 제7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에 한한다)
- 4) 법 제30조제3항 규정에 의한 인증에 관한 것(철도 사업법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 혹은 동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승인(철도 사업법 시행 규칙 제71조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 또는 궤도 법(대정 10년 법률 제76호) 제3조규정에 의한 특허에 관한 것에 한한다)
- 5) 법 제30조제7항에서 준용한 동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변경의 인정에 관한 것(철도 사업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승인(철도 사업법 시행 규칙 제71조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 동법 제26조제1항 혹은 제2항 혹은 제2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승인이나 동법 제28조2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궤도법 제 15조, 제16조제1항(궤도의 양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혹은 제22조 ⑦ (2) 규정에 의한 허가, 동법 제22조혹은 동법 제 26조에서 준용한 철도 사업법 제2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승인에 관한 것에 한한다)

6) 법 제30조제8항 규정에 의한 취소에 관한 것(철도 사업법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 동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승인(철도 사업법 시행 규칙 제7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 동법 제26조제1항 혹은 제2항 혹은 제2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승인이나 동법 제28조2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궤도법 제3조규정에 의한 특허, 동법 제 15조, 제16조제1항(궤도의 양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혹은 제22조⑦ (2) 규정에 의한 허가, 동법 제22조혹은 동법 제 26조에서 준용한 철도 사업법 제2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승인에 관한 것에 한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운수국장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것(교통감리부장과 운수지국장 또는 두 명 이상의 운수지국장의 관할 구역에 걸친 것을 제외한다)은 교통감리부장 또는 운수지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0조제3항 규정에 의한 인증(도로 교통 시행령 제1조제4항 제1호의 권한만에 관한 것에 한한다)

2) 법 제30조제6항 규정에 의한 변경 인증(도로 교통 시행령 제1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 권한만에 관한 것에 한한다)

3.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토교통대신의 권한 중 법 제5조제8항과 제6조제6항 통보에 관한 것은 지역정비국장, 북해도 개발 국장, 지역교통국장, 운수지국장과 항해사무소장도 할 수 있다.

4.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토교통대신의 권한 중 법 제28조제3항 규정에 의한 권고, 동조 제4항 규정에 의한 명령과 법 제38조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한 것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이 있는 행정청도 할 수 있다.

(서류의 제출)

#### 제46조

이 성령의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있는 행정청에 제출해야한다.

2. 전항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관한 권한 행정청이 지방운수국장인 때에 그 서

류는 다음에 열거하는 구분에 따라 각호에 규정된 지방운수국장(이하 "관할 지방운수국장"이라고 한다)에게 제출해야한다.

- 1) 국내 일반 승객 정기 항로 사업과 해상 운송법 제19조6 2)에서 규정하는 자를 운송하는 화물 정기 항로 사업에 관한 것(다음 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으로, 사업 계획에 포함된 항로의 거점을 관할하는 지방운수국장
  - 2) 국내 일반 승객 정기 항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관한 것으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하는 법인 또는 분할에 의해 국내 일반 승객 정기 항로 사업을 승계하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교통국장
  - 3) 해상 운송법 제2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를 운송하는 부정기 항로 사업에 관한 것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운수국장
  - 4) 전 세 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것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토지를 관할하는 지방운수국장(이 사건이 두 개 이상의 지역 교통 국장의 관할 구역에 걸친 경우에는 그 사건을 크게 관한 토지를 관할하는 지방운수국장)
3. 법 및 이 성령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대신에게 제출해야 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로 법 제3장 제2절 그리고 전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것은 각 관할 지역 교통 국장을 통해 제출해야한다.
4.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방법과 이 성령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대신에게 제출해야 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는 각 관할 지방운수국장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5. 이 성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운수국장에게 제출해야 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로, 일반 승합 승객 자동차 운송 사업에만 관련된 것은 각각 그 사안에 관한 토지를 관할하는 운수감리부장 또는 운수지국장(해당 사안이 이동감리부장과 운수지국장 또는 둘 이상의 운수지국장의 관할 구역에 걸친 경우에는 그 사건의 주로 관한 토지를 관할하는 운수감리부장 또는 운수지국장)을 통해 제출해야한다.
6. 이 성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운수국장에게 제출해야 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로, 국내 일반 승객 정기 항로 사업 등에만 관련된 것은 각각 그 사안에 관한 토지를 관할하는 운수지국장 또는 항해사무소장(해당 사안이 둘 이상의 운수지국장 또는 항해사무소장의 관할 구역에 걸친 경우에는 그 사건의 주로 관한 토지를 관할하는 운수지국장 또는 항해사무소)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 등의 전달)

제47조

지방운수국장은 전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국토교통대신에 전달해야한다.

부칙

이 성령은 법의 시행일(평성 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20년 10월 1일 국토교통성령 제82호)

이 성령은 지역 공공 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일(평성 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20년 12월 1일 국토교통성령 제97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성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 1 (제 16조, 제 17조, 제24조및 제25조관계)

	규정	사항
법 제 15조	도로 운송법 제4조제1항의 허가에 관한 부분	도로 운송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도로 운송법 제15조제1항의 허가에 관한 부분	도로 교통 시행 규칙 제1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도로 운송법 제15조제3항 신고에 관한 부분	도로 교통 시행 규칙 제1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동령 제1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도로 운송법 제15조제4항의 신고에 관한 부분	도로 교통 시행 규칙 제15조2 제2항에서 준용하는 동령 제1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별표 제 2 (제 21조, 제 22조, 제24조및 제25조관계)

규정		사항
법 제 20조	해상 운송법 제3조제1항의 허가에 관한 부분	해상운송법 시행 규칙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해상 운송법 제11조제1항의 허가에 관한 부분	해상운송법 시행 규칙 제8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해상 운송법 제11조제3항 신고에 관한 부분	해상운송법 시행 규칙 제8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해상 운송법 제19조제4항의 신고에 관한 부분	해상운송법 시행 규칙 제20조각호 또는 제 20조의 2 각호에 규정된 사항
	해상 운송법 제20조제2항의 신고에 관한 부분	해상운송법 시행 규칙 제22조각호 또는 제22조3 각호에 규정된 사항

별표 제 2-2 (제30조4 및 제30조5 관계)

규정		사안
법 제25조4 제1항	철도 사업법 제3조제 1 항의 허가에 관한 부분	철도 사업법 제4조제 1 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철도 사업법 제7조제 1 항의 허가에 관한 부분	철도 사업법 시행 규칙 제7조제 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철도 사업법 제7조제3항 신고에 관한 부분	철도 사업법 시행 규칙 제8조제 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철도 사업법 제15조제 1 항의 허가에 관한 부분	철도 사업법 시행 규칙 제10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철도 사업법 제16조제 1 항의 허가에 관한 부분	철도 사업법 시행 규칙 제32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철도 사업법 제16조제3항 신고에 관한 부분	철도 사업법 시행 규칙 제33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
	철도 사업법 제25조제1항의 허가에 관한 부분	철도 사업법 시행 규칙 제38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철도 사업법 제26조제1항의 허가에 관한 부분	철도 사업법 시행 규칙 제3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철도 사업법 제26조제2항 허사에 관한 부분	철도 사업법 시행 규칙 제40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별표 제 3 (제34조관계)

규정		사항
	철도 사업법 제7조제3항 신고에 관한 부분	철도 사업법 시행 규칙 제 8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법 제27조제 4항	철도 사업법 제16조제3항 후단의 신고에 관한 부분	철도 사업법 시행 규칙 제 33조각호에 규정된 사항
	철도 사업법 제16조제4항 후단의 신고에 관한 부분	철도 사업법 시행 규칙 제 34조각호에 규정된 사항

별표 제 4 (제38조관계)

	규정	사항
법 제32조제1항	철도 사업법 제3조제1항의 허가에 관한 부분	철도 사업법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철도 사업법 제7조제 한 항의 허가에 관한 부분	철도 사업법 시행 규칙 제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철도 사업법 제7조제3항 신고에 관한 부분	철도 사업법 시행 규칙 제8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법 제33조제1항	궤도법 제 3조의 특허에 관련된 부분	
법 제34조제1항	도로 운송법 제4조제1항의 허가에 관한 부분	도로 운송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도로 운송법 제15조제1항의 허가에 관한 부분	도로 교통 시행 규칙 제1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도로 운송법 제15조제3항 신고에 관한 부분	도로 교통 시행 규칙 제1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동령 제1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도로 운송법 제15조제4항의 신고에 관한 부분	도로 교통 시행 규칙 제15조제2항 2에서 준용하는 동령 제1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법 제35조제1항	해상 운송법 제3조제1항의 허가에 관한 부분	해상운송법 시행 규칙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해상 운송법 제11조제1항의 허가에 관한 부분	해상운송법 시행 규칙 제8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해상 운송법 제11조제3항 신고에 관한 부분	해상운송법 시행 규칙 제8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해상 운송법 제19조5 제1항의 신고에 관한 부분	해상운송법 시행 규칙 제20조각호 또는 20조 2 각호에 규정된 사항
	해상 운송법 제20조제2항 신고에 관한 부분	해상운송법 시행 규칙 제22조각호 또는 제22조3 각호에 규정된 사항



별표 제 5 (제39조관계)

	규정	사항
법 제32조제2항	철도사업법 제7조제1항의 인가에 관한 부분	철도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철도사업법 제7조제3항의 신고에 관한 부분	철도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철도사업법 제26조제1항의 인가에 관한 부분	철도사업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철도사업법 제26조제2항의 인가에 관한 부분	철도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철도사업법 제27조제1항의 인가에 관한 부분	철도사업법시행규칙 제41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철도사업법 제28조제1항 또는 28조 2 제2항의 신고에 관한 부분	철도사업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법 제33조제2항	궤도법 제16조제1항(궤도의 양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허가에 관한 부분	
	궤도법 제 22조의 인가에 관한 부분	궤도법시행규칙 제 26조에 규정된 사항
	궤도법 제22조⑦ 2)의 허가에 관한 부분	궤도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궤도법 제 26조에 있어서 준용하는 철도사업법 제27조제1항의 인가에 관한 부분	궤도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법 제34조제2항	철도운송법 제15조제1항의 인가에 관한 부분	철도운송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철도운송법 제15조제3항의 신고에 관한 부분	철도운송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동령 제1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철도운송법 제15조제4항의 신고에 관한 부분	철도운송법시행규칙 제15조2 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동령 제1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철도운송법 제15조2 제1항의 신고에 관한 부분	철도운송법시행규칙 제15조5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철도운송법 제36조제1항의 인가에 관한 부분	철도운송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철도운송법 제36조제2항의 인가에 관한 부분	철도운송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철도운송법 제37조제1항의 인가에 관한 부분	철도운송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철도운송법 제38조제1항의 인가에 관한 부분	철도운송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철도운송법 제38조제2항의 인가에 관한 부분	철도운송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동령 제15조5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법 제35조제2항	해상운송법 제11조제1항의 허가에 관한 부분	해상운송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해상운송법 제11조제3항의 허가에 관한 부분	해상운송법시행규칙 제8조2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해상운송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신고에 관한 부분	해상운송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해상운송법 제18조제1항의 허가에 관한 부분	해상운송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해상운송법 제18조제2항의 허가에 관한 부분	해상운송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해상운송법 제11조제4항의 허가에 관한 부분	해상운송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해상운송법 제11조제1항의 허가에 관한 부분	해상운송법시행규칙 제20조각호 또는 제20조2 각호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해상운송법 제19조5 제1항의 신고에 관한 부분	해상운송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또는 제20조2 각호에 규정된 사항
해상운송법 제19조5 제2항의 신고에 관한 부분	해상운송법시행규칙 제21조각호에 규정된 사항
해상운송법 제20조제2항의 신고에 관한 부분	해상운송법시행규칙 제22조각호 또는 제22조3 각호에 규정된 사항
해상운송법 제20조제 항의 신고에 관한 부분	해상운송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 복 지



일반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평성 20년 9월 1일 후생노동성령 제137호)

최종개정 : 평성 20년 9월 1일 후생노동성령 제137호

사회 복지법(쇼와 26년 법률 제45호) 제6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일반 양로원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이 성령의 취지)

제1조

사회 복지법(쇼와26년 법률 제45호) 제6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일반 양로원(노인 복지법(쇼와 38년 법률 제133호) 제2조6에서 규정하는 일반 양로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 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본 방침)

제2조

일반 양로원,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신체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해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이 곤란한 사람을 입소시키고, 식사 제공, 목욕 등의 준비, 상담 및 지원, 사회생활의 편의 제공,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입소자들이 안심하고 밝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일반 양로원은 입소자의 의사와 인격을 존중하고 항상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한다.

3. 일반 양로원은 지역이나 가정과의 연결을 중시한 운영을 실시하여 사회 복지 사업에 대한 열의와 능력이 있는 직원에 의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노력함과 동시에, 시정촌(특별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행하는 기타 보건 의료 서비스 또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밀접한 제휴에 노력해야한다.

(구조 설비 등의 일반 원칙)

제3조

일반 양로원 배치, 구조 및 설비는 일조, 채광, 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 위생에 관한 사항과 방재에 관하여 충분히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2. 일반 양로원의 입지에 있어서는, 입소자의 외출의 기회와 지역 주민과의 교류의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한다.

(설비 전용)

제4조

일반 양로원 시설은 독점적으로 해당 일반 양로원에 제공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원의 자격 요건)

제5조

일반 양로원 장(이하 "시설 장"이라고 한다)은 사회 복지법 제19조제1항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사회 복지 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여야 한다.

2. 제23조제1항의 생활 상담원은 사회 복지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여야 한다.

(직원의 전담)

제6조

일반 양로원 직원은 독점적으로 해당 일반 양로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영 규정)

제7조

일반 양로원은 다음에 열거하는 시설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한 규정 (이하 "운영 규정"이라고 한다)을 정하여 두어야한다.

- 1) 시설의 목적과 운영 방침
- 2) 직원의 직종, 수 및 직무 내용
- 3) 입소 정원
- 4)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이용료, 기타 비용의 금액
- 5) 시설 이용에 있어서 유의 사항
- 6) 비상 재해 대책
- 7) 기타 시설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비상 재해 대책)

제8조

일반 양로원은 소화 설비, 기타 비상 재해 시 필요한 설비를 마련함과 동시에 비상 재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비상 재해 관계 기관에 통보 및 연계 체계를 정비하고 그들을 정기적으로 직원에게 주지해 주어야한다.

2. 일반 양로원은 매우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철수, 구조, 기타 필요한 훈련을 실시해야한다.

(기록의 정비)

제9조

일반 양로원은 시설, 인력 및 회계에 관한 제반 기록을 정비하여 두어야한다.

2. 일반 양로원은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상황에 관한 다음 각호에 규정된 기록을 정비하고 종료일부터 2년간 보존해야한다.

- 1)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계획
- 2) 제안한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등을 기록
- 3) 제7조제3항에 규정된 신체적 구속 등의 형태와 시간, 당시 입소자의 심신 상태 및 긴급 부득이한 사유 기록
- 4) 제31조제2항 불만 내용 등을 기록
- 5) 제33조제2항의 사고 현황 및 사고 시 처리에 관하여 동조 제3항 기록

(시설 기준)

제10조

일반 양로원 건물(입소자의 일상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부속 건물을 제외한다)은 내화 건축물(건축 기준법(쇼와 25년 법률 제 201호) 제2조제9호 2에서 규정하는 내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합 내화 건축물 (동조 제9호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합 내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한다.

2.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도도부현 지사(지방자치법 (쇼와 22년 법률 제67호) 제 252조 19 제1항 지정 도시(이하 "지정 도시"라고 한다) 또는 동법 제 252조 20 제1항의 중심 도시(이하 "중핵시"라고 한다)에 있어서는 그 지정 도시 또는 중핵시의 장. 이하 같다)가 화재 예방, 소화 활동 등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고, 다음 각호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목조 건물의 일반 양로원 건물의 화재 시 입소자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내화 건축물 또는 연합 내화 건축물로 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 1)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천장 등의 내장재 등에서의 난연성 재료를 사용, 조리실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방화 구획의 설치 등에 의해 초기 진화 및 화재 확산 억제를 배려한 구조인 것



- 2) 공습경보 설비의 설치 등에 의한 화재의 조기 발견 및 신고 체제가 정비되어 있어 원활한 소화 활동이 가능한 것
  - 3) 피난 계단 추가, 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폭이 있는 대피로 확보 등은 원활한 피난이 가능한 구조여야하며, 대피 훈련을 수시로 실시하고, 배치 인원을 증원하는 수 등에 의해 화재의 원활한 피난이 가능한 것
3. 일반 양로원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시설을 설립해야한다. 그러나 다른 사회복지 시설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일반 양로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로,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지장이 없는 경우 설비의 일부를 마련 할 수 있다.

- 1) 거실
- 2) 담화실, 오락실 또는 집회실
- 3) 식당
- 4) 목욕
- 5) 화장실
- 6) 화장실
- 7) 조리실
- 8) 면담실
- 9) 세탁실 또는 세탁장
- 10) 숙박실
- 11) 전 각호에 규정된 것 외에 사무실, 기타 운영상 필요한 설비

4. 전항 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시설 기준은 다음과 같이한다.

- 1) 거실
  - ① 하나의 거실 정원은 한 사람으로 함. 그러나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두 사람으로 할 수 있다.
  - ② 지하에 설치해서는 안 되는 것
  - ③ 하나의 거실의 바닥 면적은 21.6평방미터(④ 시설을 제외한 유효 면적은 14.85평방미터) 이상으로 함. 그러나 ①의 경우에 있어서는, 31.9평방미터 이상으로 한 것
  - ④ 화장실, 수납 기능과 간편한 조리 시설을 마련한 것
  - ⑤ 비상 연락을 위한 초인종 또는 이를 대체하는 시설을 마련한 것
- 2) 목욕
 

노인이 목욕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하는 것 외에 필요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목욕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시설을 마련하는 것
- 3) 조리실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은 불연 재료를 채택한 것

5. 전항 제1호 규정에 관계없이 10 정도의 거실 및 그 거실에 근접하여 설치되는 공동생활실(해당 거실 입소자가 담화실, 오락실 또는 집회실과 식당으로 사용할 수 가능한 객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의해 구성되는 구역의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거실

- ① 하나의 거실 정원은 한 사람으로 함. 그러나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두 사람으로 할 수 있다.
- ② 지하에 설치해서는 안 되는 것
- ③ 하나의 거실의 바닥 면적은 15.63평방미터(④ 시설을 제외한 유효 면적은 13.2평방미터) 이상으로 함. 그러나 ①의 경우에 있어서는, 23.45평방미터 이상으로 한 것
- ④ 화장실, 수납 기능과 간편한 조리 시설을 마련한 것
- ⑤ 비상 연락을 위한 초인종 또는 이를 대체하는 시설을 마련한 것

2) 공동생활실

- ① 동일 구역에서 입소자를 교류하고 공동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장소로 맞는 모양을 가지는 것.
- ②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것

6. 전 각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일반 양로원 시설 기준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시설에 일제히 방송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것
- 2) 거실이 두 층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엘리베이터를 마련한 것

(직원 배치의 기준)

제11조

일반 양로원에 두는 직원과 그 인구는 다음과 같이한다. 단, 입소 정원이 40명 이하 또는 기타 사회 복지 시설 등의 영양사와의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일반 양로원(입소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에 있어서는 제4호의 영양사를, 조리 업무의 전부를 위탁하는 일반 양로원에 있어서는 제6호의 요리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1) 시설장 한 명

2) 생활 상담원 입소자의 수가 120 또는 그 수를 증가하는 것 당 한 명 이상

3) 간병인

- ① 일반 입소자(입소자로 지정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보호(지정 주택 서비스 등의 사업 인원,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평성 11년 후생성 시행령 제37호) 제 1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보호를 말한

다. 이하 같다), 지정 보호 예방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보호(지정 보호 예방 서비스 등의 사업 인원, 시설 및 운영 및 지정 보호 예방 서비스 등에 관한 보호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법에 관한 기준(평성 18년 후생노동성령 제35호) 제 2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 보호 예방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보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정 지역밀착형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보호(지정 지역 밀착형 서비스 사업 인원,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평성 18년 후생노동성령 제34호) 제10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 지역밀착형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보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안을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30 이상 80 미만의 일반 양로원에 있어서는, 통상 변환 방법으로 1 이상

- ② 일반 입소자의 수가 30 이상 80 미만의 다음 일반 양로원에 있어서는, 통상 변환 방법으로 2 이상
- ③ 일반 입소자의 수가 80 이상인 일반 양로원에 있어서는, 통상 변환 방법으로 두어 동조 2의 실정에 맞는 알맞은 수를 추가하여 얻은 수

4) 영양사 한 명 이상

5) 사무원 한 명 이상

6) 요리사, 추가 인력 해당 일반 양로원의 실정에 맞는 알맞은 수

2. 전항의 입소자 및 일반 입소자의 수는 전년도의 평균치로 한다. 그러나 신규 설치 또는 재개의 경우에는 추정 수에 의하여 한다.

3. 제1항 통상 변환 방법은 해당 직원의 각각의 근무 연장 시간 수의 총액을 그 일반 양로원에서 직원이 근무하는 시간 수로 나누어 전임 직원의 원수로 환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4. 제1항 제1호 시설장은 독점적으로 그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단, 해당 일반 양로원 행정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부지 내에 있는 다른 사업소, 시설 등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5. 제1항 제2호의 생활 상담원을 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생활 상담원 중 한 명 이상은 상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6. 지정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보호, 지정 보호 예방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보호 또는 지정 지역밀착형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보호를 하는 일반 양로원에 있어서는,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지장이 없을 때는 제1항 제2호의 생활 상담원 중 한 사람을 두지 않을 수 있다.

7. 제1항 제3호 간병인 중 한 명 이상은 상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8. 제1항 제3호 간병인은 입소자의 신체 기능 상태, 병설 사회 복지 시설 등과의 연계, 보호 보험 서비스 등의 이용, 기타의 방법으로 해당 일반 양로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로,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지장이 없는 경

우에는 미리 입소자의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해당 간병인 중 한 사람을 두지 않을 수 있다.

9. 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생활 상담원 또는 간병인은 같은 사람을 두어야한다.

10. 제1항 제4호의 영양사 및 동항 제5호 사무원 중 한 사람은 상근해야한다.

11. 제1항 제5호 사무원은 입소 정원이 60명 이하인 경우 또는 다른 사회 복지 시설을 병설 일반 요양원에서는 입소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사무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1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일반 양로원(노인 보건 시설이나 병원에 있어 해당 시설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가진 자(이하 이 항에서 "본체 시설"이라고 한다)와의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면서 본체 시설은 다른 장소에서 운영되는 입소 정원이 29명 이하인 일반 양로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요리사, 추가 인력에 대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본체 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구분에 따라 그 각호에서 정하는 직원은 해당 일반 양로원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두지 않을 수 있다.

1) 보호 노인 보건 시설 조리 직원 또는 기타 개업

2) 클리닉, 기타 개업

13. 야간 및 심야 시간대를 통해 하나 이상의 직원에게 당직 근무 또는 야간 및 심야 근무(당직 근무를 제외한다)를 실행시켜야한다. 단, 해당 일반 양로원 부지 내에 직원 숙소가 정비되어 있는지 등을 통하여 직원들이 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정비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소 신청자 등에 대한 설명 등)

## 제12조

일반 양로원은 서비스 제공 시작 시 먼저, 입소 신청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운영 규정의 개요, 직원의 근무 체제, 기타 입소 신청자의 서비스 선택에 이바지한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을 담은 문서를 교부해 설명하고, 해당 서비스 제공 계약을 문서로 체결해야한다.

2. 일반 양로원은 전항의 계약에서 입소자의 권리의 부당한 계약 해제 조건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3. 일반 요양원은 입소 신청자 또는 그 가족의 제기가 있는 경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의 교부에 대신하여 제6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입소 신청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얻어 해당 문서에 쓰이는 중요한 사항을 전자 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 기타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전자적 방법"이라고 한다)에서 제공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일반 양로원은 해당 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1) 전자 정보 처리 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중 ① 또는 ②에 규정된 것

① 일반 양로원의 사용에 관해 입소 신청자 또는 그 가족에 관한 전자 기기를 연결하는 전기 통신 회선을 통하여 전송하고, 받는 사람에 관해 전자 기기에 내장된 파일에 기록하는 것

② 일반 양로원의 사용에 관한 전자 기기에 내장된 파일에 기록된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을 전기 통신 회선을 통하여 입소 신청자 또는 그 가족의 열람에 제공하고, 해당 입소 신청자 또는 그 가족에 관한 전자 기에 내장된 파일에 해당 중요 사항을 기록하는 방법(전자적인 방법으로 제공받는 내용의 수락 또는 받지 않았다는 제기를 할 경우에는 일반 양로원의 사용에 관한 전자 기기에 내장된 파일에 이를 기록하는 방법)

2) 자기 디스크, 시디롬,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사항을 확실하게 기록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써 파일에 제1항의 중요사항을 기록한 것을 교부하는 방법

4. 전항에 규정된 방법은 입소 신청자 또는 그 가족이 파일에 기록을 출력하여 문서를 만들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제3항 제1호의 전자 정보 처리 조직과 일반 양로원의 사용에 관한 전자 기기, 입소 신청자 또는 그 가족에 관한 전자 기기를 통신 회선으로 연결하는 전자 정보 처리 조직을 말한다.

6. 일반 양로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중요 사항을 제공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그 입소 신청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해 다음에 열거한 전자적 방법의 종류 및 내용을 보여주는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한다.

1) 제3항 각호에 규정된 방법 중 일반 양로원에서 사용하는 것

2) 파일 기록 방식

7.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을 얻은 일반 양로원은 해당 입소 신청자 또는 그 가족에게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을 받지 않는 내용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소 신청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의 제안을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단, 해당 입소 신청자 또는 그 가족이 다시 전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상자)

제13조

일반 양로원 입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 1) 신체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해 자립적인 일상생활의 영위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이 곤란한 자.
- 2) 60세 이상인 자. 다만, 그 배우자, 세촌 이내의 친족,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해당자와 함께 입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소, 퇴소)

제14조

일반 요양원은 입소 예정자의 입소 시 그 사람의 심신의 상황, 생활 상황, 가정 상황 등을 파악에 노력해야한다.

2. 일반 양로원은 입소자의 심신 상태, 입소 중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에 비추어, 일반 양로원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입소에 대해, 그 사람과 그 가족의 희망을 충분히 감안하여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실시함과 동시에 적절한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노력해야한다.

3. 일반 양로원은 입소자가 퇴소함에 있어서는 거주 서비스 계획(보호 보험법(평성 9년 법률 제123호) 제8조제 2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 서비스 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설 서비스 계획(동조 제 23항에서 규정하는 시설 서비스 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립 등의 원조에 기여하기 위해 거주 보호 지원 사업자(동조 제 2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 보호 지원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보호 보험 시설(동조 제 21항에서 규정하는 보호 보험 시설을 말한다)에 대한 정보 제공에 노력 외에 기타 보건 의료 서비스 또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밀접한 제휴에 노력해야한다.

(서비스 제공의 기록)

제15조

일반 양로원은 제공하는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등을 기록해야한다.

(이용료의 수령)

제16조

일반 양로원은 입소자에서 이용료로,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지불받을 수 있다.

- 1)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입소자의 소득 상황,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징수해야 하는 비용으로 도도부현 지사가 결정하는 금액에 한한다)
  - 2) 생활비(식재료 비용과 공용 부분에 관한 비용에 한한다)
  - 3) 거주에 필요한 비용(전호의 비용과 다음호 비용을 제외한다)
  - 4) 거실에 관련된 비용
  - 5) 입소자가 선정하는 특별한 서비스를 실시됨에 따라 필요한 비용
  - 6) 전 각호에 규정된 것 외에 일반 양로원에서 제공하는 편의 중 일상생활에서도 보통 필요한 것에 관련된 비용이고, 입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
2. 일반 양로원은 전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금액에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는, 사전, 입소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해, 해당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을 담은 문서를 교부하여 설명하고, 입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제1항 제2호의 생활비는 지역의 실정, 물가 변동, 기타의 사정을 감안하여 도도부현 지사가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서비스 제공의 정책)

제17조

일반 요양원은 입소에 관하여, 안심하고 밝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당 심신 상황이나 희망에 따라 서비스를 실시함과 동시에 삶의 보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적절히 제공해야 한다.

2. 일반 양로원 직원은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공손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입소자 또는 그 가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실시해야 한다.
3. 일반 양로원은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그 입소자 또는 다른 입소자 등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하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체적 구속, 기타 입소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행위(이하 "신체적인 구속 등"이라고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4. 일반 양로원은 신체적인 구속 등을 할 경우에는 해당 상태와 시간, 그 때의 입소자의 심신 상태 및 긴급하고 부득이한 이유를 기록해야 한다.

(식사)

제 18조

일반 양로원은 영양 및 입소자의 심신의 상황과 취향을 고려한 식사를 적절한 시간에 제공해야 한다.

(생활 상담 등)

#### 제19조

일반 양로원은 항상 입소자의 심신의 상황, 그 놓인 환경 등의 정확한 파악에 노력하고 입소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해 그 상담에 제대로 응함과 함께 필요한 조언, 기타 지원을 실행해야한다.

2. 일반 양로원은 보호 인정(보호 보험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호 인정을 말한다) 신청 등 입소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행정 기관 등에 대한 절차에 대해 그 사람 또는 그 가족이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의사를 감안하여 즉시 필요한 지원을 실행해야한다.
3. 일반 양로원은 항상 입소자 가족과의 연계를 도모함과 동시에, 입소자 및 가족과의 교류 등의 기회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한다.
4. 일반 양로원은 입소자의 외출 기회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한다.
5. 일반 양로원은 2일에 한 번 이상 자주 목욕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입소자의 청결 유지에 노력해야한다.
6. 일반 양로원은 입소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 레크리에이션 행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한다.

(거주 서비스 등의 이용)

#### 제20조

일반 요양원은 입소가 보호 상태 등(보호 보험법 제 20조에서 규정하는 보호 상태 등을 말한다)이 된 경우에는 그 심신의 상황, 환경 등에 따라 적절하게 거주 서비스 등(동법 제 23조에서 규정하는 거주 서비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실시해야한다.

(건강 유지)

#### 제21조

- 일반 요양원은 입소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 진단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2. 일반 양로원은 입소자에 대한 건강 유지에 노력해야한다.

(시설장의 책무)

#### 제11조

일반 양로원 시설장은 일반 양로원 직원 관리 업무의 실시 상황 파악, 기타 관리를 일원적으로 수행해야한다.



2. 일반 양로원 시설장은 직원에게 제 7조에서 제 9조까지, 제 12조에서 전조까지와 다음 조에서 제 33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실행해야 한다.

(생활 상담원의 책무)

#### 제23조

일반 양로원 생활 상담원은 입소자의 상담에 응함과 동시에 적절한 통보와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 외에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1) 입소자의 거주 서비스 등의 이용 시에 거주 서비스 계획 또는 보호 예방 서비스 계획(보호 보험법 제18조2 제8항에서 규정하는 보호 예방 서비스 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립에 도움이 되기 위해 거주 보호 지원 사업(동법 제8조제 2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 보호 지원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보호 예방 지원 사업(동법 제8조2 제18항에서 규정하는 보호 예방 지원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사람과의 긴밀한 연계를 도모하는 것 외에 거주 서비스 등 기타 보건 의료 서비스 또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의 연계를 도모하는 것
- 2) 제31조제2항 불만 내용 등을 기록하는 것.
- 3) 제33조제2항의 사고 현황 및 사고 시 뽑은 처리에 관하여 동조 제3항의 기록을 하는 것.

2.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생활 상담원을 두지 않은 일반 양로원에 있어서는, 간병인이 동항 각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근무 체제의 확보 등)

#### 제24조

일반 양로원은 입소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원의 근무 체제를 결정해 두어야 한다.

2. 전항의 공무원의 근무 체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입소자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보내기 위하여 연속성을 중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3. 일반 양로원은 직원에 대해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정원 준수)

#### 제25조

일반 요양원은 입소 정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재해, 폭행,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생 관리 등)

제26조

일반 양로원은 입소자가 사용하는 식기, 기타 설비 또는 음료를 제공해주는 것에 대해 위생적인 관리의 노력 또는 건강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2. 일반 양로원은 해당 일반 양로원에서 감염 또는 식중독 발생 또는 확산되지 않도록 다음 각호에 규정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 1) 해당 일반 양로원의 감염과 식중독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검토하는 위원회를 대략 3개월에 1회 이상 개최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간병인, 기타 직원에 대한 주지를 철저히 하는 것
- 2) 해당 일반 양로원의 감염과 식중독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서를 정비하는 것
- 3) 해당 일반 양로원에서 간병인, 다른 직원에게 감염과 식중독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4) 전 각호에 규정된 것 외에 별도로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감염 또는 식중독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의 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

(협력 의료 기관)

제27조

일반 양로원은 입소자의 건강 상태의 급변 등에 대비하기 위해 먼저 협력 의료 기관을 정해두어야 한다.

2. 일반 양로원 먼저 협력 치과 의료 기관을 결정해 두도록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게시)

제28조

일반 양로원은 해당 일반 양로원의 보기 쉬운 곳에 운영 규정의 개요, 직원의 근무 체제, 협력 의료 기관, 이용료, 기타 서비스 선택에 이바지하는 한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을 게시해야한다.

(비밀 유지 등)

제29조

일반 양로원 직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입소자 또는 그 가족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일반 양로원은 직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입소자 또는 그 가족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광고)

제30조일반 양로원은 해당 일반 양로원에 광고를 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 허위여서는 안 된다.

(불만의 처리)

제31조

일반 양로원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입소자 또는 그 가족의 불만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민원을 받기 위한 창구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2. 일반 양로원은 전항의 불만을 접수하면 해당 민원의 내용 등을 기록해야한다.
3. 일반 양로원 해당 제공한 서비스와 관련해 시(지정 도시 및 중핵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도 또는 조언에 따라 필요한 개선을 실시해야한다.
4. 일반 양로원은 도도부현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개선 내용을 도도부현에 보고해야한다.
5. 일반 양로원은 사회 복지법 제 83조에서 규정하는 운영 적정화 위원회가 실시하는 동법 제8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에 최대한 협조해야한다.

(지역과의 연계 등)

제32조

일반 양로원 그 운영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 또는 그 자발적인 활동 등과의 연계 및 협력하는 등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도모해야한다.

2. 일반 양로원 그 운영에 있어서는 그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입소자 불만에 대해 시정촌 등이 파견하는 자가 상담 및 지원을 하는 사업, 기타의 시정촌이 실시하는 사업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고 발생 예방과 발생 시의 대응)

제33조

일반 양로원은 사고 발생이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 1)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대응, 다음호의 신고 방법 등이 포함된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지침서를 정비하는 것
- 2) 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위험성이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고 그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에 대해 직원에게 주지하고 철저한 체제를 정비하는 것

- 3)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위원회 및 직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
2. 일반 양로원은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입소자의 가족 등에게 연락을 함과 동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3. 일반 양로원은 전항의 사고 상황 및 사고 시 취한 있는 조치에 대해 기록해야 한다.
4. 일반 양로원은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의해 배상해야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신속히 이행해야한다.

## 부칙

(시행 기일)

### 제1조

이 성령은 평성 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반 양로원)

### 제2조

이 성령의 시행 시 현재 일반 양로원(이 성령의 시행 이후에 증축을 하거나 또는 전면적으로 개축한 부분을 제외한다)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2조에서부터 제 33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 조에서 부칙 제7조규정에 따른다.

- 1) 일반 양로원 A 형(부칙 제 3조에서 부칙 제 10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 양로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 2) 일반 양로원 B 형 (부칙 제 11조에서 부칙 제 17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 양로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일반 양로원 A 형에 관한 기본 방침)

### 제3조

일반 양로원 A 형,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노인 등을 위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불안하다는 인정되는 자를 입소시켜, 식사 제공, 목욕 등의 준비, 상담 및 지원, 건강관리, 사회생활의 편의 제공,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입소자들이 안심하고 밝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일반 양로원 A 형은 입소자의 의사와 인격을 존중하고 항상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한다.

3. 일반 양로원 A 형은 지역과 가정과의 연결을 중시한 운영을 실시하여 사회 복지 사업에 대한 열의와 능력이 있는 직원에 의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 노인 복지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 기타 보건 의료 서비스 또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밀접한 제휴에 노력해야한다.

(일반 양로원 A 형의 규모)

제4조

일반 양로원 A 형은 50명 이상의 인원을 입소시킬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해야한다.

(일반 양로원 A 형의 시설 기준)

제5조

일반 양로원 A 형 건물(입소자의 일상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부속 건물을 제외한다)은 내화 건축물 또는 연합 내화 건축물로 해야한다.

2.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도도부현 지사가 화재 예방, 소화 활동 등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고, 다음 각호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 화재 시 입소자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내화 건축물 또는 연합 내화 건축물로 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1)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천장 등의 내장재 등의 난연성 재료 사용, 조리실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방화 구획의 설치 등에 의해 초기 진화 및 화재 확산 억제에 배려한 구조인 것

2) 공습경보 설비의 설치 등에 의한 화재의 조기 발견 및 신고 체제가 정비되어 있어 원활한 소화 활동이 가능한 것

3) 피난 계단 추가, 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폭이 있는 대피로 확보 등은 원활한 피난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대피 훈련을 수시로 실시하고, 배치 인원을 증원하는 수 등에 의해 화재의 원활한 피난이 가능한 것

3. 일반 양로원 A 형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시설을 설립해야한다. 그러나 다른 사회 복지 시설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일반 양로원 A 형의 효과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지장이 없을 때는 설비의 일부를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1) 거실

2) 담화실, 오락실 또는 집회실

3) 휴양실

- 4) 식당
- 5) 목욕탕
- 6) 화장실
- 7) 세면실
- 8) 의무실
- 9) 조리실
- 10) 직원실
- 11) 면담실
- 12) 세탁실 또는 세탁장
- 13) 숙박실
- 14) 전 각호에 규정된 것 외에 사무실의 기타 운영상 필요한 설비

4. 전항 제1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에 규정된 시설 기준은 다음과 같이한다.

- 1) 거실
  - ① 하나의 거실 정원은 원칙적으로 한사람으로 하는 것
  - ② 지하실에 마련하지 않을 것
  - ③ 입소자 1인당 건평은 6.6평방미터(화물 시설을 제외한다) 이상으로 하는 것
- 2) 목욕탕
 

노인이 목욕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하는 것 외에 필요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목욕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시설을 마련하는 것
- 3) 의무실
 

의료법(쇼와 23년 법률 제 205호) 제1조5 제2항에 규정된 병원으로 하는 것
- 4) 조리실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은 불연 재료를 이용하는 것

(일반 양로원 A 형의 직원 배치 기준)

#### 제6조

일반 양로원 A 형에서 두는 직원과 그 인구는 다음과 같이한다. 그러나 병설 양로원 영양사, 사무원, 의사 또는 요리 위원 다른 직원과의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일반 양로원 A 형(입소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에 있어서는 제5호 영양사, 제6호 사무원, 제7호 의사 또는 제8호 요리사의 추가 인력을, 조리 업무의 전부를 위탁하는 일반 양로원 A 형에 있어서는 제8호 요리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1) 시설장 한 명
- 2) 생활 상담원

① 생활 상담원의 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입소자의 수가 170명 이하인 일반 양로원 A 형에 있어서는, 통상 변환 방법으로 1 이상
- (2) 입소자의 수가 170명 이상인 일반 양로원 A 형에 있어서는, 통상 변환 방법으로 2 이상

② 생활 상담원 중 한 사람이 생활 상담원장으로 한다. 그러나 다른 사회 복지 시설 등에 병설되어 있지 일반 양로원 A 형으로 입소자의 수가 50명 이하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간병인

① 간병인의 수는 다음과 같이한다.

- (1) 입소자의 수가 80명 이하인 일반 양로원 A 형에 있어서는, 통상 변환 방법으로 4 이상
- (2) 입소자의 수가 8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일반 양로원 A 형에 있어서는, 통상 변환 방법으로 입소자의 수가 80명을 넘어 20명 또는 그 증가마다 1을 추가해서 얻은 수 이상
- (3) 입소자의 수가 200명 이상인 일반 양로원 A 형에 있어서는, 통상 변환 방법, 10의 실정에 맞는 적당 수를 추가하여 얻는 수

② 간병인 중 한 사람을 간병인장으로 한다.

4) 간호 직원 (간호사 또는 준 간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 ① 입소자의 수가 100명 이하인 일반 양로원 A 형에 있어서는, 통상 변환 방법으로 1 이상
- ② 입소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일반 양로원 A 형에 있어서는, 통상 변환 방법으로 2 이상

5) 영양사 한 명 이상

6) 사무원 두 명 이상

7) 의사는 입소자에게 건강관리와 요양상의 지도를 하는 데 필요한 수

8) 요리사는 일반 양로원 A 형 실정에 맞는 알맞는 수

2. 전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 규정에 관계없이 지정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보호, 지정 보호 예방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보호 또는 지정 지역밀착형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보호를 하는 일반 양로원 A 형에 두는 생활 상담원, 간병인과 간호 인력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생활 상담원 입소자의 수가 170명 이상인 일반 양로원 A 형에 있어서는 1 이상

2) 간병인

① 간병인의 수는 다음과 같이한다.

- (1) 일반 입소자의 수가 20명 이하인 일반 양로원 A 형에 있어서는, 통상 변환 방법으로 1 이상

- (2) 일반 입소자의 수가 20명 이상 30명 미만인 일반 양로원 A 형에 있어서는, 통상 변환 방법으로 2 이상
- (3) 일반 입소자의 수가 30명 이상 40명 미만인 일반 양로원 A 형에 있어서는, 통상 변환 방법으로 3 이상
- (4) 일반 입소자의 수가 40명 이상 80명 미만인 일반 양로원 A 형에 있어서는, 통상 변환 방법으로 4 이상
- (5) 일반 입소자의 수가 8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일반 양로원 A 형에 있어서는, 통상 변환 방법으로 일반 입소자의 수가 80명을 넘어 20명 또는 그 수의 증가마다 1을 추가하여 얻은 수 이상
- (6) 일반 입소자의 수가 200명 이상인 일반 양로원 A 형에 있어서는, 통상 변환 방법으로 실정에 맞는 알맞은 수를 추가하여 얻은 수
- ② 일반 입소자의 수가 40명을 넘는 일반 양로원 A 형에 있어서는, 간병인 중 한 사람을 간병인장으로 한다.

3) 간호 인력

- ① 일반 입소자의 수가 100명 미만인 일반 양로원 A 형에 있어서는 1 이상
- ② 일반 입소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일반 양로원 A 형에 있어서는 2 이상

3. 전 두 항의 입소자 및 일반 입소자의 수는 전년도의 평균치로 한다. 그러나 재개하는 경우에는 추정 수에 의하여 한다.

4. 제1항 및 제2항 통상 변환 방법은 해당 직원 각각의 근무 연장 시간 수의 총액을 그 일반 양로원 A 형에서 통상 직원이 근무하는 시간 수로 나누어 통상 직원의 수로 변환하는 방법을 말한다.

5. 제1항 제1호의 시설장은 독점적으로 그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단, 해당 일반 양로원 A 형 행정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부지 내에 있는 다른 사업소, 시설 등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6.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1호의 생활 상담원(생활 상담원장이 배치되는 경우 해당 생활 상담원장) 중 한 명 이상은 상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7.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2호의 간병인장은 통상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8.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3호의 간호 인력 중 한 명 이상은 상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9. 제1항 제5호 영양사는 정식 직원이어야 한다.

10. 제1항 제6호 사무원 중 한 명(입소 정원이 100명 이상인 일반 양로원 A 형에 있어서는 두 사람)은 통상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1. 야간 및 심야 시간대를 통해 한 명 이상의 직원에게 당직 근무 또는 야간 및 심야 근무(당직 근무를 제외한다)를 실행시켜야 한다.



(일반 양로원 A 형의 이용료 수령)

제7조

일반 양로원 A 형은 입소자에게 이용료로,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지불받을 수 있다.

- 1)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입소자의 소득 상황,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징수해야 하는 비용으로 도도부현 지사가 결정하는 금액에 한한다)
  - 2) 생활비(식재료 비용과 공용 부분에 관한 비용에 한한다)
  - 3) 거실에 관련된 비용
  - 4) 입소자가 선정하는 특별한 서비스를 실시됨에 따라 필요한 비용
  - 5) 전 각호에 규정된 것 외에 일상생활에서 보통 필요한 것에 관련된 비용으로, 입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
2. 일반 양로원 A 형은 전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금액에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는, 사전에 입소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해, 해당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을 담은 문서를 교부해 설명을 하고, 입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제1항 제2호의 비용은 지역의 실정, 물가 변동, 기타의 사정을 감안하여 도도부현 지사가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일반 양로원 A 형의 건강관리)

제8조

일반 양로원 A 형식은 입소자에 해당 입소 시와 매년 정기적으로 두 번 이상의 건강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일반 양로원 A 형에서 생활 상담원의 책무)

제9조

일반 양로원 A 형 생활 상담원은 입소자의 상담에 응함과 동시에 적절한 통보와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 외에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1) 입소자의 거주 서비스 등의 이용 시에 거주 서비스 계획 또는 보호 예방 서비스 계획 작성에 도움을 위해 거주 보호 지원 사업 또는 보호 예방 지원 사업을 행하는 자와의 긴밀한 연계를 도모하는 것 외에 거주 서비스 등 기타 보건 의료 서비스 또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의 연계를 도모하는 것.
  - 2) 다음 조에서 준용한 제3조제2항의 불만 내용 등을 기록하는 것.
  - 3) 다음 조에서 준용하는 제33조제2항의 사고 현황 및 사고 시 처리에 관하여 동조 제3항 기록하는 것.
2. 생활 상담원장은 전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일반 양로원 A 형으로 입소 시 조정, 그 외의 생활 상담원에 대한 기술지도 등의 관리를 실행해야 한다.

3. 전 두 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생활 상담원장을 두지 않은 일반 양로원 A 형에 있어서는 생활 상담원 또는 간병인장, 생활 상담원과 간병인장을 두지 않은 일반 양로원 A 형에 있어서는 간병인이 전 두 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준용)

제10조

제3조에서 제9조, 제12조에서 제15조, 제17조에서 제20조까지, 제22조 및 제 24조에서 제 33조까지의 규정은 일반 양로원 A 형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22조 제2항 중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제12조에서 전조까지 및 다음 조에서 제33조까지"인 것은 "부칙 제7조에서 부칙 제9조 및 부칙 제10조에서 준용한 제7조에서 제 9조까지,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 제17조에서 제20조까지 및 제24조에서 제33조까지"로 본다한다.

(일반 양로원 B 형에 관한 기본 방침)

제11조

일반 양로원 B 형,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신체 기능 등의 저하 등이 인정되는 자(취사할 수 없는 정도의 신체 기능 등의 저하 등이 인정되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노인 등을 위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불안하다는 인정이 되는 자를 입소시켜 목욕 등의 준비, 상담 및 지원, 사회생활의 편의 제공,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입소자가 안심하고 밝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일반 양로원 B 형은 입소자의 의사와 인격을 존중하고 항상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한다.

3. 일반 양로원 B 형은 지역이나 가정과의 연결을 중시한 운영을 실시하여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열의와 능력이 있는 직원에 의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 노인 복지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행하는 기타 보건 의료 서비스 또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밀접한 제휴에 노력해야한다.

(일반 양로원 B 형에 관한 범위)

제12조

일반 양로원 B 형식은 50명 이상(다른 노인 복지 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20명 이상)의 인원을 입소시킬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해야한다.

(일반 양로원 B 형의 시설 기준)

제13조

일반 양로원 B 형 건물(입소자의 일상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부속 건물을 제외한다)은 내화 건축물 또는 연합 내화 건축물로 해야한다.

2.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도도부현 지사가 화재 예방, 소화 활동 등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고, 다음 각호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며 화재 시 입소자의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되면, 내화 건축물 또는 연합 내화 건축물로 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 1)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천장 등의 내장재 등에의 난연성 재료를 사용, 조리실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방화 구획의 설치 등에 의해 초기 진화 및 화재 확산 억제에 배려한 구조인 것
- 2) 공습경보 설비의 설치 등에 의한 화재의 조기 발견 및 신고 체제가 정비되어 있어 원활한 소화 활동이 가능한 것
- 3) 피난 계단 추가, 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폭이 있는 대피로 확보 등은 원활한 피난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대피 훈련을 수시로 실시하고, 배치 인원을 증원하는 수 등에 의해 화재의 원활한 피난이 가능한 것

3. 일반 양로원 B 형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시설을 설립해야한다. 그러나 다른 사회 복지 시설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일반 양로원 B 형의 효과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로,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지장이 없을 때는 설비의 일부를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 1) 거실
- 2) 담화실, 오락실 또는 집회실
- 3) 목욕탕
- 4) 화장실
- 5) 면담실
- 6) 세탁실 또는 세탁장
- 7) 거실
- 8) 전 각호에 규정된 것 외에 운영상 필요한 설비

4. 전항 제1호, 제3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시설 기준은 다음과 같이한다.

- 1) 거실
  - ① 하나의 거실 정원은 한 사람으로 한다. 그러나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두 사람으로 할 수 있다.
  - ② 지하실에 마련하지 않은 것
  - ③ 하나의 거실의 바닥 면적은 16.5평방미터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①의 경우에 있어서는, 28평방미터 이상으로 한다
  - ④ 화장실과 주방 시설을 마련하는 것
  - ⑤ 주방 시설에 대해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은 불연 재료를 사용한다.

2) 목욕탕

노인이 목욕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하는 것 외에 필요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목욕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시설을 마련하는 것.

3) 관리인 거실

당직실을 두는 일반 양로원 B 형에 있어서는 당직실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다.

(일반 양로원 B 형의 인력 배치 기준)

제14조

일반 양로원 B 형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인력을 배치해야한다.

- 1) 시설장 1명
- 2) 해당 일반 양로원 B 형의 관리 인력은 해당 일반 양로원 B 형 실정에 맞는 알맞은 수
- 3) 입소자 생활, 신상에 관한 상담과 조언 및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직원은 그 일반 양로원 B 형 실정에 맞는 알맞은 수
2. 전항 제1호 시설장은 독점적으로 그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단, 해당 일반 양로원 B 형의 행정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부지 내에 있는 다른 사업소, 시설 등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3. 제1항 제2호의 관리 직원 중 한 명 이상은 상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4. 야간 및 심야 시간대를 통해 한 명 이상의 직원에게 당직 근무 또는 야간 및 심야 근무(당직 근무를 제외한다)를 실행시켜야한다. 단, 해당 일반 양로원 B 형의 부지 내에 직원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써, 해당 직원이 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정비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반 양로원 B 형의 이용료 수령)

제15조

일반 양로원 B 형은, 입소자로부터 이용료로,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지불받을 수 있다.

- 1)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입소자의 소득 상황,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징수하는 비용으로 도도부현 지사가 결정하는 금액에 한한다)
- 2) 거주에 필요한 비용(다음호 비용은 제외한다)
- 3) 거실에 관련된 비용
- 4) 입소자가 선정하는 특별한 서비스를 실시함에 따라 필요한 비용
- 5) 전 각호에 규정된 것 외에 일상생활에서 보통 필요한 것에 관련된 비용이고, 입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
2. 일반 양로원 B 형은 전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금액에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는, 사전, 입소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해, 해당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을 담은 문서를 교부해 설명을 하고, 입소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일반 양로원 B 형에서 자취의 지원 등)

제16조

일반 양로원 B 형식은 입소자가 자취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실시해야한다.

2. 일반 양로원 B 형은 일시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입소에 대해, 장애인 도우미, 급식 서비스 등 일상생활을 관리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준용)

제17조

제 3조에서 제5조제1항까지, 제6조에서 제9조까지,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 제17조, 제19조에서 제22조및 제24조에서 제33조규정은 일반 양로원 B 형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22조제2항 중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부터 전조까지 및 다음 조부터 제33조까지"인 것은 "부칙 제15조및 부칙 제16조및 부칙 제 17조에서 준용하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로 바꾸는 것으로 한다.

부칙(평성 20년 9월 1일 후생노동성령 제137호)

이 성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특별 양호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평성 11년 3월 31일 후생노동성령 제46호)

최종개정 : 평성 21년 3월 30일 후생노동성령 제54호

노인 복지법(쇼와 38년 법률 제133호) 제1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양로원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1장 총칙 (제 1조)

제2장 정책 및 인원,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2조- 제 31조)

제3장 양로원의 기본 방침 및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32조- 제 42조)

제4장 양로원의 기본 방침 및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43조- 제 53조)

제5장 지역밀착형 양로원의 기본 방침 및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54조- 제 59조)

제6장 지역밀착형 양로원의 기본 방침 및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60조- 제 63조)

제7장 일부 지역밀착형 양로원의 기본 방침 및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64조 - 제 67조)

제1장 총칙

(이 성령의 취지)

제1조

노인 복지법(쇼와 38년 법률 제133호) 제17조제1항 규정에 의한 특별 양호 양로원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 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정책 및 인원,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기본 방침)

### 제2조

특별 양호 양로원은 입소자들에게 건강한 환경에서 사회 복지 사업에 대한 열의와 능력이 있는 직원에 의한 적절한 대우를 받도록 노력해야한다.

2. 특별 양호 양로원은 입소자의 대우에 관한 계획에 따라 가능한 한 거주 생활로의 복귀를 염두에 두고, 입욕, 배설, 식사 등의 보호, 상담 및 지원, 사회생활에 편의 제공, 기타 일상생활의 관리, 기능 훈련, 건강관리와 영양상의 관리를 함으로써 입소자가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3. 특별 양호 양로원은 입소자의 의사와 인격을 존중하고 항상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하도록 노력해야한다.

4. 특별 양호 양로원은 밝은 가정적인 분위기가로 지방이나 가정과의 연결을 중시한 운영을 실시하고, 시정촌(특별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행하는 기타 보건 의료 서비스 또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밀접한 제휴에 노력해야한다.

(건축 설비의 일반 원칙)

### 제3조

특별 양호 양로원의 배치, 구조 및 설비는 일조, 채광, 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 위생에 관한 사항과 재해 방지에 관하여 충분히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설비의 전용)

### 제4조

양로원 시설은 독점적으로 그 특별 양호 양로원에 제공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입소자의 대우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직원의 자격 요건)

### 제5조

특별 양호 양로원의 장(이하 "시설장"이라고 한다)은 사회 복지법(쇼와 26년 법률 제45호)제19조제1항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사회 복지 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여야 한다.

2. 생활 상담원은 사회 복지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여야 한다.

3. 기능 훈련 지도원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개선하거나 또는 상실을 방지하기위한 훈련을 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여야 한다.

(직원의 전담)

제6조

양로원 직원은 독점적으로 해당 양로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여야 한다. 그러나 입소자의 처우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운영 규정)

제7조

특별 양호 양로원은 다음에 열거하는 시설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두어야한다.

- 1) 시설의 목적과 운영 방침
- 2) 직원의 직종, 인원 및 직무 내용
- 3) 입소 정원
- 4) 입소자의 처우 내용과 비용 액수
- 5) 시설 이용에 있어서 유의 사항
- 6) 비상 재해 대책
- 7) 기타 시설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비상 긴급 대책)

제8조

특별 양호 양로원은 소화 설비, 기타 비상 재해 시 필요한 설비를 마련함과 동시에 비상 재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비상 재해 관계 기관에 통보 및 연계 체제를 정비하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직원에게 주지해야한다.

2. 특별 양호 양로원은 비상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철수, 구조, 기타 필요한 훈련을 지휘해야한다.

(기록의 정비)

제9조

양로원은 시설, 인력 및 회계에 관한 제반 기록을 정비하여 두어야한다.

2. 특별 양호 양로원은 입소자의 처우 조건에 관한 다음 각호에 규정된 기록을 정비하고 완료일에서 2년간 보존해야한다.

- 1) 입소자의 처우에 관한 계획



- 2) 구체적인 처우의 내용 등의 기록
- 3) 제15조제5항에 규정된 신체적 구속 등의 상태와 시간, 그 때의 입소자 심신 상태 및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유의 기록
- 4) 제29조제2항에 규정된 불만 내용 등의 기록
- 5) 제31조제3항에 규정된 사고 상황 및 사고 시 취한 처리에 관한 기록

## 제10조

### 삭제

### (시설 기준)

## 제11조

양로원 건물(입소자의 일상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부속 건물을 제외한다)은 내화 건축물(건축 기준법(쇼와 25년 법률 제 201호) 제2조제9호 2에서 규정하는 내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한다. 그러나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장소를 두 층 이상의 층 및 지하실에 하나도 마련하지 않은 양로원 건물은 연합 내화 건축물(동조 제9호 3에서 규정하는 연합 내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도도부현 지사(지방자치법(쇼와 22년 법률 제67호) 제 252조19 제1항의 지정 도시(이하 "지정 도시"라고 한다)와 동법 제 252조 20 제1항의 중심 도시(이하 "중핵시"라고 한다)에서는 지정 도시 또는 중핵시의 장. 이하 같다)가 화재 예방, 소화 활동 등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고, 다음 각호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양로원 건물이어서 화재에 관련된 입소자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내화 건축물 또는 연합 내화 건축물로 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 1)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천장 등의 내장재 등에의 난연성 재료를 사용, 조리 실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방화 구획의 설치 등에 의해 초기 진화 및 화재 확산 억제를 배려한 구조인 것
- 2) 공습경보 설비의 설치 등에 의한 화재의 조기 발견 및 신고 체제가 정비되어 있어 원활한 소화 활동이 가능한 것
- 3) 피난 계단 추가, 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폭이 있는 대피로 확보 등은 원활한 피난이 가능한 구조여야하며, 대피 훈련을 수시로 실시하고, 배치 인원을 증원하는 것 등에 의해 화재의 원활한 피난이 가능한 것

3. 양로원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시설을 설립해야한다. 그러나 다른 사회 복지 시설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양로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입소자의 처우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능의 일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1) 거실
  - 2) 휴양실(거실에서 휴양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심신 상태에서 입소자의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 3) 식당
  - 4) 목욕탕
  - 5) 세면대
  - 6) 화장실
  - 7) 의무실
  - 8) 조리실
  - 9) 간병인실
  - 10) 간호 직원실
  - 11) 기능 훈련실
  - 12) 면담실
  - 13) 세탁실 또는 세탁장
  - 14) 오물 처리실
  - 15) 간호 재료실
  - 16) 전 각호에 규정된 것 외에 사무실, 기타 운영상 필요한 설비
4. 전항 각호에 규정된 시설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거실
  - ① 하나의 거실 정원은 4명 이하로 한다.
  - ② 지하실에 마련하지 않는다.
  - ③ 입소자 일인당 건평은 1.65평방미터 이상으로 한다.
  - ④ 침대 또는 이를 대체 시설을 갖춘 것.
  - ⑤ 한 개 이상의 출입구는 피난에 유효한 개방 장소, 복도 또는 방에 직접 접해 마련되어 있는 것
  - ⑥ 마루면적 1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직접 외부 공기에 접해서 개방하도록 한 것
  - ⑦ 입소자의 개인 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
  - ⑧ 초인종 또는 이를 대체하는 시설을 마련하는 것
- 2) 휴양실
  - ① 간병인실 또는 간호 직원실에 인접하여 설립할 수 있는 것
  - ② ①에 명시된 것 외에, 전항 ②와 ④에서 ⑧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 것
- 3) 목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목욕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하는 것
- 4) 세면대
  - ① 거실이 있는 층 당 설치하는 것

②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화장실

① 거실이 있는 층 당 근접해서 마련하는 것

② 초인종 또는 이를 대체하는 시설을 마련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6) 의무실

① 의료법(쇼와 23년 법률 제 205호) 제1조5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진료소로 한다.

② 입소자를 진료하는데 필요한 의약품 및 의료 장비를 갖추는 것 외에 필요한 임상 검사 시설을 마련하는 것

7) 조리실은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은 불연 재료를 사용하는 것.

8) 간병인실

① 거실이 있는 층마다 근접하게 마련하는 것.

②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

9) 식당과 기능 훈련실

① 식당과 기능 훈련실이 각각 필요한 넓이를 가지는 것으로 하고 총 면적은 3 평방미터에 입소 정원을 곱하여 얻은 면적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식사를 제공하거나 기능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 제안 또는 기능 훈련에 지장이 없는 넓이를 확보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로 할 수 있다.

②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

5. 거실, 휴양 객실, 식당, 목욕탕과 기능 훈련실(이하 "거실, 휴양실 등"이라고 한다)은 3층 이상의 층에 마련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건물에 설치되는 거실, 휴양 객실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거실 등의 3층 이상의 각층에 특별 피난 계단을 2개 이상(방재에 효과적인 경사로가 있을 경우 또는 휠체어로 통행하는 데 필요한 폭이 있는 발코니와 야외에서 설립 피난 계단을 있을 경우는 1개 이상) 있을 것.

2) 3층 이상의 층에 있는 거실 등 및 그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 다른 통로의 벽과 천장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을 불연 재료로 하고 있는 것

3) 거실 등의 3층 이상의 각층이 내화 구조의 벽 또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쇼와 25년 정령 제 338호) 제 1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 소방 설비(이하 "특정 방화 시설"라고 한다)는 방재에 유효한 구획이 되어 있는 것

6. 전 각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양로원 시설 기준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복도의 너비는 18미터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안쪽 복도의 너비는 27미터 이상으로 한다.

2) 복도, 화장실 기타 필요한 장소에 전등을 설치한 것

3) 복도와 계단에 난간을 마련한 것

- 4) 계단의 경사를 완만하게 한 것
- 5) 거실, 휴양실 등이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경사로를 마련한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직원의 배치 기준)

#### 제12조

일반 양로원에 두는 직원과 그 인구는 다음과 같이한다. 단, 입소 정원이 40명 이하 또는 기타 사회 복지 시설 등의 영양사와의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일반 양로원(입소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에 있어서는 제4호의 영양사를, 조리 업무의 전부를 위탁하는 일반 양로원에 있어서는 제6호의 요리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1) 시설장 한 명

2) 생활 상담원 입소자의 수가 120 또는 그 수를 증가하는 것 당 한 명 이상

3) 간병인

① 일반 입소자(입소자로 지정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보호(지정 주택 서비스 등의 사업 인원,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평성 11년 후생성 시행령 제37호) 제 1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보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정 보호 예방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보호(지정 보호 예방 서비스 등의 사업 인원, 시설 및 운영 및 지정 보호 예방 서비스 등에 관한 보호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법에 관한 기준(평성 18년 후생노동성령 제35호) 제 2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 보호 예방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보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정 지역밀착형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보호(지정 지역 밀착형 서비스 사업 인원,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평성 18년 후생노동성령 제34호) 제10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 지역밀착형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보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안을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30 이상 80 미만의 일반 양로원에 있어서는, 통상 변환 방법으로 1 이상

② 일반 입소자의 수가 30 이상 80 미만의 다음 일반 양로원에 있어서는, 통상 변환 방법으로 2 이상

③ 일반 입소자의 수가 80 이상인 일반 양로원에 있어서는, 통상 변환 방법으로 두어 동조 2의 실정에 맞는 알맞은 수를 추가하여 얻은 수

4) 영양사 한 명 이상

5) 사무원 한 명 이상

6) 요리사, 추가 인력 해당 일반 양로원의 실정에 맞는 알맞은 수

2. 전항의 입소자 및 일반 입소자의 수는 전년도의 평균치로 한다. 그러나 신규 설치 또는 재개의 경우에는 추정 수에 의하여 한다.

3. 제1항 통상 변환 방법은 해당 직원의 각각의 근무 연장 시간 수의 총액을 그 일반 양로원에서 직원이 근무하는 시간 수로 나누어 전임 직원의 원수로 환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4. 제1항 제1호 시설장은 독점적으로 그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단, 해당 일반 양로원 행정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부지 내에 있는 다른 사업소, 시설 등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5. 제1항 제2호의 생활 상담원을 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생활 상담원 중 한 명 이상은 상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6. 지정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보호, 지정 보호 예방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보호 또는 지정 지역밀착형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보호를 하는 일반 양로원에 있어서는,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지장이 없을 때는 제1항 제2호의 생활 상담원 중 한 사람을 두지 않을 수 있다.
7. 제1항 제3호 간병인 중 한 명 이상은 상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8. 제1항 제3호 간병인은 입소자의 신체 기능 상태, 병설 사회 복지 시설 등과의 연계, 보호 보험 서비스 등의 이용, 기타의 방법으로 해당 일반 양로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로,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미리 입소자의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해당 간병인 중 한 사람을 두지 않을 수 있다.
9. 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생활 상담원 또는 간병인은 같은 사람을 두어야 한다.
10. 제1항 제4호의 영양사 및 동항 제5호 사무원 중 한 사람은 상근해야 한다.
11. 제1항 제5호 사무원은 입소 정원이 60명 이하인 경우 또는 다른 사회 복지 시설을 병설 일반 요양원에서는 입소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사무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1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일반 양로원(노인 보건 시설이나 병원에 있어 해당 시설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가진 자(이하 이 항에서 "본체 시설"이라고 한다)와의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면서 본체 시설은 다른 장소에서 운영되는 입소 정원이 29명 이하인 일반 양로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요리사, 추가 인력에 대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본체 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구분에 따라 그 각호에서 정하는 직원은 해당 일반 양로원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1) 보호 노인 보건 시설 조리 직원 또는 기타 개업
  - 2) 클리닉, 기타 개업
13. 야간 및 심야 시간대를 통해 하나 이상의 직원에게 당직 근무 또는 야간 및 심야 근무(당직 근무를 제외한다)를 실행시켜야 한다. 단, 해당 일반 양로원 부지

내에 직원 숙소가 정비되어 있는지 등을 통하여 직원들이 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정비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비스 제공이 곤란할 때의 지원)

#### 제12조2

특별 양호 양로원은 입소 예정자가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기타 입소 예정자에 대해 스스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절한 병원이나 진료소 또는 노인 보건 시설을 소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한다.

(입퇴소)

#### 제13조

특별 양호 양로원은 입소 예정자의 입소 시 그 사람에 관한 보호 지원(보호 보험법(평성 9년 법률 제123호) 제8조제 21항에서 규정하는 보호 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사람에 대한 조회 등에 따라 그 사람의 심신 상태, 생활의 유무, 병력 지정 서비스 등(동항에서 규정하는 지정 서비스 등을 말한다)의 이용 상황 등을 파악에 노력해야한다.

2. 특별 양호 양로원은 입소자의 심신의 상황, 그 환경 등에 비추어 그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해야한다.

3. 전항의 검토에 있어서는 생활 상담원, 간병인, 간호 직원 등 직원 사이에 협의해야한다.

4. 특별 양호 양로원은 그 심신의 상황, 그 놓인 환경 등에 비추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입소에 대해, 그 사람과 그 가족의 희망, 그 사람이 퇴소 후의 환경 등을 감안하여 그 사람의 원활한 퇴소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실시해야한다.

5. 특별 양호 양로원은 입소자의 퇴소함에 있어서는 거주 서비스 계획(보호 보험법 제8조제 21항에서 규정하는 서비스 계획을 말한다) 제조 등의 원조에 기여하기 때문에 보호 지원을 하는 자에 대한 정보 제공에 노력 외에 기타 보건 의료 서비스 또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와의 긴밀한 협력에 노력해야한다.

(입소자의 처우에 관한 계획)

#### 제14조

특별 양호 양로원은 입소자에 대해 그 심신의 상황, 그 환경 그 사람과 그 가족의 희망 등을 감안하여 그 사람의 동의를 얻어 그 사람의 처우에 관한 계획을 작성해야한다.

2. 특별 양호 양로원은 입소자의 처우에 관한 계획에 대해 입소자의 처우의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검토를 실시해야한다.

(처우 정책)

제15조

특별 양호 양로원은 입소에 관하여, 그 사람의 보호 상태의 완화 혹은 악화 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그 사람의 심신 상태 등에 따라 그 사람의 처우를 합리적 적절히 해야한다.

2. 입소자의 처우는 입소자의 처우에 관한 계획에 따라 획일적인 것으로 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실행해야한다.

3. 양로원 직원은 입소자의 처우에 있어서는 공손하게 행동하고, 입소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처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실시해야한다.

4. 특별 양호 양로원은 입소자의 처우에 있어서는 해당 입소자 또는 다른 입소자 등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체적 구속, 기타 입소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행위(이하 "신체적인 구속 등"이라고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5. 특별 양호 양로원은 전항의 신체적인 구속 등을 할 경우에는 해당 상태와 시간, 그 때의 입소자의 심신 상태 및 긴급하고 부득이한 이유를 기록해야한다.

6. 특별 양호 양로원은 자신들이 하는 처우의 질을 평가하여 항상 개선을 도모해야한다.

(간호)

제16조

간호는 입소자의 자립 지원과 일상생활의 충실에 도움이 되도록, 입소자의 심신 상태에 따라 적합한 기술을 가지고 실행되어야한다.

2. 특별 양호 양로원은 일주일에 한번 이상 적절한 방법을 통해 입소자를 목욕시키거나 또는 청결히 해야한다.

3. 특별 양호 양로원은 입소자에 대해 그 심신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통해 필요한 원조를 실행해야한다.

4. 특별 양호 양로원은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입소자의 기저귀를 적절하게 교체해줘야 한다.

5. 양로원은 욕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간호를 실시함과 동시에 그 발생을 예방하기위한 체제를 정비해야한다.

6. 특별 양호 양로원은 입소에 대해 전 각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옷입기 등과 같은 간호를 적절히 해야한다.

7. 특별 양호 양로원은 항상 1명 이상의 상시 근무하는 간호 인력을 간호에 종사시켜야한다.
8. 특별 양호 양로원은 입소자들에게 그 부담은 해당 양로원 직원 이외의 사람에게 의해서는 안 된다.

(식사)

제17조

- 특별 양호 양로원은 영양 및 입소자의 심신의 상황과 취향을 고려한 식사를 적절한 시간에 제공해야한다.
2. 특별 양호 양로원은 입소자에게 가능한 한 식당에서 식사를 섭취하는 것을 지원해야한다.

(상담 및 지원)

제18조

- 특별 양호 양로원은 항상 입소자의 심신의 상황, 그 환경 등의 정확한 파악에 노력하고 입소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해 그 상담에 제대로 응하는 것과 함께 필요한 조언, 기타 지원을 행해야한다.

(사회생활 상의 편의 제공 등)

제19조

- 특별 양호 양로원은 교양 오락 설비 등을 갖추는 것 외에 입소자를 위한 적절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실시해야한다.
2. 특별 양호 양로원은 입소자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행정 기관 등에 대한 절차에 대해 그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동의를 얻고, 대신 수행해야한다.
  3. 특별 양호 양로원은 항상 입소자 가족과의 연계를 도모함과 동시에, 입소자 및 가족과의 교류 등의 기회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한다.
  4. 특별 양호 양로원은 입소자의 외출 기회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한다.

(기능 훈련)

제20조

- 특별 양호 양로원은 입소자에 대해 그 심신의 상태 등에 따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개선하거나 또는 상실을 방지하기위한 훈련을 실시해야한다.



(건강관리)

제21조

양로원의 의사 또는 간호사 인력은 항상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건강 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입소자 입원 기간 동안의 처우)

제22조

특별 양호 양로원은 입소에 관하여 병원 또는 진료소에 입원해야 할 경우, 입원 후 대략 3개월 이내에 퇴원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사람과 그 가족의 희망 등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편의를 부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퇴원 후 다시 해당 양로원에 원활한 입소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시설장의 책무)

제 23조

일반 양로원 시설장은 일반 양로원 직원 관리 업무의 실시 상황 파악, 기타 관리를 일원적으로 수행해야한다.

2. 일반 양로원 시설장은 직원에게 제 7조에서 제 9조까지, 제 12조에서 전조까지와 다음 조에서 제 33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실행해야한다.

(근무 체제 확보 등)

제24조

특별 양호 양로원은 입소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할 수 있도록 직원의 근무 체제를 결정해 두어야한다.

2 특별 양호 양로원은 해당 양로원 직원에 의해 처우를 실행해야한다. 그러나 입소자의 처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특별 양호 양로원은 직원에 대해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기회를 확보해야한다.

(정원 준수)

제25조

특별 요양원은 입소 정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재해, 폭행,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생 관리 등)

제26조

특별 양로원은 입소자가 사용하는 식기, 기타 설비 또는 음료를 제공해주는 것에 대해 위생적인 관리의 노력 또는 건강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2. 특별 양로원은 해당 일반 양로원에서 감염 또는 식중독 발생 또는 확산되지 않도록 다음 각호에 규정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 1) 해당 특별 양로원의 감염과 식중독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검토하는 위원회를 대략 3개월에 1회 이상 개최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간병인, 기타 직원에 대한 주지를 철저히 하는 것
- 2) 해당 특별 양로원의 감염과 식중독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서를 정비하는 것
- 3) 해당 특별 양로원에서 간병인, 다른 직원에게 감염과 식중독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4) 전 각호에 규정된 것 외에 별도로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감염 또는 식중독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의 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

(협력 의료기관 등)

제27조

특별 양로원은 입소자의 건강 상태의 급변 등에 대비하기 위해 먼저 협력 의료기관을 정해두어야 한다.

2. 특별 양로원 먼저 협력 치과 의료 기관을 결정해 두도록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비밀 유지 등)

제28조

특별 양로원 직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입소자 또는 그 가족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특별 양로원은 직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입소자 또는 그 가족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불만 처리)

제29조

특별 양호 양로원은 그 간 처우에 관한 입소자 및 그 가족의 불만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민원을 받기위한 창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2. 특별 양호 양로원은 전항의 불만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불만 내용 등을 기록해야한다.

3. 특별 양호 양로원은 그 간 처우에 관해, 시정촌에서 지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도 또는 조언에 따라 필요한 개선을 실행해야한다.
4. 특별 양호 양로원은 시정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개선 내용을 시정촌에 보고해야한다.

(지역과의 연계 등)

#### 제30조

특별 양호 양로원은 그 운영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 또는 그 자발적인 활동 등과의 연계 및 협력하는 등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도모해야한다.

2. 특별 양호 양로원은 그 운영에 있어서는, 그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입소자 불만에 대해 시정촌이 과견하는 상담 및 지원을 하는 사업, 기타의 시정촌이 실시하는 사업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고 발생 예방과 발생 시의 대응)

#### 제31조

특별 양호 양로원은 사고 발생이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 1)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대응, 다음 호에 규정하는 신고 방법 등이 포함된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지침서를 정비한다.
- 2) 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그것에 이르는 위험이 있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고 그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에 대해 직원에게 주지하고, 철저한 체제를 정비한다.
- 3)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위원회 및 직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특별 양호 양로원은 입소자의 처우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입소자의 가족 등에게 연락을 함과 동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3. 특별 양호 양로원은 전항의 사고 상황 및 사고 시 취한 조치에 대해 기록해야 한다.
4. 특별 양호 양로원은 입소자의 처우에 대해 배상해야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신속히 이행해야한다.

### 제3장 특별 양로원의 기본 방침 및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이 장의 목적)

#### 제32조

전장(제 12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관계없이, 단위 형식 특별 양로원(시설 전부에서 약간의 거실 및 그 거실에 근접하여 설치되는 공동 생활실(해당 거실 입주자가 공동으로 일상생활을 영위위한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체적으로 구성되는 장소(이하 "단위"라고 한다)에 따라 입주자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양로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 방침 및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본 방침)

#### 제33조

단위 형식 양로원은 입주자 개개인의 의사와 개성을 존중하고, 입주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획에 근거하여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염두에 두고 입주 전 생활과 입주 후 생활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도록 배려하면서 입주자가 상호 작용하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자율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지원해야한다.

2. 단위 형식 양로원은 지역이나 가정과의 연계를 중시한 운영을 실시, 지역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행하는 기타 보건 의료 서비스 또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의 긴밀한 협력에 노력해야한다.

(운영 규정)

#### 제34조

단위 형식 양로원은 다음에 열거하는 시설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두어야한다.

- 1) 시설의 목적과 운영 방침
- 2) 직원의 직종, 수 및 직무 내용
- 3) 입소 정원
- 4)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이용료, 기타 비용의 금액
- 5) 시설 이용에 있어서 유의 사항
- 6) 비상 재해 대책
- 7) 기타 시설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시설 기준)

#### 제35조

단위 형식 양로원 건물(입주자의 일상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부속 건물을 제외한다)은 내화 건축물로 해야한다. 그러나 입주자의 일상생활에 충당되는 장소를 2층 이상의 층 및 지하실에 하나도 마련하지 않은 단위 형식 양로원 건물은 연합 내화 건축물로 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도도부현 지사가 화재 예방, 소화 활동 등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고, 다음 각호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건물 이어서 화재에 관한 입주자의 안전이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내화 건축물 또는 연합 내화 건축물로 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 1)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천장 등의 내장재 등에의 난연성 재료를 사용, 조리 실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방화 구획의 설치 등에 의해 초기 진화 및 화재 확산 억제를 배려한 구조인 것
- 2) 공습경보 설비의 설치 등에 의한 화재의 조기 발견 및 신고 체제가 정비되어 있어 원활한 소화 활동이 가능한 것
- 3) 피난 계단 추가, 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폭이 있는 대피로 확보 등은 원활한 피난이 가능한 구조여야하며, 대피 훈련을 수시로 실시하고, 배치 인원을 증원하는 수 등에 의해 화재의 원활한 피난이 가능한 것

3. 단위 형식 양로원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시설을 설립해야한다. 그러나 다른 사회 복지 시설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단위 형식 양로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로,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지장이 없는 경우 설비의 일부를 마련 할 수 있다.

- 1) 거실
- 2) 담화실, 오락실 또는 집회실
- 3) 식당
- 4) 목욕
- 5) 화장실
- 6) 화장실
- 7) 조리실
- 8) 면담실
- 9) 세탁실 또는 세탁장
- 10) 숙박실
- 11) 전 각호에 규정된 것 외에 사무실, 기타 운영상 필요한 설비

4. 전항 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시설 기준은 다음과 같이한다.

- 1) 거실
  - ① 하나의 거실 정원은 한 사람으로 함. 그러나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두 사람으로 할 수 있다.
  - ② 거실은 공동생활실에 속하는 것으로 설치한다. 단 하나의 공동생활실의 입주정원은 10명 이하로 해야한다.
  - ③ 지하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 ④ 13.2평방미터 이상으로 함. 그러나 ①의 경우에 있어서는, 21.3평방미터 이상으로 한 것

- ⑤ 침대 또는 이것에 대체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
- ⑥ 하나 이상의 출입구는 피난 시 유효한 공간, 복도, 공동생활실 또는 거실에 인접해서 설치한 것
- ⑦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상당하는 면적을 wrlwjq 외부 공기에 면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 목욕

노인이 목욕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하는 것 외에 필요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목욕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시설을 마련하는 것

3) 조리실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은 불연 재료를 채택한 것

4) 공동생활실

- ① 공동생활실은 입주자가 교류하고 공동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장소로써 어울리는 형태를 하고 있는 것
- ② 지하에 마련해두지 않은 것
- ③ 하나의 공동생활실의 바닥면적은 2평방미터에 입주정원을 더해서 얻은 면적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있는 것
- ④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갖추고 있는 것

5) 의무실

- ① 의료법 제1조5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진료소로 하는 것
- ② 입주자를 진찰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품 및 의료 기기를 갖추고 있는 것 외에, 필요에 의한 기구를 갖추고 있는 것

5. 욕실은 3층 이상의 층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단,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에 설치 된 것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 1) 욕실이 있는 3층 이상의 각층에 통하는 특별 계단을 둘 이상 가지고 있는 것
- 2) 3층 이상의 층에 있는 욕실 및 이들로부터 지상에 통하는 복도, 그 외의 통로를 불연 재료로 한 것
- 3) 욕실이 있는 3층 이상의 각층이 내화구조의 벽 또는 특정 방화 설비에 의해 방재 상 도움이 되는 것

6. 전 각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특별 양로원 시설 기준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복도의 폭은 1.8미터 이상인 것. 단 중간 복도의 폭은 2.7미터 이상인 것. 또한 복도의 일부 폭을 확장하는 것에 의해 입주자, 종업원 등의 원활한 생활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중간 복도는 1.8미터 이상)으로 해도 된다.

- 2) 복도, 공동생활실, 화장실 그 외에 필요하나 장소에 전등을 설치하는 것
- 3) 복도 및 계단에 난간을 설치하는 것
- 4) 계단의 손잡이는 부드러운 소재로 만들 것
- 5) 욕실이 두 층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엘리베이터를 마련한 것

(서비스의 취급 방침)

### 제36조

입주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입주자가 그 능력에 따라 자신의 생활양식과 생활 습관에 따라서 자율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주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획에 따라 입주자의 일상생활의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를 함으로써 입주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면서 수행되어야 한다.

2. 입주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은 각 단위에서 입주자가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실행되어야 한다.
3. 입주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입주자의 사생활 보호의 확보를 하면서 실행되어야 한다.
4. 입주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입주자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입주자의 상태를 완화 혹은 악화 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그 사람의 심신의 상황 등을 항상 파악하면서 제대로 실행되어야 한다.
5. 직원은 입주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입주자 또는 그 가족들에게 서비스 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야 한다.
6. 양로원은 입주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그 입주자 또는 다른 입주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체적인 구속 등을 가하지 않는다.
7. 양로원은 전항의 신체적인 구속 등을 할 경우에는 해당 상태와 시간, 그 때의 입주자의 심신 상태 및 긴급하고 부득이한 이유를 기록해야 한다.
8. 양로원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여 항상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간호)

### 제37조

간호는 각 입주자가 상호 작용하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자율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입주자의 심신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기술을 가지고 실행되어야 한다.

2. 양로원은 입주자의 일상생활에서 입주자가 그 심신의 상태 등에 따라 각각의 역할이 수행하도록 적절하게 지원해야 한다.

3. 양로원은 입주자가 신체의 청결을 유지하고, 정신적으로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에게 목욕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청결을 행하는 것으로 목욕 기회의 제공을 대신할 수 있다.
4. 양로원은 입주자의 심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통해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해야한다.
5. 양로원은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입주자 배설의 자립을 도모하면서, 그 기저귀를 적절히 보충해야한다.
6. 양로원은 욕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간호를 실시함과 동시에 그 발생을 예방하기위한 체제를 정비해야한다.
7. 양로원은 전 각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입주자가 옷입기 등의 일상생활의 활동을 적절하게 지원해야한다.
8. 양로원은 항상 1명 이상의 상시 근무하는 간호 인력을 간호에 종사시켜야한다.
9. 양로원은 입주자에 대해서, 그 부담에 의해 양로원의 직원 이외에 자에 의해 간호를 시켜서는 안 된다.

(식사)

제38조

양로원은 영양 및 입주자의 심신의 상황과 취향을 고려한 식사를 제공해야한다.

2. 입주자의 심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식사의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해야한다.
3. 입주자의 생활 습관을 존중하고 적절한 시간에 식사를 제공하며, 입주자가 심신의 상황에 따라 가능한 한 자립 식사를 섭취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야한다.
4. 입주자가 상호 작용하는 사회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 의사를 존중하면서 입주자가 공동생활실에서 식사를 섭취하는 것을 지원해야한다.

(사회생활에 편의 제공 등)

제39조

양로원은 입주자의 기호에 맞는 취미, 교양이나 오락에 관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며,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하는 이러한 활동을 지원해야한다.

2. 입주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행정 기관 등에 대한 절차에 대해 그 사람 또는 그 가족이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동의를 얻고, 대신 수행되어야한다.
3. 항상 입주자의 가족과의 연계를 도모함과 동시에 입주자와 그 가족과의 교류 등의 기회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한다.



4. 입주자의 외출 기회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한다.

(근무 체제 확보 등)

제40조

양로원은 입주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원의 근무 체제를 결정해 두어야한다.

2. 전항의 근무 체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입주자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계속성을 중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음 각호에 명시된 인력 배치해야 한다.

1) 주간은 항상 한 명 이상의 간병인 또는 간호 인력을 배치한다.

2) 야간 및 심야에 대해서는 한 명 이상의 간병인 또는 간호 인력을 야간과 심야 근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배치한다.

3) 정식 담당자를 배치한다.

3. 양로원은 해당 단위 형식 양로원 직원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그러나 입주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양로원은 직원에 대해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기회를 확보해야한다.

(정원의 준수)

제41조

단위 형식 양로원은 단위의 입주 정원과 거실 정원을 초과하여 입주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준용)

제42조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9조, 제12조2에서 제14조까지, 제18조, 제20조에서 제23조및 제24조에서 제31조의 규정은 단위 형식 양로원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 제3호 중 "제5조제5항"인 것은 "제36조제7항"으로, 동항 제4호 중 "제29조제2항"인 것은 "제42조에서 준용하는 제29조제2항"으로 동항 제5호 중 "제31조제3항"인 것은 "제42조에서 준용한 제31조제2항"으로, 제23조제2항 중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2부터 제31조까지"인 것은 "제34조및 제 36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2조에서 준용하는 제8조, 제9조, 제12조2부터 제14조까지. 제18조,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로 본다한다.

## 제4장 일부 단위 형식 양로원의 기본 방침 및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이 장의 목적)

### 제43조

제2장(제 12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관계없이, 일부 단위 형식 특별 양로원(입주자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 특별 양로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 방침 및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본 방침)

### 제44조

일부 단위 형식 양로원의 기본 방침은 입주자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부분(이하 "단위 부분"이라고 한다)에 있어서 제 33조에, 그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제 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운영 규정)

### 제45조

일부 단위 형식 양로원은 다음에 열거하는 시설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두어야한다.

- 1) 시설의 목적과 운영 방침
- 2) 직원의 직종, 수 및 직무 내용
- 3) 입주 정원과 입소 정원
- 4) 단위 부분 수와 단위의 입주 정원
- 5) 단위 부분의 입주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내용과 비용 액수
- 6) 단위 부분을 제외한 부분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내용과 비용 액수
- 7) 시설 이용에 있어서 유의 사항
- 8) 비상 재해 대책
- 9) 기타 시설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시설 기준)

### 제46조

일부 단위 형식 양로원 시설 기준은 단위 부분에 있어서는 제 35조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제 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나, 목욕탕, 의무실, 조리실, 세탁실 또는 세탁 시설, 오물 처리실, 간호 재료실과 사무실, 기타 운영상 필요한 시설은 단위 부분의 입주자와 그 외 부분의 입소자에게 하는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 하나의 설비로 할 수 있다.

(서비스의 취급 방침)

제47조

일부 단위 형식 양로원 서비스 단위 방침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 36조에, 그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제 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간호)

제48조

일부 단위 형식 양로원 간호는 단위 부분에 있어서는 제 37조에, 그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제 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식사)

제49조

일부 단위 형식 양로원 식사는 단위 부분에 있어서는 제 38조에, 그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제 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회 생활에 편의 제공 등)

제50조

일부 단위 형식 양로원 사회생활의 편의 제공 등은 단위 부분에 있어서는 제 39조에, 그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제 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무 체제의 확보 등)

제51조

일부 단위 형식 양로원의 근무 체제 확보 등은 단위 부분에 있어서는 제 40조에,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제 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원 준수)

제52조

일부 단위 형식 양로원 정원의 준수는 단위 부분에 있어서는 제 41조에,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제 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준용)

제53조

제 3조부터 제 6조까지, 제 8조, 제 9조, 제12조2에서 제 14조까지, 제 18조, 제 20조에서 제23조및 제 24조에서 제 31조의 규정은 단위 형식 양로원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 제3호 중 "제5조제5항"인 것은 "제36조제7항"으로, 동항 제4호

중 "제29조제2항"인 것은 "제 42조에서 준용하는 제29조제2항"으로 동항 제5호 중 "제31조제3항"인 것은 "제 42조에서 준용한 제31조제2항"으로, 제23조제2항 중 "제 7조부터 제 9조까지 및 제12조2부터 제 31조까지"인 것은 "제34조및 제 36조부터 제 41조까지 및 제 42조에서 준용하는 제 8조, 제 9조, 제12조2부터 제 14조까지. 제 18조, 제 20조부터 제 23조까지 및 제 26조부터 제 31조까지"로 본다한다.

## 제5장 지역밀착형 양로원의 기본 방침 및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이 장의 목적)

제54조

제2장에서 전장까지 규정에 관계없이, 지역밀착형 양로원의 기본 방침 및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설 기준)

제55조

지역밀착형 양로원 건물(입소자의 일상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부속 건물을 제외한다)은 내화 건축물로 해야한다. 그러나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충당되는 장소를 2층 이상의 층 및 지하실에 하나도 마련하지 않은 지역밀착형 양로원 건물은 연합 내화 건축물로 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도도부현 지사가 화재 예방, 소화 활동 등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고, 다음 각호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지역 밀착형 양로원 건물이어서 화재에 관한 입소자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내화 건축물 또는 연합 내화 건축물로 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 1)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천장 등의 내장재 등에의 난연성 재료를 사용, 조리 실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방화 구획의 설치 등에 의해 초기 진화 및 화재 확산 억제를 배려한 구조인 것
- 2) 공습경보 설비의 설치 등에 의한 화재의 조기 발견 및 신고 체제가 정비되어 있어 원활한 소화 활동이 가능한 것
- 3) 피난 계단 추가, 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폭이 있는 대피로 확보 등은 원활한 피난이 가능한 구조여야하며, 대피 훈련을 수시로 실시하고, 배치 인원을 증원하는 것 등에 의해 화재의 원활한 피난이 가능한 것

3. 지역밀착형 양로원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시설을 설립해야한다. 그러나 다른

사회 복지 시설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양로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입소자의 처우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능의 일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1) 거실
  - 2) 휴양실(거실에서 휴양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심신 상태에서 입소자의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 3) 식당
  - 4) 목욕탕
  - 5) 세면대
  - 6) 화장실
  - 7) 의무실
  - 8) 조리실
  - 9) 간병인실
  - 10) 간호 직원실
  - 11) 기능 훈련실
  - 12) 면담실
  - 13) 세탁실 또는 세탁장
  - 14) 오물 처리실
  - 15) 간호 재료실
  - 16) 전 각호에 규정된 것 외에 사무실, 기타 운영상 필요한 설비
4. 전항 각호에 규정된 시설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거실
  - ① 하나의 거실 정원은 4명 이하로 한다.
  - ② 지하실에 마련하지 않는다.
  - ③ 입소자 일인당 건평은 1.65평방미터 이상으로 한다.
  - ④ 침대 또는 이를 대체 시설을 갖춘 것.
  - ⑤ 한 개 이상의 출입구는 피난에 유효한 개방 장소, 복도 또는 방에 직접 접해 마련되어 있는 것
  - ⑥ 마루면적 1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직접 외부 공기에 접해서 개방하도록 한 것
  - ⑦ 입소자의 개인 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
  - ⑧ 초인종 또는 이를 대체하는 시설을 마련하는 것
- 2) 휴양실
  - ① 간병인실 또는 간호 직원실에 인접하여 설립할 수 있는 것

- ② ①에 명시된 것 외에, 전호 ②와 ④에서 ⑧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 것
  - 3) 목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목욕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하는 것
  - 4) 세면대
    - ① 거실이 있는 층 당 설치하는 것
    - ②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5) 화장실
    - ① 거실이 있는 층 당 근접해서 마련하는 것
    - ② 초인종 또는 이를 대체하는 시설을 마련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6) 의무실
    - ① 의료법(쇼와 23년 법률 제 205호) 제1조5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진료소로 한다.
    - ② 입소자를 진료하는데 필요한 의약품 및 의료 장비를 갖추는 것 외에 필요한 임상 검사 시설을 마련하는 것
  - 7) 조리실은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은 불연 재료를 사용하는 것.
  - 8) 간병인실
    - ① 거실이 있는 층마다 근접하게 마련하는 것.
    - ②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
  - 9) 식당과 기능 훈련실
    - ① 식당과 기능 훈련실이 각각 필요한 넓이를 가지는 것으로 하고 총 면적은 3 평방미터에 입소 정원을 곱하여 얻은 면적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식사를 제공하거나 기능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 제안 또는 기능 훈련에 지장이 없는 넓이를 확보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로 할 수 있다.
    - ②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
5. 거실, 휴양 객실, 식당, 목욕탕과 기능 훈련실(이하 "거실, 휴양실 등"이라고 한다)은 3층 이상의 층에 마련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건물에 설치되는 거실, 휴양 객실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거실 등의 3층 이상의 각층에 특별 피난 계단을 2개 이상(방재에 효과적인 경사로가 있을 경우 또는 휠체어로 통행하는 데 필요한 폭이 있는 발코니와 야외에서 설립 피난 계단을 있을 경우는 1개 이상) 있을 것.
  - 2) 3층 이상의 층에 있는 거실 등 및 그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 다른 통로의 벽과 천장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을 불연 재료로 하고 있는 것
  - 3) 거실 등의 3층 이상의 각층이 내화 구조의 벽 또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쇼와 25년 정령 제 338호) 제 1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 소방 설비(이하 "특정 방화 시설"라고 한다)는 방재에 유효한 구획이 되어 있는 것

6. 전 각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양로원 시설 기준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복도의 너비는 18미터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안쪽 복도의 너비는 27미터 이상으로 한다.
  - 2) 복도, 화장실 기타 필요한 장소에 전등을 설치한 것
  - 3) 복도와 계단에 난간을 마련한 것
  - 4) 계단의 경사를 완만하게 한 것
  - 5) 거실, 휴양실 등이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경사로를 마련한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본체 시설과 거주 시설 간의 거리는 두 시설이 긴밀한 연계를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로한다.

(직원의 배치 기준)

제56조

지역밀착형 양로원에 두는 직원과 그 인구는 다음과 같이한다. .

- 1) 시설장 한 명
  - 2) 의사 입소자에 대해서 건강관리 및 의료 상의 지도를 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
  - 3) 생활 상담원
  - 4) 보호직원 또는 간호직원
    - ① 간호직원의 수는 1명 이상
    - ② 간호직원 및 보호직원의 총 수는 통상환산방법으로 입소자의 수가 3 또는 그 수를 넘는 것 당 1명
  - 4) 영양사 한 명 이상
  - 5) 사무원 한 명 이상
  - 6) 요리사, 추가 인력 해당 일반 양로원의 실정에 맞는 알맞은 수
2. 전항의 입소자 및 일반 입소자의 수는 전년도의 평균치로 한다. 그러나 신규 설치 또는 재개의 경우에는 추정 수에 의하여 한다.
3. 제1항, 제6항 및 제8항의 통상 변환 방법은 해당 직원의 각각의 근무 연장 시간 수의 총액을 그 일반 양로원에서 직원이 근무하는 시간 수로 나누어 전임 직원의 수로 환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4. 제1항 제1호 시설장은 독점적으로 그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5. 제1항 제2호 규정에 관계없이 의사에 대해서는 본체시설의 의료에 의해 해당 입소자의 건강관리가 적절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것을 두지 않을 수 있다.
6. 제1항 제3호의 생활상담원은 통상 근무하는 자여야 된다. 통상환산방법으로 1명 이상으로 한다.

7. 제1항 제4호 보호직원 중 한 명 이상은 상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8. 제1항 제4호 간호직원은 중 한 명 이상은 상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9. 제1항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관계없이, 생활상담원, 영양사, 사무원 또는 조리원 그 외의 기타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본체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직원에 의해 이것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1) 특별 양호 양로원 영양사, 사무원, 조리원 그 외의 기타 직원
  - 2) 보호노인보건시설 지원상담원, 영양사, 의료원 또는 조리원 그 외의 기타 종사자
10. 제1항 제6호의 기능조련지도원은 해당 지역 밀착형 특별 양호 노인 양로원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1. 지역밀착형특별양호양로원에 지정 서비스 등의 사업을 하는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평성 11년 후생성령 제37호. 이하 “지정 서비스 등의 기준”이라고 한다) 제 12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 단기 입주 생활 보호 사업소 또는 지정 보호 예방 서비스 등의 지원 방법에 관한 기준(평성 18년 후생노동성 제35호. 이하 “지정 보호 예방 서비스 등의 기준”이라고 한다) 제 12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 보호 예방 단기 입주 생활 보호 사업소(이하 “지정 단기 입주 생활 보호 사업소 등”이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지정 단기 입주 생활 보호 사업소 등의 의사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밀착형 특별 양호 양로원의 의사에 의해 해당 지정 단기 입주 생활 보호 사업소 등의 이용자의 건강관리가 적절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것을 두지 않을 수 있다.
12. 지역밀착형특별 양호 양로원에 지정 서비스 등 기준 제9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 보호 사업소 혹은 지정 보호 예방 서비스 등의 기준 제9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 보호 예방 사업소, 지정 단기 입주 생활 보호 사업소 등 또는 지정 지역밀착형 서비스의 사업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평성 18년 후생노동성령 제34호. 이하 “지정 지역밀착형 서비스 기준”이라고 한다) 제4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 인지 통증 대응 보호 및 지정 지역밀착형 보호 예방 서비스에 관한 보호 예방을 위해서 효과적인 지원 방법에 관한 기준(평성 18년 후생노동성령 제 36호. 이하 “지정 지역 밀착형 보호 예방 서비스 기준”이라고 한다)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 보호 예방 인지 통증 대응 보호 사업을 행하는 사업소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생활상담원, 영양사, 기능 조련 지도원 또는 조리원 그 외의 기타 종사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밀착형 특별 양호 양로원의 생활상담원, 영양사, 기능 조련 지도원 또는 조리원, 사무원 그 외의 직원에 의해 해당 사업소의 이용자 처우가 적절하게 실행되고 있다는 인정되는 때에는 이것을 두지 않을 수 있다.



13. 지역 밀착형 특별 양호 양로원에 지정 단기 입주 생활 보호 사업소 등의 입소 정원은 해당 지역 밀착형 특별 양호 양로원의 입소 정원과 같은 수로 한다.

14. 지역 밀착형 특별 양호 양로원에 지정 지역 밀착형 서비스 기준 제6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 소규모 다기능형 보호 사업소 또는 지정 지역 밀착형 보호 예방 서비스 기준 제4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 보호 예방 소규모 다기능형 보호 사업소(이하 “지정 소규모 다기능형 보호 사업소 등”이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 밀착형 특별 양호 양로원이 전 각항에서 정하는 직원의 배치 기준을 따르는 것 외에, 해당 지정 소규모 다기능형 보호 사업소 등에 지정 지역 밀착형 서비스 기준 제63조또는 지정 지역 밀착형 보호 예방 서비스 기준 제 44조에서 정하는 인원에 관한 기준을 따르는 종사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밀착형 특별 양호 노인 양로원 직원은 해당 지정 소규모 다기능형 보호 사업소 등의 직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간호)

제57조

간호는 입소자의 자립 지원과 일상생활의 충실에 도움이 되도록, 입소자의 심신 상태에 따라 적합한 기술을 가지고 실행되어야 한다.

2. 지역밀착형 양로원은 일주일에 한번 이상 적절한 방법을 통해 입소자를 목욕시키고 또는 청결하게 해야 한다.

3. 지역밀착형 양로원은 입소자에 대해 그 심신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통해 배설의 자립에 필요한 원조를 실행해야 한다.

4. 지역밀착형 양로원은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입소자의 기저귀를 적절히 보충해야 한다.

5. 지역밀착형 양로원은 욕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간호를 실시함과 동시에 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6. 지역밀착형 양로원은 입소에 대해, 전 각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옷입기 등의 간호를 적절히 해야 한다.

7. 지역밀착형 특별 양호 양로원은 항상 한 명 이상의 간병인을 간호에 종사시켜야 한다.

8. 지역밀착형 양로원은 입소자들에게 그 부담은 해당 지역 밀착형 양로원 직원 이외의 사람에게 의해 간호시켜서는 아니 된다.

(지역과의 연계 등)

제 58조

지역밀착형 특별 양호 양로원은 그 운영에 있어서는, 입소자, 입소자의 가족, 지역

주민의 대표, 해당 지역 밀착형 양로원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또는 해당 지역 밀착형 특별 양호 양로원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호 보험법 제 115조 4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역 포괄 지원 센터의 직원, 지역 밀착형 특별 양호 양로원에 관하여 지식이 있는 자 등에 의해 구성된 협의회(이하 "운영 추진 회의"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2개월에 한 번 이상 운영추진회에 대해 활동 상황을 보고하고, 운영추진회에서 필요한 요구 사항, 조언 등을 듣는 기회를 마련한다.

2. 지역밀착형 양로원은 전항의 보고, 평가, 요구, 통보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공개하는 것으로 한다.

3. 지역밀착형 특별 양호 양로원은 그 운영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 또는 그 자발적인 활동 등과의 연계 및 협력하는 등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도모해야한다.

4. 지역밀착형 특별 양호 양로원은 그 운영에 있어서는, 그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입소자의 불만에 대해 시정촌 등이 하는 상담 및 지원을 하는 사업, 기타 시정촌이 실시하는 사업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준용)

제59조

제 2조부터 제 9조까지, 제12조2에서 제 15조까지, 제 17조부터 제 29조까지 및 제 31조의 규정은 단위 형식 양로원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 제3호 중 "제15조제5항"인 것은 "제 59조에서 준용하는 제15조제5항"으로, 동항 제5호 중 "제31조제3항"인 것은 "제 59조에서 준용한 제31조제3항"으로, 제23조제2항 중 "제 7조부터 제 9조까지 및 제12조2부터 제 31조까지"인 것은 "제58조및 제58조및 제 59조에서 준용하는 제 7조부터 제 9조까지, 제12조2부터 제 15조까지, 제 17조부터 제 28조까지 및 제 31조"로 본다한다.

## 제6장 단위 형식 지역밀착형 양로원의 기본 방침 및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이 장의 목적)

제60조

제2장에서 전장까지(제 56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관계없이, 단위 형식 지역밀착형 양로원(시설 전체에서 단위에 대해 입주자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지역 밀착형 양로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 방침 및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 장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설 기준)

제61조

단위 형식 지역밀착형 양로원 건물(입주자의 일상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부속 건물을 제외한다)은 내화 건축물로 해야한다. 그러나 입주자의 일상생활에 충당되는 장소를 두 층 이상의 층 및 지하실에 하나도 마련하지 않은 단위 형식 지역밀착형 양로원 건물은 연합 내화 건축물로 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도도부현 지사가 화재 예방, 소화 활동 등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고, 다음 각호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지역밀착형 양로원 건물이어서 화재에 관한 입주자의 안전이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내화 건축물 또는 연합 내화 건축물로 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 1)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천장 등의 내장재 등에의 난연성 재료를 사용, 조리실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방화 구획의 설치 등에 의해 초기 진화 및 화재 확산 억제에 배려한 구조조인 것.
- 2) 공습경보 설비의 설치 등에 의한 화재의 조기 발견 및 신고 체제가 정비되어 있어 원활한 소화 활동이 가능한 것
- 3) 피난 계단 추가, 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폭이 이있는 대피로 확보 등은 원활한 피난이 가능한 구조여야하며, 대피 훈련을 수시로 실시하고, 배치 인원을 증원하는 수 등에 의해 화재의 원활한 피난이 가능한 것.

3. 단위 형식 지역밀착형 양로원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시설을 설립해야한다. 그러나 다른 사회 복지 시설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단위 형식 지역밀착형 양로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이고, 입주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제1호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기능의 일부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 1) 단위
- 2) 목욕
- 3) 의무실
- 4) 조리실
- 5) 세탁실 또는 세탁장
- 6) 오물 처리실
- 7) 간호 재료 실
- 8) 전 각호에 규정된 것 외에 사무실 기타 운영상 필요한 설비

4. 전항 각호에 규정된 시설 기준은 다음과 같이한다.

- 1) 단위
  - ① 거실

- (1) 하나의 거실 정원은 한 사람으로 함. 그러나 입주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두 사람으로 할 수 있다.
- (2) 거실은 하나의 단위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 단위의 공동생활실에 인접하여 일체적으로 마련하는 것. 그러나 한 단위의 입주 정원은 10명 이하로 해야 한다.
- (3) 지하실에 마련하지 않은 것
- (4) 하나의 거실의 바닥 면적 등은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할 것.
  - (i) 13.2평방미터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그러나 (1)의 경우에 있어서는, 21.3평방미터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 (ii) 거실을 개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10.65평방미터 이상으로 함. 그러나 (1)의 경우에 있어서는, 21.3평방미터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입주자 간의 시선 차단 확보를 전제로 하는 한에서 벽과 천장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둔다.
- (5) 침대 또는 이를 대체 시설을 갖춘 것
- (6) 한 개 이상의 출입구는 피난에 유효한 개방 장소, 복도, 공동생활실에 직접 접해 마련하는 것
- (7) 바닥 면적의 1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직접 외부 공기에 접하고 개방하도록 한다.
- (8) 필요에 따라 입주자의 개인 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
- (9) 초인종 또는 이를 대체하는 시설을 마련한 것
  - ② 공동 생활실
    - (1) 공동 생활실로, 입주자들이 교류하고 공동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장소에 어울리는 모양을 가진 것.
    - (2) 지하실에 마련하지 않은 것
    - (3) 하나의 공동생활실의 바닥 면적은 2평방미터에 해당 공동생활실이 속한 단위의 입주 정원을 곱하여 얻은 면적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 (4)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것
  - ③ 세면대
    - (1) 거실마다 설치하거나 또는 공동생활실 별로 알맞은 수를 마련한 것
    -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④ 화장실
    - (1) 거실마다 설치하거나 또는 공동생활실 별로 알맞은 수를 마련한 것
    - (2) 초인종 또는 이를 대체하는 시설을 마련하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2) 목욕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목욕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의무실

의료법 제1조5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진료소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입주자를 진료하는데 필요한 의약품 및 의료 장비를 갖추는 것 외에 필요한 임상 검사 시설을 마련한 것. 그러나 본체 시설이 양로원인 거주 시설은 의무실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입주자를 진료하는 데 필요한 의약품 및 의료 장비를 갖추는 것 외에 필요한 임상 검사 시설을 마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4) 조리실

①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은 불연 재료를 채택한 것.

② 거주 시설의 조리실은 본체 시설의 조리실에서 조리하는 경우로, 운반 수단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간편한 조리 시설을 마련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한다.

5. 목욕실은 3 층 이상의 층에 마련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건물에 설치되는 목욕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목욕실이 3 층 이상의 각층에 통하는 특별 피난 계단이 두 개 이상(방재에 효과적인 경사로가 있을 경우 또는 휠체어로 통행하기 위해 필요한 폭을 가진 복도와 야외에 설치된 피난 계단이 있는 경우 한 개 이상)있을 것.

2) 3 층 이상의 층에 있는 목욕실과 이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 다른 통로의 벽과 천장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을 불연 재료로 하고 있는 것

3) 목욕실의 3 층 이상의 각층이 내화 구조의 벽 또는 특정 소방 시설은 방재에 사용 구획되어있는 것

6. 전 각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단위 형식 지역밀착형 양로원 시설 기준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복도의 너비는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단, 안쪽 복도의 너비는 1.8미터 이상으로 한다. 또한, 복도 부분의 폭을 확장하는 등 입주자 직원 등의 원활한 왕래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요하지 않을 수 있다.

2) 복도, 공동생활실, 화장실, 기타 필요한 장소에 전등을 마련한 것

3) 복도와 계단에 난간을 마련한 것

4)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게 한 것

5) 목욕탕이 2 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경사로를 마련한 것.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본체 시설과 거주 시설 간의 거리는 두 기관이 긴밀한 연계를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로한다.

(간호)

제62조

간호는 각 입주자가 상호 작용하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자율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입주자의 심신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기술을 가지고 실행되어야 한다.

2. 지역밀착형 양로원은 입주자의 일상생활에서 입주자가 그 심신의 상태 등에 따라 각각의 역할이 수행하도록 적절하게 지원해야 한다.
3. 지역밀착형 양로원은 입주자가 신체의 청결을 유지하고, 정신적으로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에게 목욕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청결하게 하는 것으로 목욕 기회의 제공을 대신할 수 있다.
4. 지역밀착형 양로원은 입주자의 심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통해 배설의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5. 지역밀착형 양로원은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입주자의 배설의 자립을 도모하면서, 그 기저귀를 적절히 보충해야 한다.
6. 지역밀착형 양로원은 욕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간호를 실시함과 동시에 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7. 지역밀착형 양로원은 전 각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입주자의 옷입기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적절하게 지원해야 한다.
8. 지역밀착형 특별 양호 양로원은 항상 한 명 이상의 간병인이 간호에 종사해야 한다.
9. 지역밀착형 양로원은 입주자에게 해당 지역밀착형 양로원 직원 이외의 사람에 의한 간호를 시켜서는 안 된다.

(준용)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 8조, 제9조, 제12조2에서 제14조까지, 제18조, 제20조에서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제31조의 규정은 단위 형식 양로원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 제3호 중 "제5조제5항"인 것은 "제36조제7항"으로, 동항 제4호 중 "제29조제2항"인 것은 "제42조에서 준용하는 제29조제2항"으로 동항 제5호 중 "제31조제3항"인 것은 "제42조에서 준용한 제31조제2항"으로, 제23조제2항 중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2부터 제31조까지"인 것은 "제34조 및 제 36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2조에서 준용하는 제 8조, 제9조, 제12조2부터 제14조까지. 제18조,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로 본다 한다.

## 제7장 일부 지역밀착형 양로원의 기본 방침 및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이 장의 목적)

### 제64조

제2장에서 제5장까지(제 56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관계없이 일부 지역밀착형 양로원(시설의 부분에서 입주자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지역밀착형 양로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 방침 및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 장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설 기준)

### 제 65조

일부 지역밀착형 양로원 시설 기준은 제 61조와 제 5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나, 목욕탕, 의무실, 조리실, 세탁실 또는 세탁 시설, 오물 처리실, 간호 재료실과 사무실, 기타 운영상 필요한 시설은 입주자에게 하는 서비스의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 하나의 설비로 일반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간호)

### 제66조

일부 지역밀착형 양로원 간호는 제 62조와 제 5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준용)

### 제67조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9조, 제12조2에서 제14조까지, 제18조, 제20조에서 제23조및 제26조에서 제29조까지, 제31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8조규정은 일부 지역밀착형 양로원에 대해서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9조제2항 제3호 중 "제15조제5항"인 것은 "제15조제5항 및 제36조7항"으로, 동항 제4호 중 "제29조제2항"인 것은 "제 67조에서 준용하는 제29조제2항"으로 동항 제5호 중 "제31조제3항"인 것은 "제 67조에서 준용한 제 31조"로, 제23조제2항 중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2부터 제 31조까지"인 것은 "제15조, 제17조,제 19조, 제24조, 제25조, 제36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7조및 제62조및 제 67조에서 준용하는 제8조, 제9조, 제12조2부터 제 14조까지, 제 18조, 제 20조부터 제 23조까지,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 제45조및 제 58조"로 본다한다.

부칙

(시행 기일)

제1조

이 성령은 평성 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제2조

이 성령의 시행 시 현재 존재하는 양로원으로, 아동 복지 시설 최소 기준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쇼와 62년 보건 복지부 시행령 제12호) 부칙 제4조제1항(동령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 양로원과 양로원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쇼와 41년 보건 복지부 시행령 제19호 다음 조 제2항에서 "시설 운영 기준"이라고 한다) 제18조제2항 제16호의 규정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평성 16년 4월 1일 이후 전면적으로 단장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1조 제3항 제4호, 제35조제3항 제6호, 제55조제3항 제4호 및 제61조제3항 제6호의 규정은 당분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

이 성령의 시행 시 현재 존재하는 양로원 건물(기본 시설이 완성하는 것을 포함하고, 이 성령의 시행 이후에 증축을 받거나 또는 전면적으로 개축한 부분을 제외하고 다음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제11조제4항 제1호와 제55조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 제1호 및 제55조제4항 제1호 중 "네 사람"인 것은 "원칙적으로 네 사람"으로, 제11조제4항 제1호 및 제55조제4항 제1호 중 "1.65평방미터"인 것은 "화물 설비 등을 제외하고는 4.95평방미터"로 한다.

2. 이 성령의 시행 시 현재 존재하는 양로원으로 아동 복지 시설 최소 기준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부칙 제4조제2항(시설의 운영 기준 제20조규정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던 것에 관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항 중 "원칙적으로 네 사람"인 것은 "여덟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이 성령의 시행 시 현재 존재하는 양로원 건물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 제9호(식당 및 기능 훈련 객실 합계 면적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55조제4항 제9호(식



당 및 기능 훈련 객실 합계 면적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은 당분간 적용하지 않는다.

#### 제5조

평성 17년 3월 31일 사이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양로원에 있어 소규모 생활 단위형식 양로원 혹은 일부 소규모 생활 단위 형식 특별 양호 양로원이 아닌 것 또는 일부 소규모 생활 단위형 특별 양호원 이외의 부분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4호 중 "3"인 것은 "4.1"이라고 하다.

#### 제6조

일반 병상, 정신 병상(보호 보험법 시행령(평성 10년 정령 제 412호) 제4조제2항에 규정된 병상에 관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 및 부칙 제 8조에서 같다) 또는 요양 병상이 있는 병원의 일반 병상, 정신 병상 또는 요양 병상을 평성 24년 3월 31일 사이에 변환(해당 병원의 일반 병상, 정신 병상 또는 요양 병상의 병상 수를 감소시키는 것과 동시에, 해당 병원 설비 보호 노인 보건 시설, 간이 비용 양로원(노인 복지법 제24조6에서 규정하는 일반 양로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타 필요 간병인이 다른 사람을 입소 또는 입주시키기 위한 시설에 제공해주는 것을 말한다.)하고, 특별 양호 양로원을 개설하고자하는 경우에도 해당 전환에 관한 식당과 기능 훈련실에 대해서는 제11조제4항 9 제2호 및 제55조제4항 제9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식당은 1평방미터에 입소 정원을 곱하여 얻은 면적 이상으로 하고, 기능 훈련 실은 40평방미터 이상의 면적을 보유해야한다. 그러나 식사를 제공하거나 기능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 제안 또는 기능 훈련에 지장이 없는 넓이를 확보 할 수 있는 경우, 동일한 장소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제7조

일반 병상 또는 요양 병상이 있는 병원의 일반 병상 또는 요양 병상을 평성 24년 3월 31일 사이에 변환(해당 병원의 일반 병상 또는 요양 병상의 병상 수를 감소시키는 것과 동시에, 해당 병원 설비 보호 노인 보건 시설, 간이 비용 양로원, 기타 필요 간병인이 다른 사람을 입소 또는 입주시키기 위한 시설에 제공해주는 것을 말한다.)하고, 양로원을 개설하고자하는 경우에 해당 전환에 관한 식당과 기능 훈련실에 대해서는 제11조제4항 9 제2호 및 제55조제4항 9 제2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에 규정된 기준 중 하나에 적합해야한다.

- 1) 식당과 기능 훈련 객실이 각각 필요한 넓이를 가지는 것으로 하고 총 면적은 3평방미터에 입소 정원을 곱하여 얻은 면적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식사를 제공하거나 기능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 제안 또는 기능 훈련에 지

장이 없는 넓이를 확보 할 수 있는 경우, 동일한 장소로 할 수 있다.

- 2) 식당은 1평방미터에 입소 정원을 곱하여 얻은 면적 이상으로, 기능 훈련실은 40평방미터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을 것. 그러나 식사를 제공하거나 기능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 제안 또는 기능 훈련에 지장이 없는 넓이를 확보 할 수 있는 경우, 동일한 장소로 할 수 있다.

#### 제8조

일반 병상, 정신 병상이나 요양 병상이 있는 병원의 일반 병상, 정신 병상이나 요양 병상 또는 일반 병상이나 요양 병상이 있는 병원의 일반 병상이나 요양 병상을 평성 24년 3월 31일까지 사이의 전환(해당 병원의 일반 병상, 정신 병상이나 요양 병상 또는 해당 병원의 일반 병상이나 요양 병상의 병상 수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해당 병원 또는 진료소의 시설을 보호 노인 보건 시설, 간이 비영양로원, 기타 필요 간병인이 다른 사람을 입소 또는 입주시키기 위한 시설에 제공해주는 것을 말한다.)하고, 특별 양호 양로원을 개설하고자하는 경우에 제11조제6항 제1호, 제35조제6항 제1호, 제55조제6항 제1호와 제16조제6항 제1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해당 전환에 관한 복도의 범위에 대해서는 1.2미터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안쪽 복도의 너비는 1.6미터 이상으로 한다.

부칙(평성 12년 6월 1일 후생노동성령 제99호)

이 성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2년 6월 7일 보건복지부령 제100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성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4년 2월 22일 후생노동성령 제14호)

1. 이 성령은 보건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일(평성 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성령의 시행 시 현재 이 성령에 의한 개정 전의 양식에 의한 신청서에 대해서는 당분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평성 14년 8월 7일 후생노동성령 제107호)

(시행 기일)

제1조

이 성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제2조

이 성령의 시행 시 현재 존재하는 양로원(기본적인 시설이 완성하는 것을 포함하고, 이 성령의 시행 이후에 증축을 하거나 또는 개축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으로, 이 성령의 개정 후 양로원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새로운 표준"이라고 한다) 제3장 또는 제4장(제35조제4항 제1호 ① (4)와 동호 (3)으로 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 제35조제4항 제1호 ① (4)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① (4) 중 "13.2평방미터 이상을 표준"인 것은 "10.65평방미터 이상"으로, "21.3평방미터 이상을 표준"인 것은 "21.3평방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이 성령의 시행 시 현재 존재하는 양로원에 있어 새로운 기준 제3장 또는 제4장으로 규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 제35조제4항 제1호 ②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호 ② (3) 중 "2평방미터에 해당 공동생활실의 입주 정원을 곱하여 얻은 면적 이상을 표준"인 것은 "해당 입주자가 교류 또는 공동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넓이"로 한다.

(경과 조치)

제3조

이 성령의 시행 시 현재 존재하는 양로원(이 성령의 시행 후에 건물의 규모 또는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음 항과 제3항에서 같다)은 특별 양로원 또는 일부 특별 양로원이 아닌 것으로 본다.

2. 이 성령의 시행 시 현재 존재하는 양로원에 있어 새로운 기준 제12조 및 제3장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그 취지를 도도부현 지사(지방자치법(쇼와 22년 법률 제67호) 제 252조 19 제1항의 지정 도시(이하 "지정 도시"라고 한다) 및 동법 제 252조 20 제1항의 중핵시(이하 "중핵시"라고 한다)에서는 지정 도시 또는 중핵시의 시장. 다음 항에서 같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이 성령의 시행 시 현재 존재하는 양로원에 있어 새로운 기준 제12조 및 제4장

으로 규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그 취지를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청했다면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평성 15년 3월 14일 후생노동성령 제33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성령은 평성15년 월 첫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6년7월 9일 후생노동성령 제112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성령은 약사법 및 채혈 및 헌혈 알선 업무 조정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 "개정법"이라고 한다)의 시행일(평성 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이 성령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17년 9월 7일 후생노동성령 제139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성령은 평성 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로원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제9조

이 성령의 시행 시 현재 양로원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부칙 제2조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양로원에 대하여 성령의 개정 후 양로원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제4항 제1호 ① (4) (i)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호 ① (4) (i)에서 "13.2평방미터 이상을 표준"인 것은 "16.5평방미터 이상"으로, "21.3평방미터 이상을 표준"인 것은 "21.3평방미터 이상"으로 한다.

부칙(평성 18년 3월 14일 후생노동성령 제33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성령은 평성 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8년 3월 14일 후생노동성령 제38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성령은 평성 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제2조

이 성령의 시행 시 현재 양로원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평성 14년 후생노동성령 제107호) 부칙 제2조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양로원에 대해 이 성령의 개정 후 특별 양로원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이하 “신 기준”이라고 한다) 제61조제4항 제1호 ① (4) (i)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호 ① (4) (i)에서 “13.2평방미터 이상을 표준”인 것은 “16.5평방미터 이상”으로, “21.3평방미터 이상을 표준”인 것은 “21.3평방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이 성령의 시행 시 현재 양로원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특별 양로원에 관한 새로운 기준 제6조제4항 제1호 ② (3)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동호 ② (3) 중 “2평방미터에 해당 공동생활실의 입주 정원을 곱하여 얻은 면적 이상을 표준”인 것은 “해당 단위의 입주자들이 교류하고 공동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넓이”로 한다.

제3조

양로원에서 병설하는 지정 단기 입소 생활 보호 사업소 등(신 기준 제56조제1항에서 규정된 지정 단기 입소 생활 보호 사업소 등을 말한다.) 중 이 성령의 시행 시 현재 그 입소 인원이 해당 특별 양로원의 입소 정원을 초과하는 것(건설 중인 것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평성 18년 3월 31일 후생노동성령 제79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성령은 평성 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제 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9년 5월 31일 후생노동성령 제85호)

이 성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20년 3월 31일 후생노동성령 제77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성령은 평성 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20년 4월 10일 후생노동성령 제92호)

이 성령은 평성 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20년 9월 1일 후생노동성령 제137호)

이 성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21년 3월 30일 후생노동성령 제54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성령은 보호 보험법과 노인 복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20년 법률 제42호)의 시행일(평성 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산업일반





## 농·상·공업 등 제휴 사업 계획 승인 등에 관한 명령

(평성 20년 7월 18일일 내각부, 총무성, 재무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 교통성령 제1호)

최종개정 : 평성 21년 4월 1일 내각부, 총무성, 재무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령 제1호

중소기업인과 농림어업 종사자와의 제휴를 통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평성 20년 법률 제38호)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과 제9조규정에 의거, 농·상·공업 등 제휴 사업 계획 승인 등에 관한 명령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정의)

### 제1조

이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중소기업인과 농·임·어업자와의 제휴를 통한 사업 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농·상·공업 등 연계 사업 계획 승인 신청)

### 제2조

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농·상·공업 등 제휴 사업 계획을 받고자하는 중소기업인과 농림어업자는 그 농·상·공업 등 제휴 사업 계획의 대표자를 정하여 양식 제 1에 의한 신청서 한통과 그 사본 한 부를 주무대신에게 제출해야한다.

2. 전항의 신청서 및 그 사본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한다.

- 1) 해당 중소기업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그 농림어업인(개인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정관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서면
- 2) 해당 중소기업인(그 중소기업인이 법인인 경우로 그 직접 또는 간접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고 한다)이 법 제4조제2항 제2호 ①, ② 또는 ③에 규정된 조치를 할 경우, 해당 조치를 할 구성원을 포함한다) 및 그 농림어업의 최근 두 기간 동안의 사업 보고서, 대차 대조표와 손익 계산서(이 문서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연간 사업 내용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농·상·공업 등 제휴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신청)

### 제3조

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상·공업 등 제휴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자하는 인증 농·상·공업 등 제휴 사업자는 양식 제 2에 의한 신청서 한통과 그 사본 한 부를 주무대신에게 제출해야한다.

2. 전항의 신청서 및 그 사본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한다. 그러나 제2호에 규정된 서류는 이미 주무대신에게 제출한 해당 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것을 기재하고 해당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1) 해당 농·상·공업 등 제휴 사업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농상공업 등 제휴 사업의 실시 상황을 기재한 서류
- 2) 전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

(경미한 변경의 신고)

#### 제4조

법 제5조제1항 단, 주무성령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은 공인 농·상·공업 등 제휴 사업에 대해 제공해주는 장비, 설비 또는 장치의 종류 또는 대수의 변화이고, 인정 농·상·공업 등 제휴 사업 계획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주무대신이 인정한 것으로 한다.

(권한의 위임)

#### 제5조

법 제4조제1항 , 동조 제3항(제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무대신의 권한은 농공사업 등 제휴 사업 계획 대표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종합통신국장(오키나와 종합통신사무소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그러나 총무대신 스스로 그 권한을 실행하고자 할 때는, 그리 할 수 있다.

2. 법 제4조제1항, 동조 제3항(제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대신의 권한은 농공사업 등 제휴 사업 계획 대표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재무이사(후쿠오카 재무지국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후쿠오카 재무지국장) 또는 국세국장(오키나와 국세사무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단, 재무대신이 스스로 그 권한을 실행하고자 할 때는, 그리 할 수 있다.

3. 법 제4조제1항, 동조 제3항(제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생노동대신의 권한은 농공사업 등 제휴 사업 계획 대표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후생국장(시코쿠 후생지국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시코쿠 후생 지국장)에게 위임한다. 단, 보건대신이 스스로 그 권한을 실행하고자 할 때는, 그리 할 수 있다.

4. 법 제4조제1항, 동조 제3항(제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대신의 권한은 농공상업 등 제휴 사업 계획 대표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농정국장(홋카이도 농정사무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단, 농림수산대신이 스스로 그 권한을 실행하고자 할 때는, 그리 할 수 있다.

5. 법 제4조제1항, 동조 제3항(제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제4조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산업대신의 권한은 농공상업 등 제휴 사업 계획 대표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제산업국장에게 위임한다. 단, 경제산업대신이 스스로 그 권한을 실행하고자 할 때는, 그리 할 수 있다.

6. 법 제4조제1항, 동조 제3항(제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대신의 권한은 농공상업 등 제휴 사업 계획 대표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 정비 국장과 북해도 개발 국장, 지방운수국장(국토교통성 설치법(평성 11년 법률 제100호) 제4조제15호, 제18호, 제86호, 제87호, 제92호, 제93호 및 제118호에 규정된 사무 및 동조 제86호에 규정된 업무에 관한 동조 제19호와 제22호에 규정된 사무에 관한 권한은 운송감리부장을 포함한다) 또는 지역항공국장에게 위임한다. 단, 국토교통성대신이 스스로 그 권한을 실행하고자 할 때는, 그리 할 수 있다.

부칙

이 명령은 법의 시행일(평성 20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21년 4월 1일 내각부, 총무성, 재무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 교통성령 제1호)

이 명령은 평성 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식 제 1

양식 제 2

농·상·공업 등 제휴 지원 사업 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성령  
(평성 20년 7월 18일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령 제4호)

최종개정 : 평성 21년 4월 1일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령 제3호

중소기업인과 농림어업자와의 제휴를 통한 사업 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평성 20년 법률 제38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과 제 19조의 규정에 의거, 농공사업 등의 제휴 지원 사업 계획 승인 등에 관한 성령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정의)

제1조

이 성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중소기업인과 농림어업자와의 제휴를 통한 사업 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농상공업 등 제휴 지원 사업 계획 승인 신청)

제2조

법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농공사업 등 제휴 지원 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자하는 일반사단법인 혹은 일반재단법인(이하 "일반사단법인 등"이라고 한다) 또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양식 제 1의 신청서 한 통 및 그 사본 한 부를 주무대신에게 제출해야한다.

2. 일반사단법인 등이 만드는 농상공업 등 제휴 지원 사업 계획에 관한 전항의 신청서 및 그 사본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한다.

- 1) 일반사단법인은 정관, 임원 명단 및 직원 명단, 일반재단법인은 정관 및 임원 명단
- 2) 최근 세 기간의 사업 보고서, 대차 대조표와 손익 계산서(설립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일반사단법인 등은 설립 이후의 각 사업 연도에 관한 것)
- 3) 등기 사항 증명서
- 4) 인증 신청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5) 일반사단법인은 그 사원 총회에서 의결권 2분의 1 이상을 중소기업인이 보

유하고 있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일반재단법인은 설립 시 각출한 재산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 중소기업인에 의해 각출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3. 특정 비영리활동법인이 만드는 농상공업 등 제휴 지원 사업 계획에 관한 제1항의 신청서 및 그 사본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한다.

- 1) 정관, 임원 명단 및 직원 명부
- 2) 최근 세 기간 사업 보고서, 대차 대조표 및 수지 계산서(설립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특정 비영리활동법인은 성립 이후의 각 사업 연도에 관한 것), 최근의 재산 목록 및 신청일이 포함된 사업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 보고서
- 3) 등기 사항 증명서
- 4) 인증 신청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5) 사원 총회에서 표결 권한의 두 번째 이상을 중소기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농상공업 등 제휴 지원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신청)

### 제3조

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농상공업 등 제휴 지원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인증 농상공업 등 제휴 지원 사업자는 양식 제 2에 의한 신청서 한통과 그 사본 한 부를 주무대신에게 제출해야한다.

2. 전항의 신청서 및 그 사본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한다. 그러나 제2호에 규정된 서류는 이미 주무대신에게 제출하는 해당 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1) 해당 농상공업 등 제휴 지원 사업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농상공업 등 제휴 지원 사업의 실시 상황을 기재한 서류
- 2) 전조 제2항 각호와 제3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

(권한의 위임)

### 제4조

법 제6조제1항, 동조 제3항(제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조제1항과 제2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대신의 권한은 농상공업 등 제휴 지원 사업 계획 승인 받고자하는 일반사단법인 등이나 특정 비영리활동법인 또는 공인 농상공업 등 제휴 지원 사업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

방농정국장(홋카이도 농정사무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단, 농림수산대신이 스스로 그 권한을 실행하고자 할 때는 그리 한다.

2. 법 제6조제1항, 동조 제3항(제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산업대신의 권한은 농상공업 등 제휴 지원 사업 계획 승인 받고자하는 일반사단법인 등이나 특정 비영리활동 법인 또는 공인 농상공업 등 제휴 지원 사업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제산업국장에게 위임한다. 단, 경제산업대신이 스스로 그 권한을 실행하고자 할 때는 그리 한다.

부칙

(시행 기일)

제1조

이 성령은 법의 시행일(평성 20월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조정 정책)

제2조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평성 18년 법률 제48호)의 시행일 전 날까지의 사이에 다음의 표 상란에 기재된 이 성령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이 규정 중 동표 중란에 기재된 것은 각각 동표 하란에 기재된 것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일반사단법인 혹은 일반재단법인(이하 "일반사단법인 등"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 각호 별기 이외의 부분	일반사단법인 등
제2조제2항 제1호	일반사단법인
	일반재단법인은 정관
제2조제2항 제2호	손익 계산서(설립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일반사단법인 등은 설립 이후의 각 사업 연도에 관한 것)
제2조제2항 제5호	일반사단법인은 그 사원 총회에서의 의결권 2분의 1 이상을 중소기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일반재단법인은 설립 시 각출 받은 재산 가액
	각출 받고 있는 것

부칙(평성 21년 4월 1일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령 제3호)

이 성령은 평성 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식 제 1

양식 제 2



농림수산성 관계 연구 개발 시스템 개혁의 추진 등에 의한 연구 개발 능력의 강화 및 연구 개발 등의 효율적 추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평성 20년 10월 21일 농림수산성령 제68호)

연구 개발 시스템 개혁의 추진 등에 의한 연구 개발 능력의 강화 및 연구 개발 등의 효율적 추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평성 20년 정령 제 314호) 제3조제1항, 제6조제4항 제3호, 제8조제5항(이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제9조제5항(동영 제1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르며, 연구 개발 시스템의 개혁 추진 등에 의한 연구 개발 능력 강화 및 연구 개발 등의 효율적 추진 등에 관한 법률(평성 20년 법률 제63호) 및 동령을 수행하기 위해, 농림수산성 관계 연구 개발 시스템의 개혁 추진 등에 의한 연구 개발 능력 강화 및 연구 개발 등의 효율적인 추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외국인을 임용할 수 없는 직업의 범위)

제1조

연구 개발 시스템의 개혁 추진 등을 통한 연구 개발 능력 강화 및 연구 개발 등의 효율적 추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조제1항 명령에서 정한 직업은 농림수산 정책 연구소의 차장으로 한다.

(우리나라 법인 또는 외국 법인 등의 범위)

제2조

영 제6조제4항 제3호 명령으로 지정하는 우리나라 법인 또는 외국 법인 등은 다음에 열거하는 우리나라 법인 또는 외국 법인 등으로 한다.

- 1) 발명가 등이 속한 우리나라 법인 또는 외국 법인 등(이하 "특정 법인 등"이라고 한다)은 발행 주식의 총수, 출자 구좌의 총수 또는 출자 가액의 총액(이하 "발행 주식의 총수 등"이라고 한다) 100분의 50이 넘는 금액 또는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이하 "특정 자회사"라고 한다)
- 2) 특정 법인 등의 발행 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넘는 금액 또는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이하 "특정 모회사"라고 한다)
- 3) 법인이 특정 기업 등에 의해 소유되는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수 또는 금액과 그 특정 법인 등에 관한 특정 자회사에 의해 소유되는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수 또는 금액에 해당 특정 법인 등의 해당 특정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수 또는 금액과 합계를 주식 또는 출자의 수 또는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 주식의 총수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넘는 것

- 4) 법인이 그 소유의 특정 법인 등의 주식 또는 출자의 수 또는 금액과 그 법인에 관련된 자회사(그 법인은 발행 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이 넘는 금액 또는 주식 또는 출자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하는 그 특정 법인 등의 주식 또는 출자의 수 또는 금액에 해당 법인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수 또는 금액과의 합계 주식 또는 출자의 수 또는 금액을 특정 법인 등의 발행 주식의 총수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넘는 것
- 5) 특정 모기업은 발행 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이 넘는 금액 또는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
- 6) 특정 법인 등 각 당사자가 각각 보유하는 특허권 등에 관한 특허 발명 또는 등록 실용 새로운 안의 실시를 다른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의무를 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으로, 영 제6조제3항에 규정된 특허권 등이 국가와 해당 법인과 공유에 관련된 경우에 그 법인의 특허 발명이나 등록 실용 새로운 안의 실시에 대한 국가의 지분에 관한 대가를 받지 않고, 혹은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거나 또는 국가의 해당 특허권 등에 관한 법인에 대해 통상 실시권의 허락을 무료로 또는 그 허락의 대가를 시가보다 낮게 결정하는 것이 국제 공동 연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 하다고 인정되는 것

(국가 시설의 할인 이용 절차)

### 제3조

시행령 별표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규정된 기관(이하 그냥 "기관"이라고 한다)의 국가 연구 시설의 사용에 관해서 영 제8조제1항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기 양식 제 1에 의한 신청서의 원본 한통과 사본 1통을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2. 농림수산대신은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영 제8조제1항 인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자에게 별기 양식 제2호에 따른 인증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국유지의 할인 사용 절차)

### 제4조

기관의 부지 내에 정비된 시설에 제공되는 토지의 사용에 관해 영 제9조제1항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기 양식 제3호에 의한 신청서의 원본 한통과 사본 1통을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2. 농림수산대신은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영 제9조제1항의 인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자에게 별기 양식 제4호에 따른 인증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핵심 연구 기관의 공시)

제5조

연구 개발 시스템의 개혁 추진 등을 통한 연구 개발 능력 강화 및 연구 개발 등의 효율적인 추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공시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 1) 핵심 연구 기관의 명칭
- 2) 법 제37조제1항의 특정 분야

(핵심 연구 기관에 관한 특례)

제6조

기관이 핵심 연구 기관인 경우에 해당 기관의 국가 연구 시설의 사용에 관해서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기 양식 제5호에 의한 신청서의 원본 한통과 사본 1통을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해야한다.

2. 농림수산대신은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인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자에게 별기 양식 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기관이 핵심 연구 기관인 경우에 해당 기관 부지 내에 정비된 시설에 제공되는 토지의 사용에 관해, 영 제12조제1항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기 양식 제7호에 의한 신청서의 원본 한통과 사본 한통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해야한다.

2. 농림수산대신은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영 제12조제1항의 인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자에게 별기 양식 제8호에 따른 인증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첨부

(시행 기일)

제1조

이 성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기 양식 제 1 (제 3 조 제 1 항 관계)
- 별기 양식 제 2 (제 3 조 제 2 항 관계)
- 별기 양식 제 3 (제 4 조 제 1 항 관계)
- 별기 양식 제 4 (제 4 조 제 2 항 관계)
- 별기 양식 제 5 (제 6 조 제 1 항 관계)
- 별기 양식 제 6 (제 6 조 제 2 항 관계)
- 별기 양식 제 7 (제 7 조 제 1 항 관계)
- 별기 양식 제 8 (제 7 조 제 2 항 관계)

## 이분야 연계 신사업 분야 개척에 관한 명령

(평성 17년 5월 2일 내각부, 총무성, 재무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령 제3호)

최종개정 : 평성 18년 4월 28일 내각부, 총무성, 재무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령 제3호

중소기업의 신사업 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평성 11년 법률 제18호) 제11조제1항과 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이분야 연계 신사업 분야 개척에 대한 명령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이분야 연계 신사업 분야 개척 계획 승인 신청)

### 제1조

중소기업의 신사업 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분야와 연계해 신사업 분야의 개척 계획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인은 양식 제 1에 의한 신청서 한통과 그 사본 한 부를 주무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전항의 신청서 및 그 사본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1) 해당 중소기업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의 정관
- 2) 해당 중소기업인(법 제2조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사람에 있어서는 그 이분야 연계 신사업 분야 개척 계획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의 최근 두 기간 동안의 사업 보고서, 대차 대조표와 손익 계산서(이 문서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연간 사업 내용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 3) 이분야 연계 신사업 분야 개척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인과 대기업 및 이분야 연계 신사업 분야 개척의 실시에 협력하는 자(이하 "연대 참가자"로 총칭한다)의 그 이분야 연계 신사업 분야 개척 계획에 대한 동의서 사본

3. 법 제11조제1항의 대표자는 한 명으로 한다.

(이분야 연계 신사업 분야 개척 계획 변경에 관한 승인 신청)

### 제2조

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분야와 연계하여 새로운 사업 분야의 개척 계획 변경에 관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인은 양식 제 2에 의한 신청서 한통과 그 사본 한 부를 주무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전항의 신청서 및 그 사본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1) 그러한 이분야 연계 신사업 분야 개척 계획에 따라 실행되는 이분야 연계 신사업 분야 개척에 관한 사업의 실시 상황을 기재한 서류
- 2) 정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변경 후의 정관
- 3) 전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서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신고)

제3조

법 제12조제1항 단, 관할 성령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관한 변경으로 한다.

- 1) 통합 참가자 이름
- 2) 통합 참가자 주소
- 3) 통합 참가자 대표의 성명

부칙

이 명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8년 4월 28일 내각부, 총무성, 재무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령 제3호)

이 명령은 회사법의 시행일(평성 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식 제 1 (생략)

양식 제 2 (생략)

전통 공예품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쇼와 49년 5월 25일 법률 제57호)

최종개정 : 평성 18년 6월 2일 법률 50호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특정 지역에서 주로 전통적인 기술이나 기법 등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전통 공예품이 민중의 삶에 품어져 계승되어 온 것이며, 앞으로도 그것이 계속 존재하는 기반이 있는 것에 따라 이러한 전통 공예품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그로써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 공예품의 지정 등)

제2조

경제산업대신은 산업 구조 심의회의 의견을 듣고, 공예품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전통 공예품으로 지정해야 한다.

- 1) 주로 일상생활에 제공되는 것
  - 2) 그 제조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 수공업적인 것
  - 3) 전통적인 기술이나 기법에 의해 제조되는 것
  - 4)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원료를 주된 재료로 이용해 제조되는 것
  - 5) 일정한 지역에서 적지 않은 수의 사람이 그 제조를 수행 또는 그 제조에 종사하고 있을 것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 공예품 지정은 해당 전통 공예품 제조에 관련된 전통적인 기술 또는 기법 및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원자재 및 그 전통 공예품이 생산되는 지역을 정하여, 이행되어야 한다.
3. 사업협동조합 등(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상공조합, 기타 법인(정령으로 지정하는 기준에 따른 정관 또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공예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를 직접 또는 간접 구성원(이하 그냥 "구성원"이라한다)으로 해당 공예품을 제조하는 지역에서 그 공예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 공예품이 전통 공예품으로 지정도록 해당 공예품 제조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도도부현지사(해당 지역의 전부가 한 시정촌(특별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촌장)를 통해 경제산업대신에게 신청할 수 있다.

4. 경제산업대신은 전통 공예품 지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는 것으로 한다.
5. 경제산업대신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 공예에 대한 사정의 변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다음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산업 구조심의회회의 의견을 듣고, 제2항에 규정된 지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6. 경제산업대신은 전통 공예품이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산업 구조 심의회회의 의견을 듣고,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7.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5항의 전통 공예품 지정 내용 변경에 대해서,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전통적 공예품 지정 취소에 대해서 준용한다.

(기본 지침)

### 제3조

경제산업대신은 전통 공예 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고 한다)을 결정해야 한다.

2. 기본 지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

- 1) 전통 공예 산업 진흥의 기본 방향
- 2) 종사자의 후계자 확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3) 전통적인 기술 또는 기술의 계승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4) 전통 공예품의 수요 개척에 관한 사항
- 5) 전통 공예품 또는 전통적인 기술이나 기법을 활용한 신상품의 개발과 제조에 관한 사항
- 6) 기타 전통 공예 산업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3. 경제산업대신은 기본지침을 결정하고, 또는 이것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산업 구조심의회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경제산업대신은 기본지침을 결정하고, 또는 이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해야 한다.

(진흥 계획)

### 제4조

제조업자(전통 공예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협동조합 등(이하 "제조협동조합 등"이라고 한다)으로 그 전통 공예품이 생산되는 지역의 제조업자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하 "특정 제조 협동조합 등"이라고 한다)은 전통 공예 산업에 관한 진흥 계획(이하 "진흥 계획"이라고 한다)을 만들고 이것을 그 전통 공예품을 제조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해당 지역의 전부가 하나의 도시 지역에 속하



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촌의 장.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22조제3항 및 제 17조를 제외하고, 다음 하단에서는 "도도부현 지사"라고 한다)를 통해 경제산업대신에게 제출하고 그 진흥 계획이 적절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

2.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진흥 계획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고 의견을 교부하고, 경제산업대신에게 송부해야 한다.

(진흥 계획의 변경 등)

#### 제5조

전조 제1항의 인정을 받은 특정 제조협동조합 등은 해당 인증에 관한 진흥 계획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경제산업대신의 인정을 받아야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신청은 도도부현 지사를 통해 실행해야한다.

3. 경제산업대신은 전조 제1항의 인정을 받은 특정 제조협동조합 등 또는 그 구성원이 그러한 인정에 관한 진흥 계획(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인증이 있는 때에는 해당 변경 후의 것. "공인 진흥 계획"이라고 한다)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4. 전조 제2항의 규정은 진흥 계획의 변경에 준용한다.

#### 제6조

진흥 계획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

- 1) 종사자의 후계자 확보 및 육성 및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 2) 기술 또는 기술의 계승과 개선, 기타 품질의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3) 원자재 확보 및 원자재에 대한 연구에 관한 사항
- 4) 수요 개척에 관한 사항
- 5) 공장, 기타 작업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6) 원재료의 공동 구입 제품의 공동 판매, 기타 사업의 공동화에 관한 사항
- 7) 품질 표시,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
- 8) 노령자인 종사자, 기술에 숙련된 종사자, 기타 종사자의 복리 후생에 관한 사항
- 9) 기타 전통 공예 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공동 진흥 계획)

#### 제7조

특정 제조협동조합 등은 판매업체(전통 공예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판매협동조합 등(판매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상공조합, 기타 정령으로 지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함께 전조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규정된 사항(동조 제6호에서 규정된 사항으로 제

품의 공동 판매에 관한 사항, 동조 제7호에서 규정된 사항으로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전통 공예품 산업에 관한 협력진흥계획서(이하 "협력진흥계획"이라한다)를 작성하고, 이것을 도도부현 지사를 통해 경제산업 대신에게 제출하고 그 공동 진흥 계획이 적절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

2. 제4조제2항의 규정은 공동 진흥 계획에 준용한다.

(공동 진흥 계획의 변경 등)

#### 제8조

전조 제1항의 인정을 받은 특정 제조협동조합 제품과 판매사업자 또는 판매협동조합 등은 해당 인증에 관한 협력진흥계획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경제산업 대신의 인정을 받아야한다 .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신청은 도도부현 지사를 통해 실행해야한다.

3. 경제산업대신은 전조 제1항의 인정을 받은 특정제조협동조합 등 또는 그 구성원 또는 판매사업자나 판매협동조합 등 또는 그 구성원이 해당 인증에 관한 협력진흥 계획(제1항의 규정 의한 변경 인증이 있을 때에는 그 수정된 것. 이하 "공인 협력진흥계획"이라고 한다)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4. 제4조제2항의 규정은 공동 진흥 계획의 변경에 준용한다.

(활성화 계획)

#### 제9조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 협동조합 등(특정제조협동조합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다음 조에서 같다)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활성화 사업(다음에 열거하는 사업 중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사업으로 전통 공예품 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고 한다)을 만들고 이것을 도도부현 지사를 통해 경제 산업대신에게 제출하고, 그 활성화 계획이 적절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 협동조합 등이 협력하여 활성화 계획을 만들 때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지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자를 정하여, 이를 도도부현 지사를 통해 경제산업대신에게 제출해야한다.

1)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업

2) 기술 또는 기술의 개선, 기타 품질 개선에 관한 사업

3) 원재료에 대한 연구에 관한 사업

4) 수요 개척에 관한 사업

5) 원재료의 공동 구입, 제품의 공동 판매, 기타 사업의 공동화에 관한 사업

6)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 7) 신상품의 개발 또는 생산에 관한 사업
2. 제4조제2항의 규정은 활성화 계획을 준용한다.

(활성화 계획의 변경 등)

제10조

- 전조 제1항의 인정을 받은 제조업자 혹은 제조협동조합 등은 해당 인증에 관한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경제산업대신의 인정을 받아야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신청은 도도부현 지사를 통해 실행해야한다.
3. 경제산업대신은 전조 제1항의 인정을 받은 활성화 계획(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인증이 있을 때에는 그 수정된 것. 이하 "인증 활성화 계획"이라고 한다)에 관련된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는 자(제조업 협동조합 등의 구성원을 포함한다)가 해당 인증 활성화 계획에 따라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4. 제4조제2항 규정은 활성화 계획 변경에 준용한다.

(연계 활성화 계획)

제11조

-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협동조합 등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통합 제조업자(다른 전통 공예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통합생산협동조합 등(통합 제조 사업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는 생산협동조합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함께 협력하여 실시하는 활성화 사업(이하 "연계 활성화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계획(이하 "연계 활성화 계획"이라고 한다)을 만들고 경제산업성령으로 지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자를 정하여, 이를 도도부현 지사를 통해 경제산업대신에게 제출하고 해당 협력 활성화 계획이 적절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
2. 제4조제2항 규정은 협력 활성화 계획을 준용한다.

(연계 활성화 계획의 변경 등)

제12조

- 전조 제1항의 인정을 받은 제조업자 혹은 제조협동조합 제품과 함께 제조업자 또는 통합 생산협동조합 등은 해당 인증에 관한 협력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경제산업대신의 인증을 받아야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신청은 도도부현 지사를 통해 실행해야한다.
3. 경제산업대신은 전조 제1항의 인정을 받은 협력 활성화 계획(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인증이 있을 때에는 그 수정된 것. 이하 "공인 연계 활성화 계획"이라고 한다)에 관한 협력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는 자(제조업 협동조합 제품과 함께

생산 협동조합 등의 구성원을 포함한다)가 그 공인 협력 활성화 계획에 따라 연계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4. 제4조제2항 규정은 협력 활성화 계획 변경에 준용한다.

(지원 계획)

### 제13조

종사자의 후계자 확보 및 육성, 소비자 등과의 교류 추진, 기타 전통 공예품 산업 진흥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고 한다)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지원 사업에 관한 계획서(이하 "지원 계획"이라고 한다)를 만들고 이것을 해당 지원 계획에 관한 전통 공예품을 제조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를 통해 경제 산업 대신에게 제출하고 그 지원 계획이 적절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

2. 제4조제2항 규정은 지원 계획을 준용한다.

(지원 계획의 변경 등)

### 제14조

전조 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는 그 인증에 관한 지원 계획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경제산업대신의 인정을 받아야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신청은 도도부현 지사를 통해 실행해야한다.

3. 경제산업대신은 전조 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가 그 자격에 관한 지원 계획(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인증이 있는 때에는 그 수정된 것. 이하 "인증 지원 계획"이라고 한다)에 따라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4. 제4조제2항 규정은 지원 계획의 변경에 준용한다.

(성령에의 위임)

### 제15조

제 4조에서부터 전조까지 결정한 것 외에 진흥계획, 공동 진흥계획, 활성화계획, 연계활성화 계획 또는 지원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인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경제산업성령으로 지정한다.

(경비 보조)

제1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증 진흥 계획이나 공인 협력 진흥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는 특정제조협동조합 등 판매 사업자나 판매협동조합 등 인증 활성화 계획이나 공인 협력 활성화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는 자 또는 인증 지원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해 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자금의 확보 등)

제1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증 진흥 계획, 공인 협력 진흥 계획, 인증 활성화 계획, 공인 협력 활성화 계획 또는 인증 지원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확보 또는 그 용통의 알선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중소기업 신용 보험법의 특례)

제18조

제13조제1항의 인정을 받은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일반 사단 법인으로서는 그 사원 총회에서 의결권 2분의 1 이상을 중소기업신용보험법(쇼와 25년 법률 제 264호)둘째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 일반재단법인으로는 설립 시 출자 받은 재산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 동항 중소기업에 의해 출자 받은 것에 한한다. 이하 "일반사단법인 등"이라한다)으로, 인증 지원 계획에 따라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을 관한 중소기업 신용 보험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채무 보증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사단법인 등을 동법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인으로 간주하고, 동법 제 3조, 제3조2와 제 4조에서 제 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3조제1항과 제3조2 제1항 규정의 적용에 관해 이 약관에서 "차입"인 것은 "전통 공예품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인증 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 사업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차입"으로 한다.

(세제상의 조치)

제1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증 진흥 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세제상의 필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게시)

제20조

특정 제조협동조합 등은 그 구성원인 제조업자가 제조하는 전통 공예품에 전통 공예품으로 지정되어있는 것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지도와 조언)

제21조

경제산업대신은 제조사업자나 판매사업자, 활성화 사업이나 연계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는 자 또는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해 전통 공예품 산업 진흥에 관해 필요한 지침과 조언을 할 수 있다.

(보고 징수)

제22조

경제산업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공인 진흥 계획이나 공인 협력 진흥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특정 제조협동조합 등 판매사업자나 판매협동조합 등 또는 인증 활성화 계획이나 공인 협력 활성화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의 실시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경제산업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인증 진흥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특정 제조협동조합 등의 구성원인 제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3. 경제산업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인증 지원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의 실시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전통 공예품 산업 진흥 협회의 설립)

제23조

그 명칭 중에 전통 공예품 산업 진흥 협회라는 문자를 이용하는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 전통공예산업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생산협동조합 등을 설립할 때에는 사원 또는 설립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것에 한해 설립 가능하다.

2. 전항의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이하 "협회"라고 한다)의 설립 등기의 신청서에는 제조협동조합 등을 설립 시 사원 또는 설립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경제산업대신의 허가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설립 신고)

제23조2

협회는 설립된 경우, 설립 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사본을 첨부하여 그 일을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해야한다.

(협회의 업무)

제24조

협회는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1) 전통 공예품 제조 사업에 대한 경영 개선 및 합리화, 기타 해당 사업의 건전한 경영에 관해 조사, 연구 및 지도를 실시하는 것.
- 2) 전시회 개최, 그 외에 수요 개척을 실행하는 것.
- 3) 회원에 대해, 전통 공예품에 대한 수요 상황, 생산 기술이나 기법, 재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4) 진흥 계획과 협력 진흥 계획 수립 및 실시에 대한 지도와 조언 등을 하는 것.
- 5) 전통 공예품의 원재료, 제조 과정, 품질 등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
- 6) 전통 공예품의 품질 표시에 대한 지도와 조언 등을 하는 것.
- 7) 전통 공예품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조사를 실시하는 것.
- 8) 전통적인 기술 또는 기술에 숙련된 요원의 인증을 수행하는 것.
- 9) 활성화 사업, 연계 활성화 사업 및 지원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10) 기타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

(협회 업무의 감독)

제24조2

협회의 업무는 경제산업대신의 감독에 속한다.

2. 경제산업대신은 협회의 업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당 업무 및 협회의 재산 상황을 검사하거나 또는 협회에 대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 감독상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명칭 사용 금지)

제25조

협회가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전통 공예 산업 진흥 협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안 된다.

(협회에 대한 보조)

제2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에 대해 제 24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이 처리하는 업무)

제27조

이 법률에서 규정된 경제산업대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는 정령으로 지정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 또는 시정촌 장이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제28조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대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정령으로 지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산업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업무 구분)

제29조

제2조제4항(동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업무는 지방자치법(쇼와 22년 법률 제67호) 제2조제9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제1호 법정 수탁 사무로 한다.

(벌칙)

제30조

제 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은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대표자 또는 관리인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단 등"이라고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대표자(사단 등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이나 사람의 대리인, 고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해서 전항의 위반 행위를 했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하여 동항의 형을 과한다.

3. 사단 등에 대해서 전항의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소송 행위 당 해당 사단 등을 대표하는 것 외에 법인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할 경우의 형사 소송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

협회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3조2의 규정을 위반하여 협회의 설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때.



2) 제24조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절, 방해, 혹은 기피하거나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위반한 때.

### 제32조

제 25조의 규정을 위반한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시행 기일)

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58년 12월 2일 법률 제78호)

1. 이 법(제 1조를 제외한다)은 쇼와 5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법의 시행일 전날의 법률 규정에 따라 기관 등에서, 이 법률의 시행일 이후에는 국가 행정 조직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개정 후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정령 (이하 " 관계 정령 "이라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과 조치, 기타 이 법률의 시행에 수반하는 관계 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해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부칙(평성 4년 5월 6일 법률 제41호) 발췌

(시행 기일)

###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 제2조

이 법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6년 6월 29일 법률 제49호) 발췌

(시행 기일)

1. 이 법률 중 제1장의 규정 및 다음 각 규정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평성 6년 법률 제48호) 중 지방자치법(쇼와 22년 법률 제67호) 제 2편 제 2 장 개정 규

정의 시행일로부터, 제2장의 규정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 중 지방자치법 제 3편 제3장 개정 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7년 11월 1일 법률 제128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개월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8년 5월 2일 법률 제49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1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호에서 규정된 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 250조의 다음 5조, 절명과 두관 및 관명을 추가하는 개정 규정(동법 제 250조의 9 제1항에 관한 부분(두 의원의 동의를 얻기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한한다), 제40조중 자연 공원법 부칙 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 규정(동법 부칙 제10항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 244조의 규정(농업 개혁 조장법 제14조3의 개정 규정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및 제 472조의 규정(시정촌 합병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8조및 제 17조의 개정 규정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 7조, 제 10조, 제 12조, 제59조단, 제60조 제4항 및 제5항, 제 73조, 제 77조, 제 157조 제4항에서 제6항까지의 제 160조, 제 163조, 제 164조 및 제 202조의 규정 공포한 날.

(국가 등의 업무)

제 159조

이 법에 의한 개정 전 각각의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 이 법 시행 전에 지방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정령에 의해 관리되거나 집행하는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사무(부칙 제 161조에 "국가 등의 사무"라고 한다)는 법 시행 후, 지방 공공단체가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정령에 의해 해당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로 취급하는 것으로 하다.

(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제 160조

이 법률(부칙 제1조각호에서 규정된 조항은 해당 각 조항. 이하 이 조 및 부칙 제 163조에서 같다)의 시행 전에 개정 전 각각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한 허가 등의 처분, 기타 행위(이하 이 조에서 "처분 등의 행위"라고 한다) 또는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개정 전 각각의 법률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허가 등의 신청, 기타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신청 등의 행위"라고 한다)에서 이 법률의 시행일부터 이 활동에 관한 행정사무를 해야 할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되는 것은, 부칙 제 2조에서 전조까지의 규정 또는 개정 후의 각각 법률(이것에 근거한 명령을 포함한다)의 경과 조치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률의 시행 일 이후에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 적용에 대해서는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의 해당 규정에 의한 처분 등의 행위 또는 신청 등의 행위로 본다.

2. 이 법 시행 전에 개정 전 각각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기관에 신고, 제출, 기타 수속을 해야 하는 사항이 법률의 시행일 전에 그 절차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률 및 이에 근거한 정령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것 외에, 이것을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해당 기관에 보고, 신고, 제출, 그 외에 기타의 수속을 해야하는 사항이 절차가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법에 의한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의 신청에 관한 경과 조치)

제 161 조

시행일 전에 한 국가 등의 사무에 관한 처분에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이하 이 조에서 "처분청"이라고 한다)에 시행일 전에 행정 불복 심사법에서 규정하는 상급 행정청(이하 이 조에서 "상급 행정청"이라고 한다)이 동법에 의한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에도 그 처분청에 이어 상급 행정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 불복 심사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처분청의 상급 행정청으로

간주된 행정청은 시행일 이전에 그 처분청의 상급 행정청이었던 행정청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에도 상급 행정청으로 간주된 행정청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이 행정 불복 심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로 하는 업무는 새로운 지방자치법 제2조제9항 제1호로 규정하는 제1호 법정 수탁 사무로 한다.

(수수료에 관한 경과 조치)

제 162조

시행일 이전에 이 법에 의한 개정 전 각각의 법률(이것에 근거한 명령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 법률 및 이에 근거한 정령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제 163조

이 법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기타 경과 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제 164조

이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 조치(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를 포함한다)는 정령으로 지정한다.

2. 부칙 제 18조, 제51조 및 제 184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지정한다.

(검토)

제 250조

새로운 지방자치법 제2조제9항 제1호로 규정하는 제1호 법정 수탁 사무는 가능한 새로 마련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지방자치법 별표 제 1 및 새로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정령에 표시된 것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검토를 추가하고 적절한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제 251조

정부는 지방 공공단체가 사무와 사업을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에 따라 지방세재원의 충실한 확보의 방도에 대해 경제 상황의 추이 등을 감안하면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제 252조

정부는 의료 보험 제도, 연금 제도 등 개혁에 따라 사회보험 업무 처리 체제, 이것에 종사하는 직원의 본연의 자세 등에 대해서 피보험자 등의 편의를 확보하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검토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부칙(평성 11년 7월 16일 법률 제102호) 발췌

(시행 기일)

### 제1조

이 법은 내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11년 법률 88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호에 규정된 규정은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 부칙 제10조제1항 및 제5항, 제14조제3항, 제 23조, 제28조및 제30조규정 공포한 날

(직원의 신분 인계)

### 제3조

이 법률의 시행 시 종전의 총리부, 법무성, 외무성, 대장성, 문부성, 후생성, 농림수산성, 통상산업성, 운수성, 우정성, 노동성, 건설성 또는 자치성(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부성"이라고 한다)의 직원(국가 행정 조직법(쇼와 23년 법률 제120호) 제8조 심의회 등의 회장 또는 위원장 및 위원, 중앙 방재 회의 위원, 일본 산업 표준 조사위원회의 회장과 위원 및 이들 과 유사한 사람으로 정령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외)에 있는 자는 별도로 발령을 발하지 않는 한, 동일한 근로 조건을 가지고 이 법 시행 후 내각부,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혹은 환경청(이하 이 조에서 "새로운 부성"이라고 한다) 또는 이것이 속한 정부 기관이나 기관 중 이 법의 시행 시 현재 해당 직원이 속한 종전의 부성 또는 부서 혹은 기관의 상당 새로운 부성 또는 이것이 속한 부서 혹은 기관으로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것의 직원이 되는 것으로 한다.

(별도로 정하는 경과 조치)

### 제3조

제 2조에서 전조까지 규정한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 조치는 따로 법률로 지정한다.

부칙(평성 11년 12월 22일 법률 제 160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제2조 및 제 3조를 제외한다)은 평성 1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1년 12월 22일 법률 제 222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1년 12월 22일 법률 제 223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3년 4월 18일 법률 제33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인증 활용 계획에 관한 경과 조치)

제2조

이 법에 의한 개정 전의 전통 공예품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인증된 사용 계획에 관한 계획 변경 승인 및 취소, 전통 공예품 관련 안전에 대해 중소기업 신용 보험법 특례 및 신고 징수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제3조

이 법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전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예에 의하는 것으로 되는 보고 징수에 관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정령에의 위임)

제4조

전 2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지정한다.

부칙(평성 18년 6월 2일 법률 50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법률은 일반사단·재단법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조정 정책)

2. 범죄의 국제화와 조직 및 정보 처리의 고도화에 대처하기 위한 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18년 법률 제 호)의 시행일이 시행일 후가 되는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이 법의 집행 전 날 사이의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및 범죄 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평성 11년 법률 제136호. 다음 항에서 "조직범죄 처벌법"이라고 한다) 별표 제62호 규정의 적용은 동호 중 "중간 법인법(평성 13년 법률 제 49호) 제 156조(이사 등의 특별 배임)의 죄를"인 것은 "일반사단법인과 일반적 재단법인에 관한 법률(평성 18년 법률 제48호) 제 334조(이사 등의 특별 배임)의 범죄"로 한다.

3.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동항의 경우에도 범죄의 국제화와 조직 및 정보 처리의 고도화에 대처하기 위한 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 전 날 사이의 조직범죄처벌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제 457조의 규정에 의해 종전의 예에 의한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구 중간법인법 제 157조(이사 등의 특별 배임)의 범죄는 조직범죄 처벌법 별표 제62호에 규정된 범죄로 간주한다.

전통 공예품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쇼와 49년 5월 25일 정령 제 177호)

최종개정 : 평성 13년 4월 1일 정령 제 163호

내각은 전통 공예품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쇼와 49년 법률 제57호) 제2조제3항과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이 정령을 제정한다.

(정관 등의 기재 사항 기준)

제1조

전통 공예품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3항 정령으로 지정하는 기준은 정관 또는 규약에 기재된 사항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한다.

- 1) 공예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 2) 구성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는 것
- 3) 구성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이 평등한 것
- 4) 기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준

(공예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표하는 단체의 요건)

제2조

법 제2조제3항 정령으로 지정하는 요건은 사업협동조합 등(동향 사업협동조합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일)에서 해당 공예품을 제조하는 지역에서 해당 공예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의 2분의 1 이상인 자가 그 직접 또는 간접 구성원(이하 그냥 "구성원"이라고 한다)으로 되어 있는 자(사업협동조합 등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해당 공예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의 2분의 1 이상이 그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자 중, 그 구성원인 해당 사업자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인 것으로 한다.

(전통 공예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표하는 단체의 요건)

제3조

법 제4조제1항 정령으로 지정하는 요건은 생산협동조합 등(동향 제조협동조합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일)에서 그 전통 공예품을 제조하는 지역에서 해당



전통 공예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의 2분의 1 이상이 그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자 (제조업협동조합 등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그러한 전통 공예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의 2분의 1 이상이 그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자 중, 그 구성원인 해당 사업자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인 것으로 한다.

(법인)

제4조

법 제7조제1항 정령으로 지정하는 법인은 사업협동소조합으로 한다.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이 처리하는 업무)

제5조

전통 공예품에서 그 제조되는 지역 전체가 하나의 도도부현의 구역에 속한 것에 관한 진흥 계획(법 제4조제1항의 진흥 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그 전통 공예품에 관한 인증 진흥 계획(법 제5조제3항 인증 진흥 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실시가 끝난 후 실시되는 것에 관한 법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경제산업대신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는 해당 도도부현 지사(그 전통 공예품이 제조되는 지역 전체가 하나의 시정촌(특별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촌의 장)가 행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 중 "도도부현 지사(해당 지역의 전부가 하나의 시정촌 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촌의 장.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22조제3항 및 제 27조를 제외하고, 이하 간단하게 "도도부현 지사"라고 한다)를 통해 경제산업대신"인 것은 "도도부현 지사(해당 지역의 전부가 하나의 시정촌 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22조제3항 및 제 27조를 제외하고, 이하 간단하게 "도도부현 지사"라고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법 제5조제2항과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제1항의 경우에는 법 중 동항에 규정하는 사무에 관한 경제산업대신에 대한 규정은 도도부현 지사 또는 시정촌의 장에 관한 규정으로, 각각 해당 도도부현 지사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권한의 위임)

제6조

전통 공예품에서 그 제조되는 지역이 두 개 이상의 도도부현의 지역에 걸치고, 한 경제산업국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것에 관한 진흥 계획에 대해서는, 그 전통 공예품에 관련된 인증 진흥 계획의 실시가 끝난 후 실시되는 것에 관한 법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대신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는 해당 경제산업국장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4년 5월 6일 정령 제 171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4년 9월 4일 정령 제 292호)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6년 12월 21일 정령 제 398호)

이 정령은 지방자치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중 제 2편 제12장의 개정 규정 및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제1장의 규정 및 부칙 제2항의 시행일(평성 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1년 12월 3일 제 311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평성 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2년 6월 7일 정령 제 311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내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11년 법률 제88호)의 시행일(평성 1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3년 4월 18일 정령 제 163호)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통 공예 품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평성 13년 4월 18일 경제산업성령 제146호)

최종개정 : 평성 20년 12월 1일 경제산업성령 제82호

전통 공예품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13년 법률 제 333호)의 시행에 따라, 전통 공예품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쇼와 49년 법률 제57호) 제9조제1항 과 제11조제1항 및 전통 공예품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쇼와 49년 정령 제 177호) 제1조제4호 규정에 의거, 동법 및 동령을 실시하기 위한 전통 공예품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전부를 개정하는 성령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제1조

이 성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전통 공예품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정관 등의 기재 사항 기준)

제2조

전통 공예품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5조에서 "령"이라고 한다) 제1조 제4호 경제산업성령으로 지정하는 기준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1) 공예품 제조업자가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것
- 2) 대표자에 대하여 그 선임 절차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
- 3) 정관 또는 약관의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총회 또는 대표 회의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전통 공예품 지정 제기)

제3조

법 제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전통 공예품 지정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업협동조합 등은 양식 제 1에 의한 신고서 한통과 그 사본 한통에 각각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이하 이 조 및 다음 조 제1항에서 "제기에 관한 첨부 서류"라고 한다)를 첨

부하여 해당 제기에 관한 공예품이 생산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구청원서에 관한 공예 생산되는 지역이 두 개 이상의 도도부현의 지역에 걸친 경우에는 그 사업협동조합 등의 주된 사무소(사무실이 없는 사업협동조합 등에 있어서는 해당 사업협동조합 등을 대표하는 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주지사, 해당 지역의 전부가 한 시정촌(특별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시정촌의 장은 다음 조 제1항에서 같다)를 통해 경제산업대신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해당 도도부현 지사에 해당 신고서 사본 한통과 제기에 관한 첨부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1) 그 사업협동조합 등의 법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이나 규약(이하 "정관 등"이라고 한다)

2) 구성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한 명부

2. 전항의 경우에는 제기에 관계된 공예품이 생산되는 지역이 두 개 이상의 도도부현 구역에 걸친 경우에는 전통 공예품 지정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업협동조합 등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동항의 사업협동조합 등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를 제외한다) 모두에 대해 동항의 신고서 사본 한통과 제기에 관한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도도부현 지사 또는 시정촌장(특별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의 신고서 한통과 그 사본 한통 및 제기에 관한 첨부 서류 두 부분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들을 제기에 관한 공예품이 생산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제산업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전통 공예품 지정 내용 변경 제기)

제4조

법 제2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 준용한 동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전통 공예품 지정 내용의 변경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업협동조합 등은 양식 제 2에 의한 신고서 한통과 그 사본 한통에 각각 제기에 관한 첨부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제기에 관한 전통 공예품을 제조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를 통해 경제산업대신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해당 도도부현 지사에 해당 신고서 사본 한통과 제기에 관한 첨부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2. 전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특정 내용의 변경 신청에 대해서 준용한다.

(진흥 계획의 기재 사항)

제5조

법 제4조제1항 진흥 계획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1) 전통 공예품 산업 진흥에 관한 사업(이하 "진흥 사업"이라고 한다)의 목표 및 내용
- 2) 진흥 사업의 실시 시기
- 3) 진흥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금액 및 그 조달 방법

(진흥 계획의 승인)

#### 제6조

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진흥 계획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특정제조협동조합 등은 양식 제 3에 의한 신청서 한통과 그 사본 한통에 각각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진흥 계획 승인 신청에 관련된 첨부 서류"라고 한다)를 첨부하여 그 신청에 관한 전통 공예품을 제조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그 전통 공예품이 제조되는 지역이 두 개 이상의 도도부현의 구역에 걸친 경우에는 그 특정제조협동조합 등의 주된 사무소(사무실이 없는 특정제조협동조합 등은 그 특정제조협동조합 등을 대표하는 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 해당 지역의 전부가 하나의 시정촌 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촌의 장은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서 같다)를 통해 경제산업대신에게 제출하며, 아울러 해당 도도부현 지사에 그 신청서 사본 한통과 진흥 계획의 인정 신청에 관한 첨부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 1) 정관 등
- 2) 구성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한 명부
- 3) 최근 한 기간 동안의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이 문서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연간 사업 내용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이하 "사업보고서 등"이라고 한다)

2. 전항의 경우에도 신청에 관련된 전통 공예품이 제조되는 지역이 두 개 이상의 도도부현의 구역에 걸친 경우에는 진흥 계획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특정제조협동조합 등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동항의 특정제조협동조합 등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를 제외한다) 모두에 대해 동항의 신청서 사본 한통과 진흥 계획의 인정 신청에 관한 첨부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3. 도도부현 지사 또는 시정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신청서 한통과 그 사본 한통 및 진흥 계획의 인정 신청에 관한 첨부 서류 두 부분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동항의 진흥 계획에 대한 의견을 붙이고, 이 신청에 관한 전통 공예품을 제조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제산업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4. 도도부현 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신청서 사본의 송부를 받았을 때, 신속하게 동항의 진흥 계획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전항에 규정하는 경제산업국장에 송부하는 것으로 한다.

### 제7조

경제산업대신은 법 제4조제1항의 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진흥 계획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항 인증을 하는 것으로 한다.

- 1) 제5조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이 기본 지침에 비추어 적절한 것
- 2) 제5조제3호에 규정된 사항이 해당 진흥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것
- 3) 해당 특정제조협동조합 등의 회원이 사업자인 경우 해당 진흥 사업에 관한 전통 공예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하는 것의 상당 부분이 해당 진흥 사업에 참여하며, 그 진흥 사업의 실시가 해당 전통 공예품이 제조되는 지역의 전통 공예품 산업 진흥에 크게 기여하는 것

(진흥 계획 변경 승인)

### 제8조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 계획 변경 인증을 받고자 하는 특정제조협동조합 등은 양식 제 4에 의한 신청서 한통과 그 사본 한통에 각각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이하 이 항에서 "진흥 계획의 변경 인증 신청에 관한 첨부 서류"라고 한다)를 첨부하여 그 신청에 관한 전통 공예품을 제조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를 통해 경제산업대신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해당 도도부현 지사에 그 신청서 사본 한통과 진흥 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관한 첨부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 1) 진흥 사업의 실시 상황을 기재한 서류
  - 2) 진흥 계획의 변경에 따라 제6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서류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관한 서류
  - 3) 최근 한 기간 동안의 사업 보고서 등
2. 제6조제2항에서 제4항까지 및 전조의 규정은 진흥 계획의 변경에 준용한다.

(공동 진흥 계획의 기재 사항)

### 제9조

법 제7조제1항 협력 진흥 계획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특정제조협동조합 등이 판매사업자 또는 판매협동조합 등과 협력하여 실시하는 진흥 사업(이하 "협력 진흥 사업"이라고 한다)의 목표 및 내용
- 2) 공동 진흥 사업의 실시 시기
- 3) 공동 진흥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금액 및 그 조달 방법

(공동 진흥 계획의 승인)

### 제10조

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동 진흥 계획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특정제조협동조합 제품과 판매사업자 또는 판매협동조합 등은 양식 제 5에 의한 연명신청서 한통과 그 사본 한통에 각각 다음에 열거하는 구분에 따라 다음에 결정하는 서류(이하 이 항에서 "공동 진흥 계획의 인정 신청에 관한 첨부 서류"라고 한다)를 첨부하여 그 신청에 관한 전통 공예품을 제조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를 통해 경제산업대신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해당 도도부현 지사에 그 신청서 사본 한통과 협력 진흥 계획의 인정 신청에 관한 첨부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 1) 특정제조협동조합 등 또는 판매협동조합 등의 정관 등 구성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한 명단 및 최근 한 기간 동안의 사업 보고서 등
- 2) 판매사업자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 및 최근 한 기간의 영업 보고서, 대차 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이 문서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사업 내용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이하 "사업보고서 등"이라고 한다)

2. 제6조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은 공동 진흥 계획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11조

경제산업대신은 법 제7조제1항 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공동 진흥 계획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동향 인증을 하는 것으로 한다.

- 1) 제9조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이 기본 지침에 비추어 적절한 것
- 2) 제9조제3호에 규정된 사항이 그 공동 진흥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위해 적절한 것
- 3) 그 특정제조협동조합 등의 회원이 사업자인 경우, 그 공동 진흥 사업에 관한 전통 공예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하는 것의 상당 부분이 그 공동 진흥 사업에 참여되며, 그 공동 진흥 사업 실시자가 그 전통 공예품이 제조되는 지역의 전통 공예 산업 진흥에 크게 기여하는 것

(공동 진흥 계획 변경 승인)

#### 제12조

법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동 진흥 계획 변경 인증을 받고자 하는 특정제조협동조합 제품과 판매사업자 또는 판매협동조합 등은 양식 제 6에 의한 연명신청서 한통과 그 사본 한통에 공동 진흥 사업 실시 상황을 기재한 서류 및 각각 다음에 열거하는 구분에 따라 다음에 결정되는 서류(이하 이 항에서 "공동 진흥 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관한 첨부 서류"라고 한다)를 첨부하여 그 신청에 관한 전통 공예품을 제조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를 통해 경제산업대신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해당 도도부현 지사에 그 신청서 사본 한통과 협력 진흥 계획 변경 인증 신청에 관련된 첨부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 1) 특정제조협동조합 등 또는 판매협동조합 등 최근 한 기간 동안의 사업 보고서 등과 협력 진흥 계획의 변경에 따라 정관 등 또는 구성원의 이름이나 명칭을 기재한 명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후 정관 등 또는 구성원의 이름이나 명칭을 기재한 명부
  - 2) 판매사업자의 최근 한 기간 동안의 사업보고서 등과 협력 진흥 계획의 변경에 따라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후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
2. 제 6고 제2항에서 제4항까지 및 전조의 규정은 공동 진흥 계획의 변경에 준용한다.

(활성화 계획의 기재 사항)

#### 제13조

법 9조 제1항의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1) 활성화 사업의 목표 및 내용
- 2) 활성화 사업의 실시 시기
- 3)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금액 및 그 조달 방법

(활성화 계획 승인)

#### 제14조

법 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활성화 계획의 인정을 받고자하는 제조업자 또는 제조협동조합 등은 양식 제7에 의한 신청서 한통과 그 사본 한통에 각각 다음에 열거하는 구분에 따라 다음에 결정하는 서류(이하 이 단원에서 "활성화 계획 승인 신청에 관한 첨부 서류"라고 한다)를 첨부하여 그 신청에 관한 전통 공예품을 제조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그 전통 공예품이 제조 되는 지역이 두 개 이상의 도도부현 구역에 걸친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 또는 제조협동조합 등의 주된 사무소(사무실이 없는 제조협동조합 등에 있어서는 해당 제조협동조합 등을 대표하는 자의 주된 사무소, 제조업자 또는 제조협동조합 등이 협력하여 활성화 계획을 만들 때 그 대표자의 주된 사무소(그 대표자가 사무실이 없는 제조협동조합 등인 경우에는 해당 제조협동조합 등을 대표하는 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 해당 지역의 전부가 하나의 도시 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6조제1항에서와 같다)를 통해 경제산업 대신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해당 도도부현 지사에 그 신청서 사본 한통 및 활성화 계획 승인 신청에 관한 첨부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 1) 제조업자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과 최근 한 기간 동안의 사업보고서 등
- 2) 제조협동조합 등의 정관 등 구성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한 명단 및 최근 한 기간 동안의 사업 보고서 등



2. 제6조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은 활성화 계획에 관하여 준용한다.
3. 법 9조 제1항의 대표자는 한 명으로 한다.

#### 제15조

경제산업대신은 법 9조 제1항의 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활성화 계획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동항 인증을 하는 것으로 한다.

- 1) 제13조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된 사항이 기본 지침에 비추어 적절한 것
- 2) 제13조제3호에 규정된 사항이 해당 활성화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것
- 3) 해당 활성화 사업의 실사가 그 전통 공예품이 제조되는 지역의 전통 공예 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
- 4) 해당 활성화 사업의 내용이 다른 제조업자 는 제조업협동조합 등의 모델이 되도록 참신하고 선진적인 것(그 활성화 사업에 관한 전통 공예품에 대한 진흥 사업 또는 공동 진흥 사업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과 비교하여 보다 선진적인 것)

(활성화 계획 변경 승인)

#### 제16조

법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활성화 계획 변경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협동조합 등은 양식 제 8에 의한 신청서 한통과 그 사본 한통에 활성화 사업의 실시 상황을 기재한 서류 및 각 다음에 열거하는 구분에 따라 다음에 결정하는 서류(이하 이 항에서 "활성화 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관한 첨부 서류"라고 한다)를 첨부하여 그 신청에 관한 전통 공예품을 제조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를 통해 경제산업대신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해당 도도부현 지사에 그 신청서 사본 한통 및 활성화 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관한 첨부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 1) 제조업자의 최근 한 기간 동안의 사업보고서 등 및 활성화 계획의 변경에 따른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후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
  - 2) 제조협동조합 등 최근 한 기간 동안의 사업 보고서 등 및 활성화 계획의 변경에 따른 정관 등 또는 구성원의 이름이나 명칭을 기재한 명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정관 등 또는 구성원의 이름이나 명칭을 기재한 명부
2. 제6조제2항에서 제4항까지 및 전조의 규정은 활성화 계획의 변경에 준용한다.

(연계 활성화 계획의 기재 사항)

제17조

법 제11조제1항의 통합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1) 연계 활성화 사업의 목표 및 내용
- 2) 연계 활성화 사업의 실시 시기
- 3) 연계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금액 및 그 조달 방법

(연계 활성화 계획의 승인)

제18조

법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협력활성화계획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협동조합 및 연계제조협동조합은 양식 제 9에 의한 연명 신청서 한통과 그 사본 한통에 각각 다음에 열거하는 구분에 따라 다음에 결정하는 서류(이하 이 항에서 "연계 활성화 계획 승인 신청에 관한 첨부 서류"라고 한다)를 첨부하여 그 신청에 관한 전통 공예품 제조지역을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그 전통 공예품이 제조되는 지역이 두 개 이상의 도도부현 구역에 걸친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된 사무소(그 대표가 사무실이 없는 제조협력조합 등일 경우에는 해당 제조협동조합 등을 대표하는 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 해당 지역의 전부가 하나의 시정촌 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촌의 장. 제 20조제1항에서 같다)를 통해 경제산업대신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해당 도도부현 지사에 그 신청서 사본 한통 및 연계 활성화 계획 승인 신청에 관한 첨부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 1) 제조업자 또는 협력제조업체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과 최근 한 기간 동안의 사업보고서 등
- 2) 제조협동조합 등 또는 통합생산협동조합 등의 정관 등 구성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한 명단 및 최근 한 기간 동안의 사업 보고서 등

2. 여제6조제2항에서 2제4항까지의 규정은 협력 활성화 계획에 관하여 준용한다.

3.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표자는 한 명으로 한다.

제19조

경제산업대신은 법 제11조제1항 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계 활성화 계획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동항 인증을 하는 것으로 한다.

- 1) 제17조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된 사항이 기본 지침에 비추어 적절한 것
- 2) 제17조제3호에 규정된 사항이 해당 협력 활성화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것
- 3) 해당 협력 활성화 사업의 실시가 그 전통 공예품이 제조되는 지역의 전통 공예품 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

- 4) 해당 협력 활성화 사업의 내용이 다른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협동조합 등의 모델이 되도록 참신하고 선진적인 것(해당 협력 활성화 사업에 관한 전통 공예품에 대한 진흥 사업 또는 공동 진흥 사업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과 비교하여 보다 선진적인 것)

(연계 활성화 계획 변경 승인)

제20조

법 1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협력 활성화 계획 변경 인증을 받고자하는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협동조합 제품과 함께 제조업자 또는 통합생산협동조합 등은 양식 제 10에 의한 연명 신청서 한통과 그 사본 한통에 연계 활성화 사업의 실시 상황을 기재한 서류 및 각각 다음에 열거하는 구분에 따라 다음에 결정하는 서류(이하 이 항에서 "연계 활성화 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관한 첨부 서류"라고 한다)를 첨부하여 그 신청에 관한 전통 공예품을 제조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를 통해 경제산업대신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해당 도도부현 지사에 그 신청서 사본 한통과 연계 활성화 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관한 첨부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 1) 제조업자 또는 협력제조업체 최근 한 기간 동안의 사업보고서 등 및 연계 활성화 계획의 변경에 따르는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후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
  - 2) 제조협동조합 등 또는 통합생산협동조합 등 최근 한 기간 동안의 사업 보고서 등과 연계 활성화 계획의 변경에 따르는 정관 등 또는 구성원의 이름이나 명칭을 기재한 명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후 정관 등 또는 구성원의 이름이나 명칭을 기재한 명부
2. 제6조제2항에서 제4항까지 및 전조의 규정은 협력 활성화 계획의 변경에 준용한다.

(지원 계획의 기재 사항)

제21조

법 제13조제1항 지원 계획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1) 지원 사업의 목표 및 내용
- 2)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장소
- 3) 지원 사업의 실시 시기
- 4)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금액 및 그 조달 방법

(지원 계획의 승인)

## 제22조

법 제1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원 계획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양식 제 11에 의한 신청서 한통과 그 사본 한통에 각각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이하 이 항에서 "지원 계획 승인 신청에 관한 첨부 서류"라고 한다)를 첨부하여 그 신청에 관한 전통 공예품을 제조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그 전통 공예품이 제조되는 지역이 두 개 이상의 도도부현 구역에 걸친 경우에는 그 모든 도도부현의 지사. 제24조제1항에서 같다)를 통해 경제산업대신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해당 도도부현 지사에 그 신청서 사본 한통과 지원 계획의 인정 신청에 관한 첨부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
  - 2) 회원 등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한 명부
  - 3) 최근 한 기간 동안의 경영사업보고서 등 또는 사업 보고서 등
2. 제6조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은 지원 계획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23조

경제산업대신은 법 제13조제1항의 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 계획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동향 인증을 하는 것으로 한다.

- 1) 제21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 열거한 사항이 기본 지침에 비추어 적절한 것
- 2) 제21조제4호에서 규정된 사항이 해당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것
- 3) 해당 지원 사업의 실시가 그 전통 공예품이 제조되는 지역의 전통 공예품 산업 진흥에 크게 기여하는 것

(지원 계획 변경 승인)

## 제24조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계획 변경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양식 제 12에 의한 신청서 한통과 그 사본 한통에 각각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이하 이 항에서 "지원 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관한 첨부 서류"라고 한다)를 첨부하여 그 신청에 관한 전통 공예품 제조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를 통해 경제산업대신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해당 도도부현 지사에 그 신청서 사본 한통 및 지원 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관한 첨부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 1) 지원 사업의 실시 상황을 기재한 서류
- 2) 최근 한 기간 동안의 운영사업보고서 등 또는 사업 보고서 등
- 3) 지원 계획의 변경에 따라 제22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서류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관한 서류

2. 제6조제2항에서 제4항까지 및 전조의 규정은 지원 계획의 변경에 준용한다.

#### 제25조

제 5조에서 제 8조까지의 규정은 도도부현 지사 또는 시정촌 장이 령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동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제 6조제1항 중 "신청서 한통과 그 사본 한통에 각각"인 것은 "신청서 한통에"으로, "도도부현 지사(그 전통 공예품이 제조되는 지역이 두 개 이상의 도도부현 구역에 걸친 경우에는 그 특정 제조 협동조합 등의 주된 사무소(사무실이 없는 특정 제조협동조합 등에 있어서는 그 특정제조협동조합 등을 대표하는 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 해당 지역의 전부가 하나의 시정촌 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촌의 장.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서 같다)를 통해 경제산업대신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해당 도도부현 지사에 그 신청서 사본 한통과 진흥 계획의 인정 신청에 관한 첨부 서류를 송부"인 것은 "도도부현 지사(그 전통 공예품이 제조되는 지역 전체가 하나의 시정촌 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촌의 장. 다음 조 및 제 8조에서 같다)에게 제출"로, 제7조중 "경제산업대신"인 것은 "도도부현 지사"로, 제8조제1항 중 "및 그 사본 한통에 각각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이하 이 항에서 "진흥 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관한 첨부 서류"라고 한다)를 첨부하여 그 신청에 관한 전통 공예품을 제조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를 통해 경제산업대신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해당 도도부현 지사가 해당 신청서 사본 한통과 진흥 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관한 첨부 서류를 송부"인 것은 "을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도부현 지사에 제출"로, 제6조제2항에서 제4항까지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제 5조에서 제 8조까지의 규정은 경제산업국장이 령 제6조규정에 의해 동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중 "신청서 한통과 그 사본 한통에 각각"인 것은 "신청서 한통에"로, "(전통 공예품 제조되는 지역이 두 이상의 도도부의 구역에 걸친 경우에는 그 특정제조협동조합 등"인 것은 "중 해당 특정제조협동조합 등"으로, "해당 지역 전체가 하나의 시정촌 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촌의 장.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서 같다)를 통해 경제산업대신"인 것은 "를 통해 경제산업국장"으로, 동조 제2항에서 "신청에 관한 전통 공예품이 제조되는 지역이 두 개 이상의 도도부현의 구역에 걸친 경우 진흥 계획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특정제조협동조합 등은 그"인 것은 "진흥 계획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특정제조협동조합 등은 그 전통 공예품이 제조되는"으로, 동조 제3항 중 "도도부현 지사 또는 시정촌 장"인 것은 "도도부현 지사"로, "그 사본 한통 및 진흥 계획의 인정 신청에 관한 첨부 서류 두 부"인 것은 "진흥 계획의 인정 신청에 관한 첨부 서류"로, 제7조중 "경제산업대신"인 것은

"경제산업국장"으로, 제8조제1항 중 "신청서 한통과 그 사본 한통에 각각"인 것은 "신청서 한통"으로 "경제 산업대신"인 것은 "경제산업국장"으로 바꾼다.

부칙 첨부

(시행 기일)

1. 이 성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평성 20년 12월 1일 경제산업성령 제82호)

이 성령은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의 시행 일자(평성 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양식 제1
- 양식 제2
- 양식 제3
- 양식 제4
- 양식 제5
- 양식 제6
- 양식 제7
- 양식 제8
- 양식 제9
- 양식 제10
- 양식 제11
- 양식 제12

제조 기반 기술 진흥 기본법  
(평성 11년 3월 19일 법률 제2호)

제1장 총칙(제1조- 제 8조)

제2장 제조 기반 기술 기본 계획(제 9조)

제3장 기본적 시책(제10조- 제 18조)

부칙

제조 기반 기술은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산업인 제조업의 발전을 지원하여 생산 확대, 무역 진흥, 신산업 창출, 고용 증대 등 국민 경제의 각 영역에 걸쳐 그 발전에 기여함과 함께 국민 생활의 향상에 기여해 왔다. 또한 제조 기반 기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이러한 제조 기반 기술의 담당자로, 수준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우리들은 이러한 제조 기반 기술 및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수행하는 경제적, 사회적 역할이 국가의 존립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향후에도 변화되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

그런데도, 근래 취업 구조의 변화, 해외 지역의 공업화의 진전 등에 의한 경쟁 조건의 변화와 그 외에 경제의 다양하고 구조적인 변화에 의한 영향,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의 감소와 그 퇴색이 우려되는 동시에, 제조 기반 기술의 승계가 힘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고, 우리나라 국민 경제가 국가의 핵심적인 산업인 제조업의 발전을 통해 앞으로도 튼튼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조 기반 기술에 대한 능력을 존중하는 사회적인 기운을 조성하면서 제조 기반 기술의 적극적인 진흥을 도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제조 기반 기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 법률을 제정한다.



##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법은 제조 기반 기술이 국가 경제에서 완수해야 할 중요한 역할에 따르며, 최근 경제의 다양하고 구조적인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제조 기반 기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결정하고, 제조 기반 기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제조 기반 기술 수준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고, 그로써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에서 "제조 기반 기술"은 공업 제품의 설계, 제조 또는 수리에 관한 기술 중 범용성이 있고, 제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이 법에서 "제조 기반 산업"이라 함은 제조 기반 기술을 주로 사용하여 실시하는 사업이 속한 산업이고, 제조 또는 기계 정비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디자인 산업, 기계 설계 업무, 그 외에 산업 용품 디자인 제조 혹은 수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 활동을 하는 업종(다음 조 제1항에서 "제조업 등"이라고 한다)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하며, "제조업자"라 함은 제조 기반 산업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이 법에서 "제조 노동자"는 제조업체에 고용된 노동자 중 제조 기반 기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기본 이념)

제3조

제조 기반 기술의 진흥은 제조 기반 기술이 제조업 등에 속하는 사업에서 공급하는 제품 또는 용역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며, 그 기반 기술은 제조노동자에 의하며, 제조 기반 기술에 대한 능력을 존중하는 사회적인 기운을 조성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2. 제조 기반 기술의 진흥에 있어서는, 제조 기반 기술의 중심적인 담당자로 제조 기반 기술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기술과 이에 관한 지식에 대해 학습하는 제조 노동자(제 13조에서 "숙련된 제조 노동자"라고 한다)가 누락된 것에 따라 노동자의 확보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3. 제조 기반 기술의 진흥에 있어서는 제조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의해 점유되어 있는 것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제조업자(제 15조에서 "중소사업자"라고 한다)의 관리 기반 강화 및 거래 조건에 대한 불리한 보정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4. 제조 기반 기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은 제조업자, 제조 근로자 또는 이들에 대한 단체가하는 자주적인 노력을 조장하는 것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국가의 책무)

제4조

나라는 제조 기반 기술의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이것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지방자치단체는 제조 기반 기술 진흥에 관련하여 국가의 시책에 부응하는 시책 및 그 지방 자치단체의 지역 특성을 살린 자주적인 시책을 수립해야 하고, 이것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

(제조사업자의 책무)

제6조

제조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제조 기반 기술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 개발의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조 기반 기술에 대한 능력의 적절한 평가, 직장 환경의 정비 개선, 그 외에 제조 노동자의 노동 조건의 개선을 통해 제조 기반 기술 수준의 유지 및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법제상의 조치 등)

제7조

정부는 제조 기반 기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의, 재정적 또는 재정상과 그 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연차 보고서)

제8조

정부는 매년 국회에 정부가 제조 기반 기술의 진흥에 관해서 강구한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장 제조 기반 기술 기본 계획

### 제9조

정부는 제조 기반 기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조 기반 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 계획(이하 이 조에서 "제조 기반 기술 기본 계획"이라고 한다)을 책정해야 한다.

2. 제조 기반 기술 기본 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결정한다.

- 1) 제조 기반 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 2) 제조 기반 기술의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 3) 제조 노동자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
- 4) 제조 기반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5) 제조 기반 기술에 관한 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 6) 기타 제조 기반 기술의 진흥에 관해 필요한 사항

3. 정부는 제조 기반 기술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국회에 보고하고, 그 개요를 공개해야 한다.

4. 정부는 제조 기반 기술을 둘러싼 경제적·사회적 상황, 정부가 제조 기반 기술의 진흥에 관해서 강구한 시책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제조 기반 기술 기본 계획 검토를 추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해야 한다.

5. 제3항의 규정은 제조 기반 기술 기본 계획의 변경에 준용한다.

## 제3장 기본 시책

(제조 기반 기술의 연구 개발 등)

### 제10조

국가는 제조 기반 기술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조 기반 기술에 관한 연구 개발의 실시와 그 성과의 보급, 기술지도, 기술자 교육, 특허권, 기타 산업 재산권에 대한 지도 및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조업자와 대학 등의 연계)

### 제11조

국가는 제조 기반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및 그 성과의 이용 촉진 및 연구 개발에 관한 인재 육성에 기여하기 때문에 제조업자와 대학, 고등전문학교 및 대학,

공동 이용 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학 등"이라고 한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한다. 이 경우, 대학 등과 학술 연구의 특성을 항상 배려해야한다.

(제조 노동자의 확보 등)

#### 제12조

국가는 제조 노동자의 확보 및 자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 노동자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관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 1) 실업 예방 기타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것.
- 2) 직업 훈련과 직업 능력 검정의 충실 등에 따라 직업 능력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는 것.
- 3) 제조 기반 기술에 대한 능력의 적절한 평가, 직장 환경의 정비 개선, 기타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

(숙련된 제조 노동자의 활용 등)

#### 제13조

국가는 숙련된 제조 노동자(숙련된 제조 노동자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술과 지식의 효과적인 활용 및 제조 기반 기술의 계승을 도모하기 위해 숙련된 제조 노동자에 대한 기술지도, 업무 위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한다.

(산업 집적의 추진 등)

#### 제14조

국가는 제조 기반 산업의 사업 활동의 효율화, 고도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자연적·경제적·사회적 조건상으로 보아 하나인 지역의 공업 단지 시설의 정비, 제조업자와의 교류 또는 조정 추진 등 제조업자와의 새로운 집적을 촉진 또는 기존의 기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한다.

2. 국가는 제조 기반 산업의 신규 창업 등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조업자에 대한 시설, 인력, 정보 등의 제공, 자금의 원활한 공급 등 신규 창업 등에 관한 지원을 하고, 기능의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한다.

(중소기업 육성)

#### 제15조

국가는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설비의 설치, 그 외에 자본 장비의 고도화, 생산 관리의 합리화 등에 관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한다.

2. 국가는 중소기업의 거래 조건에 대한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그 하청 거래의 적정화에 관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한다.

(학습 진흥 등)

제16조

국가는 청소년을 비롯하여 널리 국민이 어떤 기회를 통해 제조 기반 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지와 동시에, 제조 기반 기술에 대한 능력을 존중하는 사회 기운이 조성되도록 초등학교, 중학교 등에 있어서 기술에 관한 교육을 충실히 하고,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제조 기반 기술에 대한 학습의 진흥, 제조 기반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계몽 및 제조 기반 기술에 대한 지식의 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한다.

(국제 협력)

제17조

국가는 우리나라의 국제 사회에 있어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제조 기반 기술에 관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협력 등 국제 기술 협력의 추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한다.

(의견 반영)

제18조

국가는 제조 기반 기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의 적정한 책정과 실시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조 기반 기술 관계자 등의 의견을 국가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조 기반 기술 진흥 기본법 시행령  
(평성 11년 6월 16일 정령 제 188호)

내각은 제조 기반 기술 진흥 기본법(평성 11년 법률 제2호) 제2조제1항 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이 정령을 제정한다.

(제조 기반 기술)

제1조

제조 기반 기술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 정령으로 지정하는 기술은 다음과 같이한다.

- 1) 형태에 관한 기술
- 2) 압축 성형, 압출 성형, 공기 분사에 의한 가공, 사출 성형, 단조, 주조 및 프레스 가공에 관한 기술
- 3) 압연, 신선과 인발에 관한 기술
- 4) 연마, 절단, 절삭<sup>42)</sup> 및 표면 처리에 관련된 기술
- 5) 정모<sup>43)</sup>와 방직에 관한 기술
- 6) 제직, 전모<sup>44)</sup> 및 구성에 관한 기술
- 7) 바느질에 관한 기술
- 8) 염색에 관한 기술
- 9) 분쇄에 관한 기술
- 10) 초지<sup>45)</sup>에 관한 기술
- 11) 프로세스에 관련된 기술
- 12) 분리에 관한 기술
- 13) 세척에 관한 기술
- 14) 열처리에 관한 기술
- 15) 용접에 관한 기술
- 16) 용융<sup>46)</sup>에 관한 기술
- 17) 도장 및 도금에 관한 기술

42) 절삭 [cutting, 切削]: 각종 재료를 절삭공구로 깎는 일. 각종 재료를 바이트 등의 절삭공구를 사용해서 가공하여 소정의 치수로 깎는 일을 말한다. 기계가공법의 하나이다.

43) 정모 (整毛): 채모한 것을 씻기 전에 잡털과 구분하고, 색을 선별하는 과정

44) 털깎기

45) 죽 모양의 묽은 펄프에서 종이를 떠냄. '종이뜨기'로 순화.

46) 녹아서 섞이는 일 또는 과정

- 18) 정제에 관한 기술
- 19) 가수분해 및 전기 분해에 관한 기술
- 20) 발효에 관한 기술
- 21) 중합에 관한 기술
- 22) 진공 유지에 관한 기술
- 23) 퇴감기에 관한 기술
- 24) 제조 공정 관리에 관한 기술
- 25) 기계기구의 수리 및 조정에 관한 기술
- 26) 비 파괴 검사 및 물성 측정에 관한 기술

(제조 기반 산업)

제2조

법 제1조제2항 정령으로 지정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제조(전조 각호에 규정된 기술을 주로 이용하는 것에 한한다)
- 2) 자동차 정비업
- 3) 기계 및 가구 등 수리 서비스
- 4) 소프트웨어
- 5) 정보 제공 서비스업(정보 처리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산업 과학 기술 분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한한다)
- 6) 형태
- 7) 기계 설계 업체 및 엔지니어링 업체
- 8) 연구 개발 지원 시험 분석 업무
- 9) 물리 연구소 및 공학 연구소(각 산업 과학 기술에 관한 연구의 개발을 하는 것에 한한다)

부칙

이 정령은 법의 시행일(평성 11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지역 전통 예능 등을 활용한 행사 등에 관한 지원 사업 실시 기관에 대한 성령  
(평성 4년 9월 24일 문부성, 농림수산성, 통상산업성, 교통부자치성령 제1호)

최종개정 : 평성 20년 12월 1일 총무성,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  
교통성 성령 제1호

지역 전통 예능 등을 활용한 행사의 실시로 관광 및 특정 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평성 4년 법률 제88호) 제30조규정에 의거, 지역 전통 예능 등을 활용  
한 행사 등에 관한 지원 사업 실시 기관에 대한 성령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지정 신청)

제1조

지역 전통 예능 등을 활용한 행사의 실시로 관광 및 특정 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조규정에 의하여 지원 사업 실시 기관의 지  
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지원 사업 실시 기  
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1) 명칭 및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2) 사무소의 소재지
- 3) 법 제 9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고 한다)의 개시 예정일
2.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1) 정관과 등기 사항 증명서
  - 2)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전 사업 연도의 대차 대조표. 단, 신청일이 속하  
는 사업 년도에 설립된 법인은 그 설립 당시의 재산 목록으로 한다.
  - 3) 임원 명부 및 이력서
  - 4) 지정 신청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5)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지정의 공시 등)

제2조

주무대신은 법 제8조규정에 의한 지원 사업 실시 기관의 지정을 한 경우에는 지  
원 사업 실시 기관의 명칭 및 주소와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보에 공시해야한다.

2. 지원 사업 실시 기관은 그 명칭이나 주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에 열거한 사항을 주무대신에게 신고해야한다.

- 1) 변경 후 이름이나 주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 2) 변경 예정
3. 주무대신은 전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관보에 공시해야한다.

(지원 사업에 관한 사업 계획서 등)

#### 제3조

지원 사업 실시 기관은 매 사업 연도,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지원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그 사업 연도의 개시일의 15일 전까지(법 제8조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는 그 지정을 받은 후로 한다)
- 2) 지원 사업에 관한 사업 보고서 및 수지 결산서, 그 사업 연도의 종료 후 3일 이내

(지정 취소 공시)

#### 제4조

주무대신은 법 제11조규정에 의하여 지원 사업 실시 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시해야한다.

(검사원증)

#### 제5조

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직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동조 제3항 인증서는 별기양식에 의한 것으로 한다.

(청문)

#### 제6조

법 제11조규정에 의한 처분에 관한 청문회 절차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성 청문 절차 규칙 (평성 12년 총리부령, 교통부령, 건설부령 제1호) 제 2조에서 제 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주무대신은 전항의 청문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청문회를 해야 할 날짜를 열흘 전에, 행정 절차법(평성 5년 법률 제88호)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해야 한다.

부칙

이 성령은 법의 시행일(평성 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6년 10월 12일 문부성, 농림수산성, 통상산업성, 교통부 자치성령 제1호)

이 성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2년 12월 14일 문부성, 농림수산성, 통상산업성, 교통부 자치성령 제1호)

이 성령은 평성 1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7년 3월 7일 총무성,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령 제1호)

이 성령은 부동산 등기법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평성 17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20년 12월 1일 총무성,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령 제1호)

이 성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역 전통 예능 등을 활용한 행사의 실시로 관광 및 특정 지역 상공업의 진흥  
에 관한 법률  
(평성 4년 6월 26일 법률 제88호)

최종개정 : 평성 19년 6월 1일 법률 제70호

제1장 총칙(제 1조, 제 2조)

제2장 활용 행사의 실시 등(제3조- 제 7조)

제3장 민간단체의 활용 행사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제8조- 제 11조)

제4장 기타 조항(제12조- 제 14조)

제5장 벌칙(제 15조)

부칙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지역 전통 예능 등을 활용한 행사의 실시가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의 다양화에 따른 국민 및 외국인 관광 여객의 관광 매력의 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소비 생활 등의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정 지역 상공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에 따라, 해당 행사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 관광 및 특정 지역 상공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이로써 공간의 국가 생활과 지역의 독특한 문화 등을 살린 개성 풍부한 지역 사회의 실현,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제 상호 이해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서 "지역 전통 예능 등"이라 함은 지역의 민중의 삶에 계승되어, 해당 지역의 독특한 역사, 문화 등을 현저하게 반영하는 전통 예능과 풍속 관습을 말한다.

2. 이 법률에서 "활용 행사"는 관광 및 특정 지역 상공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실시

되는 행사이고, 지역 전통 예능 등의 시범 지역 전통 예능 등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등의 전시, 기타 방법을 통해 지역 전통 예능 등을 그 주제로 활용하는 것들 중 국내 관광과 국제 관광 및 특정 지역 상공업 진흥에 상당 정도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3. 이 법에서 "특정 사업 등"이라 함은 지역 전통 예능 등의 실연 등에 관한 인력 확보, 지역 전통 예능 등에 관한 실연 등을 하기 위한 시설 확보, 지역 전통 예능 등에 사용되는 물품의 확보 활용 제품 홍보, 관광객과 고객의 편의를 증진 등에 관한 사업이나 조치로써 활용 행사에 관한 것들 중 활용 행사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 활용 행사와 관련하여 실시되는 것을 말한다.

4. 이 법률에서 "특정 지역 상공업"은 활용 행사가 실시되는 시정촌(특별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역의 소매업, 해당 소매업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으로, 그 활용 행사가 실시되는 시정촌 지역의 것, 해당 활용 활동에 관한 지역 전통 예능 등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기타 물품 및 해당 지역 전통 예능 등에 관한 활용 제품의 제조에 있어 그 활용 행사가 실시되는 시정촌 지역의 것을 말한다.

5. 이 법률에서 "활용 제품"이라 함은 지역 전통 예능 등을 특징 또는 지역 전통 예능 등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기타 물품의 특성을 활용하여 기능과 효용을 향상시킨 제품을 말한다.

## 제2장 활용 행사의 실시 등

(기본 방침)

### 제3조

국토교통대신, 경제산업대신, 농림수산대신, 문부과학대신과 총무대신(이하 "주무 장관"이라고 한다)은 활용 행사의 실시에 의한 관광 및 특정 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 방침 (이하 "기본 방침"이라고 한다)을 결정해야 한다.

2. 기본 방침에 대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 다음 조 제1항의 기본 계획의 지침이 될 것을 결정해야 한다.

- 1) 활용 행사 실시에 의한 관광 및 특정 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2) 활용 행사 실시에 관한 사항
- 3) 특정 사업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
- 4) 문화재인 지역 전통 예능 등의 보존에 관한 사항, 농산어촌의 활성화에 관한 시책의 연계에 관한 사항, 기타 활용 행사 실시에 의한 관광 및 특정 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3. 주무대신은 정세의 추이에 의해 필요할 때는 기본 방침을 변경해야 한다.
4. 주무대신은 기본 방침을 결정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5. 주무대신은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또는 이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포해야 한다.

(기본 계획)

#### 제4조

도도부현은 해당 도도부현의 활용 행사의 실시에 의한 관광 및 특정 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고 한다)을 결정할 수 있다.

2. 기본 계획에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

- 1) 해당 도도부현의 활용 행사의 실시에 의한 관광 및 특정 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 2) 활용 행사에서 활용되는 지역 전통 예능 등에 관한 사항
- 3) 활용 행사의 실시 주체, 실시 장소, 실시 기간 및 실시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4) 특정 사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5) 활용 행사에서 활용되는 지역 전통 예능 등 중 문화재 무슨 보존에 관한 사항
- 6) 농산어촌의 활성화에 관한 시책의 연계에 관한 사항
- 7) 기타 활용 행사의 실시에 의한 관광 및 특정 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기본 계획은 기본 방침에 의거한 것이어야 한다.

4. 시정촌 기본 계획을 결정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주무대신과 협의해야 한다.

5. 도도부현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대신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시정촌과 협의해야한다.

6. 시정촌 기본 계획을 결정 또는 이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포하여야한다.

#### 제5조

##### 삭제

(중소기업 신용 보험법의 특례)

#### 제6조

중소기업 신용 보험법(쇼와 25년 법률 제 264호)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반 보험 (이하 "저축 보험"이라고 한다), 동법 제3조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무담보 보

험(이하 "무담보 보험"이라고 한다) 또는 동법 제3조3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별 소액 보험(이하 "특별 소액 보험"이라고 한다)의 보험 관계로, 지역 전통 예능 등 관련 보증(동법 제3조제1항, 제3조2 제1항 또는 제3조3 제1항에 규정된 채무 보증으로, 기본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특정 사업 등 중 특히 사업 자금 융통의 원활화가 필요한 것으로서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인이 그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관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중소기업인에 관한 것에 대하여 다음의 표 위의 입력란에 규정된 동법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이 약관에서 같은 표에 규정된 어휘를 동표 아래 입력란에 규정된 어휘로 한다.

제3조제1항 보험 가액의 합계액이 지역 전통 예능 등을 활용한 행사의 실시로 관광 및 특정 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규정된 지역 전통 예능 등 관련 보증(이하 "지역 전통 예능 등 관련 보증"이라고 한다)에 관한 보험 관계의 보험 금액의 합계액이 다른 보험 관계의 보험 가액의 합계액과 각각 제3조2 제1항, 제3조3 제1항 보험 가액의 합계액이 지역 전통 예능 등 관련 보장에 관한 보험 관계의 보험 금액의 합계액이 다른 보험 관계의 보험 가액의 합계액과 각각

제3조2 제3항 해당 차입금 금액 중 지역 전통 예능 등 관련 보증 및 기타 안전에 대해 각각 당해 차입금 금액 중

해당 채무자 지역 전통 예능 등 관련 보증 및 기타 안전에 대해 해당 채무자 제3조3 제2항 그러한 보증을 했다. 지역 전통 예능 등 관련 보증 및 기타 안전에 대해 각각 해당 보증을 했다

해당 채무자 지역 전통 예능 등 관련 보증 및 기타 안전에 대해 해당 채무자  
2. 일반 보험의 보험 관계로, 지역 전통 예능 등 관련 보장에 관한 것에 대해서 중소기업 신용 보험법 제3조제2항과 제5조규정의 적용은 동법 제3조제2항 중 "100분의 70"으로, 그리고 동법 제5조중 "100분의 70(무담보 보험 특수 소액 보험, 유동 자산 담보 보험, 공해 방지 보험, 에너지 대책 보험, 해외 투자 관련 보험, 신사업 개척 보험, 기업 재생 보험과 특정 사채 보험에 대해서는 , 100분의 80)"인 것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3. 일반적으로 보험, 무담보 보험 또는 특별 소액 보험의 보험 관계이고, 지역 전통 예능 등 관련 보장에 관한 것에 대한 보험료의 금액은 중소기업 신용 보험법 제 4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보험 금액 년 100분의 2 이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국가 등의 지원 등)

제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 계획에 따라 실시된 활용 행사 및 특정 사업 등(이하 "계획 활용 행사 등"이라고 한다)의 실시 주체에 대해 계획 활용 행사 등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에 관해 필요 조언, 지도, 그 외에 기타 지원하도록 노력해야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기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으키는 지방채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금 사정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 허락하는 한 특별한 배려를 하는 것으로 한다.

3. 전 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주무대신, 관계 지방 공공단체, 관계 단체 및 관계 사업자는 기본 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도모하면서 협력해야한다.

### 제3장 민간단체의 활용 행사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의 추진

(지원 사업 실시 기관의 지정)

#### 제8조

주무대신은 계획 활용 행사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사단법인 또는 일반 재단법인으로 다음 조에 규정된 사업을 적정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신청하여 활용 행사 등 지원 사업 실시 기관(이하 "지원 사업 실시 기관"이라고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사업)

#### 제9조

지원 사업 실시 기관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 1) 계획 활용 행사 등의 실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것.
- 2) 계획 활용 행사 등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에 이바지하는데, 그 실시 주체에 대해 전호의 정보를 제공할 것
- 3) 계획 활용 행사 등의 실시에 관해 필요한 조언, 지도, 자금의 지급, 기타 지원을 할 것
- 4) 독립 행정법인 국제 관광 진흥기구가 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내방 촉진 향상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실시에 기여하기 위하여, 독립 행정법인 국제 관광 진흥기구에 대해 제1호의 정보를 제공할 것.
- 5) 활용 행사 실시에 의한 관광 및 특정 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행사를 실시하고, 조사, 연구 및 홍보를 실시할 것

(개선 명령)

제10조

주무대신은 지원 사업 실시 기관의 전조에 규정하는 사업 운영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 사업 실시 기관에 대해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지정 취소)

제11조

주무대신은 지원 사업 실시 기관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4장 기타 조항

(보고 요구 및 출입 검사)

제12조

주무대신은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지원 사업 실시 기관에 그 사업에 관해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직원에게 지원 사업 실시 기관의 사무소에 출입 업무 상황이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고, 혹은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때, 이것을 제시해야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권한은 범죄 수사를 위해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경과 조치)

제13조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명령을 제정 또는 개폐하는 경우 그 명령에 해당 제정 또는 개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소요 경과 조치(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를 포함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성령에의 위임)

제14조

이 법률에 명시된 것 이외에 이 법률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절차, 기타 사항은 국토교통성령, 경제산업성령, 농림수산업성령, 문부과학성령, 총무성령 그리고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다.



## 제5장 벌칙

### 제15조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 신고를 하거나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절, 방해, 혹은 기피하고, 혹은 질문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혹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그 위반 행위를 한 지원 사업 실시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시행 기일)

####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5년 11월 12일 법률 제89호) 발취

(시행 기일)

#### 제1조

이 법률은 행정 절차법(평성 5년 법률 88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자문 등이 되는 불이익 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 제 2조

이 법 시행 전 법령에 따라 위원회, 기타 합의 제의 기관에 대하여 행정 절차법 제 13조에 규정된 청문이나 변명 기회 부여 절차, 기타 의견 진술을 위한 절차에 해당하는 절차, 기타 요구가 되는 경우에는, 그 자문, 그 외의 요구에 관한 불이익 처분의 절차에 관해서는 이 법에 의한 개정 후 관련 법률의 규정에 관계없이,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 제13조

이 법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청문에 관한 규정의 정리에 따른 경과 조치)

제14조

이 법 시행 전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열린 청문, 청문회(불이익 처분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이들을 위한 절차는 이 법에 의한 개정 후 관련 법률의 해당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정령에의 위임)

제15조

부칙 2조에서 전조까지 결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평성 11년 12월 22일 법률 제10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제2조 및 제 3조를 제외한다)은 평성 1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1년 12월 22일 법률 제 222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3년 12월 7일 법률 제146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2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4년 5월 15일 법률 제43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제2조

이 법률(전조 단, 글에서 규정하는 조항은 해당 규정)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14년 11월 22일 법률 제109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4년 12월 18일 법률 제 181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7년 6월 10일 법률 제54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8년 6월 2일 법률 제50호) 발취

(시행 기일)

1. 이 법률은 일반사단, 재단법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조정 정책)

2. 범죄의 국제화와 조직 및 정보 처리의 고도화에 대처하기위한 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18년 법률 제 호)의 시행일이 시행일 이후가 되는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이 법의 시행 전 날 사이의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및 범죄 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평성 11년 법률 제136호. 다음 항에서 "조직범죄 처벌법"이라고 한다) 별표 제62호 규정의 적용은 동호 중 "중간 법인법(평성 13년 법률 제 49호) 제 157조(이사 등의 특별 배임)의 죄를"인 것은 "일반사단법인과 일반재단 법인에 관한 법률(평성 18년 법률 제48호) 제 334조(이사 등의 특별 배임)의 범죄"로 한다.

3.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동항 경우에는 범죄의 국제화와 조직 및 정보 처리의 고도화에 대처하기 위한 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실행 전 날 사이의 조직범죄 처벌법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제 457조 규정에 의해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경우의 구 중간법인법 제 157조(이사 등의 특별 배임)의 범죄는 조직범죄 처벌법 별표 제62호에 규정된 범죄로 간주한다.

부칙(평성 19년 6월 1일 법률 제70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지역전통예능 등을 활용한 행사의 실시로 관광 및 특정 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정하는 성령  
(평성 4년 9월 24일 통상산업성 시행령 제57호)

최종개정 : 평성 12년 9월 19일 통상산업성 시행령 제 167호

지역 전통예능 등을 활용한 행사의 실시로 관광 및 특정 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평성 4년 법률 제88호) 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역 전통예능 등을 활용한 행사의 실시로 관광 및 특정 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정하는 성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용어)

제1조

이 성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지역 전통 예능 등을 활용한 행사의 실시로 관광 및 특정 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지역 전통 예능 등 관련 보증의 대상 사업)

제2조

법 제6조제1항 경제산업성령으로 지정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이한다.

1. 계획 활용 행사에서 활용되는 지역 전통 예능 등에 관한 시연, 전시 또는 교육하기 위한 시설로서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을 신설하고, 이를 운영하는 사업

- 1) 실연하기위한 시설은 해당 계획 활용 행사에서 활용되는 지역 전통 예능 등에 관한 실연이 상당 정도 실행되는 것
- 2) 전시하기 위한 시설은 해당 계획 활용 행사에서 활용되는 지역 전통 예능 등에 관한 전시가 연중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3) 교육하기위한 시설은 해당 계획 활용 행사에서 활용되는 지역 전통 예술 등에 관한 교육이 상당 정도 진행되는 것

2. 해당 계획 활용 행사에서 활용되는 지역 전통 예능 등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기타 물품의 개발 또는 생산하는 사업

3. 해당 계획 활용 행사에서 활용되는 지역 전통 예능 등에 관한 활용 제품 개발  
이나 생산을 실시하는 사업

부칙

(시행 기일)

제1조

이 성령은 법의 시행일(평성 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2년 9월 19일 통상산업성 시행령 제 167호)

이 성령은 평성 1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지역 전통 예능 등을 활용한 행사의 실시로 관광 및 특정 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비율을 결정하는 정령  
(평성 4년 9월 24일 정령 제 307호)

내각은 지역 전통 예능 등을 활용한 행사의 실시로 관광 및 특정 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평성 4년 법률 제88호) 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정령을 제정한다.

지역 전통 예능 등을 활용한 행사의 실시로 관광 및 특정 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조제3항 정령으로 지정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증을 한 차입 기간(중소기업 신용 보험법 시행령(쇼와 25년 정령 제 350호)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차입 기간을 말한다) 1년 마다, 중소기업 신용 보험법(쇼와 25년 법률 제 264호)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반 보험에 있어서는 0.41 퍼센트(어음 특별 보증(동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어음 특별 보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당좌 대월 특별 보증(동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좌 대월 특별 보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는 0.35 퍼센트), 동법 제3조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무담보 보험에 있어서는 0.29 퍼센트(어음 특수 안전과 당좌 대월 특수 보증의 경우에는 0.25 퍼센트), 동법 제3조3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별 소액 보험에 있어서는 0.19퍼센트(어음 특수 안전과 당좌 대월 특수 보증의 경우에는 0.15 퍼센트)로 한다.

부칙

이 정령은 법의 시행일(평성 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상업





## 중소소매상업진흥법

(쇼와 48년 9월 29일 법률 제101호)

최종개정 : 평성 19년 6월 1일 법률 제70호

(목적)

### 제1조

이 법은 상가 정비, 점포의 집단화, 공동 점포 등 정비 등의 사업 실시를 원활히 하고 중소 소매 상업의 경영 현대화를 촉진하는 등 중소 소매 상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 제2조

이 법률에서 "중소기업인"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이 3억엔 이하의 회사 및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직원 수가 3백명 이하의 회사와 개인으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기타 업종(다음 호에서 제2호의 3까지 열거한 업종 및 제3호의 정령으로 지정하는 업종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
- 2)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이 1억엔 이하의 회사 및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직원 수가 백명 이하의 회사와 개인으로 도매(제3호의 정령으로 지정하는 업종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
- 2)-2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이 5천만엔 이하의 회사 및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직원 수가 백 명 이하의 회사와 개인으로 서비스업(제3호의 정령으로 지정하는 업종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
- 2)-3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이 5천만엔 이하의 회사 및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직원 수가 50명 이하의 회사와 개인으로 소매업(다음 호 정령으로 지정하는 업종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
- 3)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이 해당 업종에 대해 정령으로 지정하는 금액 이하의 회사 및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산업별로 정령으로 지정하는 수 이상의 회사와 개인으로 해당 정령으로 지정한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
- 4) 기업 조합
- 5) 협력 단체

- 6) 사업협동조합, 사업협동소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상공조합 및 상공조합연합회 및 상점가진흥조합 및 상점가진흥조합연합회(이하 "조합 등"이라고 한다)
2. 이 법률에서 "중소소매사업인"은 소매업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로 전항 제2호 3에서 제5호까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진흥 지침)

### 제3조

경제산업대신은 중소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인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이하 "진흥 지침"이라고 한다)을 결정해야한다.

2. 진흥 지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해야한다.

- 1) 경영 근대화의 목표에 관한 사항
- 2) 경영 관리의 합리화에 관한 사항
- 3) 시설 및 설비의 현대화에 관한 사항
- 4) 사업의 공동화에 관한 사항
- 5) 중소기업 종사자의 복리 후생에 관한 사항
- 6) 그 외에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경제산업대신은 진흥 지침을 결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에 속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내각과 협의하며, 중소기업 정책 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경제산업대신은 진흥 지침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해야한다.

(고도화 사업 계획의 승인 등)

### 제4조

상점가진흥조합 등(상점가진흥조합이나 상점가진흥조합연합회, 사업협동조합, 사업협동소조합이나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쇼와 32년 법률 제 185호) 제9조단, 보고서에 규정하는 상가 조합 혹은 이를 회원으로 하는 상업 조합 연합회를 말한다)은 주로 중소기업자인 조합원 또는 소속 회원의 경영 근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가 지역에 점포, 아케이드, 가로등, 그 외 기타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 상가 정비 계획을 만들고 이것을 경제산업대신에게 제출하고 해당 상가 정비 계획이 정령으로 지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임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2. 사업협동조합, 사업협동소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는 주로 중소기업자인 조합원 또는 소속 회원의 경영 근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점포를 하나의 단지에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사업(그 사업과 함께 아케이드, 가로등 기타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매장 집단화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경제산업대신에게 제출하여, 해당 점포 집단화 계획이 정령으로 지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임을 인증 받을 수 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조합은 해당 각 호에서 지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3호에 규정된 중소 소매 사업자는 그 합병 또는 출자를 하려고 하면, 다른 중소 소매 사업자와 공동으로 하여 동호에서 결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4호에 규정된 회사는 동호에서 지정하는 사업에 대해 각각 공동 점포 등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경제산업대신에게 제출하여 그 공동 사업장 정비 계획이 정령으로 지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임을 인증 받을 수 있다.

- 1) 사업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소조합 중소소매사업자인 조합원을 위한 공동 점포 또는 휴게소, 마을 회관, 기타 공동 점포와 병설되는 시설이나 공동 점포 시설(이하 이 항 및 제8항에서 "공동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설치 사업
- 2) 협력 단체 조합 매장이거나 휴게소, 마을 회관 기타 점포와 병설되는 시설이나 점포 설비 (다음 호에서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설치 사업
- 3) 다른 중소 소매 사업자와 합병을 시도하거나 또는 다른 중소 소매 사업자들과 함께 자본금이나 출자 총액의 대부분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려고하는 경우의 중소 소매 사업이 다음에 열거한 사업
  - ① 합병 또는 출자하여 설립하는 소매업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 설치 사업
  - ② 출자하여 설립되는 회사와 그 회사에 출자하고자하는 중소 소매 사업자를 위한 공동 사업장 설치 사업
- 4) 두 개 이상의 중소 소매 사업자가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의 대부분을 출자하고 있는 회사와 그 회사에 출자하고 있는 중소 소매 사업자를 위한 공동 사업장 설치 사업

4. 제1호에 규정된 조합 등은 동호에서 지정하는 사업에 대해 제2호에 규정된 조합 등 또는 중소 소매 사업자는 출자를 하려고 하는 다른 조합 또는 중소 소매 사업자와 관련하여 동호에서 지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3호에 규정된 회사는 동호에서 지정하는 사업에 대해 각각 전자계산기사용경영계획을 작성하고, 이것을 주무대신에게 제출하고, 그 전자계산기사용사업계획을 정령으로 지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임을 인증 받을 수 있다.

- 1) 조합 등의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중소 소매 사업자인 조합원 또는 소속 직원의 경영을 합리화하는 사업에 대해 제공해주는 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 사업
- 2) 다른 조합 등 또는 중소 소매 사업자들과 함께 자본 금액 또는 출자 총액의 대부분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려고 조합 또는 중소 소매 사업자가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해당 회사에 출자하기 하는 조합 등 중소 소매 사업자인 조합원이나 소속 직원 또는 중소 소매 사업자의 경영을 합리화하는 사업에 대해 제공해주는 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 사업
- 3) 두 개 이상의 조합 또는 중소 소매 사업자가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의 대부분

을 출자하고 있는 회사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해당 회사에 출자하는 조합 등, 중소 소매 상업자의 조합원이나 소속 직원 또는 중소 소매 상업의 경영을 합리화하는 사업에 대해 제공해주는 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 사업

5. 연쇄화사업(주로 중소 소매 상업자에 대해, 정해진 규정에 의한 계약에 근거해 지속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또는 판매를 알선하고, 경영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자는 그 연쇄화사업에 대해 제공되는 창고, 기타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 연쇄화사업 계획을 작성하고, 이것을 주무대신에게 제출하면 해당 연쇄 화사업 계획이 정령에서 지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것임을 인증 받을 수 있다.

6. 중소 기업자가 출자하고 있는 회사로 정령에서 지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하 "특정 회사"라고 한다)이나 일반 사단 법인 혹은 일반 재단 법인(이하 "일반 사단 법인 등"이라고 한다) 또는 특정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상가 지역, 공단 또는 건물의 내부에 집단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 소매 상업자의 경영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 점포, 아케이드, 휴게소 기타 시설 또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 상가 정비 등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경제산업대신에게 제출하면 해당 상가 정비 등의 지원 계획이 정령에서 지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임을 인증 받을 수 있다.

7. 상가 정비 계획, 점포 집단화 계획, 공동 사업장 정비 계획, 전자계산기사용 경영 관리 계획, 연쇄화사업 계획 또는 상가 정비 등의 지원 계획(이하 "고도화 사업 계획"이라고 한다)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 1) 제1항 혹은 제2항에 규정된 사업, 제3항 혹은 제4항 각호에서 지정하는 사업 또는 이전 제2항에서 규정된 사업(이하 "고도화 사업"이라고 한다)의 목표 및 내용
- 2) 고도화 사업의 실시 시기
- 3) 고도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금액 및 그 조달 방법

8. 경제산업대신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지정하는 사업에 관한 공동 점포 등의 정비 계획을 그 공동 사업장 정비 계획에 관한 조합을 관할하는 내각에, 동항 제3호 또는 제4호에서 지정하는 사업에 관한 공동 점포 등의 정비 계획을 그 공동 사업장 정비 계획에 관해 점포 또는 공동 매장에서 행해지는 소매업에 속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내각에, 공동 점포 등의 설치 사업에 관해 상가 정비 등의 지원 계획에 대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가 정비 등의 지원 계획에 관해 그 소매업에 속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내각과 협의해야 한다.

9. 전 각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고도화 사업 계획의 승인 및 그 취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지정한다.

(기금의 확보)

제5조

국가는 전조 제1항에서부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인정받은 고도화 사업 계획에 근거한 고도화 사업의 실시, 기타 중소 소매 상업자의 경영 현대화를 위한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 확보 또는 그 융통의 알선에 노력해야한다.

제5조2

삭제

(중소기업 신용 보험법 의 특례)

제5조3

중소 기업 신용 보험법(쇼와 25년 법률 제 264호)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반 보험 (이하 "저축 보험"이라고 한다), 동법 제3조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무담보 보험(이하 "무담보 보험"이라고 한다) 또는 동법 제3조3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별 소액 보험(이하 "특별 소액 보험"이라고 한다)의 보험 관계로, 중소 소매 상업 관련 보증(동법 제3조제1항, 제3조2 제1항 또는 제3조3 제1항에 규정된 채무 보증으로, 제4조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해 인정을 받은 고도화 사업 계획을 기반으로 고도화 사업(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인정을 받은 연쇄화사업 계획에 관련된 연쇄화사업에 가입하는 자(이하 "회원이"라고 한다)가 실시하는 사업으로 해당 연쇄화사업 계획 기반 고도화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을 포함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관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중소기업인에 관한 것에 대해서 다음의 표 위의 입력란에 규정된 동법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이 규정 중 동표 안의 입력란에 쓰인 어휘는 동표 하단의 입력란에 쓰기로 한다.

제3조제1항 보험 가액의 합계액이 중소 소매 상업 진흥법 제5조3 제1항에 규정된 중소 소매 상업 관련 보증(이하 "중소 소매 상업 관련 안전"이라고 한다)에 관한 보험 관계의 보험 금액의 합계액이 다른 보험 관계의 보험 가액 합계액과 각각 제3조2 제1항, 제3조3 제1항 보험 가액의 합계액이 중소 소매 상업 관련 안전에 관한 보험 관계의 보험 금액의 합계액과 다른 보험 관계의 보험 가액의 합계액과 각각

제3조2 제3항 해당 차입금 금액 중 중소 소매 상업 관련 안전 및 기타 안전에 대해 각각의 차입금 금액 중

해당 채무자 중소 소매 상업 관련 안전 및 기타 안전에 대해 해당 채무자

제3조3 제2항 그러한 보증을 했다. 중소 소매 상업 관련 안전 및 기타 안전에 대해 각각 해당 보증을 했다

해당 채무자 중소 소매 상업 관련 안전 및 기타 안전에 대해 해당 채무자

2. 보통 보험의 보험 관계자로, 중소기업 신용 보험법 제3조제2항과 제5조규정의 적용은 동법 제3조제2항 중 "100분의 70"이고, 그리고 동법 제5조중 "100분의 70(무담보 보험 특수 소액 보험, 유동 자산 담보 보험, 공해 방지 보험, 에너지 대책 보험, 해외 투자 관련 보험, 신사업 개척 보험, 기업 재생 보험과 특정 사채 보험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인 것은 "100의 80"으로 한다.

3. 보통 보험, 무담보 보험 또는 특별 소액 보험의 보험 관계에 대해서, 중소기업 신용 보험법 제4조규정에 관계없이 보험 금액의 년 100분의 2 이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 제5조4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인정을 받은 일반 사단 법인 등(일반 사단 법인은 그 사원 총회에서 의결권 2분의 1 이상을 중소기업자가 가지고 있는 것, 일반 재단 법인은 설립 시 출자 받은 재산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 중소기업자에 출자된 것에 한한다)에서 인정을 받은 상가 정비 등의 지원 계획을 기반으로 고도화 사업 실시시 필요한 자금에 관해 중소기업 신용 보험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조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무 보증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 사단 법인 등을 동법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인으로 간주하고, 동법 제 3조, 제3조2와 제 4조에서부터 제 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3조제1항과 제3조2 제1항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이 약관에서 "차입"인 것은 "중소 소매 상업 진흥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인정을 받은 상가 정비 등의 지원 계획을 기반으로 고도화 사업 실시시 필요한 자금의 차입"으로 한다.

#### 제6조

##### 삭제

##### (조사)

#### 제7조

국가는 중소기업자가 지역적 조건을 고려하여 그 경영의 근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의 소매 사업의 실태와 그 경제적·사회적 조건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하고, 지역의 소매 상업 향후 전망을 제시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 (연수 사업의 실시 등)

#### 제 8조

국가는 중소 소매 상업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 사업의 실시, 경영 지도 담당자의 양성, 그 외에 기타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국가는 중소 소매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경영의 근대화에 관해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시행해야 한다.

(중소기업자에 대한 배려)

제9조

국가는 중소 소매 사업자의 경영 현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에 따라 중소기업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해야한다.

(지방 공공단체의 시책)

제10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시책에 준해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정 연쇄화 사업 운영의 적정화)

제11조

연쇄화 사업으로 해당 연쇄화 사업에 관한 규정에, 회원에게 특정 상표, 상호, 그 외에 기타의 표시를 사용하게 하는 것 및 가맹자가 가맹 시 가맹금, 보증금, 기타의 금전을 징수하려고(이하 "특정 연쇄화 사업"이라고 한다)하는 자는 그 특정 연쇄화 사업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람에 대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고, 그 기재 사항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 1) 가맹에 대해 징수하는 가맹금, 보증금, 기타 금전에 관한 사항
- 2) 가맹자에 대한 상품의 판매 조건에 관한 사항
- 3)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 4) 사용하는 상표, 상호, 그 외의 표시에 관한 사항
- 5) 계약 기간 및 계약 갱신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6) 전 각호에 규정된 것 외에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경제산업대신은 전항의 경제산업성령의 제정 또는 폐지를 하려고 할 때에는 그 사업을 관할하는 내각과 협의해야 한다.

제12조

주무대신은 특정 연쇄화 사업을 할 사람이 전조 제1항의 규정을 따르고 있지 않다고 확인될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해 이 항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권고를 한 경우에도 특정 연쇄화 사업을 지휘하는 자가 그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취지를 공개할 수 있다.

(보고 요구)

#### 제13조

경제산업대신은 제4조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인정을 받은 고도화 사업 계획에 근거하는 고도화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해 그 사업의 실시 상황을 보고, 요구할 수 있다.

2. 주무대신은 제4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인정을 받은 고도화 사업 계획에 근거하는 고도화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해 그 사업의 실시 상황에 대해서, 특정한 연쇄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전조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주무대신)

#### 제14조

이 법률의 주무대신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제14조제4항에 규정된 전자계산기이용경영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경제산업대신과 동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의해 경영 관리를 합리화하는 중소기업자가 판매하는 주된 상품의 유통을 소관하는 내각
- 2) 제4조제5항에 규정한 연쇄화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및 특정 연쇄화 사업에 관한 사항은 경제산업대신과 연쇄화 사업에 관한 주된 상품의 유통을 관할하는 내각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업무)

#### 제15조

이 법률에 규정된 경제산업대신, 주무대신과 제4조제8항에 규정된 소관 내각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는 정령으로 지정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가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벌칙)

#### 제16조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은 1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사람의 대리인, 고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해 전항에 따르는 위반 행위를 했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하여 동항의 형을 과한다.

## 부칙 첨부

(시행 기일)

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3년 5월 24일 법률 제84호) 발취

(시행 기일)

###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 제2조

개정 전 중소 소매 상업 진흥법(이하 "구법"이라한다) 제4조제1항에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인정받은 계획에 관한 계획 변경 승인 및 취소 및 구법 제4조제1항에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보고 요구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2. 구법 제4조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에 관한 대출에 대해 중소기업 근대화 자금 등 조성법의 적용은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3. 구법 제4조제1항에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계획에 따라 사업(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연쇄화 사업 계획에 관한 연쇄화 사업에 가입하는 사람이 실시하는 사업으로 그 연쇄화 사업 계획에 근거한 사업과 밀접한 관련을 포함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에 관한 채무, 보증에 대한 중소기업 신용 보험법의 적용은 또한 종전 예에 의한다.

4. 이 법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 것으로 되는 보고의 징수에 관한 이 법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그러나 구법 규정 중 "3만엔"인 것은 "10만엔"으로 한다.

부칙(평성 10년 3월 31일 법률 제23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1년 3월 31일 법률 제18호) 발취

(시행 기일)

제 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1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호에 규정된 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 250조의 다음 5조, 절명 및 두관과 관명을 추가하는 개정 규정(동법 제 250조의 9 제1항에 관한 부분(두 의원의 동의를 얻는 것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한한다), 제40조중 자연 공원법 부칙 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 규정(동법 부칙 제10항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 244조의 규정(농업 개혁 조장법 제14조3의 개정 규정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및 제 472조의 규정(시정촌 합병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8조및 제 17조의 개정 규정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59조단, 제60조제4항 및 제5항, 제73조, 제77조, 제157조 제4항에서 제6항까지의 제 160조, 제 백 163조, 제 164조 및 제 202조의 규정 공포한 날

(국가 등의 업무)

제159조

이 법에 의한 개정 전의 각각의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정령에 의해 관리되거나 집행하는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그 외에 기타 공공단체 사무(부칙 제161조에 "국가 등의 사무"라고 한다)는 이 법 시행 후 지방 공공단체가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정령에 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해서 취급하는 것으로 한다.

(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제160조

이 법률(부칙 제1조각호에 규정된 조항은 해당 각 조항. 이하 이 조 및 부칙 제163조에서와 같다)의 시행 전에, 개정 전의 각각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한 허가 등의 처분, 기타 행위(이하 이 조에서 "처분 등의 행위"라고 한다) 또는 이 법률의 시행 시 개정 전의 각각의 법률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허가 등의 신청, 기타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신청 등의 행위"라고 한다)에서 이 법률의 시행 일자부터 이 활동에 관한 행정 사무를 해야 할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되는 것은, 부칙 제2조에서 전조까지의 규정 또는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이것에 근거한 명령을 포함한다)의 경과 조치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률의 시행 일 이후, 개정 후 각각의 법률 적용에 대해서는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의 해당 규정에 의한 처분 등의 행위 또는 신청 등의 행위로 본다.

2. 이 법 시행 전에 개정 전 각각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기관에 신고, 신고, 제출, 기타 수속을 해야하는 사항이 법률의 시행일 전에 그 절차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률 및 이에 근거한 정령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것 외에, 이것을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해당 기관에 보고, 신고 제출, 기타 수속을 해야하는 사항이 절차가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법에 의한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의 신청에 관한 경과 조치)

제161조

시행일 전에 한 국가 등의 사무에 관한 처분에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이하 이 조에서 "처분청"이라고 한다) 시행일 전에 행정 불복 심사법에서 규정하는 상급 행정청(이하 이 조에서 "상급 행정청"이라고 한다)의 이 동법에 의한 이의 신청은 시행일 이후에도 그 처분청에 이어 상급 행정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 불복 심사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처분청의 상급 행정청으로 간주된 행정청은 시행일 이전에 그 처분청의 상급 행정청이었던 행정청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에도 상급 행정청으로 간주된 행정청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이 행정 불복 심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업무는 새로운 지방자치법 제2조제 9 항 제1호로 규정하는 제1호 법정 수탁 사무로 한다.

(수수료에 관한 경과 조치)

제162조

시행일 이전에 이 법에 의한 개정 전 각각의 법률(이것에 근거한 명령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 법률 및 이에 근거한 정령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제 163조

이 법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기타 경과 조치 정령에의 위임)

제 164조

이 부칙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 조치(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를 포함한다)은 정령으로 지정한다.

2. 부칙 제 18조, 제51조 및 제 184조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지정한다.

(검토)

제 250조

새로운 지방자치법 제2조제9항 제1호로 규정하는 제1호 법정 수탁 사무는 가능한 새로 마련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지방자치법 별표 제 1 및 새로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정령에 표시된 것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검토를 추가하고, 적절한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제 251조

정부는 지방 공공단체가 사무와 사업을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에 따라 지방세 재원의 충실한 확보 방도에 대해 경제 상황의 추이 등을 감안하면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 252조

정부는 의료 보험 제도, 연금 제도 등의 개혁에 따라 사회 보험 업무 처리 체제, 이것에 종사하는 직원의 본연의 자세 등에 대해서 피보험자 등의 편의를 확보, 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부칙(평성 11년 12월 3일 법률 146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 제14조

이 법률(부칙 제1조단, 글에서 규정하는 조항은 그 규정.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이 부칙 규정에 의해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정령에의 위임)

#### 제15조

부칙 제 2조에서부터 전조까지 결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지정한다.

부칙(평성 11년 12월 22일 법률 제 160호) 발취

(시행 기일)

#### 제1조

이 법률(제2조및 제 3조를 제외한다)은 평성 1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1년 12월 22일 법률 제 222호) 발취

(시행 기일)

####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호에 규정된 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3. 제 4조의 규정 및 제7조중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 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 제 9조의 개정 규정 및 부칙 제 4조에서 제 6조까지의 규정, 부칙 제15조중 격심한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 재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쇼와 37년 법률 제 150호) 제 13조의 개정 규정, 부칙 제 16조의 규정, 부칙 제 18조의 구정에서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 및 양호한 고용 기회의 창출을 위한 고용 관리 개선 촉진에 관한 법률(평성 3년 법률 제57호) 제11조개정 규정, 부칙 제23조중 중소기업 유통업무효화촉진법(평성 4년 법률 제65호) 제 8조의 개정 규정, 부칙 제25조중 에너

지 등의 사용 합리화 및 재생 자원 이용에 관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평성 5년 법률 제18호) 제 22조의 개정 규정, 부칙 제 26조, 제27조및 제29 조규정, 부칙 제30조중 중심 시가지에 있어서 시가지 정비 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평성 10년 법률 92호) 제 25조의 개정 규정, 부칙 제31조중 신사업 창출 촉진법(평성 10 법률 제 152호) 제21조개정 규정, 부칙 제32조중 중소기업경영혁신지원법(평성 11년 법률 제18호) 제 7조, 제12조및 부칙 3조의 개정 규정, 부칙 제34조중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평성 11년 법률 제131 호) 제25조및 제27조개정 규정, 부칙 제35조중 중앙성청 등 개혁관계법시행법 제 902조 개정 규정 및 부칙 제 36조의 규정 평성 12년 4월 1일

부칙(평성 13년 3월 30일 법률 제7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3년 12월 7일 법률 제146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4년 11월 22일 법률 제109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5년 3월 31일 법률 제8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7년 3월 31일 법률 21호) 발췌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1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기타 경과 조치 정령에의 위임)

제89조

이 부칙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지정한다.

부칙(평성 17년 7월 26일 법률 제87호) 발췌

이 법률은 회사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8년 6월 2일 법률 50호) 발췌

(시행 기일)

1. 이 법률은 일반사단·재단법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조정 정책)

2. 범죄의 국제화와 조직 및 정보 처리의 고도화에 대처하기 위한 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18년 법률 제 호)의 시행일이 시행일 이후가 되는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동법의 시행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및 범죄 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평성 11년 법률 제136호. 다음 항에서 "조직범죄처벌법"이라고 한다) 별표 제62호 규정의 적용은 동호 중 "중간법인법(평성 13년 법률 제49호) 제 157조(이사 등의 특별 배임)의 범죄"인 것은 "일반 사단법인과 일반적 재단법인에 관한 법률(평성18년 법률 제48호) 제 334조(이사 등의 특별 배임)의 범죄"로 한다.

3.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동항 경우에도 범죄의 국제화와 조직 및 정보 처리의 고도화에 대처하기 위한 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일의 전날까지의 사이에 조직 범죄 처벌법의 규정의 적용 내용은 제 457조의 규정에 의해 종전의 예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구 중간법인법 제 157조(이사 등의 특별 배임)의 범죄는 조직범죄 처벌법 별표 62호에 규정된 범죄로 간주한다.



부칙(평성 19년 3월 30일 법률 제6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평성 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제 157조

이 법률(부칙 제1조각호의 규정에 있어서는 그 규정.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이 부칙 규정에 의해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하는 경우,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기타 경과 조치 정령에의 위임)

제 158조

이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으로 지정한다.

부칙(평성 19년 6월 1일 법률 제70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 소매 상업 진흥법 시행령  
(쇼와 48년 9월 29일 정령 제 286호)

최종개정 : 평성 19년 3월 30일 정령 제92호

내각은 중소기업 진흥법(쇼와 48년 법률 제101호) 제4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 및 제6항 및 제 15조의 규정에 근거해 이 정령을 제정한다.

(중소 기업인의 범위)

제 1조

중소 소매 상업 진흥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정령으로 지정하는 업종 및 그 업종 별 자본 금액 또는 출자 총액 및 종업원의 수는 다음 표와 같다.

업종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 직원 수

- 1) 고무 제품 제조업(자동차 또는 항공기용 타이어 및 튜브 제조 및 산업용 벨트 제조 제외) 3억엔 9백명
- 2) 소프트웨어 업체 또는 정보 처리 서비스업 3억엔 3백명
- 3) 여관업 5천만엔 2백명

(상가 정비 계획의 인정 기준)

제2조

법 제4조제1항 정령으로 지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한다.

- 1) 해당 상가 진흥 조합 등의 조합원이나 소속 당원의 수가 경제 산업 성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일 것.
- 2) 해당 상가 진흥 조합 등의 조합원이나 소속원의 3분의 2 이상이 중소기업인업자 또는 중소기업 서비스 업체(서비스업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로 법 제2조제1항 제2호 두 또는 제3호에서 제5호까지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자 중소기업의 수가 중소기업 서비스 업체 수 이상인 것
- 3) 법 제4조제7항 제1호에 규정된 사항이 진흥 지침에 비추어 적절한 것
- 4) 법 제4조제7항 제2호와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이 해당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것

- 5) 해당 상가 진흥 조합 등의 조합원 또는 소속원이 그 점포 기타 시설을 신설 또는 개조하는 사업에 있어서, 조합원 또는 소속원이 신설하거나 또는 개장하는 점포, 기타 시설 부지 면적의 합계 중 중소기업이 신설하거나 또는 개장하는 점포, 기타 시설에 관한 부분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조합원 또는 소속원의 2분의 1이상 (경제산업성령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 또는 소속 직원 중 경제산업성령으로 지정하는 수 이상의 사람)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것

(점포 집단화 계획의 승인 기준)

### 제3조

법 제4조제2항 정령으로 지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한다.

- 1) 사업협동조합, 사업협동소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다음 호 및 제5호에서 "사업협동 조합 등"이라고 한다)의 조합원 또는 소속 직원의 수가 경제산업성령으로 지정하는 수 이상일 것.
- 2) 그 사업협동조합 등의 조합원이나 소속 당원의 3분의 2 이상이 중소 소매 상인업자 또는 중소 서비스 업체이자 중소 소매 상업의 수가 중소 서비스 업체 수 이상일 것
- 3) 법 제4조제7항 제1호에 규정된 사항이 진흥 지침에 비추어 적절한 것
- 4) 법 제4조제7항 제2호와 제3호 규정된 사항이 해당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것
- 5) 그 사업협동조합 등의 모든 조합원 또는 소속 직원이 해당 단지에 점포를 설치한 것

(공동 사업장 정비 계획의 인정 기준)

### 제4조

법 제4조제3항 정령으로 지정하는 기준은 동항 제1호에 규정된 조합이 만드는 공동 사업장 정비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 1) 해당 조합의 조합원 수가 경제산업성령으로 비정하는 수 이상일 것.
- 2) 해당 조합의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중소 소매 상인업자 또는 중소 서비스 업체이자 중소 소매 상업의 수가 중소 서비스 업체 수 이상일 것
- 3) 법 제4조제7항 제1호에 규정된 사항이 진흥 지침에 비추어 적절한 것
- 4) 법 제4조제7항 제2호와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이 해당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것
- 5)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중소 소매 상업자 모두가 그 공동 매장에서 소매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

- 6) 그 공동 점포 중 소매업에 속하는 사업에 대해 제공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일 것
2. 법 제4조제3항 정령으로 지정하는 기준은 동항 제2호에 규정된 조합이 만드는 공동 사업장 정비 계획에 대해서 다음과 같다.
- 1) 해당 조합의 조합원 수가 경제산업성령으로 지정하는 수 이상일 것.
  - 2) 해당 조합이 중소 소매 사업자일 것.
  - 3) 법 제4조제7항 제1호에 규정된 사항이 진흥 지침에 비추어 적절한 것
  - 4) 법 제4조제7항 제2호와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이 해당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것
  - 5) 해당 조합이 그 점포를 주로해서 소매업에 속하는 사업에 제공하는 것.
  - 6) 해당 점포 중 소매업에 속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 전항 제6호 경제 산업성령으로 지정하는 면적 이상일 것
3. 법 제4조제3항 정령으로 지정하는 기준은 동항 제3호에 규정된 중소 소매 사업자가 그 합병 또는 출자를 하려고 할 때, 다른 중소 소매 사업자와 협력하여 만든 공동 사업장 정비 계획과 동항 제4호에 규정된 회사가 창조하는 공동 점포 등 정비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 1) 해당 합병 혹은 출자를 하려고 하거나 또는 그 출자를 하고 있는 중소 소매 사업의 수가 경제산업성령으로 지정하는 수 이상일 것.
  - 2) 출자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법 제4조제3항 제4호에 규정된 회사로 중소 소매 사업의 소유에 관련된 해당 회사 주식의 수에 해당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에 대한 비율 또는 중소 소매 사업의 그 회사의 출자 금액을 해당 회사의 출자 총액의 비율이 10분의 7이상인 것
  - 3) 법 제4조제7항 제1호에 규정된 사항이 진흥 지침에 비추어 적절한 것
  - 4) 법 제4조제7항 제2호와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이 해당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것
  - 5) 법 제4조제3항 제3호 1에 명시된 사업에 동항 1에서 규정하는 회사가 그 점포를 주로해서 소매업에 속하는 사업에 제공하는 것
  - 6) 법 제4조제3항 제3호 2로 정하는 사업 또는 동항 제4호에 명시된 사업으로 그 공동 점포가 크게 동항 제3호 2로 규정하는 회사 또는 그 회사에 출자하고자 하는 중소 소매 사업자 또는 동항 제4호에 규정된 회사 또는 그 회사에 출자하고 있는 중소 소매 사업이 경영하는 소매업에 속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것.
  - 7) 해당 점포 또는 공동 점포 중 소매업에 속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 제1항 제6호 경제산업성령으로 지정하는 면적 이상일 것

(전자 컴퓨터 응용 사업 계획의 승인 기준)

제5조

법 제4조제4항 정령으로 지정하는 기준은 동항 제1호에 규정된 조합 등이 만든 전자 계산기이용사업계획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한다.

- 1) 그 조합 등의 조합원이나 소속원 수가 주무성령으로 지정하는 수 이상일 것.
  - 2) 그 조합 등의 조합원이나 소속원의 4분의 3 이상이 중소 소매 상업자인 것.
  - 3) 법 제4조제7항 제1호에 규정된 사항이 진흥 지침에 비추어 적절한 것.
  - 4) 법 제4조제7항 제2호와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이 해당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것
2. 법 제4조제4항 정령으로 지정하는 기준은 동항 제2호에 규정된 조합 등 또는 중소 소매 상업자가 그 출자를 하려고 하는 다른 조합 등 또는 중소 소매 상업자와 공동으로 만든 전자계산기이용경영계획과 동항 제3호에 규정된 회사가 만드는 전자계산기이용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출자를 하려고 하거나 또는 그 출자를 하고 있는 조합 등 중소 소매 상업자인 조합원이나 소속 직원 또는 중소 소매 상업자의 수가 주무성령으로 지정하는 수 이상인 것.
  - 2) 조합 등의 혹은 중소 소매 상업의 소유에 관련된 해당 회사의 주식의 수에 해당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에 대한 비율 또는 조합 등의 혹은 중소 소매 상업의 그 회사의 출자 금액을 그 회사의 출자 총액의 비율이 10분의 7 이상인 것
  - 3) 출자를 하려고 하거나 또는 그 출자를 하고 있는 자(단체 등에 있어서는 그 조합원 또는 소속 당원)의 4분의 3 이상이 중소 소매 상업자인 것.
  - 4) 법 제4조제7항 제1호에 규정된 사항이 진흥 지침에 비추어 적절한 것
  - 5) 법 제4조제7항 제2호와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이 해당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것

(연쇄화 사업 계획 승인 기준)

제6조

법 제4조제5항 정령으로 지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해당 연쇄화 사업 가맹자 수가 주무성령으로 지정하는 수 이상인 것.
- 2) 해당 연쇄화 사업 가맹자 10분의 7 이상이 중소 소매 상업자인 것.
- 3) 법 제4조제7항 제1호에 규정된 사항이 해당 연쇄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적절한 것
- 4) 법 제4조제7항 제2호와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이 해당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것

(특정 회사의 요건)

제7조

법 제4조제6항 정령으로 지정하는 요건은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이하 이 조 및 다음 장에서 "대기업인"이라고 한다)의 소유에 관련된 해당 회사 주식의 수에 해당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에 대한 비율 또는 대기업의 그 회사에 대한 출자 금액을 그 회사의 출자 총액의 비율이 2분의 1 미만일 것(독립 행정 법인 중소기업 기반 정비기구가 출자하는 경우에는 독립 행정 법인 중소기업 기반 정비기구의 출자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대기업의 소유에 관련된 해당 회사 주식의 수에 해당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에 대한 비율 또는 대기업의 그 회사에 대한 출자 금액과 해당 회사의 출자 총액의 비율이 2분의 1 미만인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로 한다.

(상가 정비 등 지원 계획의 승인 기준)

제 8조

법 제4조제6항 정령으로 지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법 제4조제7항 제1호에 규정된 사항이 진흥 지침에 비추어 적절한 것
- 2) 법 제4조제7항 제2호와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이 해당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것
- 3) 법 제4조제6항의 특정 회사가 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
  - ① 해당 특정 회사에 출자하려고, 또는 출자하고 있는 사람의 3분의 2 이상이 중소기업인일 것
  - ② 대기업인이 그 특정 회사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일 것
  - ③ 어느 대기업에 대해서도 그 소유에 관한 해당 특정 회사 주식의 수에 해당 특정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에 대한 비율 또는 그 해당 특정 회사의 출자 금액과 그 특정 회사의 출자 총액에 대한 비율이 경제산업성령으로 지정하는 비율 미만일 것
- 4) 공동 점포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
  - ① 그 공동 매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자 3분의 2 이상이 중소 소매 상인업자 또는 중소 서비스 업체이자 중소 소매 상업의 수가 중소 서비스 업체 수 이상일 것
  - ② 그 공동 점포 중 소매업에 속하는 사업에 대해 제공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 제4조제1항 제6호의 경제산업성령으로 지정하는 면적 이상일 것

(인증 계획의 변경 등)

제9조

법 제4조제1항에서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자, 동조 제3항 제3호 1 혹은 2 혹은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회사 또는 동조 제6항에 규정된 특정 회사는 동조 제1항에서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고도화 사업 계획(다음에서 "인증 계획"이라고 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제 2조에서 전조까지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는 것임을 경제산업대신(법 제4조제4항 또는 제5항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고도화 사업 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주무대신)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2. 경제산업대신 또는 주무대신은 각각 법 제4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 혹은 제6항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자, 동조 제3항 제1호 1 혹은 2로 규정하는 회사 혹은 동조 제6항에 규정하는 특정 회사 또는 동조 제4항 혹은 제5항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자나 동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하는 회사가 해당 인증 계획(해당 인증 계획 변경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정된 것)에 따라서 고도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3. 법 제4조제8항 규정은 동조 제3항 또는 제6항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고도화 사업 계획에 대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취소에 준용한다.

(보험료율)

#### 제10조

법 제5조3 제3항 정령으로 지정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증을 한 차입 기간(중소기업 신용 보험법 시행령(쇼와 25년 정령 제 350호) 제2조제1항에 규정하는 차입 기간을 말한다) 일 년마다, 중소기업 신용 보험법(쇼와 25년 법률 제 264호)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반 보험에 있어서는 0.41퍼센트(어음할인특별보증(동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어음할인특별보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당좌대월특별보증(동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좌대월특별보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는 0.35퍼센트), 동법 제3조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무담보 보험에 있어서는 0.29퍼센트(어음할인특별보증과 당좌대월특별 보증의 경우에는 0.25퍼센트), 동법 제3조3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별소액보험에 있어서는 0.19퍼센트(어음할인특별보증과 당좌대월특별보증인 경우에는 0.15퍼센트)로 한다.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업무)

#### 제11조

법 제4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 및 제6항, 법 제13조제1항 및 제9조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제산업대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및 법 제4조제8항(제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경제산업대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또는 소관 내각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는 해당 고도화 사업 계획에 관련된 기관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가 실시하게 한다. 이 경우에는 법률 중 전단에서 규정하는 사무에 관계되는 경제산업대신 또는 주무대신에 관련되는 규정은 도도부현 지사에 관계되는 규정으로 해서 도도부현 지사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48년 10월 15일 정령 제310호)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54년 12월 7일 정령 제 289호)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56년 5월 19일 정령 제 175호)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3년 7월 31일 정령 제 254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중소 소매 상업 진흥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3년 법률 84호)의 시행일(평성 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7년 3월 29일 정령 제130호)

이 정령은 평성 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7년 12월 27일 정령 제 436호)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1년 6월 23일 정령 제 204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평성 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1년 12월 3일 정령 제 385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평성 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1년 12월 3일 정령 제 386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제6조

이 정령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이 정령의 부칙에서 종전의 예에 의한 것으로 된 경우, 이 정령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평성 12년 3월 29일 정령 제132호)

(시행 기일)

1. 이 정령은 평성 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평성 12년부터 평성 15년 사이의 제1조규정에 의한 개정 후 소규모 기업자 등 설비 도입 자금 조성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항 중 "현 특별 회계"인 것은 "중소기업 활동의 활성화 등을 위한 중소기업 관련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11년 법률 제 222호)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중소기업 근대화 자금 등을 조성법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현 특별 회계 결산에 동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설비 근대화 자금 대출 금액과 현 특별 회계”로 한다.

부칙(평성 12년 6월 7일 정령 제 311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내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11년 법률 제88호)의 시행일(평성 13년 1월 6일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6년 5월 26일 정령 제 181호) 발취

이 정령은 기구의 설립 때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7년 3월 31일 정령 제103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평성 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8년 4월 26일 정령 제 180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회사법의 시행일(평성 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9년 3월 30일 정령 제92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정령은 평성 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중소 소매 상업 진흥법 시행 규칙

(쇼와 48년 9월 29일 통상산업성 시행령 제100호)

최종개정 : 평성 20년 12월 1일 경제산업성령 제82호

중소 소매 상업 진흥법(쇼와 48년 법률 제101호) 제11조제1항 및 중소기업 진흥법 시행령(쇼와 48년 정령 제 286호) 제1조 및 제2조규정에 의거 및 동법(제4조제3항 제외)을 실시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진흥법 시행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상가 정비 계획에 관한 승인 신청 등)

### 제1조

중소 소매 상업 진흥법(쇼와 48년 법률 제101호.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인증 신청은 해당 상가 정비 계획에 관련된 기관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에 양식 제 1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해서 시행해야 한다.

2.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1) 해당 상가 정비 계획에 대한 의결을 그 상점가 진흥 조합 등의 총회 또는 대표 회의의 의사록 사본(중소 소매 상업 진흥법 시행령(쇼와 48년 정령 제 286호.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제5호 경제산업성령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제9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2) 해당 상가 진흥 조합 등의 정관
- 3) 해당 상가 진흥 조합 등의 조합원이나 소속 직원의 성명 또는 명칭,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 상시 사용하는 직원의 수와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을 기재한 명부
- 4) 해당 상가 진흥 조합 등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 보고서
- 5) 설치하는 시설 또는 설비의 배치와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 6) 도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설치에 관하여 건축 기준법(쇼와 25년 법률 제 201호) 제44조제1항 단, 교부금, 도로법(쇼와 27년 법률 제 180호) 제24조승인 혹은 제32조제1항의 허가, 도로 교통법(쇼와 35년 법률 제105호) 제77조제1항의 허가 또는 소방법(쇼와23년 법률 제 186호) 제7조제1항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혹은 승인 또는 동의를 얻은 것 또는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 제2조

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해 인정을 받은 상가 정비 계획에 관한 시행령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한 변경 인증 신청은 전조 제1항에 규정된 도도부현 지사에 양식 제2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해서 실행해야 한다.

2.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1) 해당 변경에 대한 의결을 그 상점가 진흥 조합 등의 총회 또는 대표회의의 의사록 사본 (시행령 제2조제5호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것)
- 2) 그러한 인정 계획에 따라 사업의 실시 상황을 기재한 서면
- 3) 그러한 변화에 따라 전조 제2항 제2호에서부터 제5호에 열거한 서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관한 서류
- 4) 그러한 변화에 따라 전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허가 혹은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할 때에는 동호에서 규정하는 서면

(점포 집단화 계획에 관한 승인 신청 등)

## 제3조

법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인증 신청은 해당 점포 집단화 계획에 관한 공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에 양식 3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해서 실행해야 한다.

2.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해당 점포 집단화 계획에 대한 의결을 그 사업협동조합, 사업협동소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업협동조합 등"이라고 한다)의 총회 또는 대표회의의 의사록 사본(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있지 않은 점포, 창고, 사무실 기타 사업 활동 시설(이하 "빈 점포 등"이라고 한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의 표 제7호의 1부터 4까지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것)
- 2) 그 사업협동조합 등의 정관
- 3) 그 사업협동조합 등의 조합원이나 소속 직원의 성명 또는 명칭,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 상시 고용하는 직원의 수와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을 기재한 명부
- 4) 그 사업협동조합 등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 보고서
- 5) 설치하는 시설 또는 설비의 배치와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 6) 제1조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하는 서면

#### 제4조

법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해 인정을 받은 점포 집단화 계획에 관한 시행령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변경 인증 신청은 전조 제1항에 규정된 도도부현 지사에 양식 4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해서 실행해야 한다.

2.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1) 해당 변경에 대한 의결을 그 사업협동조합 등의 총회 또는 대표회의의 의사록 사본(빈 점포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의 표 제7호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것)
- 2) 그러한 인정 계획에 따라 사업의 실시 상황을 기재한 서면
- 3) 그러한 변화에 따라 전조 제2항 제2호에서부터 제5호에 열거한 서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관한 서류
- 4) 그러한 변화에 따라 제1조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허가 혹은 승인이나 동의 를 요하는 것으로 된 때에는 동호에 규정하는 서면

(공동 사업장 정비 계획에 관한 승인 신청 등)

#### 제5조

법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한 인증 신청은 그 공동 사업장 정비 계획에 관한 공동 사업장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에 양식5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실행해야 한다.

2. 전항의 신청서에는 법 제4조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조합이 만드는 공동 점포 등 정비 계획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1) 그 공동 사업장 정비 계획에 대한 의결을 한 조합 총회 또는 대표회의의 의사록 사본
- 2) 해당 조합의 정관
- 3) 해당 조합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 상시 고용하는 직원의 수와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을 기재한 명부
- 4) 해당 조합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 보고서
- 5) 설치하는 공동 사업장 또는 사업장 배치와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 6) 제1조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하는 서면

3. 제1항의 신청서에는 법 제4조제3항 제3호에 규정된 중소 소매 사업자가 그 합병 또는 출자를 하려고 하면 다른 중소 소매 사업자와 협력하여 만든 공동 점포 등의 정비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의 류를 첨부해야 한다.

- 1)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 계약서 사본,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출자를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그 출자에 관한 동의서 사본
- 2) 법 제4조제3항 제3호 1 또는 2로 규정하는 회사의 정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관

- 3) 합병 또는 출자를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성명 또는 명칭,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 상시 고용하는 직원의 수와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을 기재한 명부
- 4) 법 제4조제3항 제3호 1 또는 2로 규정하는 회사 일정 대차 대조표, 예상 손익 계산서 및 예정 재산 목록 및 사업계획서 및 설비 투자 계획서
- 5) 설치하는 공동 사업장 또는 사업장 배치와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 6) 제1조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에서 규정하는 서면

4. 제1항의 신청서에는 법 제4조제3항 제4호 회사가 작성하는 공동 점포 등 정비 계획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그 회사의 정관
- 2) 그 회사의 모든 출자자의 성명 또는 명칭,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 상시 고용하는 직원의 수와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을 기재한 명부
- 3) 그 회사의 최근 세 기간의 사업 보고서, 대차 대조표와 손익 계산서, 최근 재산 목록 및 사업계획서 및 설비 투자 계획서
- 4) 설치하는 공동 사업장 배치와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 5) 제1조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에서 규정하는 서면

## 제6조

법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공동 사업장 정비 계획에 관한 시행령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한 변경 인증 신청은 전조 제1항에 규정된 도도부현 지사에 양식 6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실행해야 한다.

2.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1) 법 제4조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조합 작성에 관한 인정 계획 변경 인증 신청에는 해당 변경 의결에 대한 합의의 총회 또는 대표 회의의 의사록 사본
- 2) 그러한 인정 계획에 따라 사업의 실시 상황을 기재한 서면
- 3) 그러한 변화에 따라 전조 제2항 제2호에서부터 제5호까지, 동조 제3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열거한 서류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에 관한 서류
- 4) 그러한 변화에 따라 제1조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허가 혹은 승인이나 동의 를 요하는 것으로 될 때에는 동호에 규정하는 서면

(상가 정비 등 지원 계획에 관한 승인 신청 등)

제7조

법 제4조제6항 규정에 의한 인증 신청은 해당 상가 정비 등 지원 계획에 관련된 기관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에 양식 7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실행해야 한다.

2. 전항의 신청서에는 특정 회사에서 만드는 상가 정비 등 지원 계획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1) 해당 특정 회사의 정관
- 2) 해당 특정 회사의 모든 출자자의 성명 또는 명칭,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 상시 고용하는 직원의 수와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을 기재한 명부
- 3) 해당 특정 회사의 최근 세 기간 사업 보고서, 대차 대조표와 손익 계산서, 최근 재산 목록 및 사업계획서 및 설비 투자 계획서
- 4) 설치하는 시설 또는 설비의 배치와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 5) 제1조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하는 서면

3. 제1항의 신청서에는 일반사단법인 등이 만드는 상가 정비 등의 지원 계획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1) 해당 상가 정비 등 지원 계획에 대해 의결에 대한 일반사단법인 등 직원 총회 (그 일반 사단법인 등이 이사회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 회의록 사본
- 2) 해당 일반 사단 법인 등의 정관
- 3) 일반사단법인은 총 사원의 성명 또는 명칭,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 자본금 및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을 기재한 명부, 일반재단법인은 설립 시 재산에 기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성명 또는 명칭, 출연하는 재산 총액,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 자본금 및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을 기재한 명부
- 4) 해당 일반사단법인 등 최근 세 기간의 사업 보고서, 대차 대조표 및 수지 계산서, 최근 재산 목록 및 사업계획서 및 설비 투자 계획서
- 5) 설치하는 시설 또는 설비의 배치와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 6) 제1조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하는 서면

4. 제1항의 신청서에는 특정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만든 상가 정비 등의 지원 계획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1) 그 출자를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그 출자에 관한 동의서 사본
- 2) 출자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관
- 3) 출자를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성명 또는 명칭,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 상시 고용하는 직원의 수와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을 기재한 명부
- 4) 해당 특정 회사의 예상 대차 대조표, 예상 손익 계산서 및 예정 재산 목록 및 사업계획서 및 설비 투자 계획서

- 5) 설치하는 시설 또는 설비의 배치와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 6) 제1조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하는 서면

#### 제8조

법 제4조제6항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상가 정비 등 지원 계획에 관한시행령 제 9 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변경 인증 신청은 전조 제1항에 규정된 도도부현 지사에 양식 8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실행해야한다.

2.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1) 일반사단법인 등의 작성에 관한 인정 계획 변경 인증 신청에는 해당 변경의 결에 대한 그 일반사단법인 등의 직원총회(그 일반사단법인 등이 이사회를 설치하고 있다면 해당 이사회) 회의록 사본
- 2) 그러한 인정 계획에 따라 사업의 실시 상황을 기재한 서면
- 3) 그러한 변화에 따라 전조 제2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동조 제3항 제2호에서 제5호까지 또는 동조 제4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 열거한 서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에 관한 서류
- 4) 그러한 변화에 따라 제1조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허가 혹은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할 때에는 동호에 규정하는 서면

(조합원의 수 등등)

#### 제9조

시행령 제2조제1호 경제산업성령으로 지정하는 수는 20명(해당 상가 정비 계획에 관련된 시설 또는 설비가 컨퍼런스 시설, 쇼핑 센터 또는 주차장있을 때에는 다섯 명)으로 한다.

2. 시행령 제2조제5호 경제산업성령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빈 점포 등을 활용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동호 경제산업성령으로 지정하는 수는 5명으로 한다.

- 1) 해당 빈 점포 등이 상점가 진흥 조합 등 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그 상점가 진흥 조합 등이 상가를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구상을 책정하여, 그 구상을 총회 또는 대표 모임에서 의결하는 것
- 2) 해당 상가 진흥 조합 등이 전호의 구상에 따라서 빈 점포 등을 활용하여 수행할 점포, 기타 시설을 신설 또는 개조하는 사업에 지지하는 것을 총회 또는 대표 회의에서 의결하는 것
- 3) 전호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1호의 구상에 따라 사업하는 것을 체결하는 것

3. 시행령 제3조제1호 경제산업성령으로 지정하는 수는 20명(아래 표 위의 입력란



에 규정된 특별한 이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표 아래 입력란에 규정된 인원)으로 한다.

특별한 이유 조합원 또는 소속원 수

- 1) 도쿄도의 특별 행정구를 보존하는 지역 또는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지역에 설치되고, 조합원 또는 소속 직원의 3분의 2 이상이 해당 지역 내에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5명
- 2) 조합원 또는 소속 직원의 3분의 2 이상이 다음에 열거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서 점포, 기타 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 ① 수도권 정비법(쇼와 31년 법률 83호) 제2조제3항에 규정된 건물 지역
  - ② 긴키 지역 정비법(쇼와 38년 법률 제129호) 제2조제3항에 규정된 건물 도시 지역
  - ③ 도시 계획법(쇼와 43년 법률 제100호) 제8조제1항에 규정된 제 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제 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제 1종 중 고층주거 전용 지역, 제 2종 중 고층집 전용 지역, 제 1종 주거 지역, 제 2종 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준공업 지역 또는 공업 지역 10명
- 3) 해당 단지가 다음 중 하나의 구역 또는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
  - ① 오키나와 지역
  - ② 과소 지역 활성화 특별 조치법(평성 2년 법률 제15호) 제2조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과소 지역
  - ③ 반도 진흥법(쇼와 60년 법률 제63호) 제2조제1항에 규정된 반도 진흥 대책 실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10명
- 4) 법 제4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의 실시 기간 중 재해, 경제 사정 등 주목할 만한 변화는 조합원 또는 소속 직원수가 20명 미만인 경우 10명
- 5) 매장을 한 건물에 집단화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또는 소속 당원의 5분의 4 이상이 상공회 및 상공 회의소의 소규모 사업자 지원에 관한 법률(평성 5년 법률 제51호) 제 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인이 있는 경우 5명
- 6) 해당 단지가 상가 지역 또는 그 인접 지역에 설치되어, 공동 시설로 광장을 설치하는 경우 5명
- 7) 빈 점포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① 빈 점포 등이 상점가 진흥 조합 등 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그 상점가 진흥 조합 등이 상가를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구상을 책정하며, 그 구상을 총회 또는 대표 회의에서 의결 하고있을 때
  - ② 그 상점가 진흥 조합 등이 1의 구상에 따라서 해당 빈 점포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점포를 하나의 단지에 집단화하여 설치하는 사업에 대한 지지를 총회 또는 대표 회의에서 의결하고 있는 것.

- ③ 전 호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 협동 조합 등이 1의 구상에 따라서 번 사업을 하는 것을 체결하고 있을 경우. 5명
- 4 시행령 제4조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와 제2조제3항 제1호 경제산업성령으로 지정하는 수는 5명으로 한다.
5. 시행령 제4조제1항 제6호 경제산업성령으로 지정하는 면적은 200미터로 한다.
- 6 시행령 제8조제3호 3의 경제산업성령으로 지정하는 비율은 3분의 1로 한다.

(특정 연쇄화 사업 운영의 적정화)

제10조

법 제11조제1항 제6호 경제산업성령으로 지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해당 특정 연쇄화 사업을 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및 법인에는 임원의 직함과 이름
- 2) 해당 특정 연쇄화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자본 금액 또는 출자 총액 및 주요 주주(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를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를 가진 소유 하는 자를 말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 및 다른 사업을 하고 있을 때에는 그 종류
- 3) 해당 특정 연쇄화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총 주주 또는 전체 직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를 가지고 있을 때,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
- 4) 해당 특정 연쇄화 사업을 하는 사람의 가장 가까운 세 사업 연도의 대차 대조표와 손익 계산서 또는 이들을 대신하는 서류
- 5) 해당 특정 연쇄화 사업을 하는 사람의 그 사업 개시시기
- 6) 사업의 3개년도 가맹자의 점포수 추이에 관한 사항
- 7) 사업의 5개년도 해당 특정 연쇄화 사업을 하는 사람이 계약에 관해, 가맹자 또는 가맹자로 있는 자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 건수 및 가맹자 또는 가맹자로 있는 자로부터 제기된 소송의 건수
- 8) 가맹자의 점포 영업시간 및 영업일 및 정기 또는 비정기 휴일
- 9) 해당 특정 연쇄화 사업을 하는 사람이 회원의 점포 주변 지역에서 해당 회원이 매장에서 소매와 동일 또는 그것과 유사한 소매업을 영위하는 점포를 스스로 영업하거나 또는 해당 가맹자가 아닌 사람에게 영업하는 취지의 규정의 유무 및 그 내용
- 10) 계약 기간 중 또는 계약 해지 혹은 만료 후 다른 특정한 연쇄화 사업에의 가입 금지, 유사 사업에 대한 취업 제한, 기타 회원의 영업 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의 유무 및 그 내용
- 11) 계약 기간 중 또는 계약 해지 혹은 만료 후 회원이 해당 특정 연쇄화 사업에 대해 알게 된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의 유무 및 그 내용

- 12) 가맹 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금전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금전에 관한 사항
- 13) 가맹 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판매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송금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와 방법
- 14) 가맹자에 대한 금전의 대부 또는 대부의 알선을 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부 또는 대부의 알선에 관한 금리 또는 산정 방법, 기타 조건
- 15) 가맹자와의 일정기간 무역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 채무의 상계에 의하여 발생하는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자를 더하는 경우에는 해당이자에 관한 금리 또는 산정 방법, 기타 조건
- 16) 가맹자의 점포 구조 또는 내외장에 대해서 가맹자에게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는 때에는 그 내용
- 17) 특정 연쇄화 사업을 하는 자 또는 가맹자가 약관을 위반한 경우에 발생하는 금전의 액수 또는 산정 방법, 기타 의무의 내용

#### 제11조

법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정 연쇄화 사업을 하는 자가 그 특정 연쇄화 사업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교부하는 서면은 다음 표 상단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동표 하단 입력란에 규정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사항 내용

- 1) 가맹에 대해 징수하는 가맹금, 보증금, 기타 금전에 관한 사항
  - ① 징수하는 금전의 액수 또는 산정 방법
  - ② 가맹금, 보증금, 비품대, 그 외에 징수하는 금전의 성질
  - ③ 징수시기
  - ④ 새로운 징수 방법
  - ⑤ 금전의 반환 여부 및 그 기준
- 2) 가맹자에 대한 상품의 판매 조건에 관한 사항
  - ① 가맹자에게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의 알선하는 상품 종류
  - ② 상품의 대금 결제 방법
- 3)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 ① 가입 시 교육 또는 강습회 개최 여부
  - ② 가입 시 연수 또는 강습회가 일어날 때 그 내용
  - ③ 가맹자에 대한 지속적인 경영지도 방법 및 그 실시 회수
- 4) 사용하는 상표, 상호 다른 표시에 관한 사항
  - ① 사용하는 상표, 상호, 기타의 표시
  - ② 해당 문서의 사용에 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5) 계약 기간 및 계약 갱신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① 계약 기간
  - ② 계약 갱신 조건 및 절차
  - ③ 계약 해제의 요건 및 절차
  - ④ 계약 해제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 배상의 액수 또는 산정 방법, 기타 의무의 내용
- 6) 가장 가까운 세 사업 연도의 가맹자의 매장 수의 추이에 관한 사항
- ① 각 사업 연도의 말일의 가맹자의 매장 수
  - ② 각 사업 연도에 새로 영업을 시작한 가맹자의 매장 수
  - ③ 각 사업 연도에 해제된 계약에 관한 가맹자의 매장 수
  - ④ 각 사업 연도 내에 새롭게 갱신된 계약에 관한 가맹자의 점포수와 갱신하지 않은 가맹자의 매장 수
- 7) 가맹 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에 관한 사항
- ① 징수하는 금전의 액수 또는 산정에 대한 매출, 비용 등의 근거를 밝힌 산정 방법
  - ② 상호 사용료, 경영지도, 그 외에 추가 징수하는 금전의 성질
  - ③ 징수시기
  - ④ 징수 방법

(조례 등에 관한 적용 배제)

제12조

제1조에서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은 도도부현의 조례 또는 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이 성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쇼와 54년 12월 7일 통상산업성 시행령 제112호)

이 성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원년 4월 28일까지 일통상산업성령 제22호)

이 성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3년 7월 31일 통상산업성령 제38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성령은 중소 소매 상업 진흥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3년 법률 84호)의 시행일(평성 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7년 12월 27일 통상산업성령 시행령 제110호)

이 성령은 중소 소매 상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평성 7년 정령 제 436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9년 1월 12일 통상산업성령 제2호)

이 성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1년 1월 11일 통상산업성령 제1호)

이 성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2년 3월 22일 통상산업성령 제36호)

이 성령은 평성 1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2년 10월 31일 통상산업성령 제 270호)

이 성령은 평성 1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4년 3월 29일 경제산업성령 제60호)

이 성령은 평성 1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7년 4월 1일 경제산업성령 제51호)

이 성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18년 4월 28일 경제산업성령 제63호) 발취

(시행 기일)

제1조

이 성령은 회사법의 시행일(평성 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성 20년 12월 1일 경제산업성령 제82호)

이 성령은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의 시행 일자(평성 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식 제 1

양식 제 2

양식 제 3 [제3조]

양식 제 4 [제4조]

양식 제 5

양식 제 6

양식 제 7 [제7조]

양식 제 8 [제8조]